국립국어원 2022-01-28

| 발간등록번호 |
| --- |
| 11-1371028-000919-01 |


# 지역 언어문화 발전 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 | 이 윤 경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22-01-28

| 발간등록번호 |
| --- |
| 11-1371028-000919-01 |

# 지역 언어문화 발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 윤 경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지역 언어문화 발전 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연구 기간: 2022년 07월 ~ 2022년 12월

2022년 12월 22일

연구책임자: 이윤경(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 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윤경

공동연구원: 김규찬, 박종웅, 김성준,
김덕호, 명성준, 오현주

〈국문 요약〉

# 지역 언어문화 발전 방안 연구


이 연구는 지역어의 보전 및 지역 언어문화 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한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어 보전 및 활용과 관련된 문헌 및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어와 정책 추진체계를 연구하는 전문가 등에 대한 자문과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언어문화 관련 행정 수요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을 활용해 지역어 정책 추진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환경변화가 요구하는 행정수요를 분석한 결과, 지역 문화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문화다양성의 근간인 언어문화 정책 확대가 중요함이 확인되었다.

제도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 지역 언어문화 정책 추진 기반(법·제도, 조직 등)에서는 지역어의 보전 및 활용 가치와 보전 책무 등은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국어발전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에서는 지역어와 관련된 내용이 부재하였다. 중앙정부의 지역어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조직을 살펴보면 지역어 관련 정책 업무를 소수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고, 그 업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제주 지역어를 제외하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지역 언어문화 국내·외 활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역어의 영향력이 교육에서 문화유산으로, 문화유산에서 공공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고, 지역어 사용의 자유를 보장하는 언어 권리 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있었다. 또한 지역어를 활용하여 도시를 재생하고 다문화 사회의 소통을 증진하는 등 지역어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역어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어를 원형으로 한 다양한 산업적 성과물들을 기획하면서 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성 역시 증대되고 있었다.

지역어와 관련된 정책 환경 분석 및 활용 사례 분석,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 언어문화 발전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 보완 및 중앙-지역, 공공-민간

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역 언어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모색을 위해 중앙정부의 부속기관 유형, 지방정부의 직속기관 유형, 그리고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형 등 다양한 방식의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지역 언어문화 정책은 일상 속 문화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향유 지원과 표준어 중심 정책과 다양성 보전 정책의 균형,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추진체계가 구축되었을 때 국어기본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지역어, 지역 언어문화, 국어정책**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ocal language and culture

This study deals with local language and culture development plans, and aims to present direc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local languages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language and culture policie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a survey was conducted on literature and cases related to the conservation and use of local languages. In addition, in order to establish a specific policy promotion system in the research process, advice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experts studying local languages and policy promotion systems. Finally, a survey was conducted on local government policy managers to understand administrative demands and perceptions related to local language and culture.

In the study, an analysis of the local language policy implementation environment was attempted using the research method presented above. The policy implementation environment confirmed through the study is as follows. The basis for implementing local language and culture policies (laws, systems, organizations, etc.), including the "Basic Framework Act on Korean Language," which is the basis of local language policy, specifies the preservation value and obligation to preserve local languages. However, there is no content related to local languages in the legal plan, such as the "Basic Plan for Korean Language Development," which is implemented under the relevant law.

In addition, if you look at the central government's organization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local languages, a small number of people are in charge of policy work related to local languages, and the work is not clearly defined.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it was difficult to find cases in which local governments actively promoted policies related to local languages, except for Jeju local languages. Looking at the cases of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local languages at home and abroad, major countries are promoting related policies by approaching local languages in terms of cultural heritage and cultural diversity. In Korea, policies for the use and preservation of local languages are being promoted as local tourism resources.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policy environment related to the local language, a promotion system was presented to prepare effective local language and culture development policies. There are three types of policy implementation systems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the type of subsidiary institu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type of direct institu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type of subsidy to the private sector.

Key-words: Local language, language culture, language policy

# 목차


1장 서론 0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0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05

2장 지역 언어문화 정책 및 연구 현황 07

제1절 정책 환경 09

제2절 법·제도 19

제3절 추진조직 및 사업 42

제4절 지역 언어문화 연구 72

제5절 요약 및 종합분석 85

3장 지역 언어문화 정책 사례분석 93

제1절 지역 언어문화 정책 사례 95

제2절 지역 언어문화 활용 사례 129

제3절 요약 및 종합분석 145

## 4장 지역 언어문화 정책 행정수요 151

제1절 조사 개요 153
제2절 조사 결과 156
제3절 요약 및 종합분석 174

## 5장 지역 언어문화 정책 추진체계 181

제1절 정책 추진 방향 183
제2절 중앙과 지역 정책 추진체계 사례 검토 185
제3절 행정조직 관련 법령 검토 204
제4절 요약 및 종합 분석 218

참고문헌 221
부록 : 설문지 227
부록 : 조사표 235

# 표 목차

〈표 1-1〉 연구 방법 ····· 6
〈표 2-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단위: %) ····· 11
〈표 2-2〉 2021년 중소기업 온라인 상위 수출 품목 ····· 13
〈표 2-3〉 서비스 산업의 진화 형태 ····· 16
〈표 2-4〉 지자체별 문화 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현황 ····· 22
〈표 2-5〉 국어 진흥 관련 조례 중 지역어 관련 조항 불포함된 조례 ····· 26
〈표 2-6〉 국어 진흥 관련 조례 중 지역어 관련 조항 포함된 조례 ····· 29
〈표 2-7〉 지역어 진흥 관련 조례 ····· 35
〈표 2-8〉 국립국어원 지역어 관련 주요 사업 ····· 43
〈표 2-9〉 광역자치단체 지역어 진흥 조례 및 담당 부서 ····· 48
〈표 2-10〉 기초자치단체 지역어 보전 조례 및 담당부서 ····· 49
〈표 2-11〉 수도권 국어문화원 ····· 52
〈표 2-12〉 강원권 국어문화원 ····· 54
〈표 2-13〉 충청권 국어문화원 ····· 54
〈표 2-14〉 전라권 국어문화원 ····· 56
〈표 2-15〉 경상권 국어문화원 ····· 57
〈표 2-16〉 제주권 국어문화원 ····· 59
〈표 2-17〉 국어문화원 주요 사업 ····· 59
〈표 2-18〉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주요 사업 ····· 64
〈표 2-19〉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BK교육연구프로그램 ····· 68
〈표 2-20〉 계명대학교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 69
〈표 2-21〉 민간연구소 및 단체 ····· 70
〈표 2-22〉 3개 수록지 연도별 연구영역 ····· 73
〈표 2-23〉 3개 수록지 연도별 연구 층위 ····· 74
〈표 2-24〉 대상지역별 연구 ····· 75
〈표 2-25〉 연구 유형별 분류 ····· 76
〈표 2-26〉 5개년 방언 연구 종합 분석표 ····· 76
〈표 2-27〉 한국방언학회 기획 발표 주제 ····· 83
〈표 2-28〉 학회에서 실시한 특강 주제 ····· 84
〈표 3-1〉『국가통용언어문자법』 제2장 '국가통용언어문자' 사용 규정. ····· 115
〈표 3-2〉 일본 지역 언어의 사회사(小林 2004) ····· 122
〈표 3-3〉 지역어의 경제·산업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다룬 주요 연구 ····· 129
〈표 3-4〉 지역어를 활용한 영상콘텐츠 사례 ····· 131

〈표 3-5〉 지역어를 활용한 광고 사례(1) ····· 133
〈표 3-6〉 지역어를 활용한 광고 사례(2) ····· 133
〈표 3-7〉 지역어를 사용하는 크리에이터 콘텐츠 ····· 134
〈표 3-8〉 인공지능 기술의 지역어 활용사례 ····· 135
〈표 3-9〉 해외사례 요약 ····· 146
〈표 3-10〉 민간부문 활용 유형 및 사례 ····· 148
〈표 3-11〉 공공부문 활용 유형 및 사례 ····· 148
〈표 4-1〉 조사 개요 ····· 153
〈표 4-2〉 조사 항목 ····· 154
〈표 4-3〉 응답자 특성 ····· 155
〈표 4-4〉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 추진 여부 ····· 157
〈표 4-5〉 최근 5년간 관련 사업 개요 ····· 157
〈표 4-6〉 추진 역할구분 ····· 168
〈표 4-7〉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방향 ····· 168
〈표 4-8〉 조사 개요 ····· 174
〈표 4-9〉 지자체 추진 사업 현황 ····· 175
〈표 4-10〉 지역 언어문화 보전 정책 방향 ····· 176
〈표 4-11〉 국어 정책의 방향 ····· 177
〈표 4-12〉 국민 언어의식 조사 설계 및 결과 ····· 177
〈표 5-1〉 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 ····· 189
〈표 5-2〉 119특수구조대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 ····· 191
〈표 5-3〉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 ····· 191
〈표 5-4〉 소방서 · 119출장소 ·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 ····· 192
〈표 5-5〉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규정」주요 내용 ····· 197
〈표 5-6〉 독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근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198
〈표 5-7〉 지역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조직의 목적 적합성 비교 ····· 209
〈표 5-8〉 지역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조직 신설의 요건 검토 ····· 211
〈표 5-9〉 지역 언어문화 진흥을 위한 조직 구성(안) 도출 ····· 211
〈표 5-10〉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검토를 통한 지역어 진흥 조직 형태 ····· 220
〈표 5-11〉 지역 언어문화 진흥을 위한 조직 구성(안) 도출 ····· 220
〈표 5-12〉 지역어 진흥을 위한 조직별 장단점 비교 ····· 220
〈표 1〉 응답자 특성 ····· 237
〈표 2〉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 추진 여부 ····· 239

〈표 3〉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 추진 횟수 ····· 240
〈표 4〉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연도별 추진 건수 ····· 241
〈표 5〉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의 재원 ····· 242
〈표 6〉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 방식 ····· 243
〈표 7〉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의 지속 사업 여부 ····· 244
〈표 8〉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의 사업 근거 ····· 245
〈표 9〉 소속 지자체의 관련 진흥기관 및 조직 (복수 응답) (중복 응답) ····· 246
〈표 10〉 [국어문화원] – 해당 기관의 활용도 ····· 247
〈표 11〉 [국어문화원] – 해당 기관의 전문성 ····· 248
〈표 12〉 [관련 공공기관] – 해당 기관의 활용도 ····· 249
〈표 13〉 [관련 공공기관] – 해당 기관의 전문성 ····· 250
〈표 14〉 [관련 민간단체] – 해당 기관의 활용도 ····· 251
〈표 15〉 [관련 민간단체] – 해당 기관의 전문성 ····· 252
〈표 16〉 [기타] – 해당 기관의 활용도 ····· 253
〈표 17〉 [기타] – 해당 기관의 전문성 ····· 254
〈표 18〉 관련 조례 또는 규칙 제정 여부 ····· 255
〈표 19〉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이 지역 언어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 256
〈표 20〉 향후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 필요 정도 ····· 257
〈표 21〉 지역어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필요 정도 ····· 258
〈표 22〉 [예산]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259
〈표 23〉 [예산]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260
〈표 24〉 [제도 및 법적 기반]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261
〈표 25〉 [제도 및 법적 기반]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262
〈표 26〉 [전담기관(기구)]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263
〈표 27〉 [전담기관(기구)]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264
〈표 28〉 [시설 등 자원]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265
〈표 29〉 [시설 등 자원]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266
〈표 30〉 [정보 및 자료]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267
〈표 31〉 [정보 및 자료]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268
〈표 32〉 [지역어 전문 인력]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269
〈표 33〉 [지역어 전문 인력]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270
〈표 34〉 [지자체의 업무 담당자 역량]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271
〈표 35〉 [지자체의 업무 담당자 역량]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272

〈표 36〉 [지자체장의 의지]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273
〈표 37〉 [지자체장의 의지]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274
〈표 38〉 [지역주민의 인식]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275
〈표 39〉 [지역주민의 인식]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276
〈표 40〉 [추진 역할구분] – 국가(공공)주도 / 민간주도 ····· 277
〈표 41〉 [추진 역할구분] – 중앙정부 중심 / 지방정부 중심 ····· 278
〈표 42〉 [추진 역할구분] – 행정인력 중심 / 전문인력 중심 ····· 279
〈표 43〉 [추진 역할구분] – 주도형 거버넌스 / 협력형 거버넌스 ····· 280
〈표 44〉 [추진 역할구분] – 지역어 보전 / 지역어 활용 ····· 281
〈표 45〉 지역어 정책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 (복수 응답) (중복 응답) ····· 282
〈표 46〉 [국어기본법] – 해당 법령의 중요성 ····· 283
〈표 47〉 [국어기본법] – 해당 법령의 영향력 ····· 284
〈표 48〉 [국어 관련 조례] – 해당 법령의 중요성 ····· 285
〈표 49〉 [국어 관련 조례] – 해당 법령의 영향력 ····· 286
〈표 50〉 [지역어 관련 조례] – 해당 법령의 중요성 ····· 287
〈표 51〉 [지역어 관련 조례] – 해당 법령의 영향력 ····· 288
〈표 52〉 [국어 발전 계획] – 해당 법령의 중요성 ····· 289
〈표 53〉 [국어 발전 계획] – 해당 법령의 영향력 ····· 290
〈표 54〉 [지역어의 해당 목표달성에 필요 정도] – 지역 발전 ····· 291
〈표 55〉 [지역어의 해당 목표 달성에 필요 정도] – 지역 정체성 보전 및 강화 ····· 292
〈표 56〉 [지역어의 해당 목표 달성에 필요 정도] – 지역 전통 및 문화 계승에 이바지 ····· 293
〈표 57〉 [지역어의 해당 목표 달성에 필요 정도] – 마케팅/관광 분야 등에 활용 ····· 294
〈표 58〉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방향] – 의사소통 효율성 / 지역문화 다양성 ····· 295
〈표 59〉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방향] – 통합과 표준 / 개성과 고유성 ····· 296
〈표 60〉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방향] – 표준어 중심 정책 / 국어다양성 보존 정책 ····· 297
〈표 61〉 지역어 유지 존속 여부 ····· 298
〈표 62〉 지역어 유지 존속이 불필요한 이유 ····· 299
〈표 63〉 지역어 유지 존속이 필요한 이유 ····· 300
〈표 64〉 지역어 범용에 따른 복수 표준어 인정에 대한 의견 ····· 301
〈표 65〉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어 ····· 302
〈표 66〉 지역어 사용자와 대화할 때의 느낌 ····· 303
〈표 67〉 자신이 지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 304
〈표 68〉 평소 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에 대한 견해 ····· 305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4
[그림 1-2] 연구의 내용적 범위 ····· 5
[그림 2-1] 한국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 ····· 11
[그림 2-2] 2002년 이후 출생아 수 ····· 13
[그림 2-3]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 14
[그림 2-4] 한국 사회 갈등 정도 ····· 14
[그림 2-5] 우리나라 사회 갈등 ····· 15
[그림 2-6] 환경변화와 행정수요 ····· 18
[그림 2-7] 언어 다양성 환경기반 조성 ····· 41
[그림 2-8] 중앙정부 지역어 추진체계 ····· 42
[그림 2-9] 국립국어원 조직도 ····· 43
[그림 2-10]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 45
[그림 2-11] 부산광역시 지역어 보전체계 ····· 47
[그림 2-12]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 조직도 ····· 51
[그림 2-13]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조직도 ····· 64
[그림 2-14]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조직도 ····· 66
[그림 2-15]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조직도 ····· 67
[그림 2-16] 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 85
[그림 2-17] 지역어 보전을 위한 법령 ····· 86
[그림 2-18] 지역어 보전을 위한 조례 ····· 86
[그림 2-19] 중장기 계획 및 실태조사 ····· 87
[그림 2-20] 지역 언어문화 보전 체계 ····· 89
[그림 3-1] 프랑스 본토의 지역어들 ····· 96
[그림 3-2] 오시마 방언의 날 행사 포스터 ····· 126
[그림 3-3] 지역어로 표현된 신체 어휘도 ····· 127
[그림 3-4] '제주 사투리' 검색량 추이와 제주 언어를 활용한 드라마 방영 기간 ····· 132
[그림 3-5]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현황 ····· 136
[그림 3-6] 지역 공공자전거 서비스 관심도 비교(지역어 활용, 비활용) ····· 137
[그림 3-7] 지역어를 활용한 공공자전거 서비스 ····· 137
[그림 3-8] 지역어를 활용한 지역농산물 브랜드 사례(경상북도, 사이소) ····· 138
[그림 3-9] 지역어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 사례(부산광역시, 살아있네 부산꼼장어) ····· 139
[그림 3-10] 지역어를 활용한 지역 캐릭터(진주시, 하모) ····· 140
[그림 3-11] 진주시 지역어 캐릭터 관련 조례 ····· 140

[그림 3-12] 지역어를 활용한 지역 캐릭터(광주광역시, 오매나) ····· 141
[그림 3-13] 지자체 지역어 슬로건 활용사례(대전광역시) ····· 141
[그림 3-14] 지자체 지역어 슬로건 활용사례(부산광역시) ····· 142
[그림 3-15] 지자체 지역어 활용관련 언론 기사 ····· 143
[그림 3-16] 부산광역시(부산관광공사) 관광홍보영상 '에헤이마하모' ····· 143
[그림 3-17] 구글트렌드 '에헤이마하모' 검색량 분석(전 세계, '22.2.~'22.11.) ····· 144
[그림 3-18] 지역어 보전 활용을 위한 시사점 ····· 149
[그림 3-19] 지역어 보전 활용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 ····· 150
[그림 3-20] 지역어 보전 활용을 위한 추진체계 시사점 ····· 150
[그림 4-1] 지역 언어문화 사업 추진 여부 ····· 156
[그림 4-2]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의 재원 ····· 158
[그림 4-3]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의 사업방식 ····· 158
[그림 4-4]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의 지속 사업 여부 ····· 159
[그림 4-5]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사업 근거 ····· 159
[그림 4-6] 소속 지자체의 관련 진흥기관 및 조직 (복수 응답) ····· 160
[그림 4-7] 해당 기관의 활용도 ····· 160
[그림 4-8] 해당 기관의 전문성 ····· 161
[그림 4-9] 해당 기관의 활용도와 전문성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 161
[그림 4-10]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이 지역 언어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 162
[그림 4-11] 향후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 필요 정도 ····· 162
[그림 4-12] 지역어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필요 정도 ····· 163
[그림 4-13] 지역어의 해당 목표 달성에의 필요 정도 ····· 163
[그림 4-14] 해당 자원의 중요성 ····· 164
[그림 4-15] 해당 자원의 시급성 ····· 164
[그림 4-16] 해당 자원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 165
[그림 4-17] 지역어 정책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 ····· 165
[그림 4-18] 지역어 정책 관련 인지하고 있는 법령 (복수 응답) ····· 166
[그림 4-19] 해당 법령의 중요성 ····· 166
[그림 4-20] 해당 법령의 영향력 ····· 167
[그림 4-21] 해당 법령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 167
[그림 4-22] 지역어 유지·존속에 대한 생각 ····· 169
[그림 4-23] 지역어 유지·존속이 불필요한 이유 ····· 169
[그림 4-24] 지역어 유지·존속이 필요한 이유 ····· 170

[그림 4-25] 지역어 유지 존속에 대한 의견 ····· 170
[그림 4-26] 복수 표준어 인정에 대한 생각 ····· 171
[그림 4-27]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 171
[그림 4-28] 지역 방언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 시 느낌 ····· 172
[그림 4-29] 평소 방언에 대한 인식 ····· 172
[그림 4-30]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 172
[그림 4-31] 평소 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에 대한 견해 ····· 173
[그림 5-1] 지역 언어문화 정책의 행정수요 ····· 183
[그림 5-2] 지역 언어문화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184
[그림 5-3] 국립국악원 조직도 ····· 186
[그림 5-4] 국립국악원 설치현황 ····· 187
[그림 5-5] 국립중앙박물관 조직도 ····· 188
[그림 5-6] 군마현 실크이야기 ····· 201
[그림 5-7] 고토 섬유 회사 ····· 201
[그림 5-8] 중앙정부 중심 추진체계 ····· 213
[그림 5-9] 지방자치단체 중심 추진체계 ····· 214
[그림 5-10] 민관협력 중심 추진체계 ····· 216

1장

# 서론

# 제1절
#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연구 배경

■ 언어의 다양성은 문화 다양성 정책의 근간으로 보전과 활용을 통한 인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

- 언어는 개인이나 사회에 있어서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가치체계와 문화적 표현의 핵심을 차지하면서 소통의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님.
- 유네스코는 인류의 살아있는 유산의 핵심으로 언어를 규정하고 사라져가는 소수 언어와 언어 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10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에 따라 당사국으로 협약 이행을 위해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문화 다양성을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과 관계없이 인류 문화유산의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보급, 유통, 향유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인구구조의 변화 및 재정의 중앙 집중으로 인해 소멸하여가는 지역문화와 정체성 보전을 위한 지역어 진흥 정책 추진 필요.

- 인구와 재정의 중앙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소멸 지역 확대가 우려되고 지역정체성의 핵심인 지역어와 지역문화도 소멸 위기에 처함.
- 2022년 3월 기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2곳 가운데 1곳 소멸 위기(한국고용정보원, 2022).
- 유네스코는 2010년 제주어 소멸 위기 언어 4단계(소멸 직전 언어)로 분류.
- 지역어는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정서가 담긴 문화유산이자 국어사의 실증적인 자료임에도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어 지역어 보전 필요성 증대.
- 지역어를 보전함으로써 지역의 언어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어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필요.

## 1.2. 연구 목적

■ 지역어 보전 및 지역 언어문화 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

- 문화유산으로서 지역어 가치를 제고하고 국어를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기 위한 지역어 보전 및 진흥 정책 방향 정립.
- 지역 언어문화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외 환경 분석과 정책 추진 현황 검토를 통한 지역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 지역어 보전 및 진흥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장치 및 추진체계 모색.

- 지역 언어문화 발전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언어문화의 행정 수요 및 인식 조사 등을 기반으로 지역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모색.

**언어의 다양성은 문화 다양성 정책의 근간**

- 유네스코는 인류의 살아있는 유산의 핵심으로 언어를 규정하고 사라져가는 소수언어와 언어 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2010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에 따라 당사국으로 협약 이행을 위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빠르게 소멸되어 가는 지역문화와 정체성 보전을 위한 지역어 진흥 정책 추진 필요**

- 인구와 재정의 중앙 집중으로 소멸 예상 지역 확대가 우려되고 지역정체성의 핵심인 지역어와 지역문화도 소멸 위기에 처함
- 지역어는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정서가 담긴 문화유산이자 국어사의 실증적인 자료임에도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어 지역어 보전 필요성 증대

**지역어 보전 및 지역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지역어 보전 및 진흥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장치 및 추진 체계 모색**

[그림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제2절
# 연구 범위 및 방법

## 2.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와 대방언권(강원방언권, 충청방언권, 전라방언권, 경상방언권, 제주방언권)

■ 내용적 범위
- 지역 언어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외 환경 분석
- 지역 언어문화 정책 추진 현황 분석
- 지역 언어문화 연구 추진 현황 분석
- 지역 언어문화 해외 정책 사례 분석
- 지역 언어문화 국내 활용 사례 분석
- 지역 언어문화 행정수요 및 인식 조사
- 지역 언어문화 정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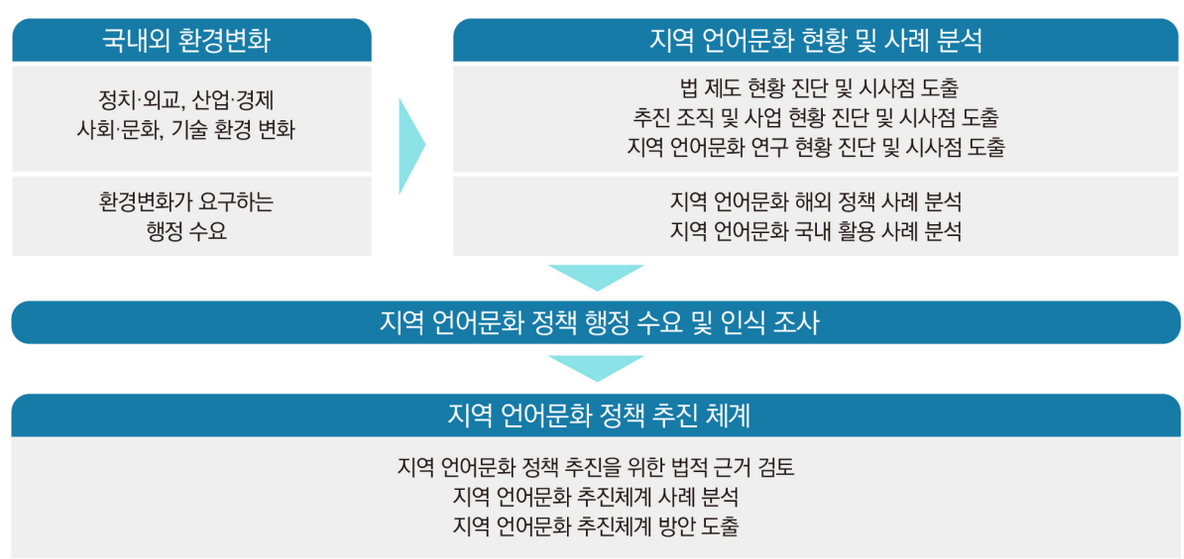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의 내용적 범위

## 2.2 연구 방법

■ 연구 방법은 문헌 및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층 면접, 행정수요 및 인식 조사 등을 활용하였고, 각 방법별 목적 및 대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1〉 연구 방법

| 연구 방법 | 구분 | 내용 | |
|---|---|---|---|
| 문헌 및 사례 조사 | 목적 | 지역어 현황 파악 및 주요 경향 파악 | |
| | 대상 | ① 관련 보고서, 정책자료 ② 주요 포털, 언론보도 ③ 관련 논문 ④ 국내외 정부 웹사이트 | |
| | 내용 | 지역 언어문화 관련 법·제도, 추진 조직, 사업, 연구, 정책 사례, 활용 사례 등 | |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층 면접 | 목적 | 지역어 정책 방향 탐색 및 주요 정책 과제 도출 | |
| | 대상 | 지역 언어문화 전문가 및 행정 담당자 14인 | |
| | 내용 | ① 지역 언어문화 정책 현황에 대한 의견 ② 지역 언어문화의 경제적 및 산업적 활용 ③ 지역 언어문화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④ 지역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⑤ 지역 언어문화 권역별 차별성 | |
| 행정수요 및 인식조사 | 조사내용 | 지역 언어문화 정책 현황 분석 및 행정 수요 도출 | |
| | 대상 |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 지역어 정책 담당자 혹은 문화정책 담당자 전수조사 : 표본 205명 | |
| | 내용 | 사업 추진 현황 | ① 최근 5년 지역 언어문화 사업 추진 여부 및 사업 방식<br>② 지역 언어문화 지원 기관 유무<br>③ 지역 언어문화 관련 법 유무 및 영향 |
| | | 지역어 정책 관련 의견 | ① 지역 언어문화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필요성<br>② 지역 언어문화 정책 자원의 중요성 및 시급성 평가<br>: 예산, 제도 및 법적 기반, 전담기관, 시설 등 자원, 정보 및 자료, 지역어 전문인력, 지자체의 업무담당자 역량, 지자체장의 의지, 지역주민의 인식<br>③ 지역 언어문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br>: 국가(공공)주도 / 민간주도, 중앙정부 중심 / 지방정부 중심, 행정인력 중심 / 전문인력 중심, 주도형 거버넌스 / 협력형 거버넌스, 지역어 보전 / 지역어 활용<br>④ 지역 언어문화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br>: 국어기본법, 국어 관련 조례, 지역어 관련 조례, 국어발전기본계획, 지역어 관련 직제 시행규칙의 중요성과 영향력<br>⑤ 지역 언어문화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br>: 지역 발전, 지역 정체성 보전 및 강화, 지역 전통 및 문화 계승에 이바지, 마케팅/관광 분야 등에 활용<br>⑥ 국어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br>: 의사소통 효율성 / 지역문화 다양성, 통합과 표준 / 개성과 고유성, 표준어 중심 정책 / 국어다양성 보존정책 |
| | | 지역어에 대한 인식 | ① 지역어 유지 존속 필요성<br>② 지역어 유지 존속이 불필요한 이유 / 지역어 유지 존속이 필요한 이유<br>③ 지역어의 표준어 인정에 대한 의견<br>④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어<br>⑤ 지역어 사용자와 대화할 때의 느낌 / 자신이 지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br>⑥ 평소 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에 대한 견해 |

2장

# 지역 언어문화 정책 및 연구 현황

# 제1절
# 정책 환경

## 1.1. 거시적 환경분석(PEST 분석)

### (1) 정치·외교적 환경 변화

① 문화 다양성과 언어 다양성 관점의 정책 기반 확대

■ 문화적 표현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책은 사회의 다양한 문화 갈등을 해소하면서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국제적인 합의가 형성.

- 유네스코는 2001년에 '세계문화 다양성 선언'을 발표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2005년에 문화 다양성 협약을 채택했으며 한국은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2010년 7월 발효).

**UNESCO 언어 다양성 정책**

2001년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은 문화 다양성을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인식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를 인정한 국제 규범으로 인정받고 있음.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 제5조는 "모든 이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특히, 모국어로 자기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문화 다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게끔 질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

유네스코 "바벨 계획"은 언어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언어 관련 정책 연구사업의 수행, 문자 체계 개발 지원 사업, 인터넷상의 다언어주의 보고서 작성, 다양한 언어로 된 문화유산 지식 기반 사업 등으로 구성.

- 유네스코의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되어 문화 다양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지방분권과 언어 정책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국가 증가.

- 프랑스의 경우 문화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 문화와 언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함.

- 1982년에는 지방분권화법인 「드페르법」(Loi Deffere)이 제정되면서(우무상, 2013) 중앙집권적 문화 정책에서 지방분권적인 문화 정책으로 노선이 변경되고 지방 언어와 문화의 보전 필요성이 대두됨.
- 1992년에는 유럽평의회의 「지역 언어 및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의 조인(調印)을 둘러싸고 언어 정책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 확대.
- 일본의 경우 메이지 시대 이후 전국적 통일을 위한 표준어 정책을 강조하다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표준어와 지역어의 다양성 공존과 관련된 인식이 확산되고, 소멸 위기 지역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

### ② 지역의 문화 분권 실현 요구 증가와 관련 정책 확대

■ 지방분권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의 경우 문화 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 지속.
-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고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 보전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중점.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지역 문화 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중앙정부는 역시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거나 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문화정책을 강화, 확대하는 추세.
-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예산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예산이 2010년부터 지속해서 증가[1)] : 2010년 7.8조 원에서 2020년 12.1조 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5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음.

### ③ 지방정부 재정운용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재정여건 취약

■ 인구뿐만 아니라 재정의 중앙 집중으로 지방의 소멸 지역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재정운용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권한의 2/3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
-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12년도 전국 평균 52.3%에서 2022년 49.9%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군, 자치구의 경우 상황이 다름. 군 단위의 경우 2012년 16.4%에서 2022년 15.9%로 줄어들고 있으며, 자치구의 경우 2012년 36.0%에서 2022년 28.3%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최근 11년간(2010년~2020년) 연평균 4.5% 증가하여 동 기간 지방자치단체 총지출 증감률 6.1%를 하회하는 수준(정보람, 2020)

1)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표 2-1〉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단위: %)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전국평균 | 52.3 | 51.1 | 50.3 | 50.6 | 52.5 | 53.7 | 53.4 | 51.4 | 50.4 | 48.7 | 49.9 |
| 특·광역시 | 69.1 | 66.8 | 64.8 | 65.8 | 66.6 | 67.0 | 65.7 | 62.7 | 60.9 | 58.9 | 61.0 |
| 도 | 34.8 | 34.1 | 33.2 | 34.8 | 35.9 | 38.3 | 39.0 | 36.9 | 39.4 | 36.5 | 40.0 |
| 시 | 37.1 | 36.8 | 36.5 | 35.9 | 37.4 | 39.2 | 37.9 | 36.8 | 33.5 | 32.3 | 31.9 |
| 군 | 16.4 | 16.1 | 16.6 | 17.0 | 18.0 | 18.8 | 18.5 | 18.3 | 17.3 | 17.3 | 15.9 |
| 자치구 | 36.0 | 33.9 | 31.1 | 29.2 | 29.7 | 30.8 | 30.3 | 29.8 | 29.0 | 28.5 | 28.3 |

출처 :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 (2) 산업·경제적 환경 변화

### ① 경제위기로부터 촉발된 전방위 양극화 확산

■ 인구와 재정의 중앙집중으로 지방 문화소멸 위기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양극화 확산이 지역 소득 수준의 약화를 불러와 지방 소멸의 지역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한국 사회 양극화 현상은 1990년대 후반(IMF 경제 위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자본(경제적) 불평등에서 시작된 균열은 사회 영역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교육, 주거, 보건, 교통, 여가,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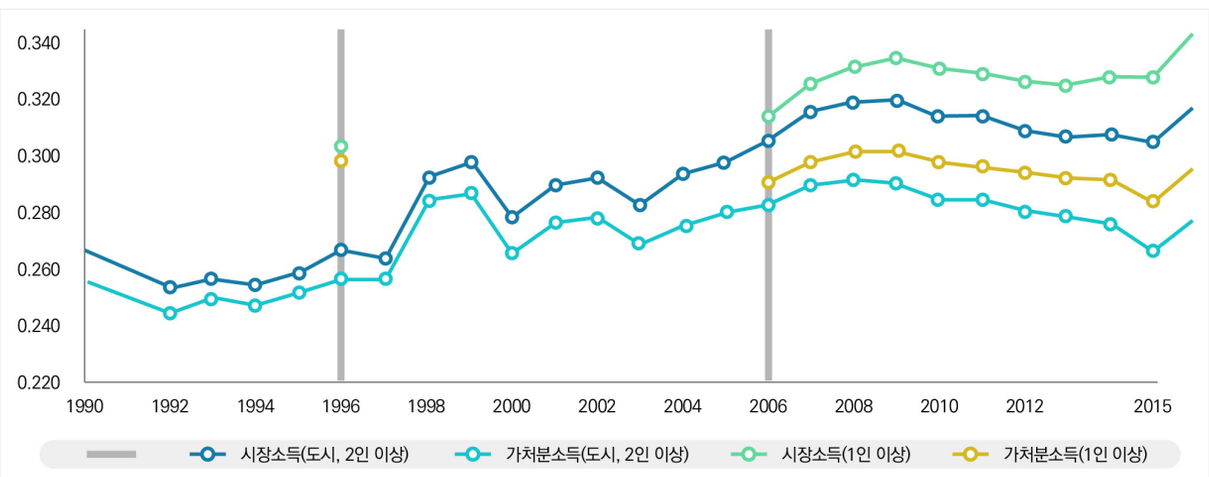


[그림 2-1] 한국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

■ '불평등 변화와 재분배 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니계수'를 사용해 소득분배 악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 특히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청년실업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모든 연령대, 모든 가구원의 소득까지 따졌을 때 더 심각하다고 주장[2].

- 1996년 0.3033(시장소득 기준)이던 지니계수는 2006년 0.3583, 2016년 0.4018로 꾸준히 상승[3].

-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같은 기간 0.2983 → 0.3251 → 0.3353으로 상승곡선.

■ 한국의 양극화는 지속해서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 규모로 발생하고 있음.

### ② 정보, 서비스, 콘텐츠 등 무형자산 시대의 도래

■ '지식사회'로의 전환과 창의성
-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것을 조합해 내는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
- 정보, 서비스, 콘텐츠가 대표적인 영역이며, 창의력과 정보기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경제적 파이가 커지는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변화.
- 또한, 산업의 체질 변화 속에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고정자산으로 크게 영업권(goodwill)과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IP) 등으로 구분.
- 브랜드 가치, 소비자데이터,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네트워크효과 등이 포함됨.
- 반대로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자산'으로 토지, 건물, 현금 및 채권, 재고 등임.

■ S&P500[4] 기업가치의 90%가 무형자산으로 구성[5]되고 있으며, 21조 달러 이상.
- 1985년 4,280억 달러로 전체 자산의 32%에 불과했던 무형자산은 1995년 68%로 비중이 급증. 가치도 3조 1,200억 달러로 10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함.
- 정보기술(IT)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1990년대 들어 S&P500 내 무형자산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됨.

### ③ 한국 문화의 가치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수출 증가 추세

■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상표자산이 수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중소기업군 상품의 수출이 함께 증가하는 것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볼 수 있음.
- 중소기업의 온라인 상위 수출 품목은 화장품, 의류 및 음향기기(CD 음반 등) 등 한류와 연관된 소비재에 수출이 집중되었고 2021년 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였음.
- 온라인 수출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 실적은 2020년 1월부터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

2) 연합뉴스(2019.3.10.) [한국경제 길을 묻다] "IMF가 초래한 '한국의 비극'"…양극화

3)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

4)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에서 개발한 미국의 주가지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나스닥 종합지수와 더불어 미국증시의 3대 주가지수로 불리며, 실질적으로 미국증시를 대표하는 주가지수

5) 한경글로벌마켓(20.11.20.) '무형자산 시대' 도래했다···S&P500 기업가치의 90%가 무형자산

서 2021년 1/3분기 누계실적이 74.9% 증가.

- 온라인 수출 대상 국가도 일본(1위), 미국(2위), 중국(3위), 싱가포르(4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수출 품목이 주로 한류와 연관된 소비재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면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한 국가 중심으로 온라인 수출이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2-2〉 2021년 중소기업 온라인 상위 수출 품목

| | 구 분 | 비중 | 증감률 |
|---|---|---|---|
| 1 | 화장품 | 38.6 | 36.3 |
| 2 | 의류 | 13.8 | 15.4 |
| 3 | 음향기기 | 9.8 | 553.2 |
| 4 | 컴퓨터 | 4.4 | 203.3 |
| 5 | 기타섬유제품 | 4.3 | 604.5 |
| | 상위 5대 합계 | 70.9 | 61.7 |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2022), 「2021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

### (3)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①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심화

■ 인구 감소 : 출산율 감소 → 2020년 인구 자연 감소 시작.

- 2015년 이후부터 저출산 기조가 악화하며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하여 3년 연속 1명을 하회하고 있으며, 2년 연속 전 세계 최하위(198개국 中 198위).
- 출생아 수는 2002년 이후 15년간 유지해오던 40만 명대가 무너진 뒤, 3년 만에 30만 명을 하회하며 2020년 출생아 수 27.2만 명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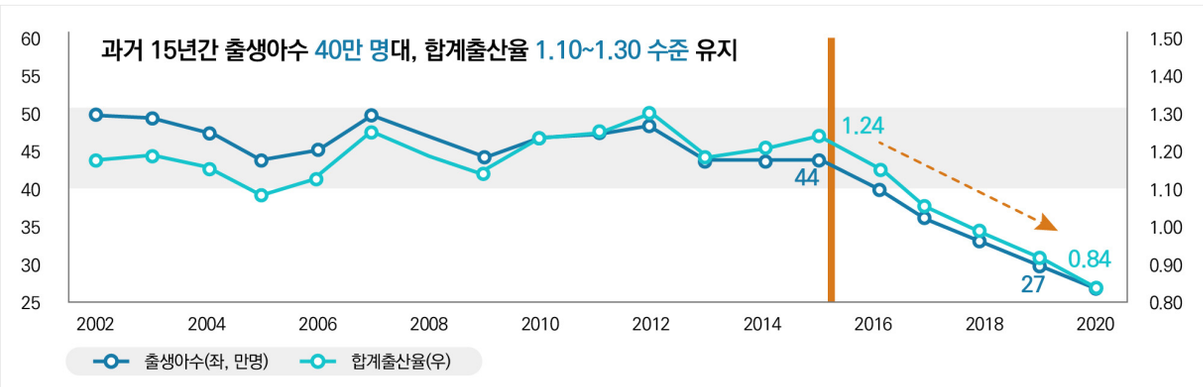


[그림 2-2] 2002년 이후 출생아 수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생아 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2020년 처음으로 인구의 데드크로스를 기록함.

- 향후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50여 년 만에 1,200만 명 이상 줄어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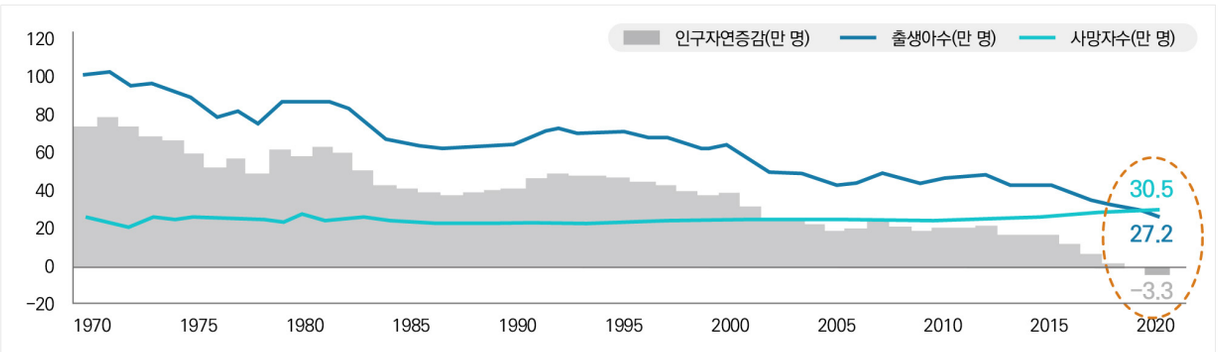


[그림 2-3]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② 세대 간 갈등, 이념대립, 다문화갈등, 지역갈등 등 사회 갈등 심화

■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18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장 심각한 한국의 갈등은 이념갈등(87%) 〉 빈부갈등(82%) 〉 노사갈등(76%)의 순서로 나타남.

- 그다음으로 세대갈등(64%) 〉 종교갈등(59%) 〉 남녀갈등(52%)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남녀갈등이 5년 전 조사보다 5%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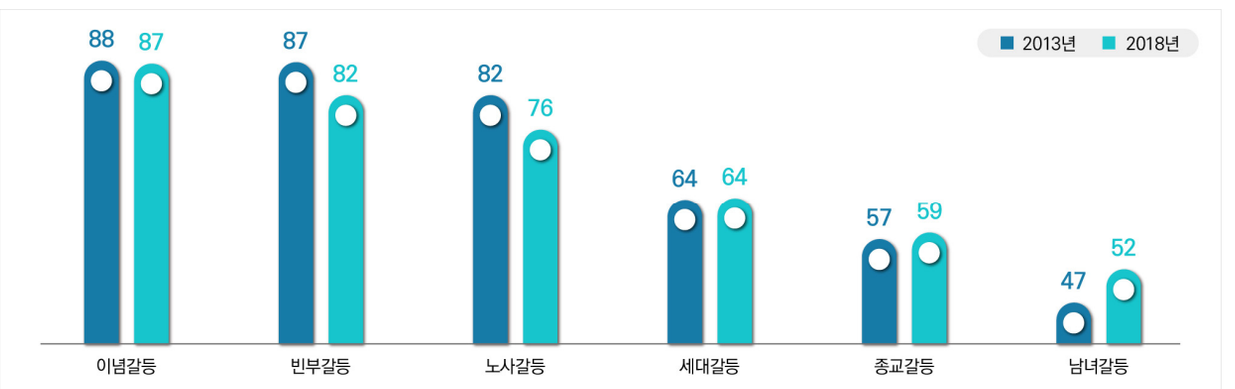


[그림 2-4] 한국 사회 갈등 정도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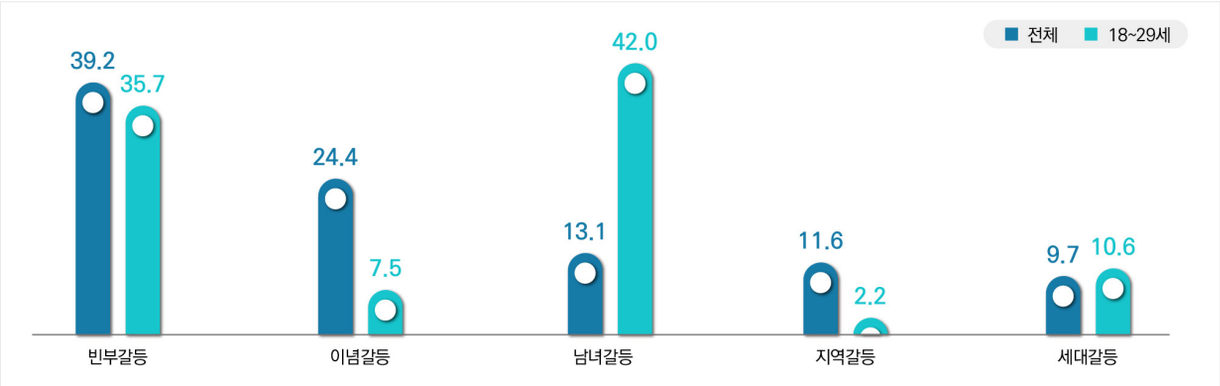


[그림 2-5] 우리나라 사회 갈등

출처: 서울신문(2021.7.18.)

■ 2021년 서울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가장 심각한 갈등이 '빈부 갈등'이라고 답.

- 응답자 39.2% 가 빈부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념갈등(24.4%) 〉 남녀갈등(13.1%) 〉 이념갈등(11.6%) 〉 세대갈등(9.7%)의 순서.
- 특기할 만한 것은 20대에서는 '남녀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함.
- 또한 MZ세대(18~39세) 절반가량은 '기성세대가 청년 일자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함. MZ세대는 50.2%가 이 문항에 동의했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는 47.2%임, 반면 4050 기성세대에서는 41.1%만이 여기에 동의했고, 57.4%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함.

■ 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 갈등 지형이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빈부갈등, 이념 갈등은 줄어들고 있으며, 시대 갈등, 남녀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경제 구조, 정치 구조로 인한 갈등보다는 연령, 성별에 의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함.

### ③ 다양한 문화 영역을 넘나드는 향유 성향 확대

■ 문화소비가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과거 상류계급을 구분 지었던 배타적 상류 취향의 문화예술향유가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옴니보어적 문화소비로 대체 되고 있음(김은미·서새롬 2011).

- 다양한 문화 영역을 넘나들며 활발한 문화 소비를 하는 사람들(옴니보어, omnivore)이 경험 소비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문화시장 주도.
- 물질 소비보다 경험 소비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현대인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 소비를 실천하며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함.
- 한국인의 보편적인 문화소비는 영화관람, 미술전시, 문화재 관람과 같이 무료거나 저가로 누릴 수 있는 분야로 결국 우리 사회의 옴니보어는 보편적 문화소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무엇이 더해지는가에 따라 결정.

### (4) 기술 환경 변화

① 디지털 기반 산업과 융복합 환경 도래

■ 디지털 기술 발달은 산업의 모습을 변화시켜가고 있으며, 변화 양상도 기술이 진화해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해가고 있음[6].

- 지금까지는 ICT 기술의 발달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사업모델들이 발전해 왔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실감기술 등을 활용하여 개별 소비자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은 현상은 유통, 금융, 의료, 교육, 콘텐츠, 관광, 기타 개인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음.

〈표 2-3〉 서비스 산업의 진화 형태

| | 분류 | 주요 내용 | |
|---|---|---|---|
| 개선 | $\alpha \rightarrow \alpha'$ | 개념 | 서비스 자체의 고부가가치화 |
| | | 특징 | 새로운 서비스, 프로세스 및 마케팅 개선 |
| | | 예시 | 이동통신의 진화(LTE→5G), 무료 견적 서비스 제공, 당일 특급배송 시스템 도입 등 |
| 혁신 | 플랫폼 + $\alpha$ | 개념 |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모델 |
| | | 특징 | 자원 활용의 효율화, 수요의 편리화 등 |
| | | 예시 | 유통(아마존, 배달의민족 등), 운송(우버, 모두의 주차장 등), 음식(공유주방 등), 숙박(에어비앤비 등), 여행(트리바고, 아고다 등), 법률(헬프미 등), 개인 서비스(홈 마스터, 세탁특공대 등) |
| | $\alpha$ + tech | 개념 | 기술이나 여타 산업과의 결합을 통한 융합형 서비스 |
| | | 특징 |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고객 대응 최적화 등 |
| | | 예시 | Fintech(금융), Insurtech(보험), Proptech(부동산), Edutech(교육), Legaltech(법률) 등 |

출처: 산업연구원(2019) 주요국 서비스산업 정책과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 하지만 정보통신기술 발달, 세계화 현상으로 문화의 획일화 위험 및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쇠퇴로 지역문화 소멸 위기 고조.

② 누구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플랫폼 기반 환경 도래

■ 플랫폼 비즈니스는 플랫폼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인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극대화하여 가치를 창출[7].

-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네이버.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에 소비자의 시간

6) 기술과 혁신 2022년 9/10월호, 디지털 기술로 서비스산업의 진화 이미 시작되었다!
7) 글로벌경제신문(2021.4.25.) 4차 산업혁명시대 플랫폼 비즈니스란 무엇인가

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임.

-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성장한 이유는 공급자와 소비자들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했기 때문임. 공급자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소비자는 모든 판매자가 동일한 운영 형태(결제, 배송, 반송 등)를 보일 것이라는 신뢰가 생김. 즉,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탐색과 신뢰의 비용을 줄여주는 경제적 혜택 제공[8].

## 1.2. 환경 변화가 요구하는 행정수요

■ 정치·외교적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

- 문화 다양성과 언어 다양성 정책 기반이 확대되고 실질적인 문화 분권화가 확대됨에 따라 문화 분야에서 지역 밀착형 사업에 대한 기대 증가.
- 지방정부 재정운용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정 여건 취약.
- 따라서 지역문화 자원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문화적 가치 발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언어 정체성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언어 다양성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고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음.

■ 산업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 경제위기로 촉발된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력과 생활 접근성 차원에 지역 간 불균형 지속.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지역과 국가의 문화적 자원이 다양한 콘텐츠로 변화되어 지역과 국가의 실질적인 활성화 기제로 활용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지역의 언어와 생활양식과 같은 문화적 가치를 지역과 국가 차원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심화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를 치유하고 상생과 신뢰의 문화를 창출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
- 이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 영역을 넘나드는 문화 소비 향유 기반이 넓어지면서 다양하고 보편적인 문화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
- 지역 소멸 위기, 사회적 갈등 심화와 문제 등 공동체 지속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문화정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보편적 문화향유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

8) Hana 1Q Blog, 이제는 플랫폼 시대!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진화(2022.2.7.)

■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 디지털 기반 산업과 융복합 환경이 도래하면서 누구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플랫폼 기반 생활 환경 도래.
-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이로 인한 세계화 현상으로 문화의 획일화 위험 등이 상존하고, 획일화의 우려 속에서 지역 쇠퇴 및 지역 문화 소멸 위기 고조
- 디지털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지역문화의 획일화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외 현상이 우려되므로 문화적 가치의 확장과 연계를 통한 사회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

### ① 정치·외교적 환경 변화

■ 문화다양성과 언어 다양성 정책 기반
- 유네스코의 세계 다양성 선언을 통한 국제적인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협의
-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언어정책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국가 증가 추세

■ 지역의 문화분권 실현 요구 증가와 관련 정책 확대
- 지방자치제 고도화로 문화 분야에서도 지역 밀착형 사업데 대한 기대 증가
- 지역의 문화 및 관광 예산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지방정부 재정운용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재정여건 취약
- 지방재정 권한의 2/3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 지자체 문화재정 증가속도 평균 증감률 하회

■ 문화다양성의 근간인 언어 다양성 정책 확대
■ 지역 문화자원의 새로운 가치 발굴 필요

### ② 산업·경제적 환경 변화

■ 경제위기로 촉발된 전방위 양극화 확산
- 양극화 격차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 국내 지역간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

■ 정보, 서비스, 콘텐츠 등 무형자산 시대 도래
- 창의성을 동력으로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양식 등장
- 지식사회로 전환되면서 정보, 서비스, 콘텐츠 등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

■ 한국 문화 가치 기반 중소기업 수출 역대 실적 최고치 달성
- 중소기업 상위 온라인 수출 품목이 한국 대중문화와 연관된 소비재에 집중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 인문학적 창의성과 삶의 질을 고려하는 문화경쟁력 강화

### ③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심화
- 출산율 0.81명, 수도권 인구 50.4%, 일부 지방 자치단체 소멸 우려 존재

■ 세대간 갈등, 이념대립, 다문화 갈등, 지역 갈등 등 사회 갈등 심화
-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과 신뢰의 문화 창출 필요성 증가

■ 다양한 문화영역을 넘나드는 향유 성향 확대
- 경제력의 증가와 경험소비의 부상으로 개방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화 소비 형태 증가

■ 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한 문화적 처방 필요
■ 보편적 문화향유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 ④ 기술 환경 변화

■ 디지털 기반 산업과 융복합화 환경 도래
- 창의성과 이질적 영역간 결합과 충돌을 통한 새로운 산업 영역 출현
- 기술, 산업간 융합을 거쳐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발전

■ 누구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플랫폼 기반 환경 도래
- 개방형 서비스 구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핵심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환경으로 변화

■ 문화적 가치의 확장과 연계를 통한 사회 발전 모색
■ 기술과 이용자 감성의 융합으로 국민의 참여와 소통 강화

[그림 2-6] 환경변화와 행정수요

# 제2절
# 법·제도

## 2.1. 지역어 관련 법·제도

### (1)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국어기본법」은 문화 다양성과 지역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어 보전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역어 보전”을 통한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강조하고 있음.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 ·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국어기본법 9조가 규정한 실태조사 항목에 지역어 사용 의식과 지역어 사용 실태 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국어기본법 제9조(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 ·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어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1항).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조(실태조사의 세부 사항 등) 제1항]**

1. 듣기 · 말하기 · 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 경어(敬語) · 외래어 · 외국어 · 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 의식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의 듣기 · 말하기 · 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나. 국민의 경어 · 외래어 · 외국어 · 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다. 신문 · 방송 · 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언어 사용 실태
   라. 가요 · 영화 · 광고 · 상호 및 상표 등의 언어 사용 실태



■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국어발전 기본계획 항목에 '지역어' 관련 내용 부재.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 제3항).

**[국어기본법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3항]**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 · 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 · 체계화에 관한 사항
11.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2) 문화 일반과 관련된 법령

### ① 문화기본법

■ 국민의 권리 차원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천명.

**[문화기본법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제7조(문화정책 수립 · 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 · 협력을 증진할 것

### ② 다양성 관련 제도/법률

■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년)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중 정체성, 다양성, 그리고 다원 (Identity, diversity and pluralism)]**

제1조 문화 다양성: 인류의 공동 유산
문화는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한다. 생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교류·혁신·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써 인식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조 문화 다양성에서 문화 다원주의로
점점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함께 살려는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집단의 조화로운 상호 작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 단결, 시민 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명백한 정책 표현이다. 민주 체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교류와 공공의 삶을 지탱해주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제3조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의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발전을 위한 근간 중에 하나인 문화 다양성을, 단지 경제 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지적·감성적·윤리적·정신적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언어는 문화 생산·표현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언어 다양성은 문화 다양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가치로 소개되고 있음.
-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여 문화 다양성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하는 것

을 강조함.

-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어는 지역 문화 보전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됨.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 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 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1.「문화기본법」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영상진흥기본법」
4.「국어기본법」
…

■ 지자체별 문화 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

- 10개 광역자치단체와 7개 기초자치단체, 2개 지역 교육청에서 문화 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

〈표 2-4〉 지자체별 문화 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현황

| 소속(개) | 문화 다양성 관련 조례 |
|---|---|
| 광역자치단체 (10) |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조례 제4151호, 2016.12.1. 제정] |
| |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조례 제5488호, 2017.3.13. 제정] [경기도조례 제6725호, 2020.8.7. 전부개정] |
| |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제5552호, 2017.3.22. 제정] |
| |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

| | |
|---|---|
| | [서울특별시조례 제6495호, 2017.5.18. 제정] |
|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br>[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60호, 2017.6.2. 제정]<br>[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77호, 2021.7.9. 일부개정] |
| |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br>[충청북도조례 제4098호, 2017.11.10. 조례] |
| |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br>[광주광역시조례 제4837호, 2017.1.1. 제정]<br>[광주광역시조례 제5111호, 2018.7.24. 일부개정] |
| |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br>[전라북도조례 제4634호, 2019.4.5. 제정] |
|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br>[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432호, 2019.12.16.. 제정]<br>[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714호, 2021.7.15. 일부개정] |
| |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br>[충청남도조례 제4538호, 2019.7.10. 제정] |
| 기초자치단체<br>(7) | 목포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br>[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092호, 2017.2.13. 제정]<br>[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198호, 2018.12.17. 일부개정]<br>[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318호, 2019.12.23. 일부개정]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br>[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294호, 2017.11.16. 제정] |
| |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br>[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715호, 2017.11.30. 제정]<br>[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294호, 2019.6.28. 일부개정]<br>[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175호, 2021.9.27. 일부개정] |
|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br>[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282호, 2018.1.5. 제정] |
| | 김해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br>[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449호, 2019.10.4. 제정] |
| | 신안군 1004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br>[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234호, 2019.12.19. 제정]<br>[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352호, 2021.3.18. 일부개정] |
|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br>[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766호, 2020.5.18. 제정] |
| 지역교육청(2) |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br>[경기도조례 제5625호, 2017.6.14. 제정] |
| |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br>[경상남도조례 제4418호, 2017.12.28. 제정]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기준(접속일: 2022.06.07.)

### (3)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문체부 국어정책과 업무분장에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포함

-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시행규칙 제8조 제8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제8항]**

⑧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국어·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3. 국어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국어·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어책임관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0.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에 관한 사항
12. 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1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15.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16. 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업무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업무분장에 '국어의 지역적 변이에 대한 연구' 포함

- 어문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어문연구실) 제3항]**

③ 어문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 · 언어 정책 관련 법 · 제도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2. 국어 · 언어 관련 정책통계 생성 및 수집
3. 언어와 문자, 어문규범 등에 대한 조사 · 연구
4.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 · 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5. 남북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6. 국어 관련분야 국내외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8.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 · 발간

## 2.2. 지역어 관련 조례

### (1) 국어 진흥 관련 조례

■ 광역 · 기초지자체, 교육청 단위로 국어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 제정 · 시행 중.

- 가장 일반적 형태의 조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대부분이 '국어 진흥 조례'임.
- '국어 진흥' 외에도 '국어 바르게 쓰기'(경기도), '올바른 국어 사용'(경기도교육청), '우리말 계승발전'(진안군), '한글사랑'(김천시), '한글사용 촉진'(양산시) 등으로 유사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비슷함.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2019. 12. 27. 제정/2022.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김해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제3조(시장의 책무) / 제4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제5조(자문) / 제6조(공문서등의 작성) / 제7조(공공기관 명칭 등)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 제9조(실태조사 등) / 제10조(의견 청취)
제11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제12조(교육)
제13조(한글날 기념행사 등) / 제14조(예산의 지원) / 제15조(포상)

**김천시 한글 사랑 조례(2020. 5.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와 시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 제4조(책무)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제6조(공문서등의 작성)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8조(실태조사)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제10조(한글날 기념행사)
제11조(예산의 지원) / 제12조(교육)
제13조(포상 등) / 제14조(시행규칙)

**군포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2021. 4. 26. 제정)**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군포시와 그 산하기관의 구성원 및 군포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제3조(시장의 책무)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공문서등의 언어 사용) / 제7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제8조(실태조사)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제10조(교육)
제11조(시행규칙)

■ '국어 진흥' 관련 조례 중 지역어 관련 조항이 없는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 수도권(2개), 강원권(1개), 충청권(1개) 순으로 총 4개 조례가 있었고, 기초자치단체 단위 수도권(34개), 충청권(14개), 경상권(10개), 전라권(9개), 강원권(3개) 순으로 총 70개 조례가 있었으며, 교육청 단위 경상권(4개), 충청

권(3개), 수도권(2개), 전라권(1개) 순으로 총 10개 조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총 84개).

[2022년 11월 기준]

〈표 2-5〉 국어 진흥 관련 조례 중 지역어 관련 조항 불포함된 조례

| 번호 | 자치단체 (가나다순) | | 법규명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제정·개정 구분 | 지역어 관련 유무 |
|---|---|---|---|---|---|---|---|
| 광역자치단체 (4) | 수도권(2) | 경기도 |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6871호 | 2021. 1. 8. | 일부개정 | X |
|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 제7904호 | 2021. 3. 25. | 일부개정 | X |
| | 강원(1) | 강원도 |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 제3620호 | 2013. 3. 15 | 제정 | X |
| | 충청(1)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 제1968호 | 2022. 7. 29. | 일부개정 | X |
| 기초자치단체 (70) | 수도권 (34) | 경기도 군포시 | 군포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854호 | 2021. 4. 26. | 제정 | X |
| | | 경기도 김포시 | 김포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 제1825호 | 2021. 7. 2. | 일부개정 | X |
| |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 | 제3764호 | 2021. 12. 20. | 제정 | X |
| |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 제3928호 | 2019. 7. 12. | 제정 | X |
| | | 경기도 안산시 |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 | 제2352호 | 2020. 4. 8. | 제정 | X |
| |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 | 제2855호 | 2017. 7. 28. | 제정 | X |
| | | 경기도 여주시 |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 | 제580호 | 2017. 6. 16. | 일부개정 | X |
| | | 경기도 연천군 | 연천군 국어 진흥 조례 | 제3323호 | 2016. 4. 18. | 제정 | X |
| | | 경기도 이천시 | 이천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245호 | 2016. 7. 5. | 제정 | X |
| | | 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572호 | 2020. 2. 14. | 제정 | X |
| | | 경기도 화성시 | 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810호 | 2021. 7. 30. | 일부개정 | X |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206호 | 2016. 5. 4. | 제정 | X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030호 | 2014. 12. 31. | 일부개정 | X |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308호 | 2020. 5. 19. | 일부개정 | X |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069호 | 2019. 10. 14. | 일부개정 | X |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391호 | 2019. 3. 14. | 일부개정 | X |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 제814호 | 2015. 7. 15. | 제정 | X |
| |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159호 | 2015. 7. 29. | 제정 | X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495호 | 2021. 4. 15 | 일부 개정 | X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109호 | 2016. 8. 11. | 제정 | X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 | 제925호 | 2013. 9. 26. | 제정 | X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467호 | 2021. 12. 29. | 제정 | X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177호 | 2019. 4. 22. | 제정 | X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127호 | 2015. 5. 21. | 제정 | X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 사랑 조례 | 제1349호 | 2020. 12. 31. | 일부 개정 | X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 | 제1191호 | 2013. 12. 19. | 제정 | X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사랑 조례 | 제1500호 | 2020. 7. 9. | 일부 개정 | X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428호 | 2021. 3. 18. | 일부 개정 | X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032호 | 2013. 12. 31. | 제정 | X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 제1246호 | 2017. 12. 29. | 일부 개정 | X |
| |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320호 | 2016. 7. 13. | 제정 | X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262호 | 2020. 5. 15. | 제정 | X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484호 | 2018. 5. 21. | 일부 개정 | X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어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437호 | 2022. 8. 10. | 제정 | X |
| 강원 (3) | 강원도 삼척시 | 삼척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390호 | 2021. 12. 17. | 제정 | X |
| | 강원도 양구군 | 양구군 국어 진흥 조례 | 제2452호 | 2021. 4. 8. | 일부 개정 | X |
| | 강원도 원주시 |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296호 | 2013. 12. 13. | 제정 | X |
| 충청 (14) | 충청남도 공주시 |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 제1577호 | 2022. 11. 1 | 제정 | X |
| | 충청남도 계룡시 | 계룡시 국어 진흥 조례 | 제679호 | 2018. 10. 31. | 제정 | X |
| | 충청남도 보령시 |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504호 | 2018. 9. 20. | 일부 개정 | X |
| | 충청북도 보은군 | 보은군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585호 | 2019. 9. 10. | 일부 개정 | X |
| | 충청남도 서산시 | 서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 제1609호 | 2021. 8. 1. | 제정 | X |
| | 충청남도 예산군 | 예산군 국어 진흥 조례 | 제2694호 | 2021. 10. 26. | 제정 | X |
| | 충청남도 청양군 | 청양군 한글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2361호 | 2019. 1. 30. | 제정 | X |

| | | | | | | | |
|---|---|---|---|---|---|---|---|
| | | 충청남도 태안군 | 태안군 한글 사랑 지원 조례 | 제1426호 | 2019. 9. 30. | 제정 | X |
| | | 충청북도 단양군 | 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 | 제2553호 | 2020. 6. 5. | 제정 | X |
| | | 충청북도 제천시 |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237호 | 2014. 12. 26. | 일부 개정 | X |
| | | 충청북도 진천군 | 진천군 국어 진흥 조례 | 제2857호 | 2021. 6. 29. | 제정 | X |
| |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 제2017호 | 2021. 11. 26. | 일부 개정 | X |
| | | 대전광역시 동구 | 대전광역시 동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 | 제1441호 | 2020. 11. 16. | 제정 | X |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706호 | 2021. 12. 24. | 제정 | X |
| | 전라 (9) | 광주광역시 광산구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글 우선 사용 등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296호 | 2016. 12. 29. | 제정 | X |
| | | 광주광역시 남구 | 광주광역시 남구 국어 진흥 조례 | 제948호 | 2016. 11. 7. | 일부 개정 | X |
| | | 광주광역시 동구 | 광주광역시 동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 제1568호 | 2022. 5. 6 | 일부 개정 | X |
| | | 광주광역시 북구 | 광주광역시 북구 국어 사용 조례 | 제1735호 | 2022. 1. 5. | 일부 개정 | X |
| | | 광주광역시 서구 | 광주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484호 | 2019. 11. 14 | 일부 개정 | X |
| | | 전라남도 나주시 | 나주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 | 제1503호 | 2019. 4. 1. | 제정 | X |
| | | 전라남도 순천시 |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 | 제1943호 | 2018. 12. 17. | 제정 | X |
| | | 전라북도 완주군 | 완주군 한글사랑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2976호 | 2022. 3. 3. | 제정 | X |
| | | 전라북도 장수군 | 장수군 국어 문화 진흥 조례 | 제2538호 | 2021. 11. 15. | 제정 | X |
| | 경상 (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 | 제1239호 | 2018. 12. 10. | 제정 | X |
| | | 울산광역시 중구 |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 | 제1080호 | 2021. 5. 31. | 전부 개정 | X |
| | | 부산광역시 남구 | 부산광역시 남구 한글 사용 지원 조례 | 제1227호 | 2018. 12. 17. | 일부 개정 | X |
| | | 부산광역시 북구 | 부산광역시 북구 한글사랑 조례 | 제1497호 | 2021. 12. 22. | 일부 개정 | X |
| | | 부산광역시 중구 | 부산광역시 중구 국어진흥조례 | 제1162호 | 2019. 5. 31. | 제정 | X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428호 | 2020. 7. 1. | 일부 개정 | X |
| | | 경상남도 김해시 |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833호 | 2022. 4. 8. | 일부 개정 | X |
| | | 경상남도 양산시 | 양산시 한글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599호 | 2019. 12. 26. | 제정 | X |
| | | 경상남도 의령군 | 의령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 | 제2543호 | 2022. 4. 20. | 제정 | X |
| | | 경상북도 김천시 | 김천시 한글 사랑 조례 | 제1302호 | 2020. 5. 21 | 일부 개정 | X |
| 지방 교육 | 수도 권(2)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 제7129호 | 2021. 8. 10. | 전부 개정 | X |

| | | | | | | | |
|---|---|---|---|---|---|---|---|
| 청 (10) | | 서울특별시 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7488호 | 2020. 3. 26. | 일부 개정 | X |
| | 충청 (3)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 제1333호 | 2019. 9. 30. | 제정 | X |
| | | 충청남도 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 제4670호 | 2020. 3. 31. | 제정 | X |
| | |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 | 제4753호 | 2022. 4. 8. | 제정 | X |
| | 전라 (1) | 전라남도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 | 제5228호 | 2020. 12. 31. | 제정 | X |
| | 경상 (4) |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4983호 | 2021. 6. 3. | 전부 개정 | X |
| | | 경상북도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4417호 | 2020. 11. 5. | 제정 | X |
| | | 부산광역시 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6037호 | 2019. 11. 13. | 제정 | X |
| | | 울산광역시 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2395호 | 2021. 7. 1. | 제정 | X |

## (2) 지역어 관련 조항이 있는 조례

■ 지역어 관련 조례는 '국어 진흥' 관련 조례 내에 토박이말 등 지역어 관련 조항을 포함하거나, '지역어' 관련 별도의 조례가 제정.

■ '국어 진흥' 관련 조례 중 지역어 관련 조항이 있는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 경상권(6개), 충청권(3개), 전라권(3개), 제주(1개) 순으로 총 13개 조례가 있었고, 기초자치단체 단위 경상권(19개), 전라권(8개), 충청권(5개), 수도권(4개) 순으로 총 36개 조례가 있었으며, 교육청 단위 강원권 1개 조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총 50개).

[2022년 11월 기준]

〈표 2-6〉 국어 진흥 관련 조례 중 지역어 관련 조항 포함된 조례

| 소속 (개) | | 법규명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제정·개정 구분 | 지역어 관련 해당 조항 |
|---|---|---|---|---|---|---|
| 광역자치단체 (13) | 충청 (3) | 충청남도 | 충청남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5181호 | 2022. 2. 10. | 전부개정 | 제12조 |
| | | 충청북도 |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4222호 | 2019. 1. 1. | 제정 | 제19조 |
| |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 제5886호 | 2022. 9. 30 . | 일부개정 | 제4,7조 |
| | 전라 (3) | 전라남도 |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 제5597호 | 2022. 10. 20. | 일부개정 | 제3,5,9,19, 20조 |
| | | 전라북도 | 전라북도 국어 진흥 조례 | 제5027호 | 2021. 11. 3. | 전부개정 | 제4,6조 |
| |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 제5596호 | 2020. 12. 15. | 일부개정 | 제19조 |
| | 경상 | 경상남도 |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 제4949호 | 2021. 5. 3. | 전부개정 | 제18조 |

| | | | | | | | |
|---|---|---|---|---|---|---|---|
| | (6) | 경상남도 |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5066호 | 2021.11. 4. | 일부개정 | 제4조 |
| | | 경상북도 |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3610호 | 2015. 2. 26. | 제정 | 제2,8,11조 |
| |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 제5354호 | 2019. 10. 30. | 제정 | 제3조 |
| |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 제6467호 | 2021. 8. 11. | 일부개정 | 제3,4,8,14,18,19,20,21조 |
| |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 제2244호 | 2020. 10. 29. | 일부개정 | 제3,5,16,17,18조 |
| | 제주 (1)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 제1372호 | 2015. 10. 6. | 일부개정 | 제19조 |
| 기초 자치 단체 (36) | 수도권 (4) | 경기도 고양시 |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 | 제2330호 | 2020. 11. 10. | 제정 | 제9조 |
| |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 | 제3291호 | 2019. 7. 15. | 일부개정 | 제20조 |
| | | 경기도 포천시 |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 | 제837호 | 2015. 4. 24. | 제정 | 제19조 |
| |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286호 | 2019. 5. 23. | 제정 | 제11조 |
| | 충청 (5) | 충청남도 당진시 | 당진시 국어 사용 촉진 조례 | 제965호 | 2021. 10. 29. | 일부개정 | 제13조 |
| |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여군 국어사용 촉진 조례 | 제2463호 | 2018. 10. 31. | 일부개정 | 제13조 |
| | | 충청남도 아산시 | 아산시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476호 | 2016. 3. 15. | 제정 | 제13조 |
| | | 충청북도 옥천군 |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 | 제2819호 | 2019. 10. 15. | 제정 | 제11조 |
| | | 충청북도 증평군 | 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 | 제686호 | 2016. 7. 8. | 제정 | 제3조 |
| | 전라 (8) | 전라남도 광양시 | 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640호 | 2019. 1. 30. | 제정 | 제11조 |
| | | 전라남도 여수시 |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679호 | 2021. 12. 3 | 제정 | 제2,3,7조 |
| | | 전라북도 군산시 |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 | 제816호 | 2008. 7. 15. | 제정 | 제2,3,5조 |
| | | 전라북도 고창군 | 고창군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 제2522호 | 2020. 10. 12. | 제정 | 제6조 |
| | | 전라북도 남원시 | 남원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791호 | 2022. 7. 6. | 제정 | 제2,3,5조 |
| | | 전라북도 정읍시 | 정읍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319호 | 2015. 11. 5. | 제정 | 제11조 |
| | | 전주시 |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 제3599호 | 2019. 11. 15 | 제정 | 제3,6,8조 |
| | | 고창군 | 고창군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 제2522호 | 2020. 10. 12 | 제정 | 제6조 |
| | 경상 (19) |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 제2257호 | 2015. 7. 22. | 제정 | 제4,5조 |
| | | 경상남도 남해군 |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 | 제2370호 | 2019. 3. 14. | 제정 | 제4,5조 |
| | | 경상남도 진주시 |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163호 | 2015. 3. 26. | 제정 | 제4,5조 |
| |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684호 | 2022. 10. 7. | 일부개정 | 제4조 |
| | | 경상남도 통영시 | 통영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 제1632호 | 2021.09.27. | 제정 | 제6조 |
| | | 경상남도 함안군 | 함안군 한글 사랑 조례 | 제2682호 | 2021.11.15. | 제정 | 제8조 |
| | | 경상남도 합천군 | 합천군 한글 사랑 조례 | 제2318호 | 2017.12.31. | 일부개정 | 제19조 |
| | | 경상북도 봉화군 | 봉화군 국어 진흥 조례 | 제2107호 | 2016. 11. 21. | 제정 | 제12조 |
| | | 경상북도 영덕군 | 영덕군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960호 | 2016. 10. 18. | 일부개정 | 제2,8,11조 |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 대구광역시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 | 제1588호 | 2021. 12. 13. | 제정 | 제8조 |
| | | 대구광역시 동구 | 대구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250호 | 2018. 11. 26. | 제정 | 제4,5조 |
| | | 대구광역시 북구 |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 제1511호 | 2021. 11. 1. | 일부개정 | 제8조 |
| | | 부산 광역시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021호 | 2017. 12. 4. | 일부개정 | 제11조 |

| | | | | | | | |
|---|---|---|---|---|---|---|---|
| | | 강서구 | | | | | |
| |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304호 | 2021. 7. 15. | 제정 | 제9조 |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288호 | 2019. 9. 24. | 제정 | 제10조 |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935호 | 2019. 3. 29. | 일부개정 | 제9조 |
| | | 부산광역시 서구 | 부산광역시 서구 국어 사용 조례 | 제1282호 | 2020. 5. 6. | 제정 | 제13조 |
| | | 울산광역시 동구 | 울산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005호 | 2020. 9. 24. | 제정 | 제10조 |
| | | 울산광역시 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220호 | 2021. 12. 23. | 일부개정 | 제4,9조 |
| 지역 교육청 (1) | 강원 (1) | 강원도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4903호 | 2022. 6. 24. | 일부개정 | 제8조 |

■ 광역자치단체 지역어 관련 조항이 있는 조례는 국어진흥 조례, 국어사용 조례,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지역어 보전 책무를 부여하며 예산을 통한 사업지원 권한을 부여.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에서는 조례를 통해 국어발전 기본계획에 지역어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
- 지자체 예산을 사용해 국어주간, 포상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2021. 8. 11. 일부개정)**

제3조(책무) ① 시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과 공공기관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부산 지역어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민과 시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부산 지역어 실태 조사 등 부산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2〉

**울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2020. 10. 29. 일부개정)**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울산 지역어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국어 사용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와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
4. 정신 · 신체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시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의 실시
6. 울산 지역어 실태 조사 등 울산 지역어 연구 및 보전
7.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
8.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2019. 10. 30. 제정)**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시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2022. 2. 10. 전부개정)**

제12조(지역어 보전) ① 도지사는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수 있다.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2019. 1. 1. 제정)**

제19조(지역어 보전)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충청북도 지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2022. 10. 20. 일부개정)**

제3조(도지사의 책무) (조명 개정 2021. 5. 20.)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로 사용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개정 2017. 9. 28.) (개정 2021. 5. 20.)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지역어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0.〉

**전라북도 국어 진흥 조례(2021. 11. 3. 전부개정)**

제4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국어 바르기 쓰기 조례(2015. 2. 26.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경상북도 토박이말"이란 경상북도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닌 독특한 말을 말한다.

제11조(경상북도 토박이말 보전) ① 도지사는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경상북도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토박이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대부분이 지역어를 국어 또는 언어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경상남도에서는 지역어 보전은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지역어 지원을 위한 보전 사업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어 우리말과 문화를 연계하는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음.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2021. 5. 3. 전부개정)**

제18조(지역어 보전) ① 도지사는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도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2021. 11. 4. 일부개정)**

제4조(지원사업)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 및 지역어 발전과 보존을 위한 사업
2. 〈삭제 2021.11.4.〉
3. 삭제 〈2019.1.3.〉
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사업
5.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육성을 위한 사업
6.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의 지원, 교류 및 발전을 위한 사업
7. 영상물의 창작·제작 및 촬영 지원과 영상산업 육성 지원 사업
8. 茶 및 도자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9. 한복 착용 장려 등 한복 관련 사업
10. 그 밖에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사업

■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대부분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실태조사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초자치단체는 36개 지역에 국어진흥 조례, 한글 사랑 조례,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국어 사용 촉진 조례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지역어 보전 책무

를 부여.

**고양시 국어진흥조례(2020. 11. 10. 제정)**

제9조(지역어의 보존) ① 시장은「국어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고창군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2020. 10. 12. 제정)**

제6조(지역어 보존) 군수는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고창군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2019. 1. 30. 제정)**

제11조(지역어 보전)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광양시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당진시 국어 사용 촉진 조례(2021. 10. 29. 일부개정)**

제13조(지역어 보전) 시장은「국어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2008. 7. 15. 제정)**

제3조(군산시의 책무) 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어의 능력향상과 군산지역어의 보전과 발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불편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정신·신체상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을 우선 적용한다.
③ 국어발전과 군산지역어에 대한 연구, 군산의 문학발전 등과 같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원시 국어 진흥 조례(2022. 7. 6. 제정)**

제5조(국어 발전 시행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 · 보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남원시 국어 발전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지역어 실태 조사 등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당진시 국어 사용 촉진 조례(2021. 10. 29. 일부개정)**

제13조(지역어 보전) 시장은「국어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봉화군 국어 진흥 조례(2016. 11. 21. 제정)**

제12조(지역어 보전) ① 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여군 국어사용 촉진 조례(2018. 10. 31. 일부개정)**

제13조(지역어 보전) 군수는 국어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2019. 5. 23. 제정)**

제11조(지역어 보전) ① 구청장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중랑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중랑구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랑구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3) 지역어 조례

■ '지역어' 관련 별도의 조례가 있는 지역으로는 광역자치단체 단위 제주특별자치도에 2개의 조례가 있었고, 기초자치단체 단위 강원권 1개, 경상권 1개 총 2개 조례가 있었으며, 교육청 단위 제주교육청 1개 조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5개).

[2022년 11월 기준]

〈표 2-7〉 지역어 진흥 관련 조례

| 번호 | 자치단체 (가나다순) | | 법규명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제정·개정 구분 | 지역어 관련 해당 조항 |
|---|---|---|---|---|---|---|---|
| 광역자치단체 (2) | 제주 (2)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 제3056호 | 2022.1.12. | 일부개정 | 전체 조항 |
|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 제557호 | 2017.11.15. | 제정 | 전체 조항 |
| 기초자치 | 강원 (1) | 강원도 강릉시 |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제1406호 | 2020. 9. 29. | 제정 | 제2,3,4,5,6,7,10,12,14,조 |

| 단체 (2) | 경상 (1) | 경상남도남해군 |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572호 | 2021.11.8. | 전부개정 | 제2,3조 |
|---|---|---|---|---|---|---|---|
| 지방교육청 (1) | 제주 (1)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 제2896호 | 2021.8.4. | 일부개정 | 전체 조항 |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 3. 14.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남해군에 소재한 전통사찰, 향교, 사우, 남해 양아리 석각(서불과차), 고려대장경 판각지 등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유적·유물, 지역방언 및 문화예술 양식 등을 말한다.

■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의 경우 조례 명칭에 국어와 지역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육성을 동등한 수준에서 명시.

- 특히 지역어의 정의를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연계하고, 지역어 보전을 위한 정책 개발, 국어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계획 수립, 2년마다 지역어 실태조사, 국어책임관의 임무 확대, 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의 원활한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등 지역어 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광범위하게 규정.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 · 육성에 관한 조례(2020. 9. 29.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시민(이 조례에서 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관련 있고,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전래적 언어를 말한다.

제12조(지역어 발굴 및 보급) ①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의 원활한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매체, 공공기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2. 교재 개발 및 활용
3.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4. 연구소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4) ‘제주어’ 관련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어진흥조례를 통해 지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주어“라는 공식명칭을 통해 지역어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1년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와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

성화 조례」를 제정.

- 특히 조례를 통해 교육청 행정기구에 제주어 보전을 위한 직제를 설치하였고, 제주학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제주어 연구 활성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주역사문화에 대한 제주어 병행 해설의 직무를 규정하여 제주어 가치를 홍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외에도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주어를 포함하고 있는 제주문화관광해설집과 해설 메뉴얼을 개발·제작하여 해설사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어 진흥 조례」를 통해 옥외광고물 문안을 한글 맞춤법과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게 하여, 지역어(제주어)의 보전과 활용을 강조.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2007. 9. 27. 제정 / 2022. 1.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이를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도민의 문화정체성과 관련 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전래적인 언어를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라져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이 제주어를 이해하게 하는 한편, 제주어의 지속적인 보전과 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불편 없이 제주어를 이용하거나 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주어 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제8조에 따른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민의 제주어 능력 증진과 제주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주어 정책과 제주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주어 선양과 제주어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전에 관한 사항
5. 제주어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6. 제주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제주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주어의 사용,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제7조(실태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주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도민의 제주어 능력, 제주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제주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설치) ① 제주어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주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주어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주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 사항
4. 제주어 보급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주어 보전과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제주어 병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의3(제주어 의무 병기 대상) ① 도지사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어를 보급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 또는 발간하는 문화·관광 안내판과 관광 안내 책자에 제주어를 병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어 병기 범위,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제주어의 보급 등) 도지사는 제주어를 배우려는 사람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재를 개발하며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제주어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제주어 교육)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 전승과 보급을 위한 제주자치도 내에서의 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의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제주어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주어 해설 교육과정 개설 등)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 전승 및 보급과 함께 제주어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해설사(「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제주어 해설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및 대중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어 보급을 위한 교육사업
2. 제주어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3. 제주어 사용 환경 개선, 체험 및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4. 제주어 활용 문화 창작 사업
5. 제주어 보전과 전승을 위한 행사 개최
6.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 및 대중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제주어 주간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탐라문화제 개최기간 즉 매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1주일을 제주어 주간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제주어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주어 주간 기념 행사
2. 제주어 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 행사 등
3. 그 밖에 제주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제17조(제주어연구소 설치)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과 연구를 위하여 제주어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어연구소 또는 그 기능을 대행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제주어박물관 설치) ①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 · 육성 · 연구 · 교육 · 홍보를 위하여 제주어박물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2.3. 지역어 관련 기본계획

### (1) 국어발전 기본계획

■ 국어기본법상 규정은 없지만, 실제 기본계획에는 일부 내용 반영.

■ 제1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07-2011)

-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전략과제 6-3)

**제1차 국어발전 기본계획 전략과제 6-3(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 국내 지역어 및 국외 한민족 지역어 현지 조사 확대(5개년)
  - 국내: 권역별 주요 지점
  - 국외: 중국, 중앙아시아 등
- 조사 음성 자료의 분절 및 전사
- 국내외의 '지역어 총서' 발간, 보급
- '지역어 인터넷 자료 기지'(웹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12년 이후)

■ 제2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12~2016)

-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전략과제 5-3)

**제2차 국어발전 기본계획 전략과제 5-3(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

■ 지역어 자료 구축 및 활용
- 국내 9개 권역별 구술 자료 전사(2012년~2013년)
-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 방언의 조사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2014년)
- 지역어 정보 활용 체계 구축(2015년~2016년)
- 어촌 지역 민족 생활어 조사(2012년~2013년)

■ 지역어 경연대회 개최 및 지역어 상품 개발 지원
- 지역 언어문화 축제 및 행사 개최(2012년~2014년)
- '사투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012년~2014년 총 3회)

■ 제3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17~2021)

- 지역 언어문화 기반 국어문화원 활성화(전략과제 2-4)

**제3차 국어발전 기본계획 전략과제 2-4(지역 언어문화 기반 국어문화원 활성화)**

■ 지역민 국어 능력 향상 지원 및 지역 국어문화 운동 거점화
- 지역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맞춤형 사업 개발 및 행사 개최
  - 지역 방언 자료 정리·보존, 사투리 대회 개최
  - 세종대왕 탄생일 행사, 한글 주간 행사, 글짓기 대회, 지역 대표 축제 참여 등

- 사회 · 지역 방언 정보 구축과 활용(전략과제 3-4)

**제3차 국어발전 기본계획 전략과제 3-4(사회·지역 방언 정보 구축과 활용)**

■ 지역어 발전과 지역어 정보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지역어 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 어휘별 방언지도, 지역어 음성 정보, 지역어-표준어 대역 정보 서비스
  - 사용자 참여형 지역어 소개 창구 운영
  - 국어 사전적 풀이뿐만 아니라 동영상, 도감, 어원 정보 등도 함께 제시하여 지역어에 대한 다층적 정보 제공
  - 지역어 알아맞히기, 우리 고장 방언지도 그려 보기 등 사용자 친화형 서비스
- 전국 방언지도 완성을 위한 지역어 추가 조사(20~30지점)
- 지역어 보존과 발전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 추진
  - '방언의 가치'를 주제로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형식으로 각급 학교, 이주민, 지역 공무원 대상 교육
  - 지방자치단체, 지방 문화원 등과 연계하여, 산재된 지역어 관련 자료를 수집·정제하고 지역어 정보 활용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정보 활용성 제고

■ 대도시 중심 권역별, 세대별 방언 조사
- 대도시를 중심으로 어휘, 음운, 문법, 관용표현 등의 언어 변이형을 조사하여 세대별·권역별 방언지도 작성
- 지역적, 사회적 변인에 따른 언어문화 차이 조사 연구
  - 지역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세대,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지는 담화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언어 문화적 갈등 해결 방안 모색

■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22~2026)

- 지역적 사회적 변인에 따른 언어문화 다양성 보존(전략과제 3-2)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 전략과제 3-2(지역적 사회적 변인에 따른 언어문화 다양성 보존)**

■ 지역적, 사회적 변인에 따른 국어원의 언어 다양성 조사
- (분야별 언어 다양성 조사) 지역별·세대별·성별 등 중장기 조사 계획(제1단계, '22년~'26년)에 따른 언어 다양성 조사 실시
- (산간·도서 지역 생활어 조사)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산간·도서 등 지역의 전통적인 기초 생활어 및 직업 생활어 조사

■ 지역 언어문화 자료저장소 구축 및 제공
- (지역 언어문화 자료 저장소 구축) 기 구축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을 확대·개편, 지자체별 지역 언어문화 자료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지역 언어문화 자료 정비 및 제공) 지역별·세대별·성별에 따른 지역 언어문화 자료를 다양한 유형(음성, 사진, 영상, 지역어-표준어 대역 말뭉치 등)으로 가공·정비, 지역 언어공동체 내에서 지역 언어문화 관광, 산업, 교육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언어문화 다양성 보존) 지역별·세대별·성별 등 중장기 조사 계획(제1단계, '22년~'26년)에 따른 언어 다양성 조사 및 지역 언어문화 자료 저장소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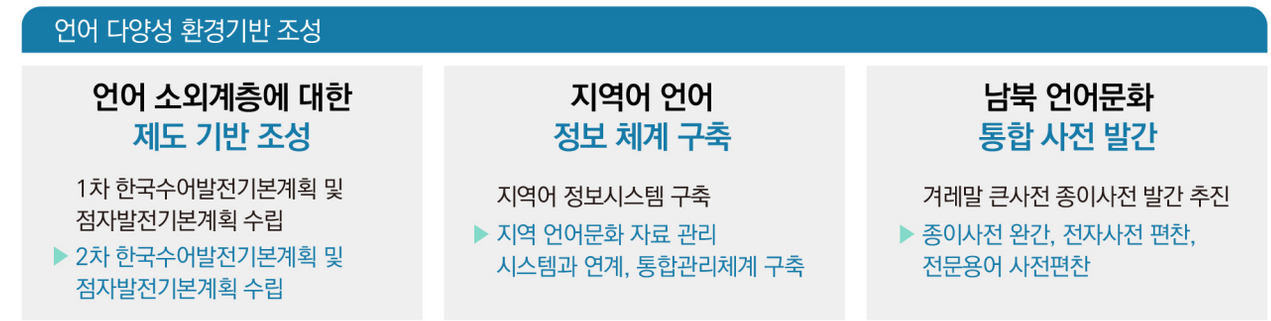


[그림 2-7] 언어 다양성 환경기반 조성

# 제3절
# 추진조직 및 사업

## 3.1.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중앙정부의 지역어와 관련된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 국어정책과는 제1차관-문화예술정책실-문화정책관(국) 소속 과로서 문화정책과, 전통문화과, 국제문화과와 함께 업무를 추진.
- 문화예술정책실의 구성은 국어를 우리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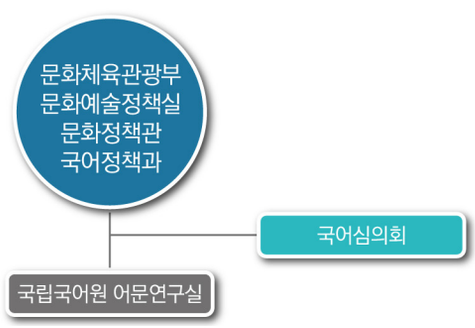


[그림 2-8] 중앙정부 지역어 추진체계

■ 문화정책관은 우리나라 문화 및 인문 정신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 정립,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 수립·추진, 한글 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 전통문화 자원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에 관한 사항, 민족문화 자원의 발굴·활용 및 창의적 계승, 우리 문화의 세계화 및 국가 간 상호 문화 교류 확대 등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함.

■ 우리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부서의 하나로서 국어정책과는 언어정책과 국어 정책 전반을 관할하고 있으며,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담.

■ 지역어 관련 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을 통해 수행.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은 국어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연구 활동을 관장.

## 3.2. 국립국어원

### (1) 설립 목적

- 합리적인 국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적 조사, 연구
- 언어 규범 보완·정비
- 국가 언어 자원의 수집 및 통합 정보 서비스를 강화를 통한 국민 언어생활의 편익 증진
-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사용 환경 개선
-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반 조성

### (2) 조직 구조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에서 지역어 관련된 기능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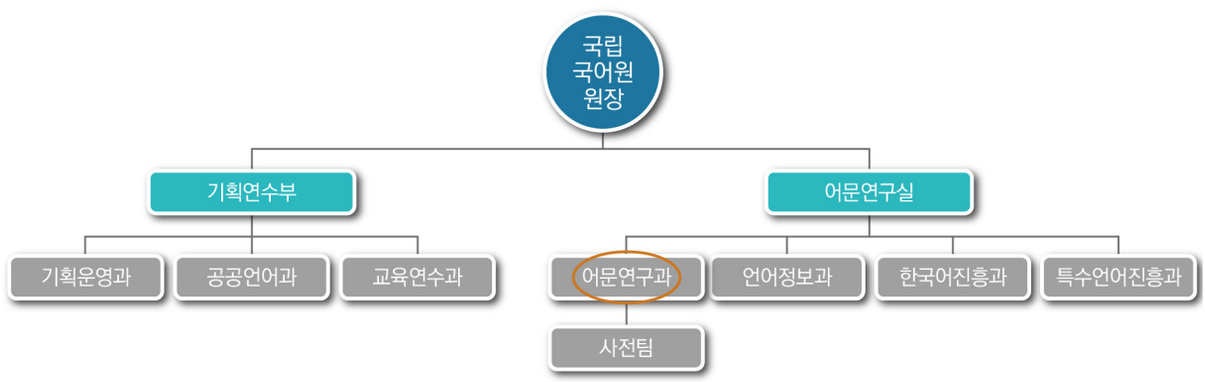


[그림 2-9] 국립국어원 조직도

### (3) 어문연구과 내 지역어 관련 업무

- 방언의 보존·활용 지원: 지역어 보존을 위한 지역어 조사와 다양한 사회적 변인에 따른 사회 방언 조사, 방언 정보 활용 체계 구축 운영으로 국어와 국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보전.
-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표 2-8〉 국립국어원 지역어 관련 주요 사업

| 사업 | 내용 | | |
|---|---|---|---|
| 서울 토박이말 실태 연구 | 목적 | | 서울말이 표준어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함 |
| | 사업 | 1997 | 서울말의 음운을 조사하여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 Ⅰ』 발간 |
| | | 1998 | 어휘·문법을 조사하여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 Ⅱ』 발간 |

| | | | |
|---|---|---|---|
| | | 1999 | 기존 사전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된 420개 항목을 중심으로 질문지 작성 |
| | | 2000 | 서울 토박이말 어형을 조사하여『서울 토박이말 자료집Ⅲ』발간 |
| | | 2001 | 서울말의 세대별 변천 과정을 살펴본『서울 토박이말 자료집Ⅳ』발간 |
| 지역어 조사 및 전사 | 목적 | | 2004년부터 10년 동안 권역별로 주요 지점에 대한 고유의 지역어를 조사하여 전사하고 웹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 | 사업 | 2004 | 국내 8개 지점(경기 용인, 강원 삼척, 경북 경주, 경남 고성, 충남 공주, 전북 완주, 전남 함평, 제주 건입)과 국외 4지점(중국 지린성 판스와 둔화, 카자흐스탄 알마티,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기초 조사 |
| | | 2005 | 경기 화성, 강원 원주, 경북 상주, 경남 창원, 충북 제천, 충남 대전, 전북 남원, 전남 곡성, 제주 한경 지역어 조사 |
| | | 2006 | 경기 포천, 강원 양양, 충북 청원, 충남 논산, 전북 무주, 전남 진도, 경북 청송,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국내 9개 지점 조사 |
| | | 2007 | 경기 파주, 강원 홍천, 충북 충주, 충남 서천, 전북 군산, 전남 영광, 경북 고령, 경남 산청, 제주 표선 국내 9개 지점과 중국 훈춘시 회룡봉,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외 2개 지점의 지역어 조사 |
| | | 2008 | 강원 평창, 경기 양평, 경남 남해, 경북 청도, 전남 보성, 전북 고창, 제주 구좌, 충남 예산, 충북 옥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어 조사 |
| | | 2009 | 강원 인제, 경기 이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북 의성, 전남 영암, 전북 임실,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충남 서산, 충북 보은 지역어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중국 요령성 동항시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
| | | 2010 | 강원지역 6개군, 경기지역 6개시, 경남지역 6개군, 경북지역 6개 시군, 전남지역 6개군, 전북지역 6개 시군, 제주지역 6개 읍면동, 충남지역 6개 시군, 국외 7지역 이주 한민족 지역어 조사 |
| | | 2011 | 강원 정선, 경기 인천 강화, 경남 하동, 경북 봉화,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대정읍, 충남 천안, 충북 영동, 중국 길림성 지역어 조사 |
| | | 2012 | 강원 4개 시군, 경기 4개시, 경남 4개 시군, 경북 4개 시군, 전남 4개군, 전북 4개 시군, 제주 4개 읍면동, 충남 4개 시군, 충북 3개 시군, 국외 2개 지역 이주 한민족 지역어 조사 |
| | | 2013 | 강원 3개군, 경기 4개 시군, 경남 3개 시군, 경북 3개군, 전남 4개군, 전북 1개군, 제주 3개 읍동, 충남 3개 시군, 충북 3개군, 국외 3지역 이주 한민족 지역어 조사 |
| 지역별 음성 직접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시범 운영 | 사업 | 2007 | 지역어 조사 사업에서 2005년, 2006년 조사한 음성 파일 활용 |
| 지역어 총서 발간 | 사업 | 2007 | 『지역어 구술 자료』(태학사) 8권 발간 |
| 지역어 보완 조사 | 목적 | | 지역어 보완 조사 및 음성 파일 분절화를 통한 한국 방언지도 제작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목적 |
| | 사업 | 2015~2020 | 전국 방언 지도 작성을 위한 지역어 보완 조사, 지역어 조사 음성 파일의 어휘 항목 분절 및 가공 |
| 지역어 정보 활용 체계 구축 | 목적 | | 방언 지도 구축 지원 체계 구축 |
| | 사업 | 2016 | 공간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방언지도 기능 고도화, 우리말샘 정보 연계 및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 개발, 지역어 보완 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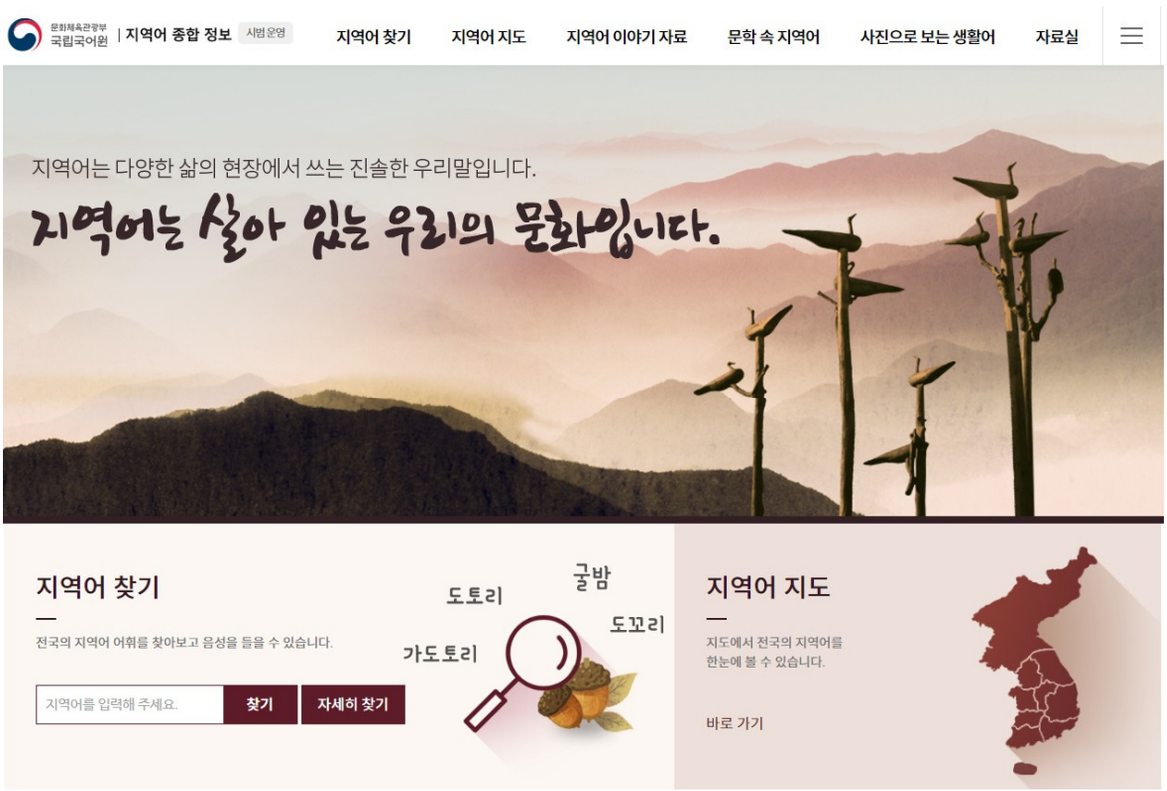


[그림 2-10]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 3.3. 지방정부 지역어 보전 조직

- 지방정부는 지역어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및 자문·지원 조직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는 광역과 기초 대부분에서 문화, 관광, 예술, 체육 관련 부서에서 수행.
- 이는 지역어 관련 업무를 지역 문화와 연계하여 접근하는 체계로 이해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이 문화예술 또는 문화정책(과) 부서에서 시행.
- 대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어 진흥에 관한 업무를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는 문화예술과, 대구광역시는 문화예술정책과, 부산광역시 역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
- 한 예로서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에 따라 5년 단위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역어 실태조사, 부산광역시 국어진흥위원회 및 부산지역어 보전 소위원회 운영, 부산 지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누리집을 통한 홍보, 부산지역어 보전 교재 개발 및 보급, 부산지역어 보전 교육과정 개설), 국어주간 지정 및 부산 지역어 보전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최(부산 지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행사 개최, 부산 지역어 보전 등에 대한 유공자 포상 등)를 문화예술과에서 담당.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담당 업무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며,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에서 국어발전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30여 개 사무로 분장되어 있음. 지역어 관련 사무는 국어발전 보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 사무로 보이며, 동 규칙 제55조제1항의 본청 과·담당관·단 등의 분장사무에는 지역어 또는 부산지역어에 대한 독립된 사무는 존재하지 않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 문화예술과 국어책임관 책임하에 부산 지역어 실태 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조사 결과가 반영된 부산 지역어 연구와 보전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국어진흥위원회는 자문과 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산지역어 보전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업무분장**

- 국 소관 주요정책 종합기획·조정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 문화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문화상 시상 및 문화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사항
- (재)부산문화재단
- 국어 발전 보전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법인단체 허가·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문화진흥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중 략〉

- (재)부산문화회관
- 문화나눔 등 문화공유에 관한 사항
- 문화시설(공연, 전시 등) 확충 종합계획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 구·군 문화시설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 관련 사무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 소관 사무 중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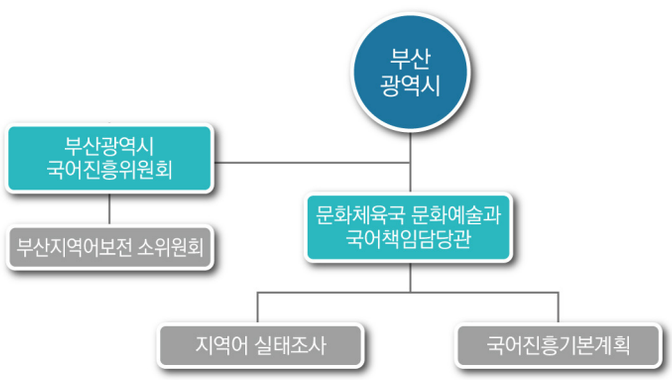


[그림 2-11] 부산광역시 지역어 보전체계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관련한 주무 부서는 문화정책과로 제주어 보전과 육성, 제주학연구센터, 국어 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어 관련 사무를 제주학과 제주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무로서 지정하고 구체적으로 운영.
- 그 외 제주어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하는 해설사 관리는 관광정책과와 환경정책과,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의 해설사를 통한 제주어 알리기는 세계유산본부에서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업무분장**

-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 및 문화융성계획 수립·시행
- 도서관 정책 수립, 육성 지원 및 지도·감독
-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영화관·음반·비디오물 및 노래연습장 등 제작 배급업 및 유통 관련업에 관한 사항
- 제주학(제주어 포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에 관한 사항
- 저작권 및 어문정책에 관한 사항
- 전국·국제 문화예술행사 유치 및 참가에 관한 사항
-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

〈중략〉

- 세계유산본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세계자연유산 및 문화재 분야에 한정한다)
-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교육행정과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제주어 교육 활성화를 담당.

- 소속기관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이 제주어 교육 사무를 담당.



〈표 2-9〉 광역자치단체 지역어 진흥 조례 및 담당 부서

| 소속(개) | | 법규명 | 지역어 관련 담당 부서 |
|---|---|---|---|
| 충청 (3) | 충청남도 | 충청남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
| | 충청북도 |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
|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 | |
| 전라 (3) | 전라남도 |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 |
| | 전라북도 | 전라북도 국어 진흥 조례 | |
|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 |
| 경상 (6) | 경상남도 |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 |
| | 경상남도 |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 |
| | 경상북도 |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
|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 문화예술정책과 |
|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 |
|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 문화예술과 |
| 제주(1)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 문화정책과 |

■ 기초자치단체 역시 거의 모든 곳에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 업무들을 처리.

- 강릉시, 고양시, 성남시, 합천군, 대구광역시 북구, 광양시, 여수시, 정읍시, 함안군은 문화예술과, 군산시는 문화정책계, 대구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울산광역시 동구, 증평군

은 문화체육과, 부산광역시 동구와 부여군은 문화체육관광과, 부산광역시 서구, 당진시, 옥천군은 문화관광과, 봉화군은 관광마케팅과에서 지역어 보전 및 활용 업무를 담당.

- 다만 전주시는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역어 관련 업무를 담당.

〈표 2-10〉 기초자치단체 지역어 보전 조례 및 담당부서

| 소속 (개) | | 법규명 | 지역어 관련 담당 부서 |
|---|---|---|---|
| 수도권 | 경기도 고양시 |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 | 문화예술과 |
|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 | 문화예술과 |
| | 경기도 포천시 |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 | |
|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어 진흥 조례 | 기획예산과 |
| 강원 | 강원도 강릉시 |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문화예술과 |
| 충청 | 충청남도 당진시 | 당진시 국어 사용 촉진 조례 | 문화관광과 |
|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여군 국어사용 촉진 조례 | 문화체육관광과 |
| | 충청남도 아산시 | 아산시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 |
| | 충청북도 옥천군 |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 | 문화관광과 |
| | 충청북도 증평군 | 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 | 문화체육과 |
| 전라 | 전라남도 광양시 | 광양시 국어 진흥 조례 | 문화예술과 |
| | 전라남도 여수시 |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 문화예술과 |
| | 전라북도 군산시 | 군산시 우리말 계승발전 지원조례 | 문화정책계 |
| | 전라북도 고창군 | 고창군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 |
| | 전라북도 남원시 | 남원시 국어 진흥 조례 | |
| | 전라북도 정읍시 | 정읍시 국어 진흥 조례 | 문화예술과 |
| | 전주시 |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 자치행정과 |
| | 고창군 | 고창군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 |
| 경상(19) |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 문화관광과 |
| | 경상남도 남해군 |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 | |
| | 경상남도 진주시 |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 문화예술과 |
|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 |
| | 경상남도 통영시 | 통영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 | |
| | 경상남도 함안군 | 함안군 한글 사랑 조례 | 문화예술담당 |
| | 경상남도 합천군 | 합천군 한글 사랑 조례 | 문화예술과 |
| | 경상북도 봉화군 | 봉화군 국어 진흥 조례 | 관광마케팅 |
| | 경상북도 영덕군 | 영덕군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문화관광과 |
| | 대구광역시 달서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올바른 국어사용에 관한 조례 | |
| | 대구광역시 동구 | 대구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 | 문화체육과 |
| | 대구광역시 북구 |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 문화예술과 |

| | | | |
|---|---|---|---|
| | 부산 광역시 강서구 |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 문화체육과 |
| |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문화체육관광과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어 진흥 조례 | |
| | 부산광역시 사상구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문화체육과 |
| | 부산광역시 서구 | 부산광역시 서구 국어 사용 조례 | 문화관광과 |
| | 울산광역시 동구 | 울산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 | 문화체육과 |
| | 울산광역시 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 | |

## 3.4. 국어문화원

### (1) 설립 목적 및 조직 구조

①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2020년 2월 17일 설립)

■ 설립 목적

-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전국 22곳의 국어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언어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
- 2006년 1월, 개별 국어상담소(현 국어문화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 출범 후 2008년 국어상담소가 국어문화원으로,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로 명칭 변경.
-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가 임의 단체로서는 국어문화원의 장단기 발전 계획을 세우거나 국민의 언어 수요를 측정하고 이를 충족할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국어문화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언어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0년 2월 17일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발족.

■ 조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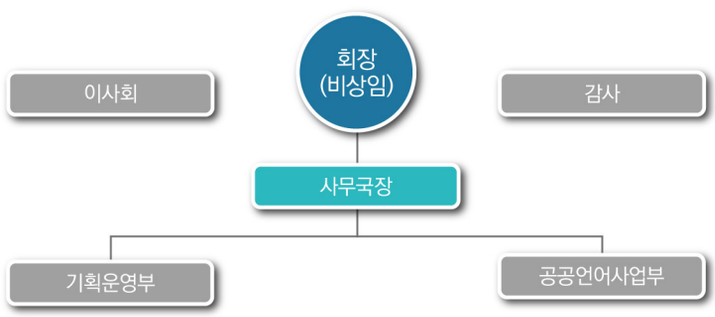


[그림 2-12]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 조직도

## ② 수도권 국어문화원

〈표 2-11〉 수도권 국어문화원

| 기관 | 설립 목적 및 조직 구조 | |
|---|---|---|
| 세종 국어문화원<br>(구.국어단체연합) | 설립시기 | 2005년 10월 지정 |
| | 설립목적 |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반포 정신에 따라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며 세종 정신으로 국어기본법을 제대로 실천하고 이루기 위해 설립. |
| |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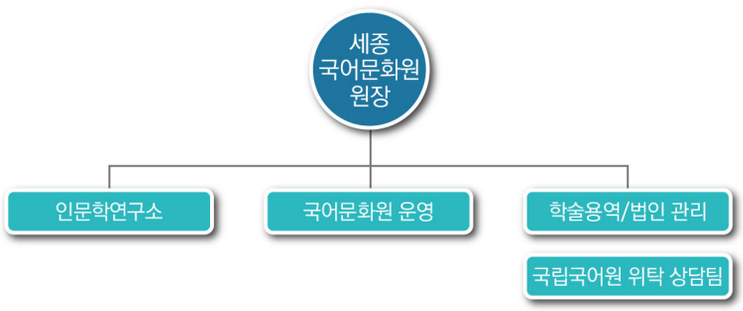 |
| 안양대학교<br>국어문화원 | 설립시기 | 2020년 5월 지정 |
| | 설립목적 |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공공언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법령의 정비,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무분별한 외국어 표현 정비 등을 통해 공공언어 개선에 기여하고자 설립. |
| |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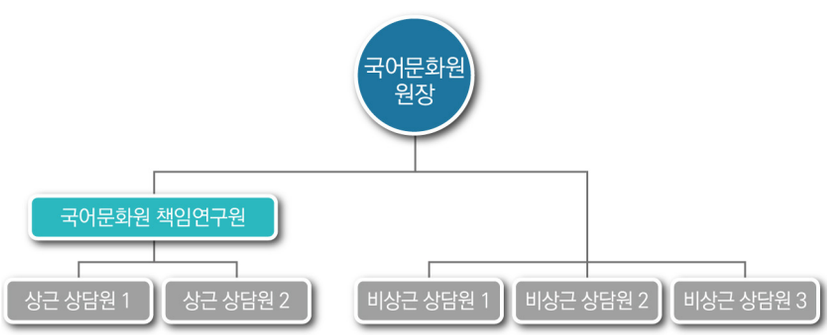 |
| 이화여자대학교<br>국어문화원 | 설립시기 | 2005년 10월 지정 |
| | 설립목적 | - 한국어와 한국 문학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문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1972년 11월 25일 인문과학대학 부설연구소로 설립된 한국어문학연구소를 전신으로 함.<br>- 한국어문학연구소의 설립 이념과 국어 문화의 실용화를 아우르고자 2008년 5월 국어상담소를 흡수 통합하면서 국어문화원으로 개칭. |
| |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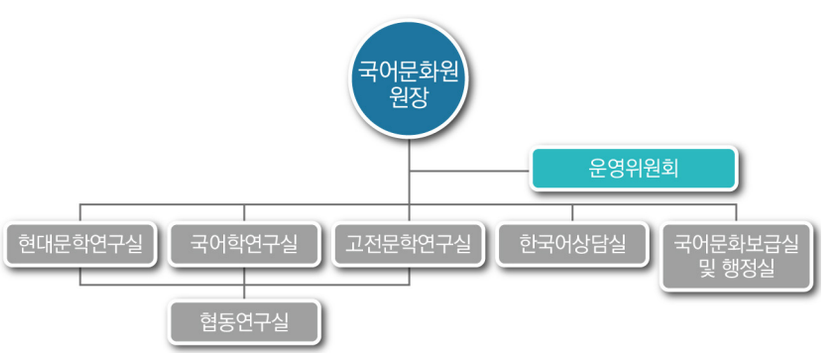 |

| | | |
|---|---|---|
|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 설립시기 | 2011년 2월 지정 |
| | 설립목적 | 국어기본법에 따른 여러 국어 어문규정을 학생과 지역 주민, 공무원, 개별 업체 회사원 등에게 계도·교육·상담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국제결혼 이주민, 해외 입양아 및 교포 등의 다문화가정 구성원에게 한국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
| |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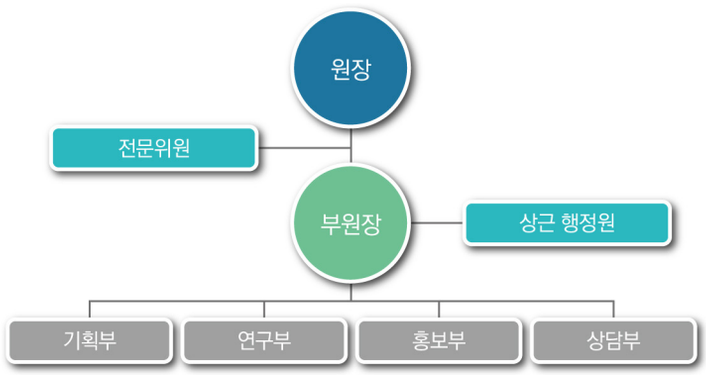 |
| 한국방송(KBS) 국어문화원 | 설립시기 | 2005년 10월 지정 |
| | 설립목적 | - |
| | 조직도 | KBS 아나운서실 내 국어문화원 |
|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 설립시기 | 2014년 3월 지정 |
| | 설립목적 | 우리말 글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 말글살이의 잘못된 점을 바꾸어, 세계화의 거센 물결에서 잃어가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한글문화를 일구고자 활동하는 시민단체. |
| | 조직도 | - |
|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 | 설립시기 | 2010년 5월 지정 |
| | 설립목적 | 경기도 지역의 국어생활 문화를 연구하고 발굴, 보존, 보급하며, 지역 주민과 관공서·기업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국어기본법에 따른 여러 가지 표준 어법을 계도, 교육, 상담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생활을 선도하고 국민의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둠. |
| |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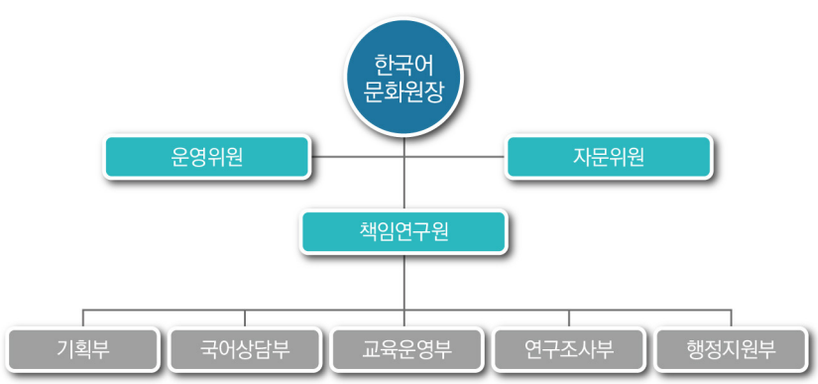 |

### ③ 강원권 국어문화원

〈표 2-12〉 강원권 국어문화원

| 기관 | 설립 목적 및 조직 구조 | |
|---|---|---|
|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 설립시기 | 2007년 1월 지정 |
| | 설립목적 | - 강원도 지역민의 올바른 국어 능력 신장을 도모.<br>- 올바른 언어 문화가 강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br>- 강원도 지역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위하여 연구와 교육을 진행.<br>- 강원도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지명, 방언, 민요, 설화 등의 국어 자원을 보존하고 발굴. |
| |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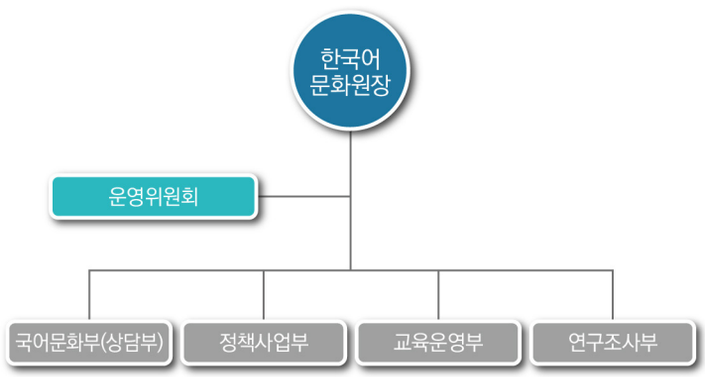 |





### ④ 충청권 국어문화원

〈표 2-13〉 충청권 국어문화원

| 기관 | 설립 목적 및 조직 구조 | |
|---|---|---|
|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 | 설립시기 | 2021년 6월 지정 |
| | 설립목적 | - 지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 능력 교육 기관<br>- 언어 문화의 보전과 확산을 위한 국어 진흥 실천 기관<br>- 지자체의 언어 환경 개선을 위한 국어 정책 수행 기관 |
| |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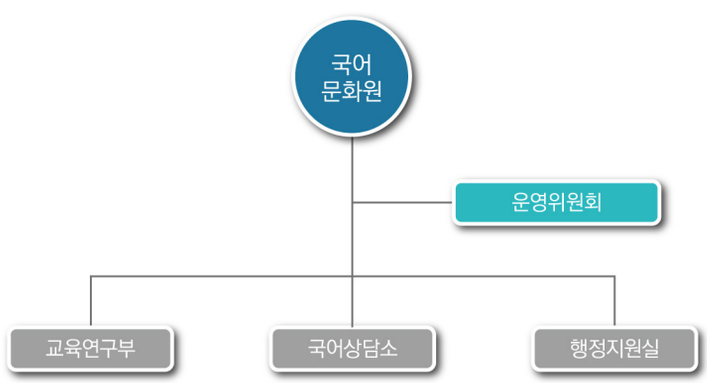 |

| | | |
|---|---|---|
|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 설립시기 | 2005년 10월 지정 |
| | 설립목적 |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식 정보 전달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며, 나아가 국어를 잘 보전하여 민족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 |
| |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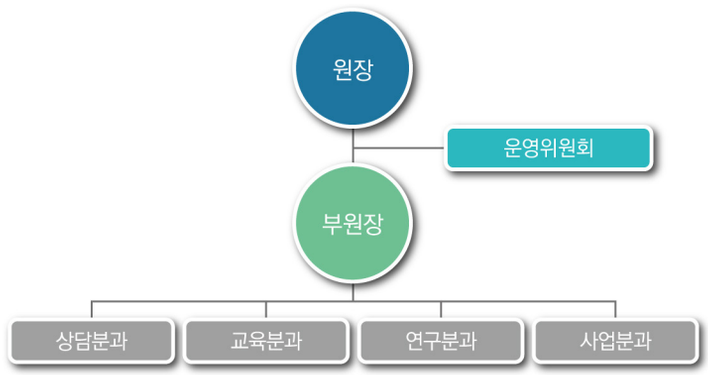 |
|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설립시기 | 2005년 10월 지정 |
| | 설립목적 | - |
| | 조직도 | - |
|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 설립시기 | 2005년 10월 지정 |
| | 설립목적 | - 지역 주민,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국어 어문 규범, 언어 예절, 글쓰기 등을 교육하여 지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br>-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의 국어 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점을 상담하여 이들이 올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br>- 위의 '교육'과 '상담' 활동에 필요한 국어 어문 규범, 언어 예절, 국어 문장, 국어 능력의 향상 방안, 국어 정책, 이주여성 한국어 교재 등의 내용을 연구.<br>- 지역 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와 지역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지역어 보전에 노력.<br>-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이 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교내외 행사를 주최. |
| |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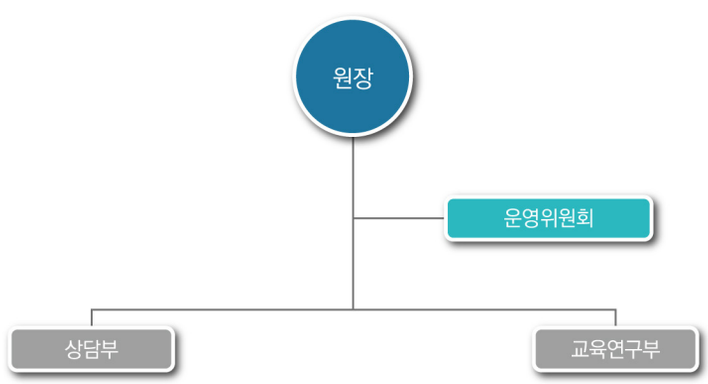 |

## ⑤ 전라권 국어문화원

〈표 2-14〉 전라권 국어문화원

| 기관 | 설립 목적 및 조직 구조 | |
|---|---|---|
| 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 | 설립시기 | 2014년 3월 지정 |
| | 설립목적 | 전남지역 국어와 관련된 어문교정, 각종 국어 관련 대회 개최 등의 활동 추진. |
| | 조직도 | - |
|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 설립시기 | 2005년 10월 지정 |
| | 설립목적 |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학생과 일반인의 국어 사용 능력을 길러 창조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 국어의 보전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 |
| |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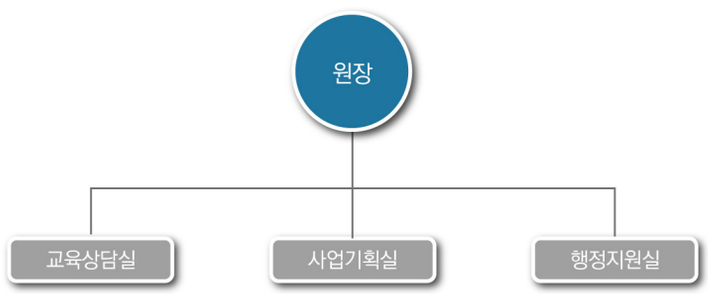 |
|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설립시기 | 2007년 1월 지정 |
| | 설립목적 | -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국제결혼이주민, 해외 입양아 및 교포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br>- 국어기본법에 따른 여러 가지 표준 어법을 학생과 지역 주민, 공공기관 공무원, 개별 업체 회사원들에게 계도 교육 상담. |
| |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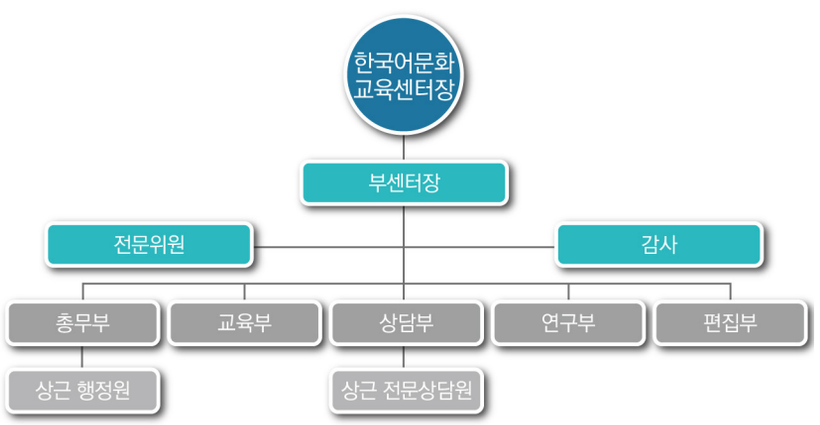 |

## ⑥ 경상권 국어문화원

〈표 2-15〉 경상권 국어문화원

| 기관 | 설립 목적 및 조직 구조 | |
|---|---|---|
|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 설립시기 | 2005년 10월 지정 |
| | 설립목적 | -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지에 부응.<br>- 경북대학교 구성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한 경북대학교 발전에 이바지.<br>- 지역민의 국어 능력 향상. |
| |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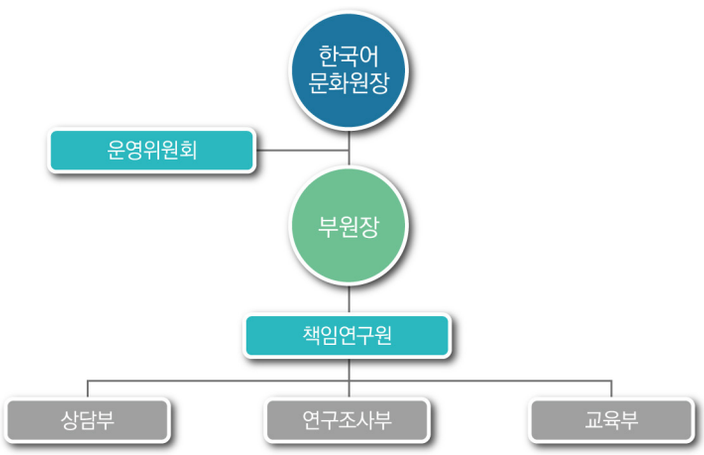 |
|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 설립시기 | 2005년 10월 지정 |
| | 설립목적 |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 문화를 연구하고 올바른 국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 |
| |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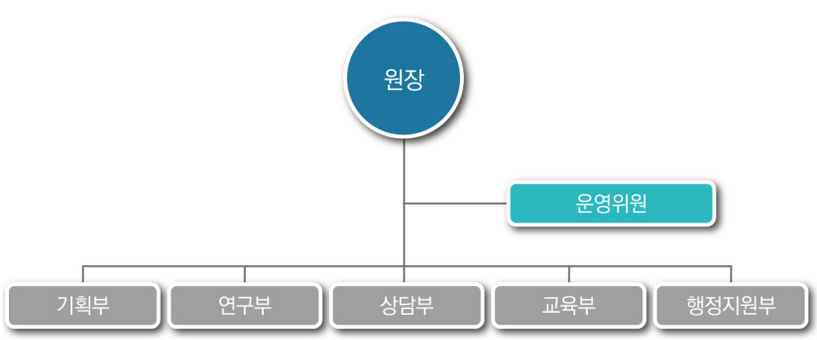 |
|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 설립시기 | 2005년 10월 지정 |
| | 설립목적 | - 건전한 국어 문화의 확산과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이와 관련된 상담,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하여 성숙한 국어 생활을 위한 이론과 실질적 지원을 제공.<br>- 본 대학 구성원을 포함한 지역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생활의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 |

<table>
<tr><td></td><td>조직도</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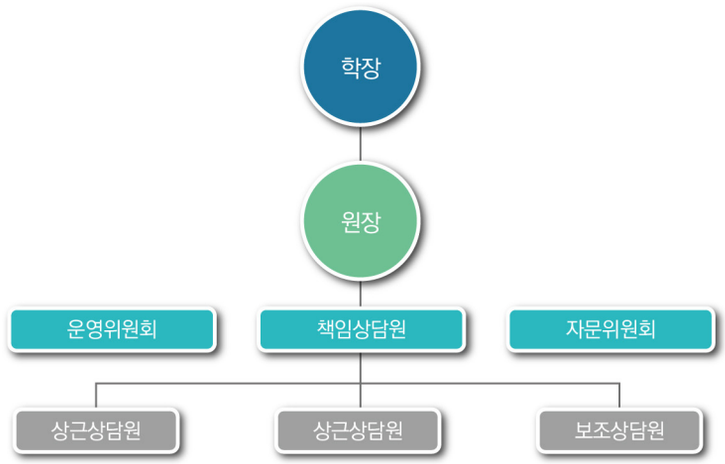
</td></tr>
<tr><td rowspan="3">영남대학교<br>국어문화원</td><td>설립시기</td><td>2005년 10월 지정</td></tr>
<tr><td>설립목적</td><td>언어 및 국어 문화에 대한 상담과 교육, 연구를 통하여 글쓰기에 관한 이론과 실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 특히 대학생과 지역 주민의 국어 생활 향상에 이바지.</td></tr>
<tr><td>조직도</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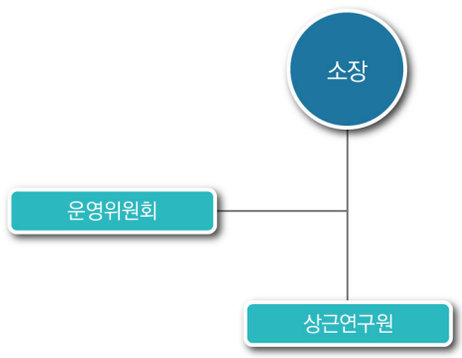
</td></tr>
<tr><td rowspan="3">울산대학교<br>국어문화원</td><td>설립시기</td><td>2008년 12월 지정</td></tr>
<tr><td>설립목적</td><td>- 건전한 국어 문화의 확산과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이와 관련된 상담,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하여 성숙한 국어 생활을 위한 이론과 실질적 지원을 제공.<br>- 본 대학 구성원을 포함한 지역민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생활의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td></tr>
<tr><td>조직도</td><td>-</td></tr>
</table>

⑦ 제주권 국어문화원

〈표 2-16〉 제주권 국어문화원

| 기관 | 설립 목적 및 조직 구조 | |
|---|---|---|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설립시기 | 2007년 1월 지정 |
| | 설립목적 | 전 국민의 국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어기본법 제24조에 의거해 설립된 전문적인 상담, 연구 기관. |
| |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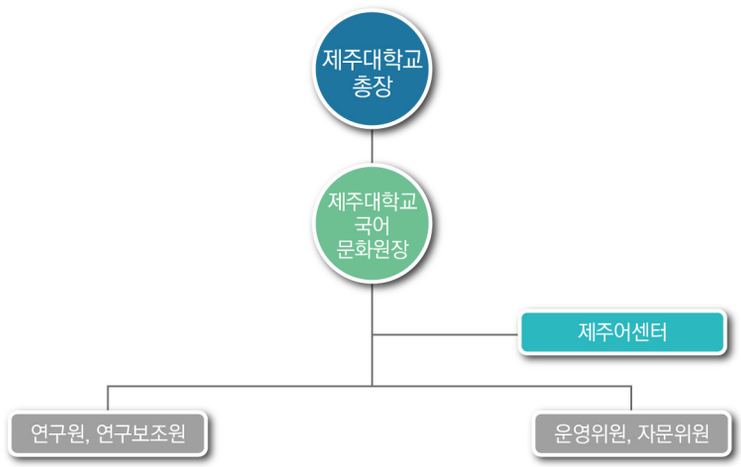 |



## (2) 주요 사업

- 우리말 풍부화 사업: 지역어, 토박이말 조사·연구 및 진흥 행사 개최.
-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말 가꿈이 활동' 지원

〈표 2-17〉 국어문화원 주요 사업

| 주요 사업 | | 사업 수행 기관 | 사업 수행 기관 및 내용 |
|---|---|---|---|
|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지원 | 우리말 가꿈이 | | - 전국 12개 국어문화원을 통하여 매년 600~800명의 우리말 가꿈이 양성<br>- 각 지역에서 안내판 개선 등을 통한 공공 언어 개선 활동 진행<br>- 2020년 총 805명, 2021년 780여 명의 우리말 가꿈이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세종,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전남 지역에서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여줌[9]<br>- 2021 전국 우리말 가꿈이 지역어 지도 제작 |
| | | 한양대학교 국어문화원 | - 경기 우리말 가꿈이 사업 중 우리 말글 사랑, 지역어 보전 등 활동(2021년) |
| | |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 전북 우리말 가꿈이 동아리 활동 지원<br>- 2017~2020년: 공공언어 개선 모둠, 청소년 언어순화 모둠, 지역어 활성화 모둠,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제작 모둠, 시 나들이 모둠<br>- 2021년: 청소년 언어순화 모둠, 지역어 가꿈이 모둠, 시 가꿈이 모둠, 기획·운영 모둠 |
| | |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 - 전남 우리말 가꿈이<br>· 지역어 카드뉴스 제작 및 누리소통망 홍보(2021) |
| | | 강원대학교 | - 강원도 우리말 가꿈이(2015년~): 모둠별 특성화 활동 중 '지역어 보존·홍보 활동' |

| | | | |
|---|---|---|---|
| | | 국어문화원 | – 강원도 지역어의 경우 자연환경과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특색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강원도 고유의 지역어를 발굴하고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더 알릴 수 있는 활동 진행<br>– 지역어와 더불어 지역 언어문화의 산물로 지역의 고전문학/현대문학 부문의 자료,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대중들이 강원도의 언어문화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 | |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 – 경남 우리말 가꿈이(2016~)<br>· 지역어 지도 제작을 계획하여 모둠별로 지역어 수집, 공유(2021) |
| | |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 – 부산 우리말 가꿈이(2015년~)<br>· 우리말 지킴이: 방송·통신 및 공공 언어 개선 활동을 진행<br>· 우리말 알림이: 우리말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신문 및 홍보 영상 제작<br>· 지역어 아낌이: 부산 지역어 보존을 위한 사투리 조사와 홍보물 제작 |
| | |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 – 경북 우리말 가꿈이(2017년~) |
| | |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 충청북도 우리말 가꿈이(2014년~) |
| | |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 – 세종 우리말 가꿈이(2015년~2020)<br>· 공공언어 개선 모둠, 지역어 사랑 모둠, 우리말 알림이(홍보) 모둠, 청소년 언어 순화 모둠 |
| | |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 – 충남 우리말 가꿈이<br>· 충남 지역어 알아보기(천안, 공주, 논산, 보령, 당진)(2021)<br>· 충남 지역어 지도 제작을 위한 자료 조사(2021) |
| | |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 – 대전 우리말 가꿈이(2017~);<br>·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에 충청도 지역어 피드 개시<br>· 지역 방언 누리소통망 홍보 활동(2021) |
| 우리말 풍부화 사업 | 지역어, 토박이말 조사연구 및 진흥 행사 개최 | 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 | – 지역어 보전 사업: 방언사전 전산화(2020-2021년)<br>· 사업목적: 전라남도 지역의 방언 보전을 위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향후 전산 언어 기반의 지역어 연구 및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기여하는 토대 마련<br>· 전남 지역어 사전의 전산 데이터화 및 활용 가능한 사전형 자료 구축<br>· 방언사전 전산 데이터화 결과 보고 및 자료집 1건 |
| | |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 – 2007년 지역 언어 문화 조사 연구를 위한 특강<br>· 지역어의 가치와 교육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표준어 중심의 국어 교육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어 교육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언어 문화 조사 연구 특강<br>· 주제: 방언의 국어 교육적 의의와 방법<br>– 2020년 광주·전남 지역어 발굴 조사 활동, 총 400여 어휘 및 관용, 속담 발굴 |
| | |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 우리말 풍부화 사업(2020년)<br>· 전북 지역어의 멋스러움을 알리고, 지역어의 가치 환기<br>– 온라인 도민인문학 강좌와 우리말 풍부화 사업 추진(2020년)<br>· 지역어 자산의 발굴 및 적극적 활용 위함<br>· 도민 인문학 강좌를 유튜브와 밴드로 서비스함으로써 전북방언, 춘향전, 혼불 같은 전북의 언어문화예술 콘텐츠 소개하고 공유<br>– 전북방언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응원 문구 제작 사업(2020)<br>· 전북 방언의 멋스러움을 알리고 지역어의 의미를 상기하는 계기 마련, 지역어를 매개로 국어문화원 간의 협력사업 가능성 모색 |
| | |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 – 대구 지역어 및 대구 지역의 문화 자료 발굴(2019년)<br>· 대구광역시의 언어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자료 수집<br>· 대구 지역 언어와 80년대 자료를 대비하여 보고서 작성<br>·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집 발간<br>– 대구 지역 언어·문화 사전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2020년) |
| | |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 – 공공언어 개선 사업으로 경남 지역 공공기관의 부름말 실태 조사(2016년)<br>· 경남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남 지역어가 반영된 부름말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집 제작 |

| | | |
|---|---|---|
| | | – 진주지역 언어 문화 자료 수집 사업(2010년)<br>· 미디어의 영향으로 점점 사라져 가는 지역어를 발굴하여 채록하여 지역어와 지역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감 |
| |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 – 울산 지역어 조사 |
| |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 – 말모이 사무국<br>· 말모이 운동: 표준국어대사전에 오르지 않은 순우리말, 정겨운 방언, 젊은 층의 신조어를 온 국민이 함께 모으는 작업<br>– 우리말 풍부화(지역어, 토박이말) (2021년)<br>· 충남 지역 토박이말 중 풀, 나무 이름 등을 토박이말로 정리하여 자료집 제작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br>– 우리말 풍부화(지역어, 토박이말, 순화어)(2020년)<br>· 충남 지역 토박이말 중 농경, 농기구, 농작물 등과 관련된 120개 토박이말 정리하여 자료집 제작 |
| |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 지역어의 특성화<br>· 지역문화를 담고 있는 지역어를 조사, 정리하고 사라지고 있는 지역어를 발굴, 보급하는 사업 진행<br>· 지역 문화유산(고서, 비문, 전설, 민담, 민요 등) 기록, 정리하여 발굴, 보전하고자 함 |
|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 제주어 관련 연구 사업 |
| 자료 발간 |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 『경남 지역어 사용 실태』, 『의령의 언어와 문화』 발간(2019)<br>지역어 보존 사업 진주 지역의 혼례 문화 발간(2013.11) |
| |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 부산 지역어 연구 및 전수 사업 책자 발간(2015년) |
| |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 지역어로 하는 수업 자료 발간 |
| |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지역어의 뿌리를 찾아서” 발간(2005) |
|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제주어 채록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사업(2018, 2019년)<br>『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발간(2019년)<br>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 참여(2018년)<br>제주어 구술자료 총서 발간<br>제주어센터 총서 발간 |
| 지역어 보전 사업 |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 –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는 지역어 전래동화 음원 제작(2015년)(지역어 보존 사업)<br>· 사라져 가는 지역어 CD로 보존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어 쉽게 접하도록 함 |
| |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 – 지역어 보전 사업<br>· 부산시 국어문화 활성화 사업의 장기 목표 중 하나인 2023년 부산말 사전 제작을 위한 학술 연구 자료 조사, 현대 부산말 수집, 시민과의 구술 면담 조사 실시(2020, 2021)<br>· 부산시 지역어를 구사하는 토박이, 사투리 문헌 자료, 관련 전문가 등 조사 |
| |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 – 경북도청과 함께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통국어지킴이단’을 통해 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한 거리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지역어를 조사해보는 활동(2017년) |
| 학술대회 |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 언어학, 국어학, 한국어교육학 등 관련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콜로퀴움에서 ‘의성지역어 이중모음의 실현 양상’ 주제 발표 |
| |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 지역어 관련 학술대회 개최 |
|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2019년 ‘지역어의 현황과 보존 방안’ 학술대회 |
|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제주어와 제주문화 관련 학술대회 개최 |

| | | | |
|---|---|---|---|
| 교육 | | 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 | – 청소년을 위한 지역 방언 이해 강좌(2017년) |
| | |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 – 시민 대상 지역어 이야기 강좌(토크콘서트)<br>· 광주, 전남 지역어의 유래나 어원, 의미 등에 대해 강의 후, 시민들이 강연자가 되어 지역어에 얽힌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해보는 토크콘서트 형식의 이야기 강좌를 진행<br>– 2021년 지역어 이야기 강좌(5회)<br>· 지역 주민 총 76명<br>· 광주, 전남 지역어의 유래나 어원, 의미 등을 강의한 후 시민들이 강연자가 되어 지역어에 얽힌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해보는 형식의 이야기 강좌 진행<br>· 지역민에게 언어문화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말이 풍부해지는 기회 마련 |
| | |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 – 다문화 가정 경남 지역어 교실 운영(지역민 국어 능력 향상 사업)(2017.11) |
| | |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 – 국어책임관 및 공무원을 위한 국어 교육 중 '부산의 공공언어와 지역어' 강의 개최(2021년 12월 23일)<br>– 올바른 공문서 쓰기 및 지역어를 통한 문화콘텐츠 발굴 방안(2018년)<br>– 부산을 밝히는 지역어와 공공언어(2020년) |
| |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 청소년, 이주민, 결혼이민자, 제주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제주어 교육 운영;<br>· 제주 이주민을 위한 '2021 수월한 제주어 강좌'<br>– 제주어 교육 사업<br>· 문화관광해설사 등 전문해설사 제주어 교육(2019년~) |
| 지역어 관련 대회 | 사투리 말하기 대회 |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 – 전라도 사투리 겨루기 대회(2006년~2013년)<br>· 전라도 지역의 생활어인 전라도 사투리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국어 문화의 보고인 사투리의 보급을 위해 '전라도 사투리 겨루기 대회' 개최<br>· 시/소설 등 문학 작품에 나오는 사투리 및 생활 어휘 선다형 필기 시험(2006년)<br>· 전라도 사투리 및 전통 문화 어휘 골든벨 방식의 문제 풀이(2007년)<br>· 문학 작품(최명희 〈혼불〉, 조정래 〈태백산맥〉)에 나오는 사투리 및 생활 어휘 선다형 필기 시험(2008년)<br>· 문학 작품에 나오는 사투리 및 생활 어휘 맞히기, 사투리로 가사 바꿔 부르기(2009년)<br>· 한글날 기념 대학생 우리말 사투리 겨루기(2010년)<br>· 전남대사대부중 학생들과 함께 우리말 사투리 문제 풀이(2013년)<br>– 광주전남 사투리 말하기 대회(광주시민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2015년~2020년)<br>· 우리말과 우리글에 관한 알기 쉽고 실용적인 지식 문제, 우리 지역의 말(전라도 사투리)과 문화 관련 지식을 묻는 문제 출제(2015~2019년)<br>· 자신의 고향 이름(기타 지명)에 대한 유래를 전라도 사투리로 소개하는 영상 제작(2020년)<br>– 2019년 사투리 동화 구연 대회 |
| | |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 – 사투리 봄내기 대회(2014~2015)<br>– 부산 사투리 노래자랑 대회(2016~2020)<br>– 방구석 부산 사투리 노래자랑 대회(2021~2022) |
| |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 제주어 말하기 대회<br>· 2021 제주어 콘텐츠 경연 대회<br>· 2021 온라인 제주어 말하기 대회 |
| | 사투리 손글씨 |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 우리말 사투리 손글씨 공모전(2017~2019년) |
| | |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 – '아름다운 지역어 멋글씨 공모전' 개최(2018년~)<br>· 손글씨로 직접 쓴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말 부산 사투리' 선정 |
| | 기타 대회 |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잔치(2022)<br>· 한글 맞춤법, 고유어, 지역어, 순화어, 전북 역사 및 인물 등 ox형과 단답형 문제 |
| | |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 – 경남 지역어(경남방언)로 된 상표, 상호, 메뉴판 등의 사진 속에 아름답게 자리잡고 있는 한글의 모습을 담은 '아름다운 한글 사진' 공모(2014.9) |

| | | | |
|---|---|---|---|
| | | | - 경상 국어 경시대회(2018년) |
| 교사 교육 | 교사 좌담회 |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 - 2013년 우리말 우리글 교육 방안에 관한 국어 교사 좌담회<br>· 광주 지역의 국어 교사들과 함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한 우리말 우리글 교육 방안에 관한 좌담회 개최<br>· 주제: 지역어와 지역 문화 알기 교육, 논술문 쓰기 교육 |
| | 교사 학술 연찬회 |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 - 2007년 광주 전남 국어 교사 하계 학술 연찬회<br>· 광주 전남 지역의 국어 교사들과 함께 우리말 우리글의 발전 보급과 국어 교사들의 전문 능력의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하계 학술 연찬회<br>· 주제: 국어 교육에서의 지역어 교육 방법 |
| 기타 지역어 관련 행사 | |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 - 2011년 한글날과 전남 민속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전남 지역민과 전 국민이 함께하는, 전라도 대표말 가려뽑기<br>· 전라도말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지역어(전라도말)를 사용하는 전라도 사람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며, 전라도말의 위상을 드높여 전라도말의 보존 및 전승과 국어와 국어문화의 발전에 기여<br>· 전라도말을 대표할 수 있는 말과 사유를 추천<br>- 2020년 광주시민 우리말 겨루기 행사<br>·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우리말과 지역어 실력 봄내기 |
| 지도 제작 | | 한글문화연대 국어문화원 | 서울 토박이말 땅 이름 지도 제작(2019년) |
| | |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 전국 지역어 지도 소책자 및 포스터 발간(전국 우리말 가꿈이 협업 활동)(2021년)<br>전국 국어문화원에 배포 |
| 사전 제작 | |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전라북도 방언사전 발간(2017년, 2019년) |
| | | 목포대학교 국어문화원 | 전남 무안 방언사전 편찬(2015년) |



9)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 소개자료(2022.9.23.)

## 3.5. 지자체 주관 연구소

### (1)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설립 시기

- 2011년 8월 12일 설립

■ 설립 목적

- 제주도의 인문 · 사회 · 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와 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

■ 조직 구조

- 제주어 연구 및 사업 수행 전담 인력 5명 배치.
- 제주어 연구, 제주어 연구지원, 제주어 교육,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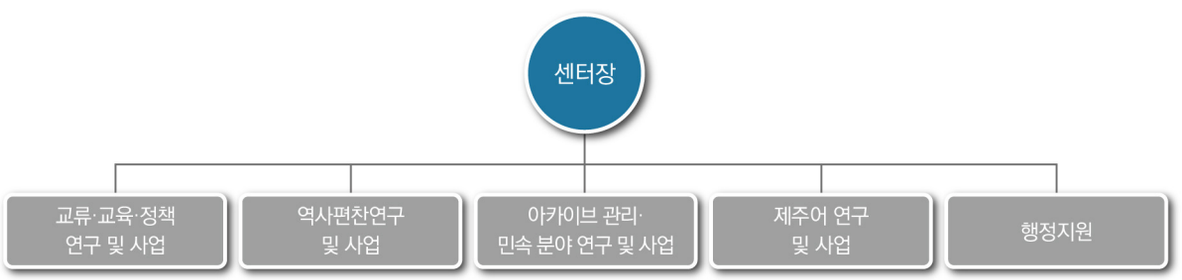


[그림 2-13]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조직도

■ 주요 사업

〈표 2-18〉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주요 사업

| 구분 | 사업내용 |
|---|---|
| 세미나 · 포럼 | '제주어 표기법,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 세미나(2012) |
| |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어의 새로운 인식과 보전방안' 세미나(2013) |
| |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표기법 해설' 세미나 개최(2014) |
| | '방언 보전 활동의 전국 동향 및 전망'세미나 개최(2014) |
| | 〈제주어 포럼 '눌'-페우곡, ᄂᆞ누곡, 통ᄒᆞ곡!〉개최 및 행사 기록집 발간(2021) |
| | '제주어 포럼 '눌': 영화드라마, 제주어를 ᄉᆞᆷ지다' (2022) |
| 연구 | 『제2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2013~2017) 제주어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2012) |

| | |
|---|---|
| | '옥외광고물 상호의 제주어 활용 실태 조사'를 통해 상호에서 제주어 활용 실태와 향후 과제를 제시(2015) |
| | '제주어 표기법' 자모의 실제 발음과 음성 분석 연구 보고서 발간(2015) |
| | 〈제주어 교육 실태 조사〉(2021) |
| 발간 | 『제주어와 영어로 ᄀᆞᆫ는 제주이야기』발간(2012)<br>· 다문화가족, 외국인, 도내외인 등이 제주어에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적이고 교육적인 기초 회화 자료 활용에 기여 |
| | 제주어 표기의 지침서 『제주어 표기법 해설』발간(2014) |
| | 『제주방언 연구의 어제와 내일』발간(2014)<br>· 100년 간(1913∽2014) 제주방언 연구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정리 |
| | 2020 제주어종합상담실 상담 자료집《몰마농고장은 수선화마씨게》 발간(2021) |
| | 제주어 포럼 및 기억행사 '제주어를 눌다' 지상 중계 자료집 발간(2021) |
| | 쉽게 풀어 쓴 제주어 개론서《제주어 길라잡이》 발간(2021) |
| | 2021 제주어종합상담실 상담 자료집《ᄇᆞ름도레기가 바람개비렌》 발간(2022) |
| | 『맛 좋은 제주어』발간(2022); 제주 음식과 관련된 제주어 구술 자료를 활용해 제주어와 제주 문화의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 |
| 법률 제정 관련 | 제주어 표기법 개정(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계와 지역사회의 협의를 통해 표기법 제정 논의 추진(2012)<br>제주어 사용의 활성화와 제주어 표기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주어를 표기하는 데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주어 표기법 표준안' 마련 및 책자 배부(2013) |
| 강좌 | '제주 문화에 녹아 있는 속담' 강좌(2015) |
| 공모전 | '제주어(語) 보존, 제주어(語) 찾기 공모전'(2012~ ) |



### (2)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 설립 시기

- 1992년 8월 18일 개원.

■ 설립 목적

- 부산학의 연구를 통하여 부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틀을 마련하고 부산 사람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궁극적으로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금의 부산에 대한 심화된 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
- 부산지역의 정체성을 일구어내고 더불어 부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부산지역 내 현실적인 역동성을 접목한 역사, 문화, 예술, 전통과 지정학적 특수성 등에 대한 학문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 수행.

■ 지역어 관련 사업

- 2022년도 기획총서 「사투리, 부산의 마음을 전하다」 발간 등 연구 사업

■ 조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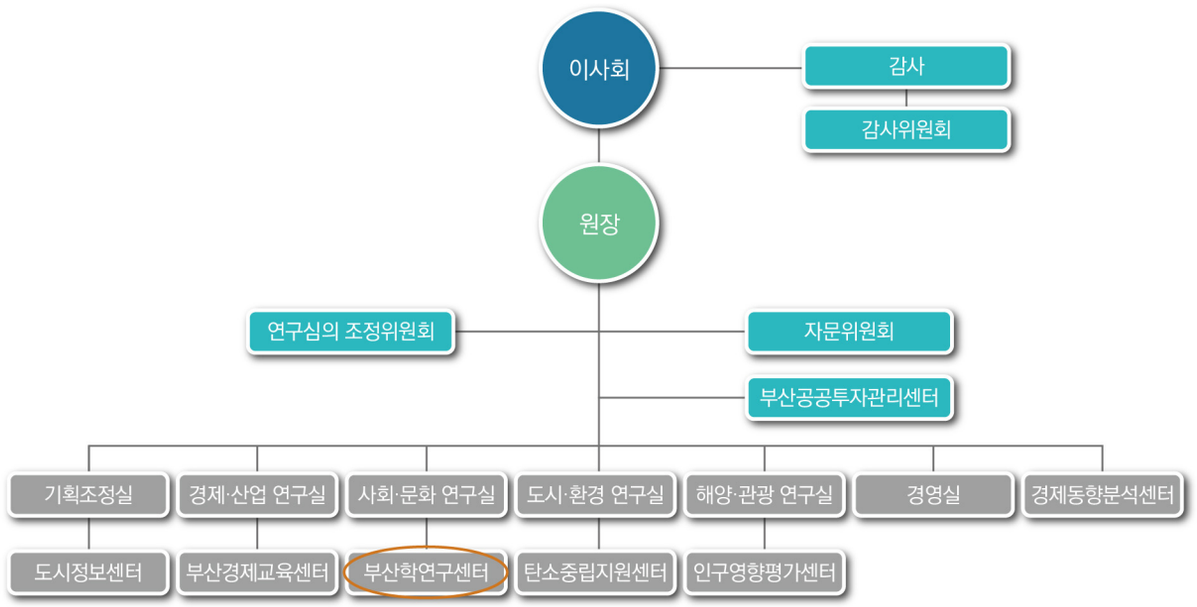


[그림 2-14]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조직도





### (3) 강원 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 설립 시기

- 2002년 강원연구원 부설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후 2010년 폐지.
- 2017년 10월 26일 강원 연구원내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 설립 목적

- 강원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강원도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원의 뿌리 기반 조성 강화.
- 강원학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에서의 관련 연구를 촉진하며, 도내의 다양한 지역학 연구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강원학 연구의 중추기관 역할 담당.
- 강원학 연구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그 결과를 도민과 향유하여 도정의 든든한 뿌리찾기 정책으로 자리매김 유도.
- 강원학을 확고히 정립하고 강원도의 자연 및 문화자원의 세계화를 추진하여 강원도의 가치 극대화 도모.

■ 조직 구조

[그림 2-15]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조직도

■ 지역어 관련 사업

- 2022년도 「강원학지식총서」 “강원의 사투리” 연구과제 공모 사업.
- 강원도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공모전 〈강원도 사투리 영상공모전〉개최(2022).

## 3.6. 대학 및 학회

### (1) 전남대 국문학과 BK교육연구프로그램

〈표 2-19〉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BK교육연구프로그램

| 단계 | | 사업 내용 |
|---|---|---|
| BK21 PLUS<br>지역어기반<br>문화가치창출<br>인재양성사업단 | 사업기간 | 2013년~2020년 |
| | 사업개요 | - 7년간 46억원 지원(교육부 사업)<br>-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교육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 |
| | 사업결과 | - 해외 학술교류협정(MOU) 23건<br>- 해외 한국학 대학 및 기관 학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5대륙 24개국 58건 이상<br>- 해외석학초청강연회 32회<br>- 해외단기연수 14회<br>- 해외공동연구 제안 34건·해외 공동연구 학술논문 게재 12건<br>- 국제학술포럼·전국대학원생포럼 공동개최<br>- 신진연구인력 국립대 교수 임용 4명<br>- 해외유학생 참여대학원생의 자국 교수 진출 9명<br>- 국제학술대회 7회<br>- 전국학술대회 7회<br>- 학술총서 12권, 학술저서 130여 권, 학술논문 290여 편<br>- 전문가초청강연회 43회, 참여교수특강 21회, 콜로키움 48회 등 |
| BK21 FOUR<br>지역어문학 기반<br>창의융합 미래인재<br>양성 교육연구단 | 사업기간 | 2020년~2028년 |
| | 사업개요 | - 다중심 사회의 가치와 융합을 추구하는 지역어문학 기반 미래인재 양성<br>- 국제학술대회; 2021년 주제 '다중심 사회의 가치와 지역어문학의 창조적 미래 모색' |
| | 조직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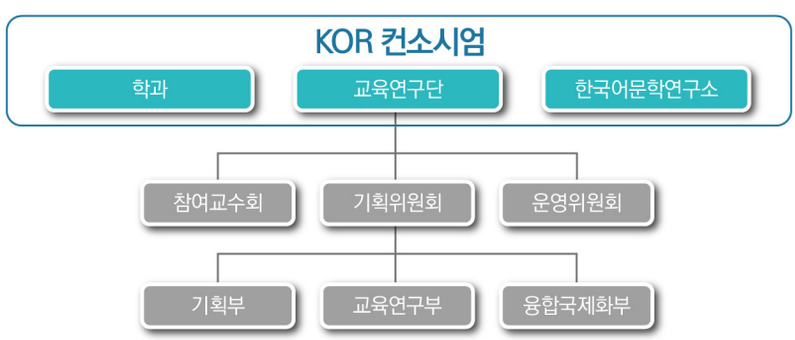 |

## (2) 계명대학교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표 2-20〉 계명대학교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 기관 | 사업 내용 | |
|---|---|---|
| 계명대학교 대구경북사회혁신 지원단 | 설립시기 | 2019.11.출범 |
| | 설립목적 | 대학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해 지역의 혁신을 주도하고, 지역과 더불어 대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상생협력 플랫폼으로서 설립 |
| | 조직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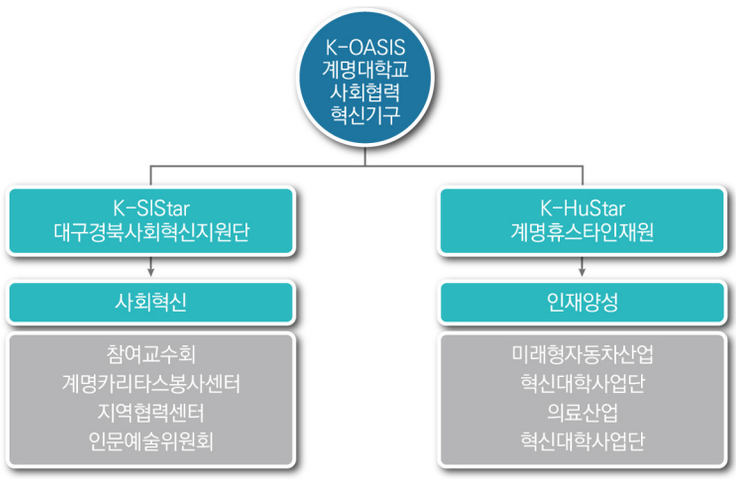 |
| | 지역어 관련 사업 | - 대구·경북이 사랑한 우리말 프로젝트(2020)<br>·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 계명대학교, 매일신문사 공동 주관 '사투리 UCC 백일장'(2020년~)<br>· 지역 언어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콘텐츠산업에서의 지역 언어 활용 및 콘텐츠 개발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br>· 대구·경북에 산재하고 있는 사투리 특집 기고 및 기사 통해 사투리를 개발하고 정리하여 사투리 관련 특집기사 총 24회 기고<br>· 지역 특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촉진 및 활동을 비롯한 향토문화를 활용한 지역 발전전략 수립<br>- 대구·경북 지역어 창작 독려 사업(2020)<br>· 매일신문, 문예창작학과, 국어국문학과<br>· 지역의 사투리를 활용한 문학작품을 공모해 시상하는 '대구·경북 지역어 문학상' 대회 개최<br>· 유튜브 채널에 '대구·경북 사투리 짤 경연대회' 개최 |

## (3) 한국방언학회

■ 설립 시기

- 2004년 창립

■ 설립 목적

- 방언(지역어)을 학술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연구 결과물을 보급함으로써 언어·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 분야

- 전국학술대회 연 1회 개최: 2020년 주제 '언어 및 방언 접촉', 2021년 주제 '문헌 속의 방언', 2022년 주제 '방언과 사전'
- 학술지 『방언학』 연 2회 발간: 방언을 대상으로 한 음운론(음성학), 문법론, 의미론(어휘론) 관련 주제, 방언지리학, 방언구획론, 방언분화론, 비교방언론, 대조방언론, 접촉방언론 관련 주제 등.

## 3.7. 민간연구소 및 단체

〈표 2-21〉 민간연구소 및 단체

| 권역 | 기관 | 기관 소개 | |
|---|---|---|---|
| 전국 | 탯말두레 | 설립시기 | - |
| | | 설립목적 | 사투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네티즌 모임 |
| | | 지역어 관련 주요활동 | - 2006년 "지역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채 서울말만 사용토록 한 현행 정책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표준어 정책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 2009년 합헌 결정<br>- 박원석 외, ≪전라도 우리 탯말≫, 소금나무, 2006<br>- 윤명희 외, ≪경상도 우리 탯말≫, 소금나무, 2006 |
| 강원권 | 사단법인 강릉말 사투리 보존회 | 설립시기 | 1994년 설립 |
| | | 설립목적 | 사라져가는 강릉사투리를 체계적으로 발굴 및 정리 보존과 아울러 지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부여하고, 타 지역민들에게는 강릉사투리를 통해 강릉문화를 폭넓게 이해함을 목적으로 설립 |
| | | 지역어 관련 주요활동 | - 강릉사투리경연대회(1994~)<br>- 강릉사투리 홍보 이벤트 '놀람절'행사 개최(2017~2022년까지 4회 개최)<br>- 강릉말(사투리) 전승·보존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연계활동인 '강릉 사투리 도전 골든벨 행사'(2019)<br>- 강릉사투리 학술행사 추진<br>- 강릉사투리 오페라 공연 5회 공연<br>- 강릉사투리 토크쇼<br>- 강릉사투리 인형극 '명주가' 공연(2012)<br>- 강릉사투리'홍길동 인형극'제작(2014)<br>- 강릉사투리 연극 '홍장야우'(2011) |
| 전라권 | 남원 문화원 | 설립시기 | 1964년 개원 |
| | | 설립목적 | 남원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하여 남원 지역 향토 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 |
| | | 지역어 관련 주요활동 | - 제1회 남원사랑 사투리 글짓기 공모(2005.9), 수상작 모은 자료집인 ≪시방 나먼 말이 웨 필요흐디야!≫ 발간 |
| | 전라도 닷컴 | 설립시기 | 2000년 설립 |
| | | 설립목적 | 전라도의 자연과 문화, 지역어, 사람에 관한 취재 기사 |
| | | 지역어 관련 주요활동 | - 2000년에는 웹진 잡지, 2002년부터 종이 잡지로 발행하여 2022년 11월 기준 통권 247호까지 발행.<br>- 광주역사민속박물관과 함께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 개최(2011년~) |
| 경상권 | 사단법인 | 설립시기 | 2012년 7월 창립 |

| | | | |
|---|---|---|---|
| | 경남방언 연구 보존회 | 설립목적 | 경남 지역의 언어인 경남방언을 체계적으로 수집 · 연구 · 보존하는 것을 목적 |
| | | 지역어 관련 주요활동 | - 사투리 한마당 개최(2013)<br>- 경남방언연구보존회 편, ≪경남 방언 사전≫, 경상남도, 2017.3. |
| | 문경 사투리 보존회 | 설립시기 | 2015년 11월 창립 |
| | | 설립목적 | - |
| | | 지역어 관련 주요활동 | - 2015~2016년 '문경 사투리 경진대회' 주최<br>- 2017년 문경시 고모산성 일대에서 '사투리 스토리 보따리 아리랑 체험장' 운영 |
| | 부산 사투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개칭 부산사투리보존협회) | 설립시기 | 2003년 설립 |
| | | 설립목적 | |
| | | 지역어 관련 주요활동 | - 부산에서 활동하는 문인과 시민 등 120여 명으로 시작<br>- 부산사투리 시 낭송대회(2009~2017) 주최<br>- 안태봉, ≪부산 사투리 모음집≫, 삼아, 2000.11.<br>- 안태봉, ≪부산 사투리 사전≫, 삼아, 2003.6.<br>- 안태봉, ≪부산 사투리 사전≫ 증보판, 삼아, 2013.2.<br>- 안태봉, ≪사투리 이바구≫, 삼아, 2015. |
| | 울산 사투리 보존회 | 설립시기 | 2020년 설립 |
| | | 설립목적 | 울산 사투리가 점점 잊히는 걸 안타까워한 개인들이 만든 순수 민간단체 |
| | | 지역어 관련 주요활동 | - 『울산 옛말』발간(2019년) |
| 제주권 | 제주어 보전회 | 설립시기 | 2008년 설립 |
| | | 설립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에 따라 제주지역의 역사적 문화를 계승시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 |
| | | 지역어 관련 주요활동 | - 제주어 골을락 대회(2009~)<br>- 제주어의 이해와 표현 전문과정 개설(2014-2016)<br>- 제주어 홍보 매거진 '덩드렁마께' 발간<br>- 제주어 선생 육성을 위한 제주어 기본교육과정(2009~) |
| | 제주어연구소 | 설립시기 | 2016년 설립 |
| | | 설립목적 | 제주어 보전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다른 지역어의 보전과 연구에 힘을 보태어 국어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
| | | 지역어 관련 주요활동 | - 제주어연구소 누리집 개통, ≪아름다운 제주어≫ 연재(2017)<br>- '제주어학교'를 통해 제주어 회화교육 진행(2017~)<br>- 제주어 구술 강독회 진행(2017~)<br>- 제주어 문양 개발 사업(2017) |
| | 제주 방언 연구회 | 설립시기 | 1991년 창립, 2009년 재창립 |
| | | 설립목적 | - |
| | | 지역어 관련 주요활동 | - 1991년~1993년까지 10회의 연구발표회와 1회의 초청 학술 강연회<br>- '제주어 표기법'을 마련하고 『제주어사전』발간을 위한 어휘 조사가 이루어짐<br>- 『제주어사전』발간 이후 활동 없다 2009년 2월 새롭게 창립 |

# 제4절
# 지역 언어문화 연구

## 4.1. 지역어 연구 분석 대상

■ 최근 5년간 지역어 연구(방언 연구)[10]의 관련 학술지 현황을 분석함.

-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학술지의 방언 연구 현황을 분석함.
- 국어학과 언어학 전문 학술지 중에 방언 연구를 중점적으로 싣고 있는 ≪방언학≫을 비롯하여 방언 연구의 논문이 비교적 많이 수록된 학술지인 ≪국어학≫과 ≪사회언어학≫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함.
- 최근 5년간 방언 연구논문이 수록된 현황을 파악해보면 ≪방언학≫에는 92편, ≪국어학≫에는 19편, ≪사회언어학≫에는 19편이 게재되어 총 130여 편이 수록됨.
- 5년간 방언 연구논문의 연도별 산출 현황은 2017년 23편, 2018년 24편, 2019년 30편, 2020년 30편, 2021년 23편으로 매년 20편 이상 30편 이내 연구를 생산하고 있음.
- 관련 학술단체의 연구 현황에 대하여 그 특징을 분석함.
- 2017년에서 2021년까지 한국방언학회의 5년간 기획 주제와 원로학자의 특강 주제를 통해 방언 연구의 흐름과 관심을 분석함.

## 4.2. 지역어 연구 현황

■ 연구 영역(주제)별 분류 및 설명

- 주요한 연구 영역(주제)과 게재율은 지역 방언(38%) 〉 사회 방언(14%) 〉 방언학사(9%) 〉 방언 어원론(8%) 〉 방언 접촉(7%) 〉 방언 태도(6%), 방언 분화(6%) 〉 방언연구방법론(5%) 〉 방언 문화(4%) 〉 방언 구획(2%) 〉 방언 정책(1%) 순으로 연구 현황이 파악됨.
- 지역어 연구의 영역(주제)은 지역 방언 연구에 편중되어 있으며 사회 방언 연구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10) 지역어 연구와 방언 연구는 동일한 용어로 사용함.

생산되고 있음. 지역 방언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연구로의 확장이 필요함. 가령, 지역 방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방언론이나 방언분화, 대비방언론 등의 연구로 확장할 수 있어야 함. 지역 방언은 꾸준하게 조사되고 있기에 기존 연구에 확장된 연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는 방언학사, 방언 어원론, 방언 접촉, 방언 태도, 방언 분화, 방언연구방법론 영역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임.
- 방언 문화, 방언 구획, 방언 정책 영역은 다소 연구 결과가 미흡하여 이런 영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특히 방언 정책과 같은 연구 영역은 언어정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3개 수록지의 연도별 연구 영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표 2-22〉 3개 수록지 연도별 연구영역

| 연구 영역(주제)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계 |
|---|---|---|---|---|---|---|
| 지역 방언 | 8 | 10 | 11 | 6 | 14 | 49(38%) |
| 방언학사 | | 3 | 6 | 3 | | 12(9%) |
| 방언 어원론 | 2 | 3 | 3 | 2 | | 10(8%) |
| 사회 방언 | 5 | 3 | 2 | 7 | 1 | 18(14%) |
| 방언 문화 | | 1 | 1 | 1 | 2 | 5(4%) |
| 방언 분화 | | 1 | 4 | 2 | 1 | 8(6%) |
| 방언 구획 | | | 2 | | 1 | 3(2%) |
| 방언 접촉 | | | | 6 | 3 | 9(7%) |
| 방언 태도 | 1 | 2 | 1 | 3 | 1 | 8(6%) |
| 방언연구방법론 | 6 | 1 | | | | 7(5%) |
| 방언 정책 | 1 | | | | | 1(1%) |
| 계 | 23 | 24 | 30 | 30 | 23 | 130(100%) |

■ 연구 층위별 분류 및 설명

- 방언 연구는 결과적으로 언어문화 연구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연구를 통해 방언 문화의 종합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함.
- 방언의 음운 연구뿐만 아니라 방언의 형태, 통사 연구 나아가 어휘, 의미, 담화 연구까지 골고루 연구가 쌓여야 방언학 전체의 발전이 가능함.
- 방언 연구의 층위별 분석내용을 보면 음운(33%), 어휘(17%), 형태(2%), 통사(9%), 의미(3%), 담화(3%)를 점유하고 있고, 특수한 유형으로는 복합(8%), 총론(12%), 기타(14%)가 있음.
- 분석 결과 방언 연구 층위는 음운으로 너무 치우쳐 있음. 이는 역사적으로 방언학 연구가 음운론적 기반에 두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임. 방언학 연구가 발전하면서 문법적인 측면, 의미적인 측면, 어휘적인 측면 등에서도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짐. 특히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 위에

서 이루어지는 방언 분석 연구도 필요함.

- 3개 수록지의 연구 층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표 2-23〉 3개 수록지 연도별 연구 층위

| 연구층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계 |
|---|---|---|---|---|---|---|
| 음운 | 5 | 9 | 7 | 11 | 11 | 43(33%) |
| 어휘 | 3 | 4 | 7 | 5 | 3 | 22(17%) |
| 통사 | 2 | 4 | 2 | 1 | 3 | 12(9%) |
| 형태 | | | 2 | | | 2(2%) |
| 의미 | | 1 | 1 | 2 | | 4(3%) |
| 담화 | 1 | 1 | 1 | 1 | | 4(3%) |
| 복합 | 2 | 1 | 2 | 1 | 4 | 10(8%) |
| 총론 | 2 | 1 | 7 | 5 | | 15(12%) |
| 기타 | 8 | 3 | 1 | 4 | 2 | 18(14%) |
| 계 | 23 | 24 | 30 | 30 | 23 | 130(100%) |

■ 대상 지역별(대방언권별) 분류 및 설명

- 연구 대상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동남(19%), 중부(12%), 제주(8%), 동북(9%), 서남(8%), 서북(5%) 순으로 점유하고 있음.
- 단일 연구 대상 지역 연구로는 동남 방언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부(경기, 충청, 강원) 지역의 방언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나머지 제주 방언, 서남 방언, 북한 지역어에 해당하는 동북 방언과 서북 방언 등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연구되고 있음.
- 방언 연구의 보편적 특성상 2개 지역 이상을 대상으로 한 복합(5%) 연구도 이루어지며, 특히 전 지역(20%)을 대상으로 연구한 실적은 매우 많은 편임.
- 해외지역 연구(10%)로는 중국 조선족 거주지의 방언인 연변 방언, 일본 방언, 미국 방언, 프랑스 방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음.
- 연구 자료의 측면에서 대상 지역이 편중되어 있음. 현재, 단일 지역 연구로는 동남 방언과 중부 방언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주, 서남, 서북, 동북 등의 연구를 증진하여 연구 자료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 또한 방언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하여 균형이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요함.
- 사회 방언 연구의 경우 도시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기타로 분류했고, 특수계층의 언어도 많이 연구되고 있음.
- 3개 수록지의 연구 대상 지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표 2-24〉 대상지역별 연구

| 대상 지역 (대방언권)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계 |
|---|---|---|---|---|---|---|
| 서북 | 1 | 1 | 3 | 1 | 1 | 7(5%) |
| 동북 | 3 | 2 | 3 | 2 | 2 | 12(9%) |
| 중부 | 1 | 2 | 4 | 3 | 5 | 15(12%) |
| 서남 | . | . | 5 | 3 | 2 | 10(8%) |
| 동남 | 4 | 7 | 5 | 4 | 5 | 25(19%) |
| 제주 | 1 | 1 | 3 | 4 | 1 | 10(8%) |
| 복합 | . | . | 1 | 5 | 1 | 7(5%) |
| 전지역 | 6 | 7 | 4 | 6 | 3 | 26(20%) |
| 해외 | 6 | 3 | 1 | 1 | 2 | 13(10%) |
| 기타 | 1 | 1 | 1 | 1 | 1 | 5(4%) |
| 계 | 23 | 24 | 30 | 30 | 23 | 130(100%) |

■ 연구 유형별 분류 및 설명

- 방언 연구논문은 각 지역의 살아있는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기층 언어 자료를 보전하는 성격을 가지게 됨. 5년간 연구논문은 대략 130편이 게재되어 있는데, 매년 20편 내외로 생산될 만큼 방언 연구자들의 지역 방언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음. 또한 연구사에 대한 논문도 매년 3편 정도씩 생산되고 있음.
- 논문의 바탕이 된 방언 자료 또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음. 특히 새롭게 발굴한 방언 자료를 보고하는 박경래·이기갑·강영봉의 '새로 발굴한 방언'은 ≪방언학≫에 꾸준히 수록되고 있으며, 소멸 위기에 처한 한반도 방언의 발굴에 기여하고 있음.
- 자신의 지역 방언을 집대성한 방언사전을 편찬하는 일은 방언 연구자의 숙원인데, 그동안 여러 지역의 방언사전이 계속해서 편찬되고 있음. 특히 방언 연구 학술지는 지역에서 편찬된 방언사전을 학계에 소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수행함.
- ≪방언학≫ 27호의 이진호의 '경남방언 사전', 박경래의 '한국의 언어민속지: 충청남북도편', ≪방언학≫ 29호 김경표의 '전남 무안 지방의 방언사전', ≪방언학≫ 31호의 김정태의 '예산말 사전' 등 방언사전과 관련된 소개와 연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처럼 각 지역의 사전 발간과 그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소개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서는 볼 수 없는 ≪방언학≫의 특징이기도 함.
- ≪방언학≫ 25호에는 국립국어원이 주도한 방언 관련 사업내용을 소개한 몇몇 연구가 수록되었는데, 특히 2007년에서 2013년까지 이루어진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을 소개한 김순자의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 조사 질문지〉 개발 의의와 과제', 박원호의 '어촌 생활 기초어휘 자료 정리 방법 분석-국립국어원 민족생활어 조사를 중심으로', 김지숙의 '민족생활어 어촌 생활어 성과와 활용 방안-3년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등은 국가 주도 방언 관련 사업의 전개 의의와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음.
- 방언 연구자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책들을 소개하는 서평도 방언 연구 현황의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음. ≪방언학≫ 25호에 박형진의 '서평: 안길남(2005)《낙동강 하류 가락 지역어 조사연구》', ≪방언학≫ 27

호에 박경래의 '"한국의 언어 민속지: 충청남북도 편"에 대한 서평'과 이진호의 '〈경남방언 사전〉에 대하여', ≪방언학≫ 31호에 김정태의 '≪예산말사전≫(1권~4권)에 대하여', ≪방언학≫ 33호에 안미애의 '말모이 편찬 위원회(2020), ≪말모이, 내가 사랑한 우리말 그리고 다시 쓰는 우리말 사전≫'이 수록됨.

- 3개 수록지의 연도별 연구유형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표 2-25〉 연구 유형별 분류

| 연구유형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계 |
|---|---|---|---|---|---|---|
| 연구논문 | 14 | 19 | 24 | 26 | 20 | 103 |
| 연구사 | 3 | 2 | 5 | 2 | 1 | 13 |
| 방언자료 | 1 | 1 | 1 | 1 | 1 | 5 |
| 사업내용 | 3 | · | · | · | · | 3 |
| 사전 | 1 | · | · | · | · | 1 |
| 서평 | 1 | 2 | · | 1 | 1 | 5 |
| 계 | 23 | 24 | 30 | 30 | 23 | 130 |

■ 5개년 방언 연구 종합 분석표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개 학술지 방언 중심 연구논문들의 유형별, 연구 층위별, 대상 방언 지역별과 주제별로 종합 분류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2-26〉 5개년 방언 연구 종합 분석표

| 년도 | 학술지 | 호 | 저자 | 논문명 | 논문유형 | 연구층위 | 대상방언 | 주제 |
|---|---|---|---|---|---|---|---|---|
| 2017 | 방언학 | 25 | 김순자 |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 조사 질문지〉 개발 의의와 과제 | 사업내용 | 기타 | 전지역 | 방언연구 방법론 |
| 2017 | 방언학 | 25 | 박원호 | 어촌 생활 기초어휘 자료 정리 방법 분석 -국립국어원 '민족생활어 조사'를 중심으로- | 사업내용 | 기타 | 전지역 | 방언연구 방법론 |
| 2017 | 방언학 | 25 | 김지숙 | 민족생활어 어촌 생활어 성과와 활용 방안 -3년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 사업내용 | 기타 | 전지역 | 방언연구 방법론 |
| 2017 | 방언학 | 25 | 임석규 | 복수기저형과 그 패러다임의 강한 압박 -'보-(見)', '주-(與)' 성조 패턴과 관련하여- | 연구논문 | 음운 | 동남 | 지역 방언 |
| 2017 | 방언학 | 25 | 조항범 | 함북 방언 '모고지설', '아치설', '한설'의 어원에 대하여 | 연구논문 | 어휘 | 동북 | 어원 |
| 2017 | 방언학 | 25 | 박형진 | 서평: 안길남(2005),《낙동강 하류 가락 지역어 조사연구》 | 서평 | 기타 | 동남 | 지역 방언 |
| 2017 | 방언학 | 25 | 박경래, 이기갑, 강영봉 | 새로 발굴한 방언(16) | 방언자료 | 어휘 | 전지역 | 지역 방언 |
| 2017 | 방언학 | 25 | 양민호 | 말의 사회적 전파와 방언 구획 형성 | 연구논문 | 기타 | 해외 (일본) | 사회방언 |

| | | | | | | | | |
|---|---|---|---|---|---|---|---|---|
| 2017 | 방언학 | 26 | 양민호 | 일본의 방언 연구 동향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 연구사 | 기타 | 해외 (일본) | 방언연구 방법론 |
| 2017 | 방언학 | 26 | 소신애 | 미국의 방언 연구 성과와 방법론 | 연구사 | 기타 | 해외 (미국) | 방언연구 방법론 |
| 2017 | 방언학 | 26 | 선효숙 |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 그 특성과 사회적 운동 및 언어정책 동향 | 연구사 | 기타 | 해외 (프랑스) | 방언 정책 |
| 2017 | 방언학 | 26 | 곽충구 | 육진방언의 종결어미와 청자높임법(2) -중국 조선족자치주 육진방언의 청유법과 명령법- | 연구논문 | 통사 | 동북 | 지역 방언 |
| 2017 | 방언학 | 26 | 정인호 | 'ㄷ'불규칙용언의 방언학적 고찰 | 연구논문 | 음운 | 전지역 | 지역 방언 |
| 2017 | 방언학 | 26 | 김순희 | 중국 조선족학교 중학생의 언어 사용 양상 연구 | 연구논문 | 어휘 | 해외 (중국) | 사회방언 |
| 2017 | 방언학 | 26 | 김정대 | 경남방언과 방언사전 | 사전 | 총론 | 동남 | 지역 방언 |
| 2017 | 방언학 | 26 | 김지홍 | 제주 방언의 비-전형적 종결어미 체계에 대하여 | 연구논문 | 통사 | 제주 | 지역 방언 |
| 2017 | 사회언어학 | 25(1) | 김덕호 | 방언 분포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 방안 연구 1 : 지리언어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 | 총론 | 전지역 | 방언연구 방법론 |
| 2017 | 사회언어학 | 25(3) | 이소영 | Social and stylistic variation in vowel raising in Seoul Korean | 연구논문 | 음운 | 중부 | 사회방언 |
| 2017 | 사회언어학 | 25(3) | 전혜영, 오선혜 | 취재 기자의 언어사용 특징 | 연구논문 | 어휘, 담화 | 기타 (직업어) | 사회방언 |
| 2017 | 사회언어학 | 25(4) | 박경래 | 중국 조선족의 언어 정체성 변화 양상과 언어 전환 | 연구논문 | 담화 | 해외 (연변) | 방언태도 |
| 2017 | 사회언어학 | 25(4) | 정성희, 신하영 | 북한 뉴스의 어두 /ㄹ/과 /ㄴ/의 발음 실현 양상과 언어 정책과의 상관성 연구 | 연구논문 | 음운 | 서북 | 사회방언 |
| 2017 | 국어학 | 84 | 곽충구 | 동북방언에 잔존한 만주퉁구스어와 몽골어 차용어 | 연구논문 | 음운, 어휘 | 동북 | 어원 |
| 2017 | 국어학 | 84 | 김한별 | 안동 지역 반촌어의 음운 변화 -후기근대 문헌자료와 현대 음성자료 간의 실재시간 연구- | 연구논문 | 음운 | 동남 | 지역 방언 |
| 2018 | 방언학 | 27 | 박경래 | "한국의 언어 민속지: 충청남북도 편"에 대한 서평 | 서평 | 기타 | 중부 | 언어문화 |
| 2018 | 방언학 | 27 | 박경래, 이기갑, 강영봉 | 새로 발굴한 방언(17) | 방언자료 | 어휘 | 전지역 | 지역 방언 |
| 2018 | 방언학 | 27 | 김덕호 | 방언 분포의 변화에 대한 사회방언학적 연구 | 연구논문 | 음운 | 전지역 | 사회방언 |
| 2018 | 방언학 | 27 | 김동은 | 사천 지역어의 공시 음운론 | 연구논문 | 음운 | 동남 | 지역 방언 |
| 2018 | 방언학 | 27 | 서승완 | 방언학의 관점에서 본 실험음성학 연구사 | 연구사 | 음운 | 전지역 | 방언학사 |
| 2018 | 방언학 | 27 | 이진호 | '경남방언 사전'에 대하여 | 서평 | 기타 | 동남 | 지역 방언 |
| 2018 | 방언학 | 27 | 배윤정 | 경남 방언의 반말의 요청 표현 '대' | 연구논문 | 통사 | 동남 | 어원 |
| 2018 | 방언학 | 27 | 이후인 | 방언 대우법 연구의 동향 | 연구논문 | 통사 | 전지역 | 방언학사 |
| 2018 | 방언학 | 27 | 김미진 | 제주도 방언의 담화표지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 연구논문 | 의미 | 제주 | 사회방언 |
| 2018 | 방언학 | 27 | 김태우 | '자위(核, 心)'의 어휘사와 방언 분화 | 연구논문 | 어휘 | 전지역 | 방언 분화 |

| | | | | | | | | |
|---|---|---|---|---|---|---|---|---|
| 2018 | 방언학 | 28 | 김봉국 | 강원방언의 성조 | 연구논문 | 음운 | 중부 | 지역 방언 |
| 2018 | 방언학 | 28 | 김옥영 | 방언자료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 | 연구논문 | 기타 | 전지역 | 방언연구 방법론 |
| 2018 | 방언학 | 28 | 김세환 | 경북방언의 성조 | 연구논문 | 음운 | 동남 | 지역 방언 |
| 2018 | 방언학 | 28 | 김고은 | 경남방언의 성조 | 연구논문 | 음운 | 동남 | 지역 방언 |
| 2018 | 방언학 | 28 | 이상신 | 단위성 의존명사 '장'의 동남방언 | 연구논문 | 어휘 | 동남 | 어원 |
| 2018 | 방언학 | 28 | 임홍연 | 연변지역어의 연구사 | 연구사 | 총론 | 해외 (연변) | 방언학사 |
| 2018 | 방언학 | 28 | 김한별 | 국어 형태 · 음운사에서의 하향성 활음 /y/ 첨가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 | 연구논문 | 음운 | 전지역 | 지역 방언 |
| 2018 | 방언학 | 28 | 박진혁 | 함경 방언의 성조 – 음고의 유형론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 | 음운 | 동북 | 지역 방언 |
| 2018 | 방언학 | 28 | 최종원 | 동남 방언에서의 호격 조사 실현 양상 | 연구논문 | 통사 | 동남 | 지역 방언 |
| 2018 | 방언학 | 28 | 이금화, 최소연 | 의주 지역어의 피동사와 피동접미사에 대하여 | 연구논문 | 통사 | 서북 | 지역 방언 |
| 2018 | 사회언어학 | 26(1) | 량빈 | 연변 지역의 헤드카피 언어 사용에 반영된 언어태도 연구 | 연구논문 | 어휘, 담화 | 해외 (연변) | 방언 태도 |
| 2018 | 사회언어학 | 26(3) | 조태린 | 대학교수 간 호칭어 사용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 연구논문 | 어휘 | 기타 (직업어) | 사회방언 |
| 2018 | 사회언어학 | 26(4) | 박경래 | 중국 지린성 조선족의 언어 정체성 변화와 언어 사용 양상 | 연구논문 | 담화 | 해외 (연변) | 방언 태도 |
| 2018 | 국어학 | 88 | 곽충구 | 한자어(방언) 속의 특이 한자음 –동북방언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 | 음운 | 동북 | 어원 |
| 2019 | 방언학 | 29 | 이문규 | 성조론의 두 단계 음운 과정과 경상방언의 성조형 분석 | 연구논문 | 음운 | 동남 | 지역 방언 |
| 2019 | 방언학 | 29 | 박경래, 이기갑, 강영봉 | 새로 발굴한 방언(18) | 방언자료 | 어휘 | 전지역 | 지역 방언 |
| 2019 | 방언학 | 29 | 이진숙 | 전남 서부방언의 높임어미 '게' 연구 | 연구논문 | 통사 | 서남 | 지역 방언 |
| 2019 | 방언학 | 29 | 고영진 | 제주도 방언의 상대높임과 '-느-'-'-수다'와 '-읍네다'는 어떻게 다른가?- | 연구논문 | 통사 | 제주 | 언어문화 |
| 2019 | 방언학 | 29 | 신우봉 | 제주방언 담화표지 '양'의 담화 기능과 운율적 특성 | 연구논문 | 담화, 음운, 의미 | 제주 | 지역 방언 |
| 2019 | 방언학 | 29 | 이상신 | 경주 지역어 '시근', '사실', '잠'의 동음어 형성 과정 | 연구논문 | 어휘 | 동남 | 어원 |
| 2019 | 방언학 | 29 | 곽충구 | 북부방언의 漢語 차용어 | 연구논문 | 어휘 | 동북 | 어원 |
| 2019 | 방언학 | 29 | 김수영 | 'ㅅ' 불규칙 활용의 변화 | 연구논문 | 형태 | 전지역 | 방언 분화 |
| 2019 | 방언학 | 29 | 김경표 | ≪전남 무안 지방의 방언사전≫에 대하여 | 연구논문 | 총론 | 서남 | 지역 방언 |
| 2019 | 방언학 | 29 | 강영봉 | 연암 현평효의 삶과 학문 | 연구논문 | 기타 | 제주 | 방언학사 |
| 2019 | 방언학 | 30 | 강희숙 | 전남방언 비모음화의 지리적 분포 | 연구논문 | 음운 | 서남 | 방언 분화 |
| 2019 | 방언학 | 30 | 허진 | 중국 연변조선어 단모음 /ㅐ/와 /ㅔ/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 연구논문 | 음운 | 해외 (연변) | 사회방언 |
| 2019 | 방언학 | 30 | 김한별 | 경남 방언의 'X고 하다' 구문의 모문 동사 '쿠다'의 형성동기와 과정 | 연구논문 | 총론 | 동남 | 방언 어원론 |

| | | | | | | | | |
|---|---|---|---|---|---|---|---|---|
| 2019 | 방언학 | 30 | 정인호 | 북한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대비방언학을 중심으로- | 연구사 | 총론 | 서북 | 방언학사 |
| 2019 | 방언학 | 30 | 이진숙 | 전라남도 방언구획을 위한 방언분화 연구(1) -음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 | 음운 | 서남 | 방언 구획 |
| 2019 | 방언학 | 30 | 남명옥 | 함경도 방언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연구사 | 총론 | 동북 | 방언학사 |
| 2019 | 방언학 | 30 | 장승익 | 황해도 방언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연구사 | 총론 | 중부 | 방언학사 |
| 2019 | 방언학 | 30 | 이금화 | 평북 〈초산〉 지역어 활용어간의 공시형태론 | 연구논문 | 음운, 형태 | 서북 | 지역 방언 |
| 2019 | 방언학 | 30 | 곽충구 | 북부 방언의 어제와 오늘 | 연구사 | 총론 | 동북 | 방언학사 |
| 2019 | 방언학 | 30 | 정의향 | 평안도 방언 연구의 회고와 전망 | 연구사 | 총론 | 서북 | 방언학사 |
| 2019 | 방언학 | 30 | 염종진 | 충남 논산 지역어 담화표지 '머'의 기능과 분포 | 연구논문 | 의미 | 중부 | 지역 방언 |
| 2019 | 사회언어학 | 27(3) | 홍미주 | '자기' 의 용법 확대와 언어변화 개신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 | 연구논문 | 어휘 | 동남 | 사회방언 |
| 2019 | 사회언어학 | 27(4) | 이주랑, 양수경 | 탈북민 화법에 대한 현장의 인식 연구 | 연구논문 | 담화 | 기타 (탈북민) | 방언 태도 |
| 2019 | 국어학 | 89 | 김지숙 | 바람 명칭 '하늬'에 대한 재고찰 -동해안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 | 어휘 | 동남 | 지역 방언 |
| 2019 | 국어학 | 89 | 소신애 | 음운 변화의 흔적에 대하여 -ㅿ〉ø를 중심으로- | 연구논문 | 음운 | 전지역 | 방언 분화 |
| 2019 | 국어학 | 90 | 최명옥 | 중세 이전의 한국어는 성조언어였는가? | 연구논문 | 음운 | 중부, 동북 | 지역 방언 |
| 2019 | 국어학 | 90 | 유필재 | 서울방언의 대명사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대상으로- | 연구논문 | 어휘 | 중부 | 지역 방언 |
| 2019 | 국어학 | 91 | 강희숙 | 진도 지역어의 비모음화 재고 | 연구논문 | 음운 | 서남 | 지역 방언 |
| 2019 | 국어학 | 91 | 김영규 | 방언의 형태론적 분화와 어휘사 -'씻나락(種稻)'의 방언분화론 | 연구논문 | 형태 | 전지역 | 방언 분화 |
| 2019 | 국어학 | 92 | 김옥영 | 남북 강원지역의 방언구획 | 연구논문 | 어휘 | 중부 | 방언 구획 |
| 2020 | 방언학 | 31 | 소신애 | 함남 함흥 지역어의 자음 체계 및 관련 음운 현상 -/ㅈ, ㅉ, ㅊ, ㅅ, ㅆ/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 | 음운 | 동북 | 지역 방언 |
| 2020 | 방언학 | 31 | 구교태 | 표준어 수용 및 방언 사용 인식에 관한 연구 | 연구논문 | 기타 | 전지역 | 방언태도 |
| 2020 | 방언학 | 31 | 김보향 | 제주방언 보조용언 '-어나다'의 의미 기능에 관한 연구 | 연구논문 | 의미 | 제주 | 지역 방언 |
| 2020 | 방언학 | 31 | 권미소, 배영환 | 제주방언에 대한 방언 태도 연구-제주 지역 공무원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 | 기타 | 제주 | 방언태도 |
| 2020 | 방언학 | 31 | 오선화 | 연변방언의 '-사(살)', '-다사(다살)-', '-(으)스레하-'류 형용사의 형성과 의미 | 연구논문 | 통사 | 해외 (연변) | 방언 어원론 |
| 2020 | 방언학 | 31 | 박경래, 이기갑, 강영봉 | 새로 발굴한 방언(19) | 방언자료 | 어휘 | 전지역 | 지역 방언 |
| 2020 | 방언학 | 31 | 김영규 | 다의어의 분화와 음운변화 | 연구논문 | 음운 | 서남 | 방언 분화 |
| 2020 | 방언학 | 31 | 임석규 | 성조 연구 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 연구논문 | 음운 | 동남 | 방언학사 |
| 2020 | 방언학 | 31 | 유필재 | 함경남도 北靑방언 名詞 악센트 자료 | 연구논문 | 음운 | 동북 | 방언학사 |
| 2020 | 방언학 | 31 | 김정태 | ≪예산말사전≫(1권~4권)에 대하여 | 서평 | 기타 | 중부 | 방언 문화 |

| | | | | | | | | |
|---|---|---|---|---|---|---|---|---|
| 2020 | 방언학 | 32 | 박지은 | 방언 어휘 '숭악하다'의 의미 분화에 대한 고찰 | 연구논문 | 어휘 | 전지역 | 방언 어원론 |
| 2020 | 방언학 | 32 | 김지숙 | 언어 접촉으로 육지 해녀의 언어에 나타난 제주 방언 연구 | 연구논문 | 어휘 | 제주 | 방언 접촉 |
| 2020 | 방언학 | 32 | 김옥영 | 남북 강원지역 방언분화의 언어 외적 요인 | 연구논문 | 기타 | 중부 | 방언 분화 |
| 2020 | 방언학 | 32 | 정성훈 | 중부지방 방언구획과 네트워크분석 | 연구논문 | 총론 | 중부 | 사회방언 |
| 2020 | 방언학 | 32 | 김수영 | 한국어 방언 접촉 양상에 대하여-중간방언(interdialect)과 방언균일화(dialect levelling)를 중심으로- | 연구논문 | 음운 | 전지역 | 사회방언 |
| 2020 | 방언학 | 32 | 오청진 | 전남 방언의 조리어 어휘장 연구-조리 과정에 있는 어휘를 중심으로- | 연구논문 | 의미 | 서남 | 지역 방언 |
| 2020 | 방언학 | 32 | 김영규 | 전남 방언 화자들의 격식적 발화에서의 음운론적 변이 양상 | 연구논문 | 음운 | 서남 | 사회방언 |
| 2020 | 방언학 | 32 | 김보향 | 오사카 지역 제주방언 화자의 언어접촉과 언어변화 | 연구논문 | 총론 | 제주 | 방언 접촉 |
| 2020 | 방언학 | 32 | 이상신 | 언어 및 방언의 접촉과 이에 따른 변화 | 연구논문 | 총론 | 전지역 | 방언 접촉 |
| 2020 | 방언학 | 32 | 배윤정 | 사투리 인지와 언어 변화 | 연구논문 | 어휘 | 동남 | 방언태도 |
| 2020 | 사회언어학 | 28(1) | 김민채 | 남북한 언어 이질화 요인으로서의 언어 정책 | 연구논문 | 어휘 | 중부, 동북 | 사회방언 |
| 2020 | 사회언어학 | 28(1) | 안정아, 남경완 | 2019년 남·북한 신년사 비교 분석 | 연구논문 | 담화 | 중부, 동북 | 사회방언 |
| 2020 | 사회언어학 | 28(1) | 이재섭 | 지역 방언 화자의 중부방언 습득 양상 연구 | 연구논문 | 음운 | 동남, 중부 | 방언 접촉 |
| 2020 | 사회언어학 | 28(1) | 홍종선 | 남북 우리말의 구어와 문어 | 연구논문 | 형태,통사,어휘 | 중부, 동북 | 사회방언 |
| 2020 | 사회언어학 | 28(3) | 강유진 | Phonetic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the Seoul dialect | 연구논문 | 음운 | 동남, 중부 | 방언 접촉 |
| 2020 | 사회언어학 | 28(3) | 박용한 | 언어 접촉에 대한 사회언어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 연구사 | 총론 | 전지역 | 방언학사 |
| 2020 | 사회언어학 | 28(4) | 백경숙, 박은하 | 국내 언어와 성 연구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전망 | 연구사 | 총론 | 기타 (성별어) | 사회방언 |
| 2020 | 국어학 | 94 | 김동은 | 경상북도 방언 모음조화의 변화 | 연구논문 | 음운 | 동남 | 지역 방언 |
| 2020 | 국어학 | 94 | 배윤정 | 부산지역어 성조형의 지각 실험 연구 | 연구논문 | 음운 | 동남 | 지역 방언 |
| 2020 | 국어학 | 96 | 최명옥 | 북한 음장방언 속의 무성조·무음장 방언에 대하여 | 연구논문 | 음운 | 서북 | 방언 접촉 |
| 2021 | 방언학 | 33 | 고쿠분 쓰바사 | 연변조선어 젊은 층 화자의 용언 악센트에 대한 연구 | 연구논문 | 음운 | 해외 (연변) | 지역 방언 |
| 2021 | 방언학 | 33 | 유소연 | 20세기 충남 지역 후설 모음의 특징에 대하여 | 연구논문 | 음운 | 중부 | 지역 방언 |
| 2021 | 방언학 | 33 | 위평량 | 전이지대 방언의 변이 양상 고찰 -서남방언과 동남방언의 접경지를 중심으로- | 연구논문 | 음운 | 서남, 동남 | 방언 접촉 |
| 2021 | 방언학 | 33 | 한성우 | 서해5도 지역어와 방언구획 | 연구논문 | 음운, 어휘 | 중부 | 지역 방언 |
| 2021 | 방언학 | 33 | 박경래, 이기갑, 강영봉 | 새로 발굴한 방언 (20) | 방언자료 | 어휘 | 전지역 | 지역 방언 |

| | | | | | | | | |
|---|---|---|---|---|---|---|---|---|
| 2021 | 방언학 | 33 | 이용규 | 염상섭 문학어와 표준어 의식 연구 -한글맞춤법통일안(1933) 이전과 이후 ≪三代≫ 개작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 | 기타 | 중부 | 방언 태도 |
| 2021 | 방언학 | 33 | 안미애 | 말모이 편찬 위원회(2020), ≪말모이, 내가 사랑한 우리말 그리고 다시 쓰는 우리말 사전≫ | 서평 | 기타 | 전지역 | 지역 방언 |
| 2021 | 방언학 | 34 | 소신애 | 구술 발화에서 관찰되는 음성·음운론적 변이 -함북 육진 방언의 음절말 유음의 변이를 중심으로 | 연구논문 | 음운 | 동북 | 지역 방언 |
| 2021 | 방언학 | 34 | 정인호 | 音變化로서의 자음탈락 고찰 | 연구논문 | 음운 | 전지역 | 방언 분화 |
| 2021 | 방언학 | 34 | 김유정 | 창녕·청도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 연구논문 | 음운 | 동남 | 지역 방언 |
| 2021 | 방언학 | 34 | 오청진 | 전남 방언의 바람 어휘장 연구 | 연구논문 | 어휘, 의미 | 서남 | 지역 방언 |
| 2021 | 방언학 | 34 | 이진숙 | 전라남도 방언구획을 위한 방언분화 연구(2) -어휘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 | 어휘 | 서남 | 방언 구획 |
| 2021 | 방언학 | 34 | 김보향 | 제주방언 연결어미의 세대별 변화 연구 | 연구논문 | 통사 | 제주 | 지역 방언 |
| 2021 | 방언학 | 34 | 김한별 | 문헌 속 동남 방언의 어제와 오늘 | 연구사 | 어휘 | 동남 | 방언 문화 |
| 2021 | 방언학 | 34 | 배영환 | 문헌 자료 속의 충청도 방언 연구 | 연구논문 | 음운, 어휘 | 중부 | 지역 방언 |
| 2021 | 사회언어학 | 29(1) | 김유정 | 전이지대의 음운론적 연구 | 연구논문 | 음운 | 동남 | 방언 접촉 |
| 2021 | 사회언어학 | 29(3) | 박은하 | 여성의 차별적 이미지 재현과 성차별 언어 표현의 양상 | 연구논문 | 어휘, 담화 | 기타 (성별어) | 사회방언 |
| 2021 | 국어학 | 97 | 소신애 | 함남 방언의 모음 체계와 그 변화 | 연구논문 | 음운 | 동북 | 지역 방언 |
| 2021 | 국어학 | 97 | 배윤정 | 한국어 방언 성조의 음높이 측정에 대하여 | 연구논문 | 음운 | 동남 | 지역 방언 |
| 2021 | 국어학 | 97 | 류창 | 문장 유형별 연변 지역어와 표준 한국어의 낭독체 억양구 비교 연구 | 연구논문 | 통사 | 해외 (연변) | 지역 방언 |
| 2021 | 국어학 | 99 | 이금화 | 자강도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초산군, 위원군, 만포시 세 지역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 | 음운 | 서북 | 지역 방언 |
| 2021 | 국어학 | 99 | 김수영 | 수도권 거주 화자의 출신 방언 반영 양상 연구 -체언 'ㅌ', 'ㅊ' 말음 어간의 실현을 중심으로- | 연구논문 | 음운 | 중부 | 방언 접촉 |
| 2021 | 국어학 | 100 | 임석규 | 향가 해독과 동해안 방언의 의의 | 연구논문 | 통사 | 동남 | 방언 문화 |

## 4.3. 학술 단체의 지역어 보존, 발전을 위한 연구 특징

■ 방언학 연구의 학문적 가치

- 국어 방언학은 연구 분야의 편제 상 '인문학 – 한국어와 문학 – 국어학 – 방언학'에 속함. 이 분야는 국어학에 속하지만 전문 학회로는 한국방언학회가 유일하고, 이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방언학≫이 있으며 여타 국어학 하위 분야에 비해 연구자들이 많지 않은 특수 분야임.
- 방언 연구는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한 실증적인 방언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국어학 분야의 학술지와는 차별화됨. 다만 현장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문 연구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연구 분야의 특성상 소멸 위기에 처한 한반도 기층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방언 보전을 위한 연구의 절박함이 어느 분야보다도 큰 상황임.
- 그런 의미에서 지역어 연구 분야에서 대표 학술지에 수록된 연구논문들은 중요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국가 지역어 보전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인지도와 활용도가 그만큼 높음.
- 연구논문은 각 지역의 살아있는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기층언어 자료를 보전하는 성격을 가지게 됨. 논문의 바탕이 된 방언 자료 또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음.
- 연구 주제는 대부분 국어학과 방언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에 해당함. 지난 5년간 주요한 지역어 연구 주제는 지역 방언, 방언학사, 방언 어원론, 사회방언, 방언 문화, 방언 분화, 방언 구획, 방언 접촉, 방언 태도, 방언연구방법론, 방언정책 등으로 확인함. 이러한 주제들이 현재 지역어 연구에서 연구자들의 관심도 및 학문적 가치가 높은 연구 과제에 해당함.
- 연구 층위는 국어 방언의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어휘론 등 사실상 언어학의 전 분야에 걸쳐 있으므로, 그 연구 범위와 연구 대상이 매우 다양함.

■ 방언 연구 분야의 전문성과 정체성 및 특수성 유지

- 한국 방언학 연구의 특징은 주로 한국방언학회의 학술 활동과 학술지 편찬 현황에 의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
- 학술지 ≪방언학≫은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 학술지의 필자나 독자가 '방언 연구자'들로 한정되어 있음. 최근 방언 연구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방언학≫의 이러한 성격은 전문지로서 학술지 출간을 지속하는 데에 매우 불리한 면이 있음.
- 방언학은 국어학 및 사회언어학, 나아가 한국의 언어학 전반의 발전을 위해 조금도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분야이므로 방언 연구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방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방언학회에서는 방언학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기학술대회(매년 6월에 개최) 때 방언학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에 하나를 택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기획 주제 발표회'를 갖고 있으며, 그중 우수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방언학≫에 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음.
- 이렇게 수록된 논문들이 그동안 국어 연구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아온바, 방언학의 전문성과

정체성 및 특수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학술적 발전을 모색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편이 됨.

- 최근 5년간 한국방언학회에서 실시한 기획 발표의 주제는 다음과 같음.

〈표 2-27〉 한국방언학회 기획 발표 주제

| 발표 연도 | 기획 발표 주제 |
|---|---|
| 2017(14회) | 각국의 방언 연구 동향과 방법론 |
| 2018(15회) | 한국 방언의 성조 |
| 2019(16회) | 북한 방언 연구의 회고와 전망 |
| 2020(17회) | 언어 및 방언 접촉 |
| 2021(18회) | 문헌 속의 방언 |

■ 지역적 특성의 심층 연구와 학문 후속 세대와의 연계성 확보

- 방언은 '지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한국방언학회의 학술활동과 학술지인 ≪방언학≫에는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의 특성을 심층 연구하는 논문들이 게재됨. 좀 더 직접적으로 지역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각 지역의 작고한 방언 연구자의 연구 업적이나 방언 자료집 등을 대상으로 어학사적 고찰을 시도한 논문들이 게재되기도 함.
- 특히 방언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러 지역의 중견 연구자들과 신진 연구자(대학원생 포함)들이 함께 연구하는 자리를 마련함. 그 노력의 일환으로 방언학계의 권위자인 원로 방언학자들을 초청하여 정기적인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학문 후속 세대들에게 앞으로의 연구 과제와 연구 방향을 제시하여 연계성을 확보함.
- 북한 지역 방언에 해당하는 동북과 서북 지역 방언에 대한 연구와 해외 한민족의 언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됨. 제16회 한국방언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북한 방언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서강대학교 곽충구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북부 방언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한 바 있음. 이 특강은 한국 방언 연구의 대상이 한반도 남부 방언(남한 지역 방언)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 북부 방언(북한 지역 방언)까지 포괄하는 것임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한국 방언학의 연구 지평을 다시 한번 넓히는 계기가 됨. 이 특강은 신진연구자에게 북한 방언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북한 방언 연구의 학술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시켰음.
- 특강 내용은 ≪방언학≫ 30호에 특별기고 논문으로 게재되었는데, 이 논문은 그동안 이루어진 북한 방언 연구의 성과 및 주요 쟁점을 총망라하여 제시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방언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 이외에도 지역에 산재한 방언 연구자 및 연구 단체의 활동을 학술지 ≪방언학≫의 〈휘보〉란에 소개함으로써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
- 최근 5년간 본 학회에서 실시한 특강의 주제는 다음과 같음.

〈표 2-28〉 학회에서 실시한 특강 주제

| 특강 연도 | 특강 주제 | 강연자 |
|---|---|---|
| 2017(14회) | 경남 방언과 방언사전 | 김정대(경남대학교) |
| 2018(15회) | 방언의 미래를 생각한다 | 이상규(경북대학교) |
| 2019(16회) | 북부 방언의 어제와 오늘 | 곽충구(서강대학교) |
| 2020(17회) | 동남방언과 서북방언의 접촉 | 최명옥(서울대학교) |
| 2021(18회) | 방언과 문헌어 연구 | 백두현(경북대학교) |

■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학술 활동과 지역적 편향성 극복의 노력

- 연구자의 희소성 극복을 위한 저변 확대 작업이자 사회적 기여를 목표로 한 학술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국어원 등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활용에 관심을 가진 기관과 연합하여 공동 연구를 기획하고 해당 연구의 결과물 중 우수한 논문을 선별하여 학술지 ≪방언학≫에 개재함.
- 방언을 학술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물을 학자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보급함으로써 언어·문화 발전에 기여함.
- 신진연구자들의 꾸준한 증가와 중견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방언학≫을 통해 새롭고 참신한 결과물이 발표되고 있음. 지역적 편향성의 극복과 새로운 방언 자료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방언학≫에 실리는 논문 하나하나가 모두 지역적인 편향성을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됨.

■ 방언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학회의 노력과 학술지의 반영 특징

- 국외의 재외동포학자나 유학생들을 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국외 학자를 임원진으로 영입하여 대외 학문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방언학회를 좀 더 국제화하고자 노력함.
- 이를 위해 해외 방언 연구자의 논문을 다수 게재함. ≪방언학≫ 28호에 중국 남경대 이금화 교수의 '의주지역어의 피동사와 피동접미사에 대하여', ≪방언학≫ 29호에 일본 도시샤대의 고영진 교수의 '제주도 방언의 상대 높임법과 '-느-, -수다 와 -읍네다는 어떻게 다른가?', ≪방언학≫ 30호에 중국 양주대 정의향 교수의 '평안도 방언 연구의 회고와 전망', 장춘대의 남명옥 교수의 '함경도 방언 방언의 회고와 전망', 중국 남경대 이금화 교수의 '평북 〈초산〉지역어 활용어간 형태소의 유형', ≪방언학≫ 31호에 중국 복단대의 오선화 교수의 '연변 방언의 -사(살)-, -다사(다살)-, -으스레하- 류 형용사의 형성과 의미' 등이 그러한 예임.

# 제5절
# 요약 및 종합분석

## 5.1. 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 ① 정치·외교적 환경 변화

■ 문화다양성과 언어 다양성 정책 기반
- 유네스코의 세계 다양성 선언을 통한 국제적인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협의
-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언어정책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국가 증가 추세

■ 지역의 문화분권 실현 요구 증가와 관련 정책 확대
- 지방자치제 고도화로 문화 분야에서도 지역 밀착형 사업데 대한 기대 증가
- 지역의 문화 및 관광 예산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지방정부 재정운용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재정여건 취약
- 지방재정 권한의 2/3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 지자체 문화재정 증가속도 평균 증감률 하회

■ 문화다양성의 근간인 언어 다양성 정책 확대
■ 지역 문화자원의 새로운 가치 발굴 필요

### ② 산업·경제적 환경 변화

■ 경제위기로 촉발된 전방위 양극화 확산
- 양극화 격차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 국내 지역간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

■ 정보, 서비스, 콘텐츠 등 무형자산 시대 도래
- 창의성을 동력으로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양식 등장
- 지식사회로 전환되면서 정보, 서비스, 콘텐츠 등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

■ 한국 문화 가치 기반 중소기업 수출 역대 실적 최고치 달성
- 중소기업 상위 온라인 수출 품목이 한국 대중문화와 연관된 소비재에 집중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 인문학적 창의성과 삶의 질을 고려하는 문화경쟁력 강화

### ③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심화
- 출산율 0.81명, 수도권 인구 50.4%, 일부 지방 자치단체 소멸 우려 존재

■ 세대간 갈등, 이념대립, 다문화 갈등, 지역 갈등 등 사회 갈등 심화
-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과 신뢰의 문화 창출 필요성 증가

■ 다양한 문화영역을 넘나드는 향유 성향 확대
- 경제력의 증가와 경험소비의 부상으로 개방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화 소비 형태 증가

■ 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한 문화적 처방 필요
■ 보편적 문화향유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 ④ 기술 환경 변화

■ 디지털 기반 산업과 융복합화 환경 도래
- 창의성과 이질적 영역간 결합과 충돌을 통한 새로운 산업 영역 출현
- 기술, 산업간 융합을 거쳐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발전

■ 누구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플랫폼 기반 환경 도래
- 개방형 서비스 구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핵심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환경으로 변화

■ 문화적 가치의 확장과 연계를 통한 사회 발전 모색
■ 기술과 이용자 감성의 융합으로 국민의 참여와 소통 강화

[그림 2-16] 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 5.2. 지역 언어문화 정책 추진 기반

### (1) 법·제도

■ 「문화기본법」,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등은 지역어의 보전 및 활용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나 문화 일반과 관련된 법령에는 지역어 관련 사항 부재.

■ 「국어기본법」은 문화 다양성과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어 보전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국어발전기본계획' 항목에 지역어 내용 부재.

| 문화 일반과 관련된 법령 | 국어기본법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 문화기본법 : 국민의 권리 차원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을 천명<br>■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은 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br>■ 국제문화교류진흥법: 국제문화교류를 국어기본법 등에 근거한 범위로 정의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중 하나로 '지역어 보전'을 명시<br>-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br>■ 국어기본법 시행령 실태조사 항목에 '지역어' 관련 내용 포함 | ■ 문체부 국어정책과 업무분장에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포함<br>-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시행규칙 제8조 제8항)<br>9.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br>■ 국립국어원 어문정책과 업무분장에 '국어의 지역적 변이에 대한 연구' 포함<br>- 어문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br>4.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 · 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
| ■ 지역어의 보전 및 활용 가치 명시<br>■ 문학, 출판, 지역문화 등 관련법령에 지역어 관련 사항 부재 | ■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국어발전기본계획 항목에 '지역어' 내용 부재 | |

[그림 2-17] 지역어 보전을 위한 법령

■ 지역어 관련 조례는 국어 진흥 관련 조례, 지역어 관련 조항이 있는 국어 진흥 관련 조례, 지역어 조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어 진흥 관련 조례 | 지역어 관련 조례 |
|---|---|
| ■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단위로 국어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 제정·시행<br>- 광역자치단체 4건, 기초자치단체 70건, 교육청10건 (총84건)<br>■ '국어 진흥' 관련 조례<br>- 가장 일반적 형태의 조례로 지역어 관련 문항이 없음<br>- '국어 진흥' 외에도 '국어 바르게 쓰기'(경기도) '우리말 계승발전'(진안군), '한글사랑'(김천시) 등으로 유사 조례 제정 | ■ '지역어' 관련 문항이 있는 조례<br>- 국어 진흥 관련 조례 내에 토박이말 등 지역어 관련 조항을 포함한 경우<br>- 광역자치단체 13건, 기초자치단체 36건, 교육청 1건(총 50건)<br>■ '지역어', '제주어' 조례<br>- 광역자치단체 2건(제주), 기초자치단체 2건(강릉, 남해), 지방교육청 1건(제주)<br>- 제주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br>- 강릉의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의 경우 국어와 지역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육성을 동등한 수준에서 명시 |

[그림 2-18] 지역어 보전을 위한 조례

■ 지방정부는 지자체 단체장에게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법제화하고,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이 지역어 실태를 파악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광역자치단체 지역어 조례는 국어진흥 조례, 국어사용 조례, 국어바르게 쓰기 조례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지역어 보전 책무를 부여하며 예산을 통한 사업지원 권한을 부여.
- 대부분이 지역어를 국어 또는 언어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지역어 보전은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지역어 지원을 위한 보전 사업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어 우리말과 문화를 연계하는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실태조사 시행에 대한 규정 포함
- 「강릉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의 경우 조례 명칭에 국어와 지역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육성을 동등한 수준에서 명시.

■ 제주의 경우 국어진흥조례를 통해 제주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주어'라는 공식 명칭을 통해 지역어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 구축.

### (2)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국어발전 기본계획**

■ 국어기본법 상 규정은 없지만 실제 기본계획에는 일부 내용 반영

■ 제2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12~2016)
- 지역 언어 문화 보존 및 활성화(전략과제 5-3)

■ 제3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17~2021)
- 지역 언어문화 기반 국어문화원 활성화(전략과제 2-4)
- 사회·지역 방안 정보 구축과 활용(전략과제 3-4)

■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22~2026)
- 지역적 사회적 변인에 따른 언어문화 다양성 보존(전략과제 3-2)
- (언어문화 다양성 보존) 지역별·세대별·성별 등 중장기 조사 계획 (제1단계, '22년~'26년)에 따른 언어 다양성 조사 및 지역 언어문화 자료 저장소 구축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내 '지역어 사용 의식'에 관한 내용 포함
- 2005년 국민 언어의식 조사(표본수 4,055명)
- 2010년 국민 언어의식 조사(이후 표본수 5,000명)
- 2015년 국민 언어의식 조사
- 2020년 국민 언어의식 조사

[그림 2-19] 중장기 계획 및 실태조사

## 5.3. 지역 언어문화 정책 추진 조직

■ 지역 언어문화 정책은 '국어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표준어 중심 정책과 지역어 보전 정책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어문화 관련 중앙정부 담당자는 문화체육관광부 1명, 국립국어원 2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직체계 및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어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국어문화원과 지자체 연구소, 민간 학회 및 단체 등에서도 지역어 보전 및 활용 업무 진행 중이나 각 지역의 지역어 연구 및 활동을 총괄할 중앙 조직체계가 미흡하고, 지역어 연구 및 활동도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 '지역 언어문화 소멸 방지'라는 영속적 목표를 위한 지역 언어문화 전담 조직 설치가 필요한 실정

### (1) 중앙정부 지역어 보전 체계

■ 지역어와 관련된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 우리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부서의 하나로서 국어정책과는 언어정책과 국어 정책 전반을 관할하고 있으며,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담.
- 지역어 관련 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을 통해 수행.

■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관련 업무는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운영과 언어다양성 조사 등의 차원에서 2명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임.

■ 어문연구과가 속한 어문연구실의 주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는 지역어 관련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어문연구실) 제3항 4;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 (2) 지방정부 지역어 보전 체계

■ 지방정부는 지역어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및 자문·지원 조직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는 광역과 기초 대부분에서 문화, 관광, 예술, 체육 관련 부서에서 수행.
- 이는 지역어 관련 업무를 지역 문화와 연계하여 접근하는 체계로 이해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정책과에서 제주어 보전과 육성, 제주학연구센터, 국어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주어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일하는 해설사 관리는 관광정책과와 환경정책과,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의 해설사를 통한 제주어 알리기는 세계유산본부에서 담당하며, 교육청의 교육행정과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제주어 교육 활성화를 담당.

■ 기초자치단체 역시 거의 모든 곳에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 업무들을 처리.

- 다만 전주시는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역어 관련 업무를 담당.

### (3) 국어문화원 및 연구소 등

■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전국 21개 국어문화원과 지자체 연구소, 민간 학회 및 단체 등에서 지역어 보전 및 활용 업무 진행 중.

| 국어문화원 | 지자체 주관 연구소 | 대학 및 학회 |
|---|---|---|
| ■ 국어문화원연합회<br>–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br>– 2026년 전국 국어 상담소 연합회 출범 후 2020년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사단법인)으로 변경<br>– 수도권 7개, 강원 1개, 충청 4개, 전라 3개 경상 5개, 제주 1개(21개)<br>– 주요사업 ①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지원(우리말 가꿈이 양성 및 홍보) ② 지역어 조사 연구 ③ 사전, 지도 제작 자료발간 ④ 지역어 보존 사업 ⑤ 학술대회 개최 ⑥ 지역어 교육 ⑦ 지역어 관련 행사 | ■ 강원 연구원 강원학 연구센터, 부산 연구원 부산학 연구센터<br>–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 연구주제 모색 중<br>■ 제주 연구원 제주학 연구센터<br>– 제주어 자체연구사업, 제주어 연구지원 사업, 제주어 교육강좌, 제주어종합상담실 운영 등 | ■ 전남대 국문학과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 양성사업단<br>–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46억 원 지원(교육부 사업)<br>–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교육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br>■ 계명대 대구경북사회혁신지원단<br>■ 한국방언학회, 한국언어연구학회, 어문연구학회 등<br>■ 민간 연구소 및 단체 등 |

[그림 2-20] 지역 언어문화 보전 체계

## 5.4. 지역 언어문화 정책 현황

■ 지역어 보전 및 활용을 위한 활동은 크게 보전 조사 및 연구, 언어문화 아카이브, 지역어 활용 및 언어문화 진흥의 3개로 구분.

### (1) 중앙정부

■ 중앙정부의 지역어 진흥 활동은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하여 보전 조사 및 연구, 언어문화 아카이브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

① 보전 조사 및 연구

- 현재 국립국어원에서는 방언의 보전, 연구를 위한 지역어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
-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및 보전 사업은 지역 문화와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로서의 지역어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2004년부터 소멸위기에 처한 국내외 권역별 지역어 조사사업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

② 언어문화 아카이브

- 국립국어원은 2020년 2월에 지금까지 진행된 지역어 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지역어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http://dialect.korean.go.kr)'을 개통.
- '지역어 종합 정보 누리집'은 지역어 정보의 공유와 활용에 초점을 두고 그간 국어원에서 구축한 자료 제공.
- '지역어 찾기, 지역어 지도, 지역어 이야기 자료, 문학 속 지역어, 사진으로 보는 생활어' 등 다섯 개의 주제로 정보를 구성.

### (2) 지방정부 지역어 보전 활동

① 조사 및 연구

- 지역어 보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국어문화원 또는 지역 연구단체 위탁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

② 언어문화 아카이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구자 지원을 통해서 방언사전 등의 제작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학 연구센터 내에 제주학 아카이브를 개설하고, 제주어와 제주 지역문화, 제주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축적하여 공개.

③ 지역어 활용 및 언어문화 진흥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어 확산 노력은 주로 지역어, 지역문화 관련 행사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3) 민간 활동

■ 지역어의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어 활용 실태는 시·군 문화원이나 재야학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의 수집·보존에 머물러 있는 실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역어 연구가 법령에 따른 형식성을 가지고 있다면, 민간에서는 지역 민간문화원, 지역어 시민단체, 개인 연구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진행.

① 보전 조사 및 연구 (수집)

-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진주사투리 사전(2022), 창녕문인협회에서 창녕방언사전(2019)을 조사하기 위한 활동이 있었고, 경남방언연구보존회에서 경남방언사전(2007)을 발간하였으며,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는 경남 지역어 사용실태에 대한 연구가 진행.
- 강원대학교(국어국문과/국어문화원)는 연구재단이 지원하는 BK21사업을 통해 강원지역 어문학·문화 연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

② 언어문화 아카이브 (보전)

- 2017년 (사)경남방언연구보존회가 경남도 지원으로 '경남방언사전' 발간. 경남과 부산, 울산지역 방언을 포함해 어휘 1만 9천여 개 수록
- 최근 수집 및 연구로는 진주사투리사전(진주관광재단), 창녕방언사전(창녕문인협회), 경남 지역어 사용실태(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 등.

## 5.5. 지역어 정책 발전 방향

### (1) 지역어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지역어를 지역문화의 일부로 이해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가 부족.
- 대표적으로 국어기본법 역시 정부(중앙과 지방)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인 제4조 외에는 지역어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 실정.
- 국가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표준어 중심 정책 대비 지역어 및 지역 언어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
- 지방자치단체 역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의 책무만을 광범위하게 명시하고 있어 법·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임.

■ 지역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역어 정책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사소통 효율성을 위한 표준어 정책과 지역문화와 지역언어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법·제도적 균형이 필요.
- 특히 지방분권이 성숙화되면서 통합, 표준, 효율성 등 국가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개성, 다양성, 산업적 가치의 재발견을 강조하는 문화 다양성 차원의 논의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

■ 특히 문화 다양성법에 나타난 문화 다양성의 개념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문화 차이를 강조하고, 국내 지역 간 차이와 독특함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예를 들어 문화다양성법의 제7조가 규정한 문화 다양성 실태조사에서 우리 지역어에 관한 내용은 없는 실정임.

### (2)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역어 진흥 추진체계 확대

■ 지역어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역시 부족한 실정임.
- 지역어 관련 업무는 문체부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담당자의 수는 제한적이며 예산도 많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에 따라 지역어에 대한 관심에 차이.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어를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많은 투자를 하는 반면, 수도권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어진흥조례에 지역어에 대한 언급을 찾기 어려움.
-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어 관련 조례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행정조직 직제 및 업무분장에서는 지역어 또는 관련 사무에 대한 언급 없이 국어진흥업무의 일부로서 추진.

3장

# 지역 언어문화 정책 사례분석

# 제1절
# 지역 언어문화 정책 사례

## 1.1. 프랑스의 지역 언어문화 정책

### (1) 지역 언어문화 특징

■ **[지역어의 정의]** 프랑스 지역어는 "국가의 공식어 지위를 가지지는 않지만, 프랑스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충분히 오랫동안 프랑스 국경 내, 즉 프랑스 본토와 해외 영토에서 사용되어 온 언어"로 정의됨.[11)]

- 프랑스에서 '지역어(langues régionales)'는 프랑스 내에서 사용되는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를 의미하며, 지역어에는 이민자의 언어가 포함되지 않음.

■ **[지역어 현황]**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본토에서 20개, 해외 영토에서 55개, 총 75개의 지역어가 사용.

- 1994년 교육부와 문화부의 요청으로 당시 국립국어연구원 원장이었던 베르나르 세르킬리니(Bernard Cerquiglini) 교수가 199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본토에서 20개, 해외 영토에서 55개, 총 75개의 지역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집계됨.
- 프랑스 본토에서 사용되는 지역어의 예: 바스크어(basque), 브르타뉴어(breton), 카탈로니아어(catalan), 알자스어(alsacien), 프랑코프로방스어(franco-provençal), 노르망어(normand), 피카르디어(picard), 로렌어(lorrain), 오크어(occitan) 등.
- 이 중 바스크어, 브르타뉴어, 알자스어, 카탈로니아어, 오크어는 현재에도 다수의 화자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임.

11)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 https://www.culture.gouv.fr/Thematiques/Langue-francaise-et-langues-de-France/Nos-missions/Promouvoir-les-langues-de-France/Langues-regiona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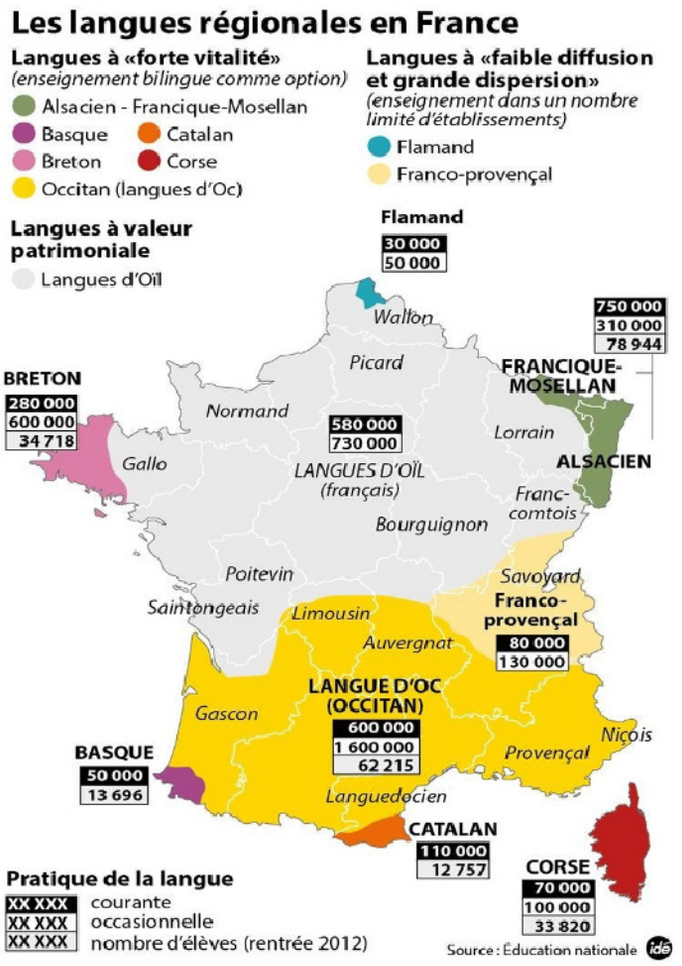


[그림 3-1] 프랑스 본토의 지역어들

출처: 프랑스 교육부

- 프랑스 해외 영토에서 사용되는 지역어의 예: 뉴칼레도니아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토착 언어들, 과들루프, 기아나, 마르티니크, 레위니옹 등지에서 사용되는 프랑스어 기반 크레올어 등.
- 지역어의 정의에 포함되는 언어들 중 해외 영토에서 사용되는 지역어들은 프랑스 본토의 지역어와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어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 및 추진 체계, 방향성이 상이함.
-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 영토에서 사용되는 지역어에 대한 정책은 제외하고 프랑스 본토에서 사용되는 지역어에 대한 정책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함.

**프랑스 해외 영토 DROM-COM**

- 유럽 대륙 밖,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프랑스의 영토로 프랑스 본토와 구별하여 '해외 영토(Outre-mer)'라고 불림.
- 대부분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위치한 섬으로 과거 식민지들 중 독립하지 않고 프랑스에 편입하기를 원했던 지역임.
- 프랑스 본토의 행정 구역 체계와 동일한 DROM 지역과 자치권을 보장받는 COM 지역으로 나뉨.

출처 : 문시연·홍태숙(2017)

### (2) 정책 배경

① 표준어 중심 정책 배경

■ **[5세기~18세기 후반]** 왕권 강화에 따라 파리 근교에서 사용되었던 지역어인 프랑시앵(francien, 오늘날의 프랑스어)이 프랑스 전 지역의 공식어로 자리 잡게 됨.

- 5세기 이후부터 프랑스 지역은 크게 북부의 오일어(langue d'oïl) 지역과 남부의 오크어(langue d'oc) 지역으로 방언권이 이등분됨.
- 10세기 경, 중세 봉건주의 시기를 거치며 지역어의 구분이 오늘날과 같이 세분화됨.
- 프랑스 지역의 공식어가 프랑스어로 정해진 이후에도 각 지역에서는 지역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됨.

■ **[18세기 후반~20세기 초반]** 프랑스 혁명과 그레구아르 사제의 보고서 등으로 인해 표준어 중심 정책이 강화되고 지역어 사용은 처벌의 대상이 됨.

- 1789년에 발발한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어의 전국적 확산과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 혁명가들에 의해 프랑스어를 국민 국가의 유일한 언어로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 그들은 프랑스의 언어적 다양성, 즉 다양한 지역어들의 존재가 자신들의 혁명 이상을 전파, 확산시키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여, 학교 교육을 통해 지역어의 사용을 근절함으로써 언어적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음.
- 정부의 요청에 의해 그레구아르 사제(abbé Grégoire)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1790년부터 1794년까지 진행된 현지 조사를 통해 정리된 그레구아르 사제의 보고서 제목은 「지역어를 말살하고 프랑스어를 보편화할 필요성과 수단의 필요성에 관하여」임.
- 이 보고서의 결론은 언어의 통일이 필요하고 프랑스어를 모든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고,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1794년, 「라카날법」(Loi Lakanal)이 제정됨.
- 이후 학교에서 지역어를 사용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20세기 초에는 프랑스 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음.

② 지역어 보전 정책 배경

■ **[20세기 중반~20세기 후반]** 19세기부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역 문화와 언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함.

- 1951년 1월 11일 지방어 교육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법인 「덱손법」(Loi Deixonne)이 제정됨.
- 1982년에는 지방분권화법인 「드페르법」(Loi Deffere)이 제정되면서(우무상, 2013) 중앙집권적 문화 정책에서 지방분권적인 문화 정책으로 노선이 변경되고 지방 언어와 문화의 보전 필요성이 대두됨.
- 1992년에는 유럽평의회의 「지역 언어 및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의 조인(調印)을 둘러싸고 프랑스 내 찬반 양측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짐.
- 1997년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1998년 파리 10대학 공법 교수인 기 카르카손(Guy

Carcassonne)이 작성한 보고서가 발표되었음.

- 이후 지역어의 공용어 인정 여부와 관련된 핵심 쟁점과 관련해 1999년, 2008년, 2011년에 차례로 조인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비준에는 실패함.
- 유럽 헌장 조인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대표적인 의견으로 기 카르카손의 보고서)은 헌장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유럽의 언어 유산의 보호에 이바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에 대해 프랑스는 완전히 동의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임(김진수, 2007).
- 유럽 헌장 조인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유럽 헌장의 내용이 1992년 개정된 「헌법」 제2조 1항의 내용인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에 배치된다는 것임.
- 헌법재판소는 지역어 또는 소수어를 사생활에서만이 아니라 공적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권리의 불가침성을 선언한 유럽 헌장의 전문 그리고 그 언어들이 사용되는 영토 내부의 언어적 집단들에 특수한 권리를 부여하려는 몇몇 조항들은 프랑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송기형, 2013).

### (3) 정책 추진 방향

① 교육의 대상으로서 지역어

■ 정책 내 지역어를 교육의 대상으로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임.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 단일 주의를 목표로 한 통합 지향적 언어 정책에 반발하는 역행 현상이 지역 문화의 민간 운동을 통해 드러남(최은순, 2003).
- 이 시기에 처음으로 지역어에 대한 원칙을 세울 것을 주장한 의원들의 입법 노력이 등장함(정희경, 2000).

■ 대표적인 법으로 1951년 「덱손법」이 있으며, 1989년 제정되어 2005년에 폐지된 「조스팽법」(Loi Jospin)의 제1조에도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지역어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정희경, 2000).

- 「조스팽법」의 정식 명칭은 「교육 방향에 관한 1989년 7월 11일 법」(Loi du 10 juillet 1989 d'orientiation sur l'éducation)임.
- 「조스팽법」의 제1조에는 "국가 교육은 지방어 및 지방 문화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포함됨.
- 「덱손법」과 「조스팽법」은 지역어 교육과 지역 문화 교육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짐.

■ 지역어의 독자적인 위상을 인정하지 않고 외국어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어 교육은 외국어 교육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게 됨.

- 교육의 대상으로서 지역어를 바라보는 정책들은 언어의 다양성, 즉 다언어주의 장려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프랑스와 프랑스의 민족은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에 의해서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근간이

되었으며(정희경, 2000),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② 문화유산으로서의 지역어

■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 정부(1997년~2002년)는 유럽 헌장의 비준을 포기하고 "지역어들은 공적인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수단이고 국민의 언어유산이므로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송기형, 2013).

- 이러한 주장은 지역어의 사용과 프랑스어 단일 공용어 주의를 타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어를 프랑스의 유산으로 취급하는 문구들이 법제 내 등장 : '유산(patrimoine)', '언어 유산(patrimoine linguistique)' 등의 문구가 포함됨.
- 2021년에 제정된 「몰락법」(Loi Molac)에서도 지역어를 무형 문화유산으로 취급하며, 이를 보호하고 진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4) 정책 추진체계

① 법·제도

■ 2022년 현재, 프랑스 지역어 관련 정책들은 헌법, 법률, 데크레, 아레테 등의 다양한 법제를 통해 시행되고 있음.

■ 헌법

- 2008년 프랑스 「헌법」 개정으로 지역어에 대한 항목이 추가됨.
- 「헌법」 제75-1조에 "지역어는 프랑스의 유산에 속한다."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음.
- 「헌법」 제72조~75조는 제12장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조항으로서, 지역어에 관한 내용이 이 장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지역어가 공화국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2008년 개헌 당시 프랑스 하원은 해당 문구를 「헌법」 제1조에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상원의 반대로 무효화되었고, 상원과 하원의 타협 결과 「헌법」 75조에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음.

■ 법률 : 덱손법(1951년~2000년)

- 정식 명칭은 「현지 언어와 방언 교육에 관한 1951년 1월 11일 법」(Loi du 11 janvier 1951 relative à l'enseignement des langues et dialectes locaux)임.
- 프랑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프랑스 전체 지역어 중 몇 개의 지역어를 선정하고, 이 지역어의 교육을 공식적으로 인정함.
- 선정된 지역어로는 바스크어, 카탈로니아어, 브르타뉴어, 오크어가 있음.
- 「덱손법」은 총 11개 조로 구성되며, 기본 목표는 지역의 언어들과 방언들의 교육에 있음.

- 이 법의 제정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지역어 교육이 가능해졌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지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 대학교에서도 수업 개설, 연구소 설립 등의 방법으로 지역어와 지역 문화 교육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함.
- 「덱손법」의 제정은 정책적 측면에서 지역어가 더 이상 적대적인 대상이 아님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 하지만, "'프랑스어 학습'을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지역어를 사용하여 수업할 수 있음"을 명시한 「덱손법」 제2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역어의 교육을 '프랑스어 학습'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허용하고 있고 언어의 문화유산적 측면은 고려되지 않았음.
- 「덱손법」은 2000년 6월부로 폐기됨.

■ 법률 : **몰락법(2021)**

- 2021년 「몰락법」(Loi Molac)이 제정되었고, 정식 명칭은 「지역어 유산 보호 및 진흥에 관한 2021년 5월 21일 법」(Loi du 21 mai 2021 relative à la protection patrimoniale des langues régionales et à leur promotion)임.
- 이 법을 제안한 브르타뉴 지역의 정치인 폴 몰락(Paul Molac)의 이름을 따서 「몰락법」이라 불림.
- 무형 문화유산, 교육, 공공서비스, 세 분야에서 지역어를 보호하고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몰락법」에서는 무형 문화유산,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문화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 「투봉법」(Loi Toubon)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4일 법」(loi du 4 août 1994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교육법전」(Code de l'éducation)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고, 공공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였음.
- 「문화유산법전」의 변경 내용은 '문화유산'의 정의에 프랑스어와 지역어들을 포함한 '언어 유산'을 포함시켰다는 것임.
-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1994년 8월 4일 법」의 변경 내용은 프랑스어의 사용만을 강제하는 해당 법과 지역어 관련법의 내용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명시하였다는 것임.
- 「교육법전」의 변경 내용은 거주지에 지역어를 교육하는 사립 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교육 기관과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었다는 것임.
- 공공서비스 분야의 내용으로는 공공건물, 도로, 대중교통 시설 등을 새로 확충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지역어를 사용한 표지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었음.

■ 데크레와 아레테[12)]

12) 데크레(Décret): 행정 명령의 하나로 국가의 행정권에서 비롯함.
아레테(Arrêté): 법제의 부령이나 조례, 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과 총리가 아닌 하위 직급자가 발령한 법적 명령을 의미. 법률, 데크레, 법률 명령의 실행 방법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

- 지역어 법률들은 관련 데크레와 아레테에 의해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명시됨.
- 데크레의 예로 「지역어 교육 자문위원회 설립에 관한 2001년 7월 31일 데크레」(Décret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un Conseil académique des langues régionales)가 있음.
- 이 데크레는 「교육법전」의 일부 내용에 관한 행정 명령으로 지역어 및 지역 문화의 보호 및 진흥을 위해 교육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아레테의 예로 「"지역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지역어를 사용한 이중 언어 몰입 교육 실행에 관한 2002년 4월 19일 아레테」(Arrêté du 19 avril 2002 relatif à la mise en place d'un enseignement bilingue par immersion en langues régionales dans les écoles, collèges et lycées «langues régionales»)가 있음.
- 이 아레테는 「교육법전」 및 「투봉법」, 교육 관련 데크레에 대한 부령 및 조례로 지역어 교육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지역어가 사용되는 지역에서는 지역어-프랑스어 이중 언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교육 언어로서 프랑스어 이외의 지역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 해당 아레테 제2조에서는 '지역어를 사용한 이중 언어 몰입 교육'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어가 아닌 지역어로 초·중·고등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함.

### ② 정부조직

■ 중앙 정부

- 프랑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역어에 대한 직접적인 사항은 프랑스 중앙 정부에서 취급하지 아니함.
- 일반적인 형태는 지역 내 문화부 산하 기관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방식임.
- 1982년 이후 중앙집권적 문화 정책에서 지방분권적인 문화 정책으로 노선이 변경되었음을 1.2절에서 확인한 바 있음.

■ 지방자치단체

- 프랑스의 지방 행정 단위인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에서 지역어 관련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지역어 관련 업무들은 레지옹 혹은 데파르트망의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짐.
- (참고) 지역어 관련 사업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수행하며, 중앙 정부-레지옹-데파르트망의 3자 협약을 통하는 경우가 많음.

### ③ 문화부 산하기관

■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 총국

- 프랑스의 수도 파리(Paris)에 위치한 프랑스 문화부 산하 기관인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 총국(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 DGLFLF)에서는 전반적

인 지역어 관련 정책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1989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본래 '프랑스어 총국(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이라는 명칭으로 프랑스어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2001년부터 공식 명칭에 '프랑스의 언어들' 부분을 추가하고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지역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함.
-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등 주로 지역어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지역문화사업국

- 각 레지옹에 위치한 프랑스 문화부 산하 기관인 지역문화사업국(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DRAC)은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의 지역어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중앙 정부의 문화 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부의 지방 분원과 같은 기능을 가짐(우무상, 2003).
- 사업은 문화유산, 음악 및 무용, 연극 및 공연 예술, 영화 및 시청각, 박물관, 도서 등 문화부가 관할하는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음.
- (참고) 중앙 정부와 지역어 단체의 협정 체결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지역문화사업국을 통함.

■ 지역어 기관

- 지역별로 공익단체(groupement d'intérêt public, GIP) 혹은 문화협력공공기관(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culturelle, EPCC) 등의 지위를 가지는 지역어 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어를 진흥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대표적인 지역어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있음.
- 바스크어청(Office public de la langue basque)
- 브르타뉴어청(Office public de la langue bretonne)
- 오크어청(Office public de la langue occitane)
- 카탈로니아어청(Office public de la langue catalane)
- 알자스·모젤 언어 문화청(Office pour la langue et les cultures d'Alsace et de Moselle)

④ 기타 조직

■ 정부 조직이나 정책 수행 기관 이외에도 대학 부설 연구소나 문화원, 민간단체 등에서 지역어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음.

- 대학 부설 연구소의 예로는 그르노블 대학의 그르노블 방언학센터(Centre de dialectologie de Grenoble), 보르도 몽테뉴 대학의 아키텐 및 유럽 남부 문화 연구센터(Centre d'étude des cultures d'aquitaine et d'Europe du Sud), 브레스트 대학의 브르타뉴 및 켈트 연구센터(Centre de recherche bretonne et celtique) 등이 있음.

- 문화원의 예로는 오크어 문화원(Institut occitan de cultura)이 있음.
- 민간단체의 예로는 1854년에 설립된 최초의 오크어 관련 문화 단체인 펠리브리쥬(Félibrige)가 있음.

### (5) 정책 내용

■ 프랑스에서는 지역어의 유지 및 계승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이 교육과 미디어, 문화 영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음.

■ 교육과 미디어 분야의 정책 내용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문화 영역은 문화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어 기관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문화 영역의 사업 규모는 지역마다 다름.
- 예를 들어, 바스크어청의 연간 예산은 420만 유로(한화 약 60억 원)로 정부로부터 25%, 레지옹 지역의회로부터 25%, 데파르트망 도의회로부터 25%, 바스크 코뮌간 협력 공동체(communauté d'agglomération du Pays basque)로부터 25%를 지원받음(바스크어청 홈페이지[13]).
- 예를 들어, 옥시타니(Occitanie) 레지옹은 2022년 기준 400만 유로(한화 약 57억 원)를 지역어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집행하고 있음(옥시타니 레지옹 홈페이지[14]).

① 교육 : 외국어 교육

■ 지역어 교육에 대한 세부 기준은 그 지역어가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중앙 정부가 맺는 협정에 의해 정의됨(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 2017).
- 지역과 중앙 정부 이외에 교육청 및 지역어 전파의 임무를 맡은 각 지역의 지역어청이 관여하기도 함.
- 현재 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역어는 외국어 교육, 지역어-프랑스어 이중 언어 교육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교육되고 있음.

■ 1951년 「덱손법」 이후, 지역어들은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 및 국가시험(중학교 졸업 시험,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고등학교 졸업 시험), 중등 교육 교사 자격 시험(certificat d'aptitude au professorat du second degré, CAPES))에서 선택 과목으로 보장받고 있음.

■ 지역어는 '외국어(langues vivantes)' 교과에 속하며 학생들은 제1, 2, 3 외국어 중 하나로 지역어를 선택할 수 있음.

13) https://www.mintzaira.fr/fr/oplb/budget.html
14) https://www.laregion.fr/Culture-La-Region-Occitanie-lance-la-16eme-edition-du-festival-Total-Festum

- 지역어를 선택 과목으로 공부할 경우, 주당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수업 시간이 할당됨.
- 지역어 교육은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CECRL)에 따라 초급(A1, A2), 중급(B1, B2), 고급(C1, C2) 단계로 나뉨.
- 공립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서 지역어를 교육하는 경우에는 초급 A2 단계 정도의 수준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프랑스 교육부 홈페이지[15]).

### ② 교육: 지역어-프랑스어 이중 언어 교육

■ 프랑스어가 아닌 지역어를 사용하여 초·중·고등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이중 언어 몰입 교육의 형태를 가짐.
- 고등학교 졸업 시 고급 C1 단계의 수준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프랑스 교육부 홈페이지).
- 수업 시간의 50%는 지역어로, 50%는 프랑스어로 균등 분배하여 교육함.
- 브르타뉴(Bretagne) 레지옹의 디완 학교(École Diwan), 옥시타니 레지옹의 칼란드레타 학교(École Calandreta) 등 몇몇 지역 사립학교에서 지역어를 교육하는 방법임.

■ 2020년 기준, 지역어를 배우는 학생 총 121,000여 명 중 11.5%인 14,021명이 이중 언어 몰입 교육을 받고 있음(프랑스 법률 및 행정 정보국 운영 사이트[16]).

**「브르타뉴 지역어들의 전승 및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증진에 대한 특별 협약 (2022-2027)」**

2022년 3월, 브르타뉴 레지옹과 정부가 체결한 협약
- 지역어 전승과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음.
- 130개의 조항, 6개의 부칙을 포함한 총 42페이지 분량의 협약임.
- 이 중 교육과 관계된 '지역어 전승' 부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브르타뉴어 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9,000명으로 2027년까지 30,000명으로 증가시킬 계획임.
- 공립학교, 사립학교, 디완(Diwan) 협회의 공조를 통해 이중 언어 교육이 사회 내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시범 지역에서 먼저 브르타뉴어 교육을 초등학교 정규 시간에 포함하고 점차 브르타뉴 레지옹의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함.
- 선택 과목으로 브르타뉴어를 교육하는 중학교의 수를 현재 4개에서 2027년 30개로 증가시키고자 함.
- 디완 학교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브르타뉴 레지옹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소수 지역어인 갈로어(gallo) 교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프랑스어-지역어 이중 언어 교사의 풀을 확대하고자 함.
- 원만한 지역어 교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한 곳을 지정하여 지역어 교사 준비반을 설치할 계획임.
- 브르타뉴 내 네 대학의 학사 과정에 브르타뉴어 수업을 개설하고 관련 교육 과정을 강화할 예정임.
- 지역어 교육 온라인 석사 과정을 개발하고자 함.



15) https://www.education.gouv.fr/bo/21/Hebdo47/MENE2136384C.htm
16) https://www.vie-publique.fr/en-bref/280872-langues-regionales-lenseignement-immersif-en-question

**디완 학교(École Diwan)**

- 1977년 개교한 학교로 브르타뉴어와 프랑스어, 이중 언어 몰입 교육을 시행함.
- 브르타뉴 지역에 초등학교 47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구성된 디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
- 2020~2021학년도 기준, 디완 네트워크 내 초등학교 학생 3,073명,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1,234명, 총 4,075명의 학생이 재학 중임.
- 디완 네트워크에 속한 학교들은 사립학교로, 일정 부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을 받음.
- 학생 교육을 위해 브르타뉴어로 쓰인 교재를 개발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음.
- 홈페이지: https://www.diwan.bzh/

### ③ 미디어

■ 2000년 「레오타르법」(Loi Léotard)에 지역어 관련 내용이 포함됨.

- 「레오타르법」의 정식 명칭은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한 1986년 9월 30일 법(Loi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임.
- 2000년 8월 1일 개정된「레오타르 법」의 제3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국영 방송은 프랑스어 진흥을 담당하고 문화와 언어적 유산의 지역적 다양성을 부각시킨다”.

■ 이 「레오타르 법」에 의거하여, 텔레비전과 라디오 공영 방송국에서는 지역어 방송을 송출하고 있음.

- 지역어 라디오 방송은 프랑스블루(France Bleu), 텔레비전 방송은 프랑스 3(France 3) 채널에서 담당하고 있음.
- 텔레비전 방송국 프랑스 3에서는 9개의 지역어로 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어린이 방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총 2,160시간의 지역어 방송을 송출하였음(프랑스 텔레비전 홈페이지[17]).
- 라디오 프랑스 공사의 프랑스블루 채널은 44개의 지방 방송국 중, 4개 방송국을 통해 100% 지역어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그 밖의 방송국을 통해 16개의 지역어로 된 프로그램들을 부분적으로 송출하는 등, 매년 평균 5,000시간의 지역어 방송을 진행하고 있음(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 2017).

**지역어 주간(Semaine des langues regionales)**

- 프랑스 3은 지역어 주간을 설정하여 프랑스 내 언어 다양성을 보여주는 특별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편성하고 있음.
- 2021년에는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를 지역어 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하였음.
- 2021년에는 프랑스 본토에서 크레올어를 가르치는 유일한 고등학교 교사, 토니 망고(Tony Mango)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모국어 귀향 수첩(Cahier d’un retour en langue natale)’을 특별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바 있음.

17) https://www.francetelevisions.fr/et-vous/notre-tele/a-ne-pas-manquer/semaine-speciale-langues-regionales-8693#:~:text=Sur%20France%203%2C%20en%20r%C3%A9gions,d’une%20diversit%C3%A9%20linguistique%20historique

### ④ 번역 및 출판

■ 지역어를 진흥하고 지역어로 쓰여진 독창적인 작품의 창작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계 문학 작품, 만화, 잡지의 번역과 출판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 의회가 단독으로 지원하거나 지역어 기관에 사업 시행을 위임하는 형태로 지원.

**문학 번역 지원 프로그램**

- 브르타뉴 지역에 위치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번역, 출판 관련 총지출의 90%, 프로젝트 당 최대 5,000유로(한화 약 710만 원)까지 지원함.
- 2022년 8월 기준, 이 지원을 통해 출판된 책은 약 100여 권이며, 현재 번역 작업이 진행 중인 책은 40여 권에 이름.
- 프랑스어로 쓰여진 책뿐만 아니라 영어권, 이탈리아어권, 러시아어권, 네덜란드어권, 독일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등 다양한 언어권의 작품이 번역되고 있으며, 셰익스피어 작품 등의 고전을 비롯하여 해리포터 등의 2000년대 최신 작품까지 두루 포괄하고 있음.
- 출처 : 브르타뉴 레지옹 홈페이지[18] 및 브르타뉴어청 홈페이지[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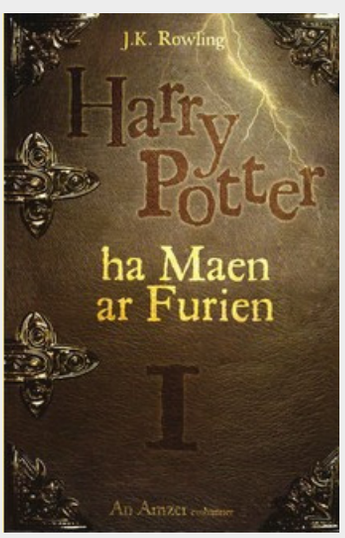


[브르타뉴어로 번역된 해리포터 1권의 표지]



18) https://www.bretagne.bzh/aides/

19) https://www.fr.brezhoneg.bzh/20-programme-de-traduction-litteraire.htm

**출판 지원 프로그램**

- 브르타뉴 지역에 위치한 출판사를 대상으로 일반 도서, 만화책, 문학 잡지 인쇄비의 일부를 최대 6,000유로(한화 약 850만 원)까지 지원함.
- 일반 도서의 경우 100% 브르타뉴어로 쓰여진 경우, 브르타뉴어-타언어로 모두 쓰여진 경우의 지원 비율이 상이함(예를 들어, 250권 이상 인쇄 시 100% 브르타뉴어 출판은 총비용의 50%, 브르타뉴어-타언어 출판은 25%를 지원함).
- 만화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를 장려하는 강력한 매개체로서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작품 당 12,000유로(한화 약 1,700만 원)까지 지원함.
- 문학 잡지의 경우는 일 년에 최대 2,500유로(한화 약 350만 원)를 지원함.
- 출처 : 브르타뉴 레지옹 홈페이지[20]

### ⑤ 언어의 디지털화

■ 지역어 컴퓨터 자판을 만드는 작업, 디지털 지역어 사전을 편찬하는 일, 교육용 유튜브 및 앱을 만드는 작업, 지역어 인플루언서 콘테스트 등, 지역어가 인터넷 언어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음.

**지역어 자판**

- 2017년,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 총국의 '언어와 디지털' 분야 지원으로 오크어, 알자스어, 피카르디어 자판이 만들어짐. 구글 플레이를 통해 핸드폰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21]

**디지털 지역어 사전 편찬**

- 2013년 2월, 프랑스 문화부와 브르타뉴어청은 디지털 역사 사전 편찬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3년간의 지원 협정을 체결함.
- 「Meurgorf」로 명명된 이 디지털 역사 사전은 중기 브르타뉴어 시기로 알려진 11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브르타뉴어 고유 어휘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총 55,747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브르타뉴어청에 연락하여 사전 편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2014년 6월, 첫 번째 버전의 디지털 역사 사전을 오픈하였고, 현재에는 인터넷 사이트(http://meurgorf.brezhoneg.bzh/)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 중임.
- 출처 : 브르타뉴 프레스 홈페이지[22]



20) https://www.bretagne.bzh/aides/

21)https://www.culture.gouv.fr/Thematiques/Langue-francaise-et-langues-de-France/Nos-missions/Innover-dans-le-domaine-des-langues-et-du-numerique/Soutenir-et-encourager-la-diversite-linguistique-dans-le-domaine-numerique/Les-claviers-pour-mobile-en-occitan-alsacien-et-picard-sont-disponibles

22) https://abp.bzh/meurgorf-le-dictionnaire-historique-numerique-en-ligne-34533

**교육용 유튜브 및 어플**

- 카탈로니아어청은 2021년 3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기초 카탈로니아어를 공부할 수 있는 짧은 영상 및 카탈로니아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있음.
- 카탈로니아어-프랑스어 이중 언어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도 지속하고 있음.
- 출처 : 카탈로니아어청 홈페이지[23)]

[카탈로니아청 유튜브 채널]

**지역어 인플루언서 콘테스트**

- 오크어청은 청년층의 오크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터넷상에서 오크어를 사용하는 인플루언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 2022년 10월 3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 지원자를 모집 중임.
- 16세에서 30세 사이로 지원자를 한정하고 개인, 단체, 사업체 부분으로 나눠 시상하며 상금은 400유로(한화 약 56만 원)에서 1,200유로(한화 약 170만 원)까지 상이함.
- 출처 : 오크어청 홈페이지[24)]

[오크어 인플루언서 콘테스트 홍보 포스터]

### ⑥ 공연 및 시청각 분야

■ 지역어를 진흥하기 위한 각종 공연 및 시청각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음.

23) http://oplcat.eu/index.php/blog/

24) https://www.ofici-occitan.eu/fr/concours-dinfluenceurs-en-langue-occitane/

**지역어 연극 공연**

- 그랑테스트(Grand-Est) 레지옹은 2022년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약 보름에 걸쳐 지역어 연극을 상연하는 '무대 위의 언어(Langues en Scène)'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함.
- 2022년 4회째를 맞은 이 축제에서는 지역의 세 극단에서 준비한 세 작품이 알자스어를 비롯하여 그랑테스트 지역에서 사용되는 두 개의 소수어, 총 3개의 지역어로 상연됨.
- 지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관객들을 위해 프랑스어 자막이 제공됨.
- 출처: 프랑스블루 홈페이지 내 기사[25)]

['무대 위의 언어' 홍보 포스터]

## ⑦ 축제

■ 지역어를 진흥하기 위한 각종 지역 축제 및 경연대회가 진행되고 있음.

**'토탈 페스툼(Total Festum)' 축제**

- 옥시타니 레지옹은 약 330,000유로(한화 약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매년 '토탈 페스툼' 축제를 진행하고 있음.
- 약 90여 개의 지역 파트너사가 오크어와 카탈로니아어를 비롯하여 지역 문화 전반의 발전과 관계된 콘서트, 거리 공연, 어린이 공연, 강연, 전시 등을 진행함.
- 2006년에 시작된 이 축제는 2022년 기준 16회를 맞이하였음.
-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약 두 달 동안 진행함.
- 출처: 옥시타니 레지옹 홈페이지[26)]

['토탈 페스툼' 축제 홍보 포스터]

25) https://www.francebleu.fr/amp/emissions/circuit-bleu-cote-culture-sur-france-bleu-elsass/elsass/le-festival-des-langues-regionales-langues-en-scene-das-festival-der-regionalsprachen-langues-en

26) https://www.laregion.fr/Culture-La-Region-Occitanie-lance-la-16eme-edition-du-festival-Total-Festum

**지역어 시 쓰기 경연대회**

- 몽펠리에(Montpellier) 교육청은 지역어 진흥을 위한 목적에서 오크어와 카탈로니아어 시 쓰기 경연대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있음.
- 오크어와 카탈로니아어로 교육을 받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한 시 창작물을 출품하도록 함.
- 2021년에 개최된 제13회 시 쓰기 경연대회에는 초등학교 31개 학급, 총 428명의 학생, 중·고등학교 50개 학급, 총 49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 출처 :몽펠리에 교육청 홈페이지[27)]

### ⑧ 공공서비스

■ 기타 사례로 공공서비스 내 지역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몰락법」에 명시된 내용이기도 함.

**대중교통 내 지역어 사용**

- 옥시타니 레지옹에서는 지역 기차 내 프랑스어-오크어 혹은 프랑스어-카탈로니아어 안내 방송을 송출하고 있음.
- 지역 내 모든 기차역의 이름 및 역사 내 표지판을 프랑스어-오크어 혹은 프랑스어-카탈로니아어, 두 언어로 병기되도록 함.
- 출처:옥시타니 레지옹 홈페이지





**지역어가 병기된 표지판 설치 지원**

- 그랑테스트 레지옹에 위치한 코뮌을 지원하는 형태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프랑스어-지역어 이중언어 도로 표지판 설치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
- 2,000명 미만의 코뮌 지역의 경우 70%, 2,000명 이상의 코뮌 지역의 경우 40%를 지원하며, 프로젝트 당 5,000유로(한화 약 710만 원) 한도임.
- 출처:그랑테스트 레지옹 홈페이지[28)]

[지역어가 병기된 표지판 예시]

27) https://pedagogie.ac-montpellier.fr/sites/default/files/2021-10/2022_appel_concours_aca%C3%A9mique_po%C3%A9sie_occitan_catalan-1%20-%20Copie.pdf

**프랑스어와 지역어가 병기된 호적의 발행**

- 2021년 4월, 프랑스 누벨아키텐(Nouvelle-Aquitaine) 레지옹의 소도시 비아리츠(Biarritz)에서 프랑스어와 바스크어가 병기된 호적을 발행하였음.
- 2022년 3월, 브르타뉴 레지옹과 정부가 체결한 협약에 의해 브르타뉴 지역에서도 프랑스어와 브르타뉴어가 병기된 호적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브르타뉴 레지옹 홈페이지

## 1.2. 중국의 지역 언어문화 정책

### (1) 지역 언어문화 특징

■ **[중국어의 정의]** 중국어는 중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족(漢族)의 언어'라는 의미로서 '한어(漢語)'라고 부르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

-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국어'는 막연한 국가 개념에서 온 것으로 실제 중국에서는 쓰이지 않는 용어임.
- 한어는 한족의 방언도 포함하고 있는 광의적 명칭이기 때문에 현대중국의 표준어는 '보편(普遍)적으로 통(通)하는 말(話)'이라는 의미로 '보통화(普通話)'라고 명명함.

■ **[지역어 현황] 중국의 지역어는** 다민족・다언어・다방언・다문자 특성을 가짐.

- 방언은 대(大)방언만 하더라도 크게 '관화(官話) 방언', '월(粵) 방언', '오(吳) 방언', '민(閩) 방언', '객가(客家) 방언', '감(贛) 방언', '상(湘) 방언'처럼 7대 방언으로 구분함. 같은 대방언 안에서도 다시 여러 개의 하위방언으로 나누어 차(次) 방언, 차차(次次) 방언으로 분류할 정도로 다양함.
- 중국은 56개 민족(한족과 55개 소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53개 민족이 중국어와 다른 고유의 민족어를 사용함. 23개 소수 민족은 고유의 문자도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130종(種)이 넘는 언어와 약 28종의 문자가 존재하는 다민족・다언어・다방언・다문자 국가임.
- 2009년 중국 국무원은 『중국 소수 민족 정책 및 민족공동 번영발전(中國少數民族政策與民族共同繁榮發展)』 백서에서 "소수 민족 인구 중 대략 60%에 달하는 6,000만 명의 소수 민족이 고유의 민족어를 사용하고, 3,000만 명은 자신들의 문자를 사용한다"라고 발표함.
- 한국의 지역 언어는 '지역 방언'에 국한되지만, 중국의 지역 언어는 한족들이 사용하는 '지역 방언'과 소수 민족이 사용하는 '민족 토착어'이므로 대단히 복잡함. 특히, 몽골어, 티베트어, 위구르어, 조선어

28) https://www.grandest.fr/vos-aides-regionales/grand-est-soutien-aux-actions-et-structures-en-faveur-du-developpemnt-des-langues-et-cultures-regionalesgrand-est-soutien-aux-actions-et-structures-en-faveur-du-developpement-des-langues-et-cultur/

등과 같은 뿌리가 전혀 다른 강제 병합된 민족의 언어도 포함되므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어정책은 급변하고 있음.

### (2) 정책 추진 방향

#### ① 지역어 보전 정책의 법적 위상 수립

■ 지역어(소수 민족 언어 포함)는 헌법 및 법률의 보호 규정으로 법적 위상 존재.

- 신중국 성립 이전인 1938년 항일전쟁 시기 마오쩌둥의 저서 『신단계론(論新段階)』에 중화민족이 단결하여 일본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항목에서 “여러 소수 민족의 문화, 종교, 관습을 존중해야 하고, 그들에게 한족의 문자와 언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각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한 문화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언급함(안영은. 2012).
- 중국은 1949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킨 『공동강령』에서 ‘언어 및 문자를 발전시킬 자유’를 규정한 후 『헌법』에서 이를 명문화함. 헌법에는 국가통용언어 문자를 보급하고 확대하는 것을 우선하며, 언어 및 문자 사용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아가 민족 평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소수 언어와 관련하여, 중국 헌법 제4조(민족 언어 및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 제121조 (자치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 지역에서 통용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언어 및 문자의 사용), 제134조 (민족 언어 및 문자를 사용한 사법적 권리행사) 등을 명문화하고 있음.
- 헌법 규정의 관철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법』에 헌법과 상응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제10조(헌법 4조에 상응), 제21조(헌법 제121조에 상응), 제47조(헌법 제134조에 상응),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6조에도 ‘소수민족들이 통용하는 문자로서의 교육 시행’ 등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전인영. 1994)

■ 지역어(소수 민족 언어 포함)는 소수 민족 보호 정책 차원에서 헌법 및 법률의 보호 규정으로 법적 위상이 제고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선언적 원칙에 불과.

- 중국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동화정책과 융화정책을 다르게 시행하였음. 동화정책을 시행할 때는 소수민족어 사용을 방해하였고, 융화정책을 시행할 때는 소수 민족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언어 사용을 용인하는 정책을 펼침(안병삼. 2022).

#### ② 소수 민족을 한족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언어정책 추진

■ 신장, 티베트는 2017년, 2018년 각각 인민교육출판사에서 제작한 『어문』 중국어 교재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음.

- 내몽골과 옌볜조선족자치주에서도 2021년 신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한족 학교에서 사용하는 『어문』 교재로 중국어 수업을 시작하고 도덕과 법치(정치), 역사 과목도 중국어로 가르치게 하였음.

- 2023년부터는 대학입시에 소수 민족 가산점이 폐지되고 어문, 역사, 정치 과목을 모두 중국어로 입시를 치르게 하여 소수 민족 우대 정책은 없어지고 있음. (KBS. NewDaily. 2020)

■ 2022년 7월 25일 발표한『옌볜 자치주 인민 정부 판공실 발행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조선어 및 문자 업무에 관한 조례 시행세칙 통지(延边州人民政府办公室关于印发延边朝鲜族自治州朝鲜语言文字工作条例实施细则的通知)』에는 한어와 조선어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의 원칙을 새로 공표함.
- 이전에는 조선어가 중심 언어였으나 중국어로 중심 언어를 교체함.
- 12조에는 표지판, 표시판, 간판에 한어와 조선어를 동시에 사용할 때 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글자 크기는 서로 같게 하되, 가로 배열일 때는 한어가 앞에, 조선어는 뒤에 또는, 한어는 위에, 조선어는 아래에, 세로 배열일 때는 한어는 오른쪽에, 조선어는 왼쪽, 원으로 배열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어는 바깥 고리에, 조선어는 안쪽 고리에 놓이게 하거나 한어가 원형의 왼쪽 절반에, 조선어가 원형의 오른쪽 절반에 있어야 한다고 변경함. (옌볜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③ 한족 중심의 통일된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보통화의 글로벌 역량 강화 추진

■ 성공적인 보통화 보급 정책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공자학원 설립.
- 2022년 6월 중국교육부 '언어문자정보관리사'는 2021년 말 기준 전국 보통화 보급률은 80.72%, 규범한자 식자(識字)률은 95%, 문맹률은 2.67%라고 발표하고, 2025년에는 보통화 보급률이 85%에 달할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보통화 보급 정책은 성공적임. (중국교육보. 2022)
- 2011년 중국교육부는 UNESCO , FAO, WTO 등 10개 UN 산하 기관에서 보통화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180여 국가와 지역에서 보통화 교육을 시행, 76개 국가가 중국어를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했으며, 현재 외국에서 2,500만 명 이상이 중국어를 학습하고, 누적 중국어 학습자는 2억 명에 달한다고 발표함. (중국교육부. 2011)
- 2021년 현재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는 주요 기관인 공자학원은 세계 127개 국가, 476곳에 설립되어 있음. (nitnews. 2021)
- 중국은 이제 보통화의 해외 확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보통화의 글로벌 지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 중국은 성공적인 보통화 보급 정책으로 한족의 방언사용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며 제도적으로 강한 규제 정책을 실행하지 않음.
- 오히려, 각종 언어 보호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각지의 방언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잘 보호하려고 노력함. 즉, 효율적인 수단으로 방언에 활력을 유지해 방언이 지속해서 생존 및 발전하여 약화하거나 소멸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적극적인 '언어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다만, 소수 민족의 언어는 전면적, 과학적, 체계적 분석에 따라 언어의 실태를 기록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전시하고자 하는 소극적 대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 보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김주

아. 2022)

④ 방언과 소수 민족 언어 보전을 통한 언어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신중국 수립 초기 언어정책의 중점은 복잡한 한자를 '간소화(簡化)'하는 것과 뜻글자의 발음표기 해결 방법인 「한어병음방안(漢語拼音方案)」의 제정과 시행' 및 '보통화의 보급'이었음.

- 중국은 언어의 통일이 56개 민족 간의 소통과 조화를 쉽게 하고, 국가통일과 민족 단합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화 보급과 확대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추진하였음.

■ 개혁·개방 이후에는 법제화 강화와 언어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회 발전 추세와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결합해 다각적 측면에서 언어정책을 추진하였음.

- 중국은 다민족・다언어 국가이지만 국가 언어정책의 목표는 이데올로기적인 단일 언어 국가를 형성하는 것임. 중국 정부는 언어는 국민국가라는 정치적 조직체(polity)를 구성하는, 민족을 공동체로 결합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한어로 국가의 정체성을 통일시키고, 소수 민족의 언어는 활성화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보존'하려고 해 왔음. (민경민·김주아. 2022)
- 2013년 1월 중국교육부 '국가 언어 문자 업무위원회(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가 『국가 중장기 언어 문자 사업 개혁 및 발전계획 요강(國家中長期語言文字事業改革和發展規劃綱要(2012-2020)』을 발표하여 "언어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선하며 방언사용과 보호를 위한 과학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마련함.
- 2022년 6월 중국교육부는 최근 10년간의 언어 문자 개혁 성과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4개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개하였음. 3개 프로젝트는 모두 보통화와 관련된 프로젝트이며, 그중 가장 하위 성과에 해당하는 4번째 프로젝트인 '중국 언어자원 보호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함.
- '중국 언어자원 보호 프로젝트'를 통해 방언과 소수 민족 언어자원을 조사, 보존, 전시하였고, 전국 31개 성(省)과 홍콩, 마카오 및 대만 등 지역 120개 이상의 언어와 주요 방언을 포함해 1,700개 이상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음. 1,000만 개 이상의 원본 문서 자료를 수집하고,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언어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20권의 『중국 언어문화 컬렉션(中国语言文化典藏)』과 30권의 『소멸 위기의 중국언어지(中国濒危语言志)』를 출간하였음. (중국교육보. 2022)
- 중국 정부는 방언 및 소수 민족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영구 보존'하려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3) 정책 추진체계

① 법·제도

■ 『국가통용언어문자법(國家通用語言文字法)』

- 2000년 1월 중국교육부는 중국의 언어와 문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안인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을 공표함. 이는 중국 최초의 언어정책 관련 법안임. '국가통용언어문자'는 '보통화와 규범 한자를 지칭'하고

영어로는 'Standard Spoken and Written Chinese Language'라고 번역하고 있음. (정준호, 2020)

-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제정 초기에는 '국가통용 언어 문자'와 함께 '소수 민족의 언어와 문자'도 포함되었으나, 2000년 2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소수 민족 언어와 문자의 복잡성과 특수성 및 타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소수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제외한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의 규범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함. (민경만·김주아. 2022)
- 중국은 소수 민족의 언어와 문자의 지위, 언어 평등, 사용범위 등 중요 문제에 관한 내용이 이미 관련 법률에 명시되었으며, 빠지면 이를 수정・보완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소수 민족 언어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음. (蘇金智. 2018)
-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제1장 총칙(總則)에는 8개 조항이 있으며 제1조~제7조는 모두 '통용언어문자' 사용에 관한 내용이며, 제8조에서만 "모든 민족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자유가 있다"라고 명시함.
- 아래 사용 규정에서 보듯이 마지막 제16조에서도 '공무 집행 시 필요한 경우', '국무원과 성급 언론 및 방송 매체의 비준을 받은 경우', '표현 방식에 따라 필요한 경우', '꼭 필요한 경우' 방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하였고, 소수 민족 언어 사용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이는 『헌법』에 규정한 "각 민족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자유가 있다"라는 권리를 구속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어, 중국에 병합되었지만, 민족의식이 강한 몽골족, 티베트족, 위구르족, 조선족 등과 같은 소수 민족은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보고 불만을 표출함.
- 2013년 1월 교육부 '국가 언어 문자 업무위원회'가 '국가 중장기 언어 문자 사업 개혁 및 발전계획 요강(国家中长期语言文字事业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2-2020)'을 발표하여 "언어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개선하며 방언사용과 보호를 위한 과학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마련.

**〈표 3-1〉『국가통용언어문자법』 제2장 '국가통용언어문자' 사용 규정.**

| | |
|---|---|
| 제1조 | 통용 언어 문자가 사회생활에서 중추적 기능을 발휘하여 각 민족과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함 |
| 제2조 | 통용 언어 문자는 '보통화'와 '규범 한자'임 |
| 제4조 | 지방과 각급 인민 정부 및 관련 부문은 반드시 '보통화'와 '규범 한자'를 통용시키는 조처를 해야 함 |
| 제8조 | 모든 민족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자유가 있음 |
| 제9조~제12조 | 국가 기관, 교육기관, 언론 및 방송기관에서는 통용 언어 문자를 사용해야 하고 외국어 용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함 |
| 제13조 | 공공서비스 산업은 표준화된 한자를 기본으로 사용해야 하고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간판, 광고, 표지판 등은 외국 문자를 사용함과 동시에 '보통화'와 '규범 한자를' 사용해야 함 |
| 제14조 | 방송, 영화 및 TV에 나오는 언어 및 문자, 공공장소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문자, 간판 및 광고에서 사용하는 문구, 기업이나 기관의 명칭, 중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포장지 및 설명서는 모두 통용 언어 문자를 사용해야 함 |
| 제16조 | 국가 공무원이 공무 집행 시 필요한 경우, 국무원과 성(省)급 언론 및 방송 매체의 비준을 받은 방송 용어, 희곡 및 영상물 등의 표현 방식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출판, 교육, 연구 중 꼭 필요한 경우 방언을 사용해도 됨 |
| 제19조 | 교사와 공무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보통화 등급을 획득해야 함 |
| 제26조 | 이 법이 규정한 통용 언어 문자의 사용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함 |

- '국가 중장기 언어 문자 사업 개혁 및 발전계획 요강'에서 천명한 주요 목표와 임무 및 업무 중 지역 언어와 관련된 내용은 '각 민족 언어와 문자의 과학적 기록'과, '소수 민족 언어와 문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멸종위기 소수 민족 언어 복구 및 보호' 정도에 불과함.
- 2016년 교육부 '국가언어위원회'는 '국가 언어 문자 사업 13차 5개년 계획(國家語言文字事業"十三五"發展規劃)'을 발표함. 그 중 '중화 우수언어문화 확산'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혀 '중화 우수언어문화 전승 및 보호 사업'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고, 특히 '중국 언어자원 보호 사업을 시행하여 방언, 소수 민족 언어, 민간 구어 문화의 실태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수집·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2017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中共中央辦公廳)'과 '국무원 판공청(國務院辦公廳)'은 '중화 우수 전통문화 계승 발전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의견(關與實施中華優秀傳統文化傳承發展工程的意見)'을 발표함. 이 문서는 '핵심 과제' 장에서 "국가 공용 언어 및 문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표준화하고 방언 문화를 보호 및 계승해야 한다"라고 밝힘.

### ② 국가 언어 문자 업무위원회(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 1985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보통화 보급과 규범 한자 제정 및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언어정책 주관 기관을 대폭 개편하여 '중국 문자 개혁위원회'를 직속 기관인 '국가 언어 문자 업무위원회'로 개편.
- 통용 언어 문자의 표준화, 규범화 및 보급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국가 언어 문자 업무의 방침 및 정책 수립', '언어 문자 업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제정', '모든 언어 문자의 규범과 표준 제정 및 감독·조사의 조정과 추진', '보통화 보급 업무와 보통화 교사 양성업무 지도' 등임.

■ 1994년 12월 '국가 언어 문자 업무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관리하는 차관급인 '국가국(国家局)'으로 전환되었으며, 1998년 정부 조직개편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가 언어 문자 업무위원회'는 교육부 소속이 되었음.
- 이 위원회는 2022년 10월 현재 공산당(중앙선전부, 중앙통전부, 중앙공청단 등), 정부 부처(교육부, 외교부, 공안부, 문화관광부, 교통부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 35개의 기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수장인 위원회 주임은 차관(副部長)급이 담당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이 제고되었고, 대규모 민관기구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언어정책의 전면적인 추진을 위한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음.
- 산하에 '언어문자응용관리사(語言文字應用管理司)'와 '언어문자정보관리사(語言文字信息管理司)'를 두고 있으며, 의사 조정과 업무 협조를 위한 '자문위원회(國家語委咨詢委員會)', '언어 문자 규범(표준) 심의위원회(國家語委語言文字規範(標準)審定委員會)', '과학 연구 기획 영도그룹(國家語委科研規範規劃領導小組)', '전국 보통화 보급 홍보 영도그룹(全國推廣普通話宣傳周領導小組)', '외국어의 한어 번역 규범과 중화사상 문화 술어 전파 부처 연석회의 제도(外語中文譯寫規範和中華思想文化術語傳播部際联席會議制度)' 등 5개의 보조기구를 운용하고 있음. (정준호. 2020. 국가 언어 문자 업무위원회)

③ 국가민족사무위원회(國家民族事務委員會)

■ 소수 민족의 언어와 문자 업무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 담당함.

- 이 위원회는 국무원 산하 기관으로 공산당 및 국가의 소수 민족 정책을 집행하고, 소수 민족 이론 연구, 소수 민족 교육 등 소수 민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소수 민족 지역자치제도 수립과 감독, 소수 민족 권익 보장 등의 감독과 업무를 담당함.
- 산하에 '정책법규사(政策法規司)', '문화홍보사(文化宣傳司)', '민족단결촉진사(民族團結促進司)', '교육사(教育司)', '고적정리연구실(考籍整理研究室)' 등 15개 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직속 교육기관으로 '중앙민족대학(中央民族大學)', '중남민족대학(中南民族大學)', '서남민족대학(西南民族大學)', '서북민족대학(西北民族大學)', '북방민족대학(北方民族大學)', '다롄민족대학(大連民族大學)' 등의 6개 대학이 있으며, '민족출판사(民族出版社)', '중앙민족간부학원(中央民族幹部學院)', '중앙민족가무단(中央民族歌舞團)', '중앙민족 어문번역센터(中央民族語文飜譯中心)', '중국민족박물관(中國民族博物館)', '민족단결잡지사(民族團結雜誌社)' 등 9개의 직속 문화사업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홈페이지)

■ 2017년 12월 29일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중앙민족대학에 비독립적 연구플랫폼인 '중국 민족 언어 및 문자 응용연구원(國家民委中國民族語言文字應用研究院)'을 공식적으로 설립.

- 이 연구원은 국가의 소수 민족 언어 및 문자 연구의 핵심 연구 기지.
- 국가의 언어 사용 현황, 언어정책, 언어전략, 언어 보호, 소수 민족 언어와 문자의 규범화, 표준화, 정보화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소수 민족 지역 언어와 문자 발전에 학술적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연구원 산하에는 '민족 언어문자 응용 대책연구실(民族語言文字應用對策研究室)', '규범화, 표준화, 정보화 연구실(規範化,標準化,信息化研究室)', '종합사무판공실(綜合事務辦公室)', '다중 언어문자 사회와 정책연구실(多語多文社會與政策研究室)' 등의 4개의 직속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연구원장은 이족 출신인 중앙민족대학 취무톄시(曲木铁西) 교수로 근래의 연구 성과로는 「이족어 성명의 국가통용 언어문자로의 전사 규범 방안 연구」, 「전국 대학 민족 언어문자 전공 인재 배출 모델 연구」, 『민족언어문자응용연구(민족출판사)』 등을 출판하였음. (민족언어문자응용연구원 홈페이지)

### (4) 정책 내용

① 지역어 및 소수 민족 언어의 과학적 보전

■ 중국의 지역 언어문화 발전 정책의 핵심은 '중국 언어자원 보호 프로젝트(中國語言資源保護工程)'를 통한 방언 및 소수 민족 언어의 '과학적인 보전'임.

- 중국교육부는 국가통용 언어·문자 사용 확대 및 규범화, 그리고 방언과 소수 민족 언어 문자 보호를 위하여 2015년 '중국 언어자원 보호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함.
- 중국 정부가 전국의 방언과 소수 민족 언어를 처음 조사한 시기는 1956년이며, 두 번째가 2015년 '교

육부 판공청(教育部辦公廳)', '국가인민위원회 판공청(國家民委辦公廳)'이 주도한 '중국 언어자원 보호 프로젝트'임.

- 2019년 6월 중국교육부는 '중국 언어자원 보호 1차 프로젝트(5년) 건설' 완성을 표명함.
- '중국 언어자원 음성 데이터베이스 조사 지침'에 따라 '언어와 방언', '지방 방언이 섞인 표준어'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 '언어와 방언'의 조사 지역은 중국 내륙 모든 지역과 타이완, 마카오, 홍콩을 포함한 1,712곳을 조사함. 중국 내 123개 어종(語種)과 주요 방언을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언어자원 보호 프로젝트'임. 모든 조사 자료는 교육부가 전문인력을 조직하여 검수하고,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함. (중국교육부. 2019)

### ② 언어·문자·문화박물관 건립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기반으로 지방정부는 다양한 언어박물관을 건립하여 방언 및 소수 민족 언어를 보존하고 홍보하고 있음. (WANG FEI. 2020)

- 2020년 현재 중국에 설립된 언어박물관은 광시(廣西)민족대학 언어박물관, 링난(嶺南) 방언 문화박물관, 광시 허저우(賀州)대학 언어문화박물관, 상하이외국어대학 세계언어박물관, 베이징 언어문화 디지털박물관, 허난(河南) 안양(安陽) 문자박물관 등이 있음.

■ 허저우 대학 언어문화 박물관

- 최초의 언어박물관은 2016년 개관한 '허저우대학 언어문화박물관'인데, 허저우는 후난성, 광둥성, 광시성 접경 지역에 있어 언어가 매우 다양하며, 중국 6대 주요 방언 및 소수 민족 언어 3종도 두루 분포되어 있음.
- 허저우에 언어박물관을 건립한 이유는 바로 현대 과학기술로 방언과 소수 민족 언어를 잘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한 최적지라고 본 것임.
- 언어 지도 전시장, 언어 무형 문화유산 전시장, 가상현실기술 전시장 등이 설치되어 있음.

■ 광시민족대학 언어박물관

- 가장 큰 규모의 언어박물관은 2019년 개관한 '광시민족대학 언어박물관'으로 광시성 언어자원의 특징에 따라 소수 민족 언어 전시장, 한어 전시장, 동남아 언어 전시장, 언어 디지털화 전시장 등 총 네 개의 전시장이 있음.
- 광시성에 두 개의 언어박물관이 설립된 이유는 소수 민족 인구가 가장 많고 한족, 좡족, 야오(瑤)족 먀오(苗)족 등 12개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13가지 소수 민족 언어와 6가지 방언이 어우러져 있어 언어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임.

■ 링난 방언 문화박물관

- 광둥 지역의 가장 큰 언어박물관은 '링난(嶺南) 방언 문화박물관'임. '고대 한어의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광둥 방언은 고대 한어의 특징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방언임. 중국 언어 개황과 광동성 언어 개황, 광동성 언어 특징, 월 방언, 객가 방언, 민 방언, 그 외 광둥 방언 문화의 해외 전파, 광둥 방언 문화의 보호 및 계승 등 9개의 전시장이 개설되어 있음.
- 수도 베이징에는 2018년 '디지털 언어문화박물관'을 설립하였음. 베이징 방언, 베이징 구전(口傳) 문화, 베이징 사투리 사전, 베이징 방언 연구 문헌 등 베이징 언어문화 자원을 포함하고 있음.

■ 상하이외국대학 세계언어박물관

- 상하이에는 2019년 '상하이외국어대학 세계언어박물관'을 설립하였음. '언어의 탄생', '언어의 계통', '언어 및 문자', '언어와 사회', '언어와 교육'을 주제로 세계 언어문화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전시하고 있음. 중국의 최초의 세계언어박물관으로 세계 각지 언어의 다양성을 주제로 하고 상하이 현지 방언에 관한 내용은 많지 않음.

### ③ 현황 조사 및 보고서 발간

■ 방언 및 소수 민족 언어 사용 현황 조사 보고서를 출판하여 보전함.

- 국가 언어 문자 업무위원회는 매년 중국 전체의 언어 사용 현황을 조사한 『중국 언어생활 실태 보고서(中國語言生活狀況報告, Language Situation in China)』를 출판함.
- 지역 언어생활 조사는 중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2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으며 『베이징 언어생활 실태 보고서(2016)』, 『광저우 언어생활 실태 보고서(2018)』, 『상하이 언어생활 실태 보고서(2020)』 등을 출판하였음.
- 주요 내용은 해당 지역의 보통화 보급 상황 및 각 지역 방언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것임. (WANG FEI. 2020)

### ④ 지방정부, 언론매체, 민간의 지역어 활용

■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제16조에 따라 방송 및 비정규 교육과정에 관련된 부문에서는 방언의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상하이, 후난성, 광둥성. 쓰촨성 등 방언 사용인구가 많고,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강하며 지역 자부심이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오락성이 강한 예능 프로그램이나 TV 드라마 등을 자유롭게 지역 언어로 제작하고 있음.

### 상하이 지역어 활용 사례

2011년 버스 두 대에서 시작한 상하이 방언 안내 방송을 2013년 10월부터 전 노선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2017년 12월부터 상하이 뉴스 채널『뉴스 워크숍(新聞坊)』에서 매주 한 차례 상하이 방언으로 방송을 진행함.
2020년 6월 12일부터 '상하이신오락전매유한공사(上海新娛樂傳媒有限公司)'에서 상하이 방언 인재 선발 프로그램인『상하이 방언 인기왕(沪語人氣王)』을 진행함. 상하이 방언으로 공연하는 유명 지방 예술인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참가자들이 상하이 방언으로 다양한 장기자랑 경연 대회를 진행함. 2022년 9월부터 시즌 3을 방영하고 있으며 인기 예능 프로그램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음. 또한, 상하이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상하이 부모들의 상하이 방언 교육에 대한 열의를 받아들여 유치원을 선별해 시험적으로 상하이 방언 교육을 시행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함. 다만, 상하이 방언 교육은 '놀이', '생활', '스포츠' 분야에서만 진행함. 교사가 기초 수준의 상하이 방언으로 어린이와 대화를 나누고 상하이 방언 동요를 가르치는 등 놀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며 '학습' 분야에서는 보통화로 교육을 진행함. (中文明网. 2019. 百度百科. 2020.)

### 후난성 지역어 활용 사례 : 고향의 소리 프로젝트

후난성 자체의 후난 방언 보호 성과가 가장 뛰어남. 후난성 자체의 언어자원 보호 프로젝트 및 국가 지정 프로젝트가 100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장쑤성 쑤저우(蘇州) 출신 유명 방송인 왕한(汪涵)이 사비 500만 위안(元)을 들여 2015년 9월부터 5년~10년 계획으로 후난 방언을 조사, 분류, 정리하여 보존하려는 '고향의 소리 프로젝트(鄉音計劃)'를 진행함. 순수하게 민간에서 주도한 '고향의 소리 프로젝트'는 후난성 57개 지역의 방언 조사를 완료하였음. 조사 결과는 학술적, 문화적, 대중적, 오락적 요소를 모두 결합하여 시청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후난성박물관에 기증하여 "吃飯(밥을 먹다)" 두 글자만 입력해도 57개 후난 방언의 발음을 청취할 수 있게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湘声报, 2020)





### 후난성 지역어 활용 사례 : More talk More happy

후난에는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방언 TV 프로그램이 많은 편임. 2012년 5월 24일~2017년 3월 19일까지 '후난 경제 TV(湖南經視)'에서 방영된『More talk More happy(越策越開心)』는 대표적인 후난 방언 예능 토크쇼 프로그램임. 2002년 방송 후 4년 연속 후난 지역 TV 시청률 1위를 차지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2006년『신주간(新周刊)』, 2007년『버라이어티(綜藝)』가 선정한 후난 민간문화를 가장 잘 표현한 '우수 TV 프로그램상'을 받음. 프로그램 내용은 후난 방언으로 노래자랑, 장기자랑, 이전 한국 개그콘서트 인기 코너였던 '부산 특별시' 프로그램처럼 후난 방언으로 뉴스 보도하기 등, 코미디 위주의 예능 프로그램이었음. 현재까지 중국 방언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한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받음.

### 후난성 지역어 활용 사례 : 다채로운 중국말

2016년 전국 최초로 무형문화재 스타 동원 프로그램인『다채로운 중국말(多彩中國)話』이 후난 창샤(長沙)에서 제작되었음.『다채로운 중국어』는 후난 경제 TV『More talk More happy』 프로그램의 '방언 받아쓰기'를 계승한 프로그램으로 '후난 경제 TV'가 주축이 되어 '후베이 종합(湖北综合) TV', '허난 도시(河南都市) TV', '안후이 경제 TV(安徽經視)', '장시 공공(江西公共) TV', '허베이 경제 TV(河北經視)' 등이 공동 제작한 '전국 방언 지식 경진대회'임. 2016년 4월 23일부터 매주 토요일 6개 성(省) 방송국에서 방송함. 6개 성 87개 지역 방언을 소재로 하여 중국사회과학원 등의 방언 전문가를 심사자로 선정해 문화적 요소에 오락적 요소를 최대한 가미하여 6개 성의 방언을 활성화하고 방언 문화 전승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임. (百度百科. 2016). 그 외『13억의 데시벨(十三億分貝)』은 '중국 방언 음악 대상' 프로그램으로 '중국 방언 가요 대회' 프로그램임. 인터넷 채널 'iQIYI(愛奇藝)'에서 인기리에 방영하였음. 일반 음악 프로그램과 달리 표준어 노래를 '방언'으로 각색하여 원곡을 우스꽝스럽고 재미있게 리메이크하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정착하였음.

## 1.3. 일본의 지역 언어문화 정책

### (1) 지역 언어문화 특징

■ **[지역어 현황]** 번(藩:제후국)을 중심으로 지방분권화 되었던 일본의 경우, 본토와 어휘나 문법의 차이 있는 지역어가 다양하게 분화됨.

- 일본의 언어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어와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 언어로 구성.
- 특히 류큐(琉球) 지방에는 많은 섬이 존재하였고 섬이 다르면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지역 언어(사투리, 방언)의 정도가 심함.

■ **[지역어 소멸 위기]** 근대국가로 접어들면서 국가 단위의 언어가 통일되면서 일본의 지역 언어는 소멸 위기에 처함.

- 2009년 유네스코(UNESCO)에서 발표한 "Atlas of the World's Languages in Danger"(제3판) 따르면 일본 국내에서는 8개 언어·방언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재해 지역의 언어가 소멸 위기에 처함.
- 일본 문화청에서는 유네스코의 척도에 근거하여 소멸 위기 정도나 지역 언어의 보존·계승의 대응 상황, 그리고 현황 및 과제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

**유네스코(UNESCO)에서 발표한 일본의 소멸 위기 언어**

[매우 심각] 아이누어(화자 10명 미만)
[중대한 위기] 야에야마 방언(八重山方言), 요나구니 방언(与那国方言)
[위험] 하치죠 방언(八丈方言), 아마미 방언(奄美方言), 구니가미 방언(国頭方言), 오키나와 방언(沖縄方言), 미야코 방언(宮古方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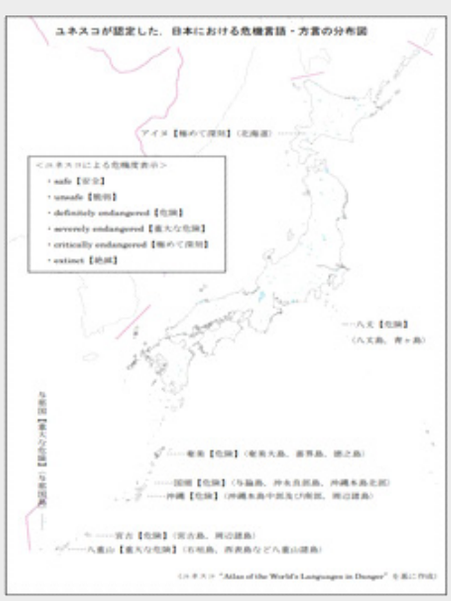


[일본 소멸위기 언어지도]

### (2) 정책 방향

#### ① 표준어 중심 정책의 배경

■ 일본 정부는 중앙집권국가로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전국적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생김.

- 일본의 수도가 1869년 도쿄로 옮겨지고, 근대국가 일본의 중심지로서 도쿄는 정치·경제·문화의 실질적인 중심이 됨.
- 메이지 시대의 사회정세는 필연적으로 국가어의 확립과 전국말의 통일화 정책이 요구되면서, 수도 도쿄의 말(당시 에도의 말)이 고급스러운 표현 형식으로 치부되고 교양 있는 지식계층의 사용언어로서 자리매김 되면서 기존의 에도어와 다른 도쿄어가 형성.
- 도쿄어는 새로운 시대의 말로 표준어로서 지위와 세력을 확보해 나갔으며, 메이지유신(1868)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언어(사투리, 방언)는 박멸의 대상이 됨.
- 일본 정부는 학교 교육을 의무화하며 전 국민에게 일본 국민이라는 하나의 신민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표준어 교육을 진행.

〈표 3-2〉 일본 지역 언어의 사회사(小林 2004)

| 도별 | 근세이전 | 근대 | 현재 | 미래 |
|---|---|---|---|---|
| 지역 언어의 사용 현황 | 활발 | | 쇠퇴 | 더욱 진행 |
| 공통어화 | | 개시 | 진행 | 더욱 진행 |
| 지역 언어의 사회적 평가 | 낮음 | 극단적으로 낮음 | 높음 | |
| 지역 언어 관련 활동 | | 박멸운동 | 보호 및 보급 활동 | 문화재적 보호 |
| 지역 언어의 성격 | 시스템(체계) | | 스타일 | |
| 지역 언어의 기능 | 사고내용 전달 | | 상대방 확인 및 발화 태도 표시 | |

#### ② 지역어 보전 정책의 방향

■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어교육에서 표준어라는 용어 대신 공통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면서 지역 언어의 가치평가는 중립적으로 이동.

- 에도어-도쿄어-표준어-공통어로의 변화 속에 지역 언어 역시 공통어와 접촉함으로써 지역 공통어(지역에서 통용되는 말)로써의 지위를 찾아가게 되고, 공통어와 지역 언어 양쪽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
- 소멸 위기에 처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지역 언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를 시도.
- 일본은 지방분권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어 민관학(民官學)에서 지역 언어문화 보존정책을 활발히 진행.
- 일본 정부 문화청에서는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언어 실태 파악에 나섬.
- 일본의 국립 연구기관인 국립국어연구소(国立国語研究所)에서는 대학의 지역 언어 연구자들과 연계하

여 각지의 방언 조사를 실시.
- 이를 토대로 국립국어연구소 주도의 일본언어지도(LAJ) 작성 배포.
- 대학연구기관 연구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언어 살리기 이벤트를 진행.

### (3) 정책 추진체계

#### ① 문화청

■ 중앙정부인 문화청은 소멸 위기 및 지역 언어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지역 언어 활성화 방안 모색.

- 문화청 자체사업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언어·방언 서미트'와 '위기 상황에 처한 언어·방언에 관한 연구협의회'를 운영.
- 소멸 위기 언어 계승을 위해서 문화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막대한 지원을 통해 소멸 위기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
- 일본의 소멸 위기 언어뿐만 아니라 각 지역 언어(사투리)에 대한 조사, 일본 본토 사투리를 포함하여 약 40개 지점의 지역 언어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 언어의 기록과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

#### ② 국립국어연구소

■ 국립국어연구소는 일본의 언어생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음.
- 초기 국립국어연구소의 지역 언어에 대한 관심은 공통어화의 진행 정도에 초점.
- 이후 지역 언어를 통해 한 사람의 일생을 추적하고 지역 언어 및 문화의 변화를 파악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
- 쓰루오카 조사(鶴岡)는 1950년 첫 조사 이후 20년 주기로 1950년, 1971년, 1991년, 2011년 총 4회의 조사가 시행.
- 처음에는 공통어화 현상을 살피기 위한 조사였지만, 3번째(1991년) 조사부터 공통어화가 거의 이루어졌다는 결론에 도달.
- 이후 4번째 조사에서는 기존의 조사항목에 사회 언어학적 요소를 추가.
- 또 지역 언어의 보존적 측면에서 조사대상자의 지역 언어에 대한 의식과 기억을 물어 그 지역 언어를 흉내를 낼 수 있는지를 확인.
- 현재 다양한 지역의 언어 자원에 근거한 종합적 지역 언어문화 사업 진행.
- 지역 언어가 급속히 쇠퇴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지자체나 지역의 대학 또는 연구자와 연대를 통해 지역어의 문화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해 조사.

#### ③ 민간 연구 조직

■ 일본 방언연구회

- 민간 위주의 학회로 일본의 지역 언어 연구의 촉진과 연구자 상호 연락을 목적으로 조직.
- 일본 유일의 지역어에 관한 전국 학회로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모임.
- 제1회의 연구 발표회를 1965년 6월 5일 데즈카야마학원전문대학에서 개최.
- 1년에 2회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며 기관지 '방언연구(Studies in Dialects)'를 간행.
- 이 연구회의 기본방침은 지역 언어 연구가 지역어 화자 및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 위에서 성립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 언어 연구자는 사회 전반에서 법과 연구기관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일본 지역 언어 연구의 향상·발전에 기여.

■ 도호쿠대학(東北大学) 방언연구센터
- 각지역의 언어문화는 공통어화의 물결에 휩쓸려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
- 동시에 지역 언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다양한 대처가 부족.
- 21세기 사회는 '지역 언어'가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을 인지하고, 도호쿠대학 방언연구센터는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의 지역 언어에 관한 기록과 연구를 진행.

■ 소마방언보존회(相馬弁保存会)
-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지역 언어 보존에 대한 절실함을 깨닫고 후쿠시마현 소마방언보존회에서는 지역 언어를 기록.
- 현재 지역 언어 중 1,070단어를 수집 정리.



### (4) 정책 내용

① 소멸 위기 지역어 지원 사업 : 중앙정부

■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언어·방언 서미트(Summit)' 개최(문화청).
- 유네스코가 소멸 위기에 있다고 분류한 일본의 8개 지역 언어의 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사투리 서미트를 매년 개최.
- 2019년에는 가고시마현 아마미(奄美) 시에서 진행하였고 이틀간 섬 안팎에서 총 1,350명이 참석하여 강연이나 공개 토론을 진행.
- 일반 시민들을 위한 행사로 일본 각지의 방언 듣기, 각 지역의 민요, 상황극 등을 시연.
- 서미트 개최를 통해 지역어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지역 언어의 보존과 계승에 대한 정책 제안을 숙고하고 지역 소멸이 아닌 지역 재생 등 지속발전가능한 계기를 마련.

■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언어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문화청).
- 일본 문화청은 유네스코의 위기 언어 발표 직후 위기 상황에 있는 언어·방언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위기 상황에 있는 언어·방언의 보존·계승에 관한 대응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수행.

- 대표적으로 「2010년도 위기상황에 있는 언어·방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012년도 위기상황에 있는 언어·방언의 보존·계승에 관한 대응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아이누어)」, 「2012년도 위기상황에 있는 언어·방언의 보존·계승에 관한 대응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아마미 방언·미야코 방언·요나구니 방언)」, 「2013년도 위기상황에 있는 언어·방언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하치죠 방언·국두 방언·오키나와 방언·야에야마 방언)」, 「2014년도 위기상황에 있는 언어·방언의 보존·계승에 관한 대응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하치조 방언·국두 방언·오키나와 방언·야에야마 방언)」 등이 있음.

② 지역 언어를 활용한 지자체 행사

■ 지역 언어(방언) 경연 대회 개최.

- 일본의 전국 방언 대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회는 1987년부터 17년간 행해졌던 야마가타현 미카와마치(三川町)의 전국방언대회.
- 미카와마치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광자원도 없었고 기차역도 없던 작은 마을이었지만 전국방언대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유명세.
- 원래 매년 8월 중순에 개최되었지만 제6회 대회 때 11월 23일을 '방언 감사의 날'로 제정함으로써 이후 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개최.
- 대회는 자유토론, 민요발표, 방언을 활용한 인형극, 방언 가라오케, 방언 퀴즈대회 등으로 매년 형식을 달리해 개최.
- 매년 6월에 열리는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방언대회는 같은 오키나와현이라고는 하지만 오키나와 방언과는 다른 독특한 뉘앙스의 방언대회라는 점에서 주목.

■ 오시마 방언의 날

- 가고시마(鹿兒島)현 오시마 지역 문화협회연락협의회가 2007년 제정.
- 쇠퇴하고 있는 아마미 방언의 보존·전승을 위한 홍보계발 활동 진행.
- 기념일의 명칭은 각 섬마다의 방언으로도 정해져 있음.
- 아마미오시마섬에서는 '시마유무타의 날', 기카이섬에서는 '시마유미타의 날', 요론섬에서는 '윤누후투바의 날' 등으로 명명.
- '윤누후투바'는 요론섬의 지역어(후투바)라는 뜻으로, 후(2) 투(10) 바(8)라고 숫자를 읽는 방법에서 착안하여 방언의 날 기념일 날짜를 2월 18일로 정함.
- '방언의 날' 전후로 초중고학생이 평상시 성과를 발표하는 「기카이쵸 시마우타· 시마 유미타 대회」 또는 지역 언어로 쓰여진 카르타(카드)를 주고받는 놀이「여론섬 카르타 대회」등의 이벤트를 개최.
- 가고시마현에서는 11월 셋째 주를 가고시마현 사투리 주간으로서 설정하고 차세대에게 사투리를 계승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

[그림 3-2] 오시마 방언의 날 행사 포스터





③ 사회적 가치를 위한 지역어 활용

■ 지역어로 치유하는 지역 재난 피해

-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지역에서는 지역 언어를 지키기 위해 옛날이야기나 방언 연극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방언을 교육.
- 앞서 언급한 도호쿠대학 방언연구센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장면의 대화를 녹음하여 지역 언어를 후세에 남기려고 노력.
- 지역 언어 보존에 큰 의미가 있지만 재난과 재해 현장에서 그 필요성은 매우 중요.
- 재해 현장의 이재민과 외부 지원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지역 언어가 통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
- 그 해결책은 발음이나 어휘, 문법을 해설한 팸플릿 또는 리플릿과 카드형식의 지역 언어와 공통어의 조견표 제작.
- 재해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언어에 대한 이해는 이재민과 외부인의 신뢰 구축에도 도움.
- 동일본대지진 재해 지역에서 지역 언어를 사용하여 이재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례가 보고.
- 지역 언어의 잠재성을 빌어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을 도모하는 활동도 진행.
- 동일본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시노마키(石巻) 지역에서 그 지역의 언어로 만든 '오라호(우리들) 라디오체조'가 가족을 잃은 슬픔, 절망감 등의 이유로 생활에 활력을 잃은 주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줌.

■ 지역어를 통한 다문화사회 지원

- 지역 언어의 문제는 일본인들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발생.
- 외국인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일본 각지에서 취업한 이후 해당 지역 언어로 이루어지는 환자와의 의사 소통은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
- 외국인이 갖는 지역 언어의 불편함을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
- 이마무라 가호루(今村かほる) 지역언어 연구팀은 의료·간호·복지의 현장에서 현지 언어를 모르는 젊은이나 타지역에서 온 의료·복지의 지원인력 그리고 외국인 간호사 등을 위해서 각 지역의 언어로 표현한 신체 어휘도, 의료·복지 관계 사투리 어휘집, 사투리 문진 텍스트 등을 작성하여 인터넷 웹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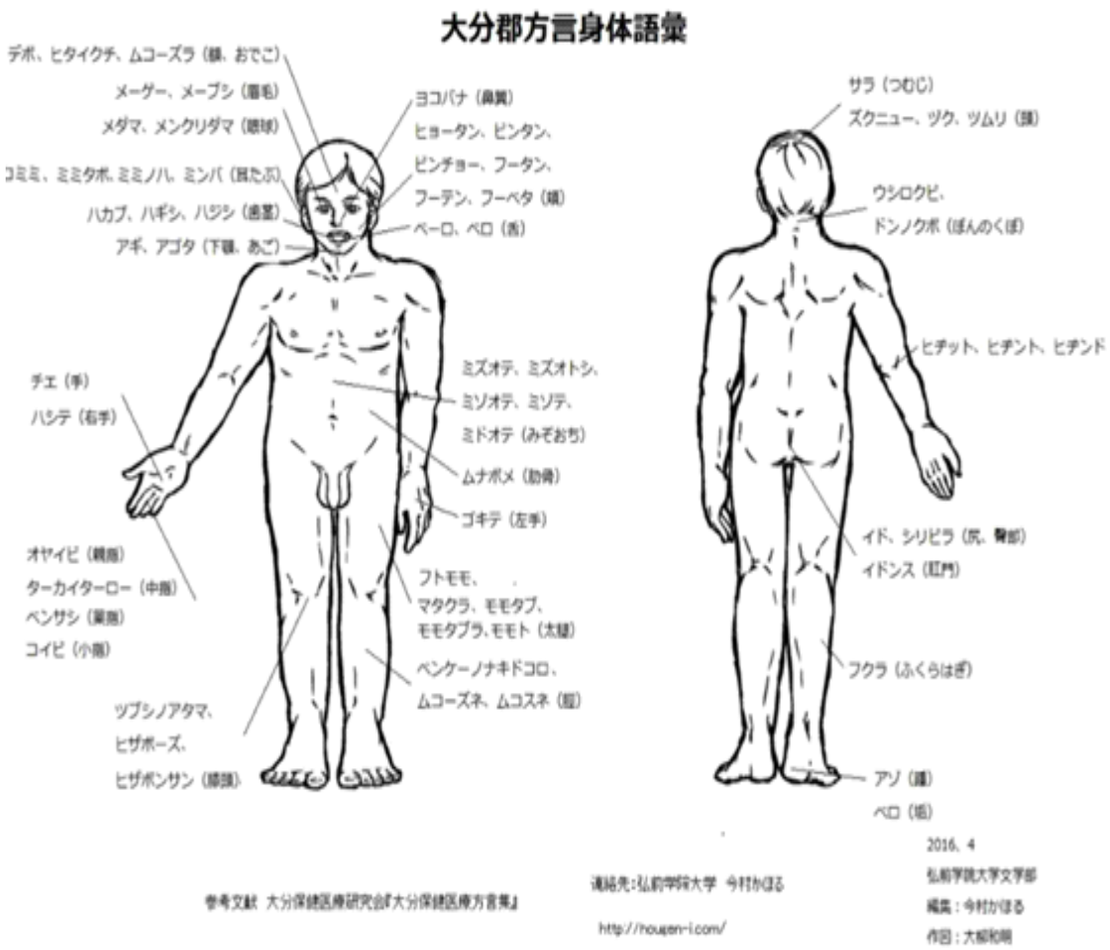


[그림 3-3] 지역어로 표현된 신체 어휘도

④ 관광산업을 위한 지역어 활용

■ IT기술(QR코드)을 활용한 지역 언어 활용.

- 아오모리의 호텔에서는 방 이름이나 이벤트명, 종업원의 인사말에 그 지역 언어를 도입.
- 2021년 4월부터는 관내 곳곳에 설치한 QR코드를 찍으면 그 장소에 대하여 지역 언어로 안내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작.
- 지역 언어를 통해 아오모리현에 여행온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려는 시도.
- 홋카이도에서는 지역 언어로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곳도 있고 지역주민 복지관이나 휴양 시설의 명칭을 지역 언어로 바꾸어 명명하여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냄.

# 제2절
# 지역 언어문화 활용 사례

## 2.1. 지역어 경제·산업적 활용에 관한 연구

### (1) 문헌연구

■ 지역어를 보전하는 방안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가 지역어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어가 가진 효과성 및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지역어를 산업적으로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존재.

〈표 3-3〉 지역어의 경제·산업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다룬 주요 연구

| 구 분 | 제 목 | 주요내용 |
|---|---|---|
| 강정희(2010) | 지역어 자원의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방안 | 지역어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제작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어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해서는 전문 작가의 육성, 지역사회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 |
| 김정우(2011) | 지역어와 콘텐츠 | 지역어가 콘텐츠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지역어는 '새로운 경험의 제공', '공감의 폭 확대', '재미 증폭', '친근감 증대'라는 점에서 기여한다고 분석. |
| 김덕호(2013) | 방언의 문화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연구 방법론 제언 | 방언이 가진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둔 연구로, 방언 상품 조사를 통해 방언을 산업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연구 내용을 통해 방언의 산업화 방안을 제시. |
| 김만수(2013) | 방언 콘텐츠의 의미와 활용 가능성 | 방언 콘텐츠에 대해 롱테일의 법칙을 기초로 접근한 연구로 문학, 영상, 광고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다양성 측면에서 지역어 콘텐츠의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
| 강송희, 송지성(2015) | 사투리를 활용한 소주 라벨디자인 연구 | 지역별로 생산 중인 소주와 사투리를 접목하면, 소주의 지역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2030의 지역어 등에 관한 관심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 . |
| 박성호(2022) |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방언 콘텐츠 계발 방안 | 방언의 개념을 확인하고, 콘텐츠로서 가치를 확보하는 방안 모색, 방언 원형을 발굴하고 이에 기반을 둔 스토리텔링, 3D게임 콘텐츠 개발. |

■ 지역어 활용에 관한 주요 연구는 공통적으로 지역어가 콘텐츠/상품 제작에 활용되었을 때, 정서적인 측면의 효과성과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

- 주요 연구에서는 지역어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려면 지역어 원형을 기록, 관리해야 하며, 지역어 이야기가 지속 생산될 수 있는 구조(전문인력 등)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본 절에서는 지역어 활용과 관련된 문헌연구 결과에 기반을 두고,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의 사례를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 지역어 활용의 경제·산업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2.2. 민간 부문 활용 사례

■ 민간 분야에서 지역어 활용은 일반적으로 지역성을 강조하고 싶거나, 콘텐츠·제품 제작 관점에서 재미를 더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어를 보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민간분야의 지역어 활용사례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 지역어를 활용해 왔던 방식으로 지역어를 활용한 사례와 새롭게 나타난 사례(AI)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1) 영상콘텐츠

■ 콘텐츠산업에서 지역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장르는 영상콘텐츠(영화, 방송)을 꼽을 수 있는데, 서울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상콘텐츠는 지역어를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직업, 출신 등)을 규정하기 위해 활용됐음.

- 지역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상콘텐츠는 표준어 대본이 아닌 지역어 대본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적 배경을 강화하고, 콘텐츠 이용자의 몰입감을 높이는 데 활용.
- 다만 기존에 제작된 영상콘텐츠는 주로 인구 비중이 높은 경상·전라 지역어를 활용해왔고, 일부 강원·충청·제주 등의 지역어 활용 빈도가 높지는 않았음.

■ 최근 국내 방송·제작사가 제작하여 방영된 드라마는 제주 지역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제주 지역어를 통해 시청자의 몰입감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콘텐츠를 시청한 사람들의 지역어에 관한 관심을 높였음.

- 최근 'tvN'에서 방영(2022.04)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제주 지역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에 표준어 대본을 활용해 제주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와 차별화 시도.
- 해당 드라마는 캐릭터의 성격을 묘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콘텐츠의 배경인 '제주'지역의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했기 때문에 그동안 접했던 콘텐츠와 차별성을 가짐.

■ 국내 유통플랫폼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통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독점 콘텐츠도 지역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대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어에 대한 글로벌 시청자의 관심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였음.

- 최근 'Apple TV+'에서 방영(2022.03)된 '파친코'는 시대상과 주인공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주연 배우의 대사 중 많은 부분에서 부산 지역어와 제주 지역어를 활용.
-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지역어 콘텐츠가 유통되면서 우리나라의 지역어에 관한 관심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확산하는 계기가 됨.

〈표 3-4〉 지역어를 활용한 영상콘텐츠 사례

| tvN / 우리들의 블루스 | Apple TV+ / 파친코 |
| --- | --- |
| | |
| 제주 지역언어 활용 | 부산 · 제주 지역언어 활용 |

자료 : CJ ENM, APPLE TV+ 보도자료

■ 영상콘텐츠에서 지역어의 활용은 사라져가는 지역어 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포털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해 보면 쉽게 파악이 가능.

■ 앞서 살펴본 두 개의 드라마(파친코, 우리들의 블루스)는 대사 중 많은 비중으로 제주 지역어를 활용하였고, 방영 기간 큰 흥행을 이끌었는데, 이들 드라마의 방영 기간에 제주 지역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빅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드라마 '파친코'가 방영을 시작한 3월 말 '제주 사투리'에 대한 검색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4월에 '우리들의 블루스'가 연이어 방영되면서 '제주 사투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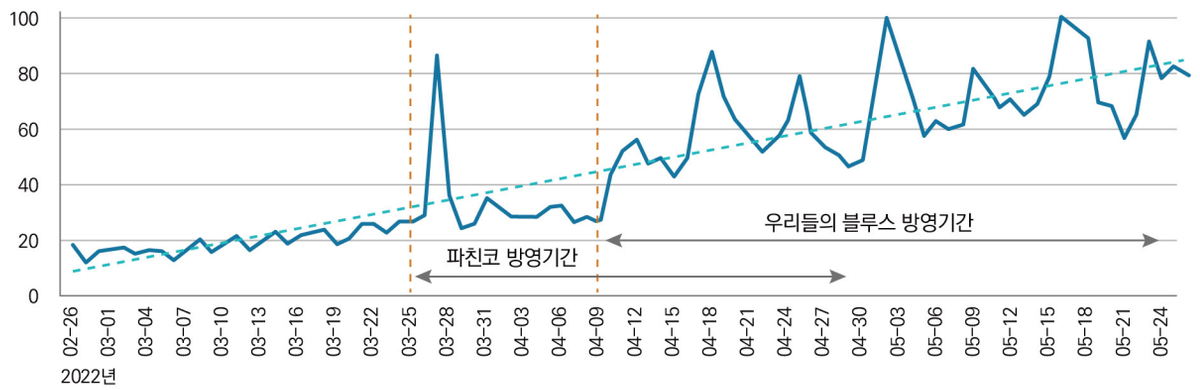


[그림 3-4] '제주 사투리' 검색량 추이와 제주 언어를 활용한 드라마 방영 기간

자료 :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 결과 재구성

■ 콘텐츠 제작 시 높은 비중으로 지역어를 활용하는 것은 시청자에게 신선함과 정서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내 콘텐츠 흥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사라져가는 지역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보전 방안으로도 볼 수 있음.



### (2) 광고

■ 지역어는 광고에서 지역에 대한 강조가 필요할 때 활용되는 중요한 요소로 해당 지역 출신의 지역어를 구사하는 배우를 활용해 제품·서비스 등을 광고.

- 지역의 제품·서비스가 표준어를 사용해 광고할 경우, 지역명 표기가 별도로 없다면 광고를 시청한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서비스가 지역의 것인지 알기 어려움.
- 하지만 지역어를 사용한 광고의 경우 해당 제품·서비스가 어느 지역의 것인지 또는 어느 지역과 관련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어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음.

■ 팬데믹 이전 여행플랫폼 '여기어때'는 지역어를 활용한 광고를 제작, 배포하였는데 이들의 광고는 지역 관광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

- 광고에서 지역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계기는 방송(드라마, 예능)에서 지역어를 사용한 출연자에 대한 인기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해당 출연자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
- 이들의 광고는 각 지역으로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각 지역의 지역어를 구사하고, 인지도가 높은 출연자를 모델로 섭외하여, 플랫폼의 브랜드명인 '여기어때'를 경상도는 '여어떻노', 충청도는 '이짝 워며', 전라도는 '여그어며'라는 지역어로 변형해 광고한 사례임.

〈표 3-5〉 지역어를 활용한 광고 사례(1)

'여기어때'의 지역어(경상, 충청, 전라)를 활용한 지역관광 관련 광고사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자료 : 여기어때 유튜브 페이지

■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지역어 광고인 '허리가 우리하면 우리병원'이라는 광고는 해당 지역(경상도)의 지역어를 모른다면 이해할 수 없는 광고임.

- 해당 병원이 언어 유희적인 광고를 제작하였을 수도 있으나, 주 고객층인 지역 고령층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어를 활용한 것으로 보임.
- 이 광고는 해당 지역을 방문한 타지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광고였고, 이해할 수 없는 광고이지만, 결과적으로 온라인상에 일종의 밈(Meme)이 되면서 해당 병원이 누리는 홍보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전망.

〈표 3-6〉 지역어를 활용한 광고 사례(2)

온라인 공간 '블라인드'에서 밈이 된 지역어 광고

자료 : 블라인드, 우리병원

### (3) 크리에이터 콘텐츠

■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들이 제작하는 콘텐츠에서도 지역어가 활용되고 있고, 이 콘텐츠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지역어를 접하는 인구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일반적인 방송 콘텐츠는 '표준어' 또는 '서울말'로 제작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식이 있고, 지역어는 콘텐츠의 재미를 가미하기 위한 작은 요소로 역할을 해왔는데, 지역 출신의 지역어를 활용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만들어 내는 콘텐츠로 인해 지역어가 자연스럽게 구독자에게 노출.

- 이들이 만들어 내는 콘텐츠는 뷰티, 게임, 자동차, 여행 등 다양한 주제이지만 인플루언서가 사용하는 지역어를 도구로 하여 시청자와 소통하기 때문에 표준어 중심의 기존 방송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음의 사례는 지역어를 사용하는 크리에이터가 만든 채널의 영상으로 지역어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기보다 평소 쓰는 언어로서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녹여져 있는 콘텐츠임.

- 먼저 살펴볼 유튜브 채널 '조효진'은 화장법을 공유하고 화장품 등 뷰티 제품을 리뷰하는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로 크리에이터가 나고 자란 부산지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
- 크리에이터의 부산지역 지역어 사용은 문헌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어가 정서적 친밀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고, 크리에이터의 '쿨'한 성격을 나타내기도 해 지역어가 콘텐츠 흥행에 일부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 여행 유튜브 채널인 '곽튜브' 역시 부산 출신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국내외 여행 채널로 이 채널에서도 여행 정보를 부산지역 지역어를 통해 구독자에게 전달 중.

〈표 3-7〉 지역어를 사용하는 크리에이터 콘텐츠

| 채널 조효진(HYOJIN)/ 부산 / 구독자 : 약 180만 명 | 채널 곽튜브(KWAKTUBE)/ 부산 / 구독자 : 약 110만 명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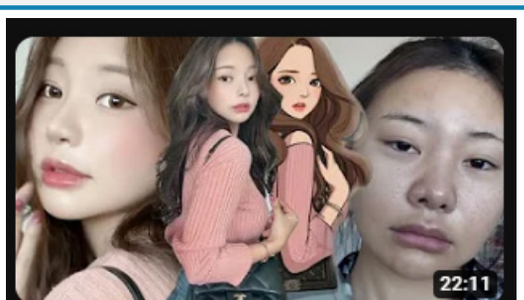 ✨With subs✨ 같은사람이라고?? 여신강림 주경이 실사판 메이크업 :: 'True Beauty' Rea... 조회수 1788만회 • 1년 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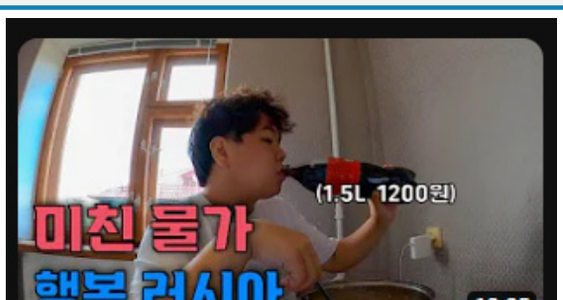 만원짜리 소련 아파트 생활 - 세계여행(5) 조회수 611만회 • 1년 전 |

자료 : 유튜브 채널 '조효진', '곽튜브' 캡쳐

### (4) 인공지능(AI) 기술

■ 앞서 살펴본 영상, 광고, 크리에이터 콘텐츠는 지역어가 가진 표면적 특성(지역성)을 통해 산업적으로 활용하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최근 나타난 AI 기반 번역 기술은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 다국어로 번역뿐만 아니라 언어를 활용한 기술사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주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사는 표준어 명령어 이외에 지역 이용자가 지역어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어에 대한 기계학습을 강화하고 있음.
- 네이버는 한국어 기반 초거대 언어모델인 하이퍼클로바라는 인공지능기술을 선보였고, 해당 기술을 통해 단순 대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 대화의 맥락을 이해해 고차원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음.
- 현재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를 통해 특정 지역의 지역어로 서술된 문장을 다른 지역어로 번역하는 기술을 선보였고, 향후 이용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마케팅 문구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술을 선보일 계획인데 지역어 학습도 이 기능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
- 최근 네이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인 '클로바 케어콜'을 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어 사용자 언어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어에 대한 기계학습도 높은 수준으로 마친 상태임.



〈표 3-8〉 인공지능 기술의 지역어 활용사례

| 네이버 인공지능 기술의 표준어, 지역어 변환 기능 | 인공지능 기술 활용사례(케어콜)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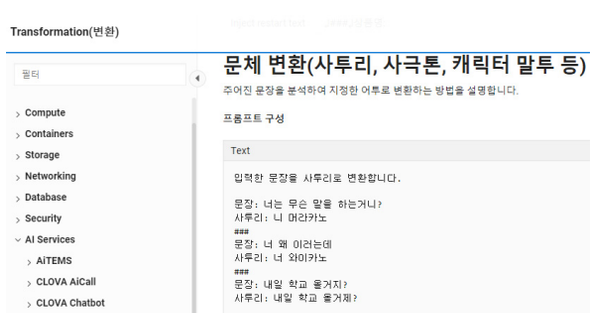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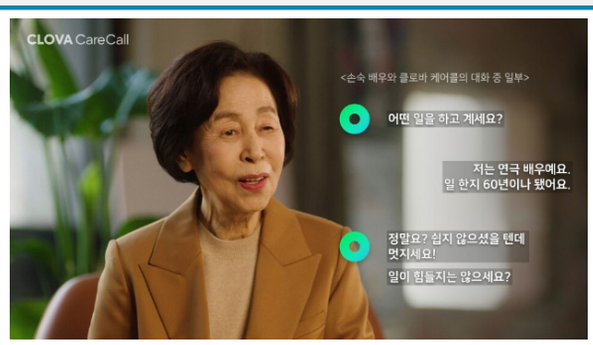 |



자료 : 네이버 클로바

## 2.3. 공공부문 활용사례

■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지역어 활용은 지역에 대한 홍보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목적과 최근 지역어와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 등에 따라 지역어의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공공서비스의 명칭에 지역어를 활용 중.

■ 따라서 민간부문의 활용과 그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주요 지자체의 유형별 사례를 통해 공공부문의 지역어 활용으로 산출해내는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함.

### (1) 공공서비스: 대전·광주광역시 공공자전거

■ 2008년 창원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이름에 관한 관심도 확산 중.

- 서울은 자전거의 벨소리를 활용해 '따릉이'라고 서비스명을 정했는데, 대전과 광주의 경우 '타세요'의 의미를 가진 지역어를 활용해 공공서비스에 지역성을 더함.

■ 광주 '타랑께', 대전 '타슈'는 지자체가 공공자전거 서비스에 적합한 명칭을 시민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면서 지역어를 공공서비스의 명칭으로 활용하게 된 사례임.

-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자체에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관광 시에도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광주와 대전의 지역어를 사용한 공공자전거 서비스에 대한 관심 또한 지역 이외에서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5]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현황

자료 : 서울특별시(2022.01.17.), '서울시민 공유활동 활발 … 만족도는 '따릉이'가 가장 높아'

-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를 통해 지역별 공공서비스 브랜드에 대한 지역별 관심도(검색량)를 살펴보면, 지역어를 활용한 두 지역의 공공자전거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지역별로 고르게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명칭을 활용한 지역(창원)은 일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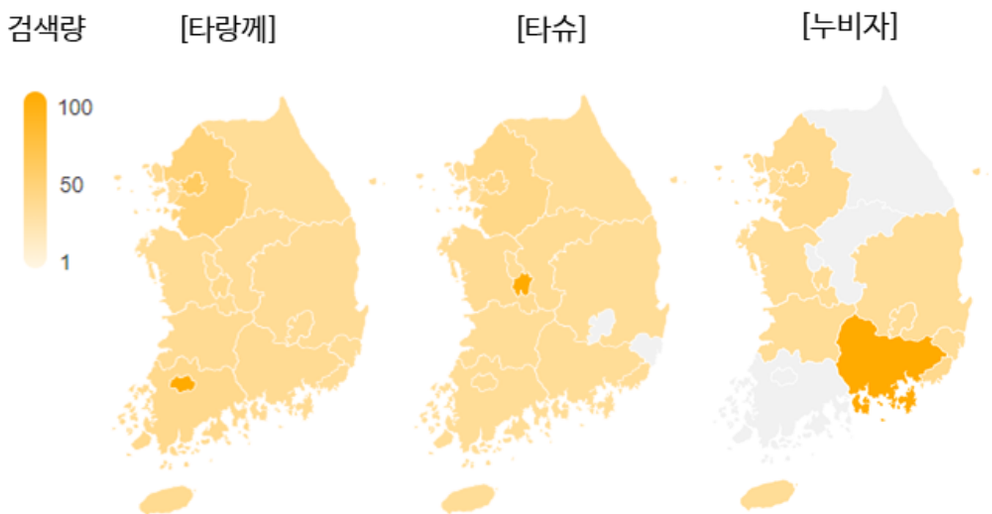


[그림 3-6] 지역 공공자전거 서비스 관심도 비교(지역어 활용, 비활용)

자료 : 카카오 데이터트렌드, 검색어 지역별 비중

- 이러한 결과는 지역어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효과가 지역민보다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역어를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은 지역을 홍보하는 방안으로 효과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대전광역시(타슈) | 광주광역시(타랑께) |
|---|---|
| 대전 시민공용자전거 타슈~ 타슈 | 타랑께 |

[그림 3-7] 지역어를 활용한 공공자전거 서비스

자료 :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2) 공공브랜드: 지역 공동브랜드

■ 광역 단위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농수산물, 축산물 등을 알리는 방안으로 지자체의 특징을 부각할 수 있는 지역브랜드를 제시하고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어를 활용한 지역브랜드 명칭을 활용하거나, 지역어를 활용해 공동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지역어 관련 정책사업 추진 중.

[그림 3-8] 지역어를 활용한 지역농산물 브랜드 사례(경상북도, 사이소)

자료 : 경상북도, 사이소 홈페이지

■ 경상북도는 2007년부터 지역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쇼핑몰에는 1,500여 개의 농가가 입점해 1만여 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경상북도는 2007년 지역어 공동브랜드 도입 전에도 수출 농수산물에 대한 지역 공동브랜드를 '휘모리'라는 우리말을 활용하였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특산물의 인터넷 홍보와 소비자 판매를 목적으로 '사이소'라는 이름의 온라인몰을 운영 중.
- 사이소는 "사세요"의 경상지역 지역어를 사용한 쇼핑몰 명칭으로 쇼핑몰이 어떤 지역의 상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브랜드로 볼 수 있음.

■ 부산광역시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공동마케팅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였고,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인 '꼼장어(먹장어)'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지역어를 활용해 제작하였음.

- 부산광역시는 2017년부터 소상공인 유망업종에 대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는데, 2017년에는 수제맥주, 2018년 패들보드, 2019년 부산꼼장어, 2020년 스페셜티 카페, 2021년 카페, 2022년 반려동물 수제간식을 선정.
- 부산광역시는 2019년 꼼장어에 대한 마케팅을 추진하면서 다른 연도와 다르게 공동브랜드를 제작해

꼼장어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 등도 함께 제작해 공급.

- 부산 꼼장어에 대한 공동브랜드는 지역어인 '살아있네'라는 말을 활용했는데, '살아있네'는 부산에서 '좋다', '끝내준다'라는 표현으로 영화와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잘 알려진 표현임.

| 부산 꼼장어 로고 | 부산 꼼장어 로고 활용 제품 |
| --- | --- |
| 살아 있네 부산꼼장어 BUSAN KKOMJANGEO | |

[그림 3-9] 지역어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 사례(부산광역시, 살아있네 부산꼼장어)

자료 : 부산광역시, 부산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 (3) 지역캐릭터

-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마스코트를 내세우는 전략을 선택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마스코트를 내세우는 목적은 지역관광객 등에 대해 지역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진주, 광주 등 주요 지자체는 마스코트의 이름에 지역어를 활용하여 조금 더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

- 경남 진주시는 진주 남강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수달을 모티브로 지역 캐릭터를 제작하였고, 캐릭터 이름을 '하모'라고 명명하였음.
  - 하모는 진주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역어로 '동의', '긍정'의 의미를 지니는데, 캐릭터 이름을 '하모'라고 명명하여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
  - 진주시는 하모를 관광 캐릭터로 정의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에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활용.

| 캐릭터(하모) | 캐릭터 활용 현황(민간, 공공) | |
|---|---|---|
| | <br>(캐릭터 활용 제품, 민간) | |

[그림 3-10] 지역어를 활용한 지역 캐릭터(진주시, 하모)

자료 : 진주시청 홈페이지

■ 진주시는 지역어 캐릭터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진주지역 상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에만 허용해서 민간에서도 해당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 중이고, 관련하여 2021년 11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1. 8.] [조례 제1722호, 2021. 11. 8., 제정]

경상남도 진주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관광자원의 다양화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3-11] 진주시 지역어 캐릭터 관련 조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광주광역시는 2020년 3월, 광주의 관광브랜드인 '오매광주'와 연계하여 활용할 지역 캐릭터를 광주의 한자 중 하나인 빛 광(光)자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 '오매나'로 확정.

- '오매나'라는 이름은 광주광역시가 시민공모를 통해 확정한 것으로, 광주 지역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오매'라는 감탄사에서 가져왔으며, 광주광역시의 다섯 가지 매력이라는 의미를 포함.
- 광주는 오매나를 광주의 '펭수'로 만들어 많은 사람이 광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지역홍보에도 적극 활용 중.
- 광주광역시도 진주시와 같이 지역어 캐릭터를 광주지역에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캐릭터(오매나) | 캐릭터 활용 현황(관광홍보, 이모티콘 등) |
|---|---|
| | |

[그림 3-12] 지역어를 활용한 지역 캐릭터(광주광역시, 오매나)

자료 : 광주광역시

### (4) 지역슬로건

■ 대전광역시는 출범 70년, 광역시 승격 30년을 기념해 2019년 지자체 슬로건을 기존 “It’s Daejeon”에서 “Daejeon is U”로 변경.

- 새로운 슬로건은 기존 슬로건처럼 영문으로 확정되었으나, 발음이 충청지방 지역어의 특성 중 하나인 말끝에 ‘~유’를 활용하여 지역색을 보여주는 슬로건(대전이쥬)이라는 평가받음.
- 대전광역시의 슬로건 선정은 시민공모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최종 투표 대상으로 선정된 슬로건 후보가 모두 영문으로 작성된 후보만으로 좁혀졌으나, 최종 선정된 슬로건이 지역어로써 지역색을 보여줄 수 있는 슬로건으로서 유일.

[그림 3-13] 지자체 지역어 슬로건 활용사례(대전광역시)

자료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정·재계, 한류스타, 그리고 지역민 등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 지역의 지역어를 활용한 슬로건과 슬로건을 활용한 포스터를 적극 활용 중.

[그림 3-14] 지자체 지역어 슬로건 활용사례(부산광역시)

자료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는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넷플릭스를 통해 흥행한 오징어게임의 줄다리기 게임과 부산광역시의 지역색을 나타낼 수 있는 "함 이기보까?"라는 지역어를 결합해 슬로건과 포스터를 제작.
- "함 이기보까?"는 한번 이겨보자는 의미의 부산 지역어이고, 해당 슬로건은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지역민의 의지를 지역어로 표현해 지역민의 유치를 위한 활동의 참여를 독려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역이 가진 박람회 유치 의지의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음.

■ 지자체의 지역어 슬로건 활용에 대한 관심이 지역민부터 타 지역민까지 확대되면서 주요 언론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고 있음.

- 조선일보(2022.01.27.)의 취재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슬로건 선정 시 지역어를 활용하게 된 배경으로 지역어가 지역의 '문화유산'이라는 점, 지역정서를 담아 지역민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꼽았고, 이러한 이유로 지역어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
- 경향신문(2020.10.08.)의 취재에서는 지역어를 활용한 슬로건이 시민의 지지로 탄생(대전, 대전이쥬)하였다는 점, 표준어 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언어자원이 사라져가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지역어를 활용한 슬로건을 긍정적으로 평가.
- 다만, 지역민 중 많은 수가 여전히 '사투리'는 촌스러운 이미지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대전의 경우 먼저 영어 슬로건(Daejeon is U)을 사용하고, 추후 한글 슬로건의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朝鮮日報 구독중

# 함 이기보까, 대전이쥬, 타랑께… 지자체 슬로건에 사투리

입력 2022.01.27. 오전 3:06 기사원문

김준호 기자

경향신문 구독

# 맛깔난 사투리~지자체 브랜드로 뜬당께

입력 2020.10.08. 오후 9:09 · 수정 2020.10.08. 오후 11:18 기사원문

[그림 3-15] 지자체 지역어 활용관련 언론 기사

자료 : 조선일보(2022.01.27.), 경향신문(2020.10.08.)

### (5) 지역홍보영상

- 부산광역시는 관광객 유치용 지역홍보 콘텐츠를 기획·제작, 지역의 특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부산지역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산복도로, 부산어묵, 부산바이브)와 지역어 적극 활용.
- 이 지역홍보 영상콘텐츠는 MZ세대 선호에 맞게 최근 큰 인기를 얻었던 댄스 크루 훅(HOOK)을 출연자로 섭외하면서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로 지역어(에헤이마하모)를 적극 활용.

- 에헤이마하모는 부산지역의 지역어 중 '에헤이', '마', '하모'를 결합한 단어로 영상에서 '에헤이'는 안타깝다는 의미, '마'는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 '하모'는 다 잘 될 거라는 의미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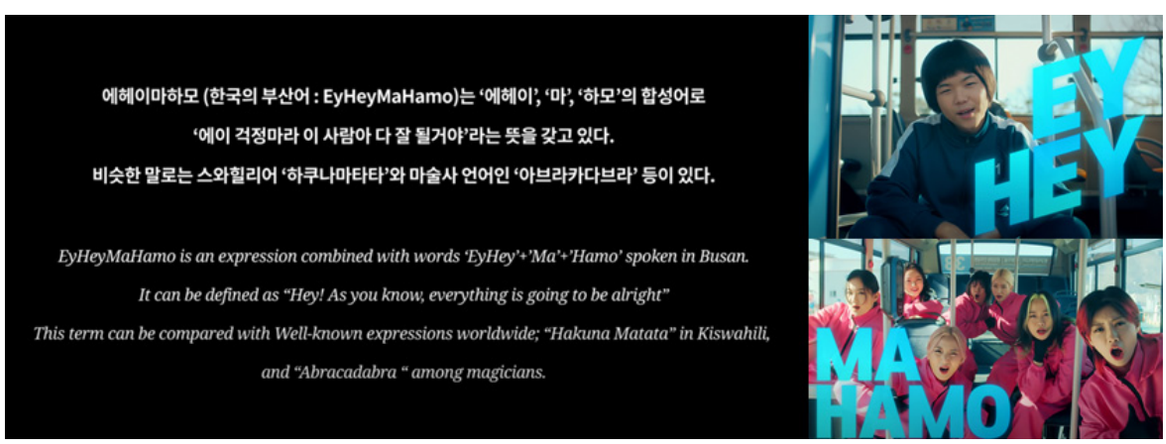


[그림 3-16] 부산광역시(부산관광공사) 관광홍보영상 '에헤이마하모'

자료 : VISIT BUSAN 유튜브 채널 캡쳐

- 이렇게 지역어의 조합으로 구성한 제목의 영상은 업로드 3개월 만에 2,200만 조회 수를 기록(`22년 5월, Visit Busan)하면서 높은 인기를 누렸으며, 추가적인 영상의 제작을 준비 중.

- 또한 영상 공개와 함께 MZ세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SNS인 틱톡을 활용해 에헤이마하모 영상의 안무를 따라 하는 틱톡 챌린지를 추진하였고,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참여시켜 글로벌 시장의 부산 지역과 지역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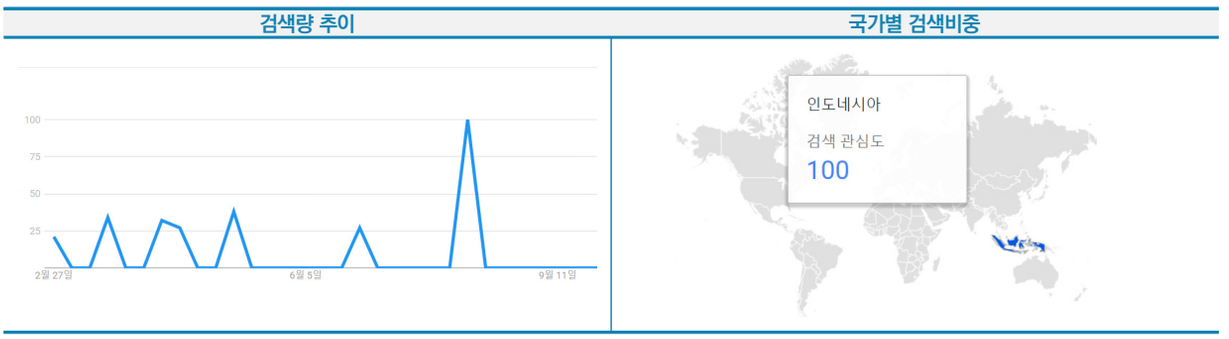


[그림 3-17] 구글트렌드 '에헤이마하모' 검색량 분석(전 세계, '22.2.~'22.11.)

자료 : 구글트렌드

# 제3절
# 요약 및 종합분석

## 3.1. 지역 언어문화 해외정책 사례

■ 지역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 사례 대상 국가로 프랑스, 중국, 일본 3개국을 선정.

■ **[지역 언어문화 특징]** 각 국가가 발전해 온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임.
- 프랑스는 식민지 지배의 역사로 인해 본토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어뿐만 아니라 해외 영토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어까지 정책 대상으로 보고 있음.
- 중국의 경우 대표적인 다민족, 다언어, 다방언, 다문자의 특성을 가졌으며, 지역 방언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의 민족 토착어, 강제 병합된 민족 언어까지 정책 대상에 속함.
- 일본의 경우도 지방분권화라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다양한 지역어가 형성되어 있음.

■ **[정책 배경]** 세 국가 모두 표준어 중심 정책에서 지역어 보전 정책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국가에 따라 확대 양상에 차이를 보임.
- 프랑스, 중국, 일본 모두 프랑스 혁명, 신중국 수립, 메이지 유신 등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사상의 통일과 단합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어 중심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였고 지역어를 근절 대상으로 보았음.
-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방분권적 문화정책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며 지역 언어문화 보전에 대한 필요성 대두.
- 하지만 중국의 경우 표준어(보통화)를 여전히 국가 공동체를 결합하는 요소로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어 및 소수 민족 언어의 소통 및 활용보다는 보존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책추진 방향]** 국가별 정책 추진 방향은 국가별 정책 배경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임.
- 프랑스는 교육의 대상으로서 지역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어를 소통의 수단보다는 예술의 수단, 무형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고 있음.

## 〈표 3-9〉 해외사례 요약

| 항목 | | 프랑스 | 중국 | 일본 |
|---|---|---|---|---|
| 지역 언어문화 특징 | | ○ 지역어를 프랑스 본토와 해외 영토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정의 | ○ 다민족, 다언어, 다방언, 다문자 특성으로 지역방언, 민족토착어 뿐만 아니라 강제병합 민족 언어까지 포함 | ○ 번(藩:제후국)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화로 인해 다양한 지역어 분화 |
| 정책 배경 | 표준어 중심 정책 | ○ 18세기 이후 프랑스 혁명 등으로 표준어 중심 정책 강화 및 지역어 사용 제한<br>○ 언어적 다양성은 혁명 사상을 확산시키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br>○ 학교교육 근절, 관련 법 제정 | ○ 신중국 수립 초기 언어정책의 중점은 보통화(표준어)의 보급<br>○ 언어의 통일이 다민족 간의 소통과 조화를 쉽게 하고, 국가통일과 민족 단합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화 보급과 확대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추진 | ○ 19세기 메이지 시대에 국가어의 확립과 통일화 정책이 요구되면서, 당시 도쿄어가 표준어로서 지위와 세력을 확보<br>○ 메이지유신(1868)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어는 근절의 대상이 됨 |
| | 지역어 보전 정책 | ○ 19세기 이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중앙집권적 문화정책에서 지방분권적 문화정책으로 전환<br>○ 지역어와 지역 언어문화 보전 필요성 대두 | ○ 1949년 '언어 및 문자를 발전시킬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하면서 민족 평등 원칙을 천명<br>○ 하지만 언어는 국가 공동체로 결합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지역어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보존' 해오고 있음<br>○ 동화정책(지역어 사용 제한), 융화정책(지역어 사용 용인) 병행 | ○ 2차 세계대전 이후 표준어보다는 공통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공통어와 지역어 모두 사용하는 인식 확산<br>○ 유네스코가 발표한 소멸 위기 언어로 일부 지역어가 지정됨에 따라 지역어 보전 및 활용 정책 가속화 |
| 정책추진 방향 | | ○ 교육의 대상으로서 지역어 정책 추진<br>○ 지역어를 소통의 수단보다는 예술의 수단, 무형 문화유산으로 보전 | ○ 공통어를 기반으로 한 통일된 국가 건설과 보통화의 글로벌 역량 강화<br>○ 지역어 보존을 통한 언어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지역어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기초 조사 및 연구 확대 |
| 정책추진 체계 | | ○ 2008 프랑스 헌법에 지역어 항목 추가 : 지역어는 프랑스의 유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br>○ 헌법, 법률, 데크레, 아레테 등의 다양한 법제를 통해 시행<br>○ 지역어 관련 사업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수행<br>○ 문화부 산하 기관('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어 정책을 추진하고 각 지역 문화사업국, 교육청 산하 지역어 학술위원회 등의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 | ○ 1949년 헌법에 언어 자유 명문화<br>○ 2000년 지역어 관련 법안인 '국가통용언어문자법' 공포하면서 지역어 사용 상황을 제한<br>○ ' 국가 중장기 언어 문자 사업 개혁 및 발전계획 요강' 수립<br>○ 교육부 산하 기관('국가 언어 문자 업무위원회')을 통해 언어정책 전면 추진 (표준어 중심 정책)<br>○ 소수 민족의 언어는 국무원 산하 '국가 민족 사무위원회'에서 담당, 산하기관으로 '국가 민족 언어 및 문자 응용연구원'(2017) 설립 | ○ 중앙정부인 문화청에서 소멸 위기 언어 계승 등의 사업 추진<br>○ 국립 국어연구소가 일본 각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언어와 지역어 조사 수집 및 분석<br>○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언어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 추진<br>○ 방언연구센터 등 민간을 중심으로 지역어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추구 사업 추진 |
| 정책 내용 | | ○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 이중 언어 교육의 방식으로 교육(국가시험의 선택과목)<br>○ TV, 라디오에서 지역어 방송 송출<br>○ 지역어로의 번역과 출판 지원<br>○ 디지털 지역어 사전 편찬 지원<br>○ 지역어를 활용한 공연 및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 지원<br>○ 지역어 진흥을 위한 행사 지원<br>○ 공공서비스에 지역어 사용 | ○ 지역어 및 소수 민족 언어 과학적 보전<br>○ 언어, 문자, 지역 언어문화 박물관 건립<br>○ 지역어 및 소수 민족 언어 현황 조사 및 보고서 발간<br>○ 지방정부, 언론매체, 민간의 지역어 활용 | ○ 사투리 경연대회 개최 지원<br>○ 방언의 날 지정 및 관련 행사 지원<br>○ 지역어를 통한 지역 재난 피해 치유, 지역어를 통한 다문화 사회 지원 등 지역어의 사회적 처방 확대 |
| 차별점 | | ○ 문화유산과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지역어 보전 및 진흥 정책 추진<br>○ 지역어 사용 및 교육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br>○ 교육에서 문화유산으로, 문화유산에서 공공서비스로 지역어 정책 분야 확대 | ○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언어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과학적 기록과 지역어, 민족언어 보호 모색<br>○ 표준어와 표준문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지역어 문화는 보호 및 계승 | ○ 위기 상황에 있는 지역어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br>○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어 역할 발굴 및 지원 |

■ **[정책 추진체계]** 국가별로 법적, 제도적 기반 및 정책 추진 조직에 많은 차이를 보임.

- 프랑스는 헌법에 지역어는 프랑스의 유산임을 명기하였고, 법률, 데크레 등 다양한 법제를 통해 지역어 보전 정책의 법적 기반 구축.
- 프랑스 지역어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문화부 산하 기관('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어 정책을 추진하고 각 지역 문화사업국, 교육청 산하 지역어 학술위원회 등의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
- 중국 역시 헌법에 언어 자유를 명문화했지만 '국가통용언어문자법'(2000)을 통해 지역어 사용 상황을 제한하고 있음.
- 중국은 국가 중장기 언어 문자 사업 개혁 및 발전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고 있음.
- 교육부 산하 기관('국가 언어 문자 업무위원회')을 통해 표준어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소수 민족의 언어는 국무원 산하 '국가 민족 사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국가 민족 언어 및 문자 응용연구원'(2017) 설립하였음.
- 일본은 중앙정부인 문화청에서 소멸 위기 언어 계승 등의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 국어연구소가 일본 각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언어와 지역어 조사 수집 및 분석하고 있음.

## 3.2. 지역 언어문화 활용 사례



■ 지역어를 활용한 사례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사례로 구분해볼 수 있고, 각 부문의 주요 활용 사례의 내용과 효과를 요약해보면 아래 표와 같음.

■ 민간부문은 드라마, 영화 등 영상콘텐츠부터 광고와 AI 기술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어를 활용하고 있고, 콘텐츠 제작 시 지역어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함께 고려.

- 영상콘텐츠의 경우 지역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인물의 성격 등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지역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시청자의 몰입감을 높이고, 콘텐츠의 흥행성과도 높아짐.
- 여행플랫폼의 광고는 지역관광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언어를 활용하고 있는데, 광고에 지역어와 함께 재미요소(출연자 등)가 더해지면서 시청자의 소비 촉진 가능.
- 크리에이터 콘텐츠는 표준어 중심의 방송과 다르게 지역에 거주하는 크리에이터가 지역어와 지역문화 등을 선보이며 제작해 정서적 친근감도 상대적으로 높이고, 지역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음.
- AI 기술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서비스는 지역어 활용을 통해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의 노년 세대에까지 관련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우리 문학작품 등의 번역 품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

〈표 3-10〉 민간부문 활용 유형 및 사례

| 구 분 | 분석사례 | 내 용 | 효 과 |
|---|---|---|---|
| 영상콘텐츠 | 드라마/영화 | 대본에서 지역어 비중을 높게 설정 | 신선함, 정서적 친근감 상승 |
| 광고 | 여행플랫폼, 병원 | 지역어를 활용해 지역성 강조 | 지역여행 이용 촉진<br>온라인 밈으로 발전 |
| 크리에이터콘텐츠 | 유튜브 채널 | 표준어 중심의 방송영상콘텐츠와<br>다르게 출연자가 지역어 사용 | 정서적 친근감 상승<br>지역어 관련 부정적 이미지 개선 |
| AI 기술 | 번역기술 | 사투리 인식 기술 개발 및 표준어의<br>지역어 번역 기술 개발 | 시장확대, 지역어가 활용된 문학작품의<br>글로벌 언어번역 촉진 등 |

■ 공공부문은 주로 지역홍보, 지역관광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역어를 활용하고 있고, 그 활용 주체도 지역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임.

- 공공서비스는 타슈, 타랑께 등 지역어로 서비스명을 정하여 지역을 알리는 데 활용하였는데, 실제로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한 지역보다 전국적인 관심도가 높게 나타남.
- 공동브랜드의 경우도 지역 특산품 등을 알리는 데 지역어를 활용하여 지역 브랜드라는 점을 일반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고, 타 지역에 사는 지역민 등에게 정서적 친밀감을 제공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활용 사례 중 하나.
- 지역캐릭터도 관광 촉진을 위한 활동에 활용하고자 지역어를 활용하고 있고, 지역슬로건과 지역 홍보영상 등도 지역 관광 촉진과 지역에 대한 대외 브랜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어를 적극 활용 중.



〈표 3-11〉 공공부문 활용 유형 및 사례

| 구 분 | 분석사례 | 내 용 | 효 과 |
|---|---|---|---|
| 공공서비스 | 공공자전거(대전,광주) | 공공서비스명을 지역어로 선정 | 타 지역민의 관심도 향상<br>온라인 밈으로 발전 |
| 공동브랜드 | 온라인 플랫폼(경북),<br>소상공인 마케팅(부산) | 지역 내 제품 및 특산물 등에 지역어로<br>지역성 반영 | 동질적인 상품이더라도 어떤 지역의<br>상품인지 구별 가능, 정서적 친밀감<br>상승 |
| 지역캐릭터 | 관광캐릭터(진주, 광주) | 지역캐릭터에 지역어 명칭 부여 | 친근함, 지역성 강화 |
| 지역슬로건 | 지역슬로건(대전),<br>박람회 유치 슬로건(부산) | 지역어를 활용한 지역 슬로건 선정 | 지역성을 강화해 대외 브랜딩 효과<br>증대 |
| 지역홍보영상 | 관광홍보영상(부산) | 홍보영상 제목과 내용에 지역어 활용 | 낯선 단어의 조합으로 소비자의 흥미를<br>유발해 큰 흥행 |

## 3.3. 종합분석

### (1) 지역어 보전 및 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상

■ 해외 정책사례 분석과 국내 활용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어 보존 및 활용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시사점을 추출할 수 있었음.

- 언어에서 사회, 사회에서 경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삶의 질의 범위로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지역어의 영향력이 교육에서 문화유산으로, 문화유산에서 공공 서비스로 확대되고, 언어 사용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어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 방향이 지역어 보전 및 활용 정책의 근간으로 보임.
- 지역어를 활용하여 지역의 피해를 재생하고 다문화 사회의 소통을 증진하는 등 지역어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은 강화된 언어 권리를 기반으로 발현될 수 있음.
-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어를 원형으로 한 다양한 산업적 성과물들을 기획하면서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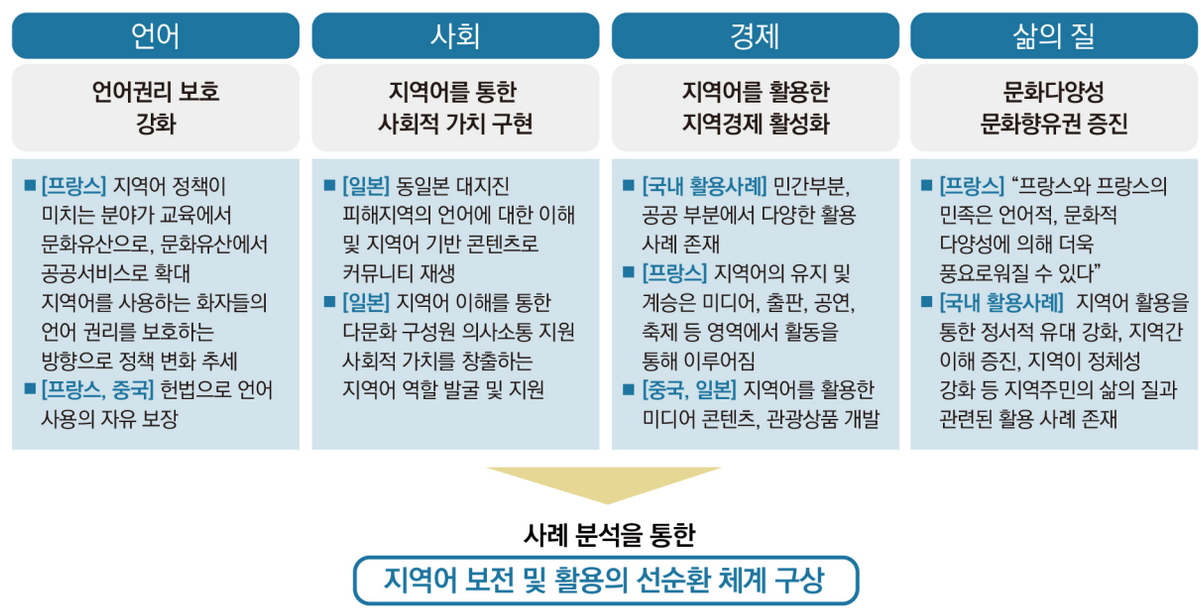


[그림 3-18] 지역어 보전 활용을 위한 시사점

■ 지역어 정책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발현하면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향유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이 다시 문화적 인식을 성숙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균형 잡힌 사회발전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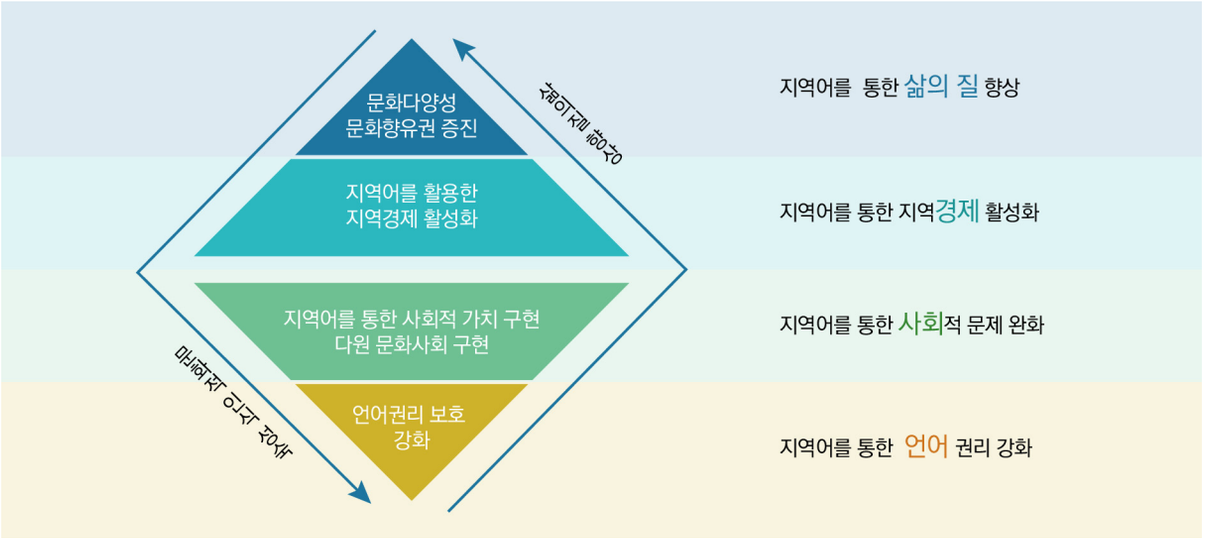


[그림 3-19] 지역어 보전 활용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

### (2)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어 보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추진내용이 명시된 법제도 기반이 필요하고 지역 언어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함.
- 특히, 전국의 지역 언어문화를 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조사·연구 기능 및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고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구상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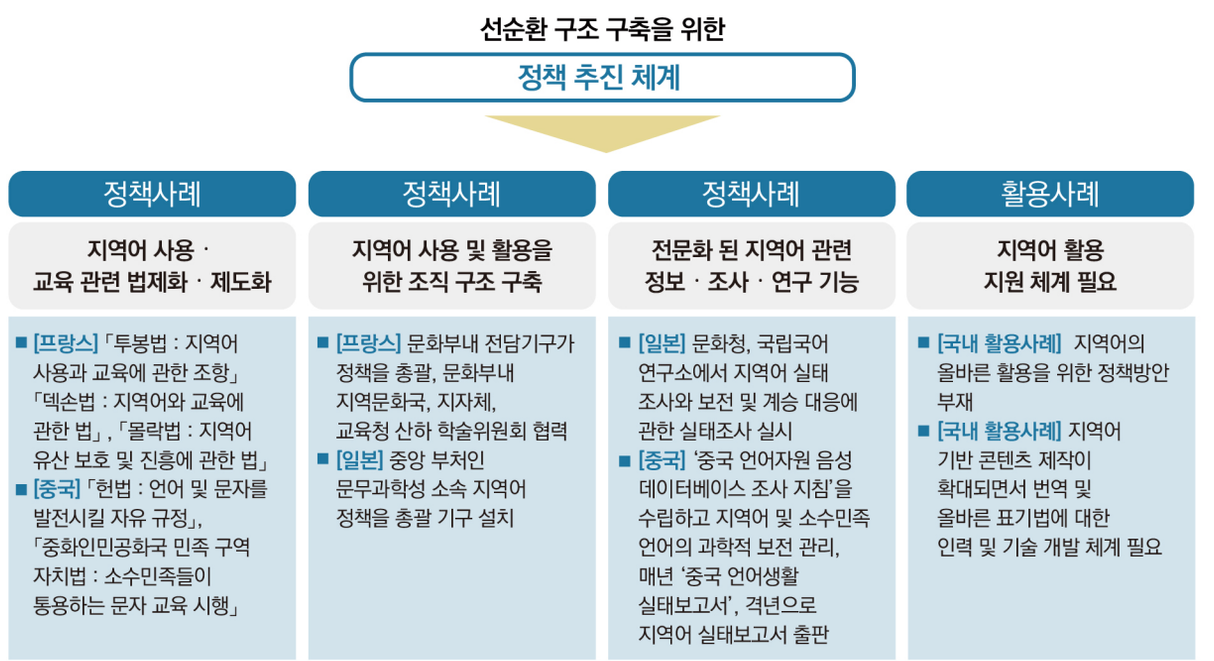


[그림 3-20] 지역어 보전 활용을 위한 추진체계 시사점

4장

# 지역 언어문화 정책 행정수요

# 제1절
# 조사 개요

## 1.1. 조사 배경 및 목적

### (1) 조사 배경

-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정서가 담긴 문화유산이자 생활양식이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적 자산인 지역 언어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소멸해가는 지역문화와 정체성 보존을 위한 지역어 정책 진단과 보전 및 진흥정책 추진 시급.

### (2) 조사 목적

-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언어문화 보전 및 활용 현황 및 정책수요, 지역어 인식 조사 파악을 통한 지역 언어문화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1.2. 조사 설계

### (1) 조사 개요

-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언어문화 보전 및 활용 현황 및 정책수요 조사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03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언어문화 정책 담당자 또는 문화정책 담당자 대상 온라인 조사 수행. (모집단 219명, 표본 205명)

〈표 4-1〉 조사 개요

| 구분 | 내 용 |
|---|---|
| 조사목적 | 지역 언어문화 보전 및 활용 현황 및 정책수요, 지역어 인식 조사 파악을 통한 지역 언어문화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 조사대상 |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03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언어문화 정책 담당자 또는 문화정책 담당자(서울 제외) |
| 조사방법 | 지자체별 관련 부서에 응답대상자 확인 후, 온라인설문 참여 독려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조사, 모바일 조사 병행) |
| 표본크기 | 205표본 |
| 자료 처리 방법 | 응답 자료 파일을 통계패키지인 SPSS에 의해 통계처리 |
| 조사기간 | 2022년 11월 2일(수) ~ 11월 16일 |

### (2) 조사 항목

■ 응답자 구분 정보, 지역 언어문화 사업 추진 현황, 지역어 정책 관련 의견, 지역어에 관한 인식조사, 응답자 정보 등으로 구성.

〈표 4-2〉 조사 항목

| 구분 | 내용 |
|---|---|
| 응답자 구분 정보 | ① 총 근속 기간<br>② 현부서 근속 기간<br>③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br>④ 소속기관 지역어 관련 업무 인원 |
| 지역 언어문화 사업 추진 현황 | ① 최근 5년 지역 언어문화 사업 추진 여부 및 사업 방식<br>: 사업 횟수, 사업 연도, 사업의 재원, 사업방식, 지속 사업 여부, 사업근거<br>② 지역 언어문화 지원 기관 여부 및 활용도 전문성 평가<br>: 국어문화원, 연구원/진흥원 등, 관련 민간단체, 기타 기관 등<br>③ 지역 언어문화 관련 법 여부 및 영향<br>: 관련 조례 또는 규칙 제정 여부<br>관련 조례 또는 규칙이 지역 언어문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 향후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 필요 정도 |
| 지역어 정책 관련 의견 | ① 지역 언어문화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필요성<br>② 지역 언어문화 정책 자원의 중요성 및 시급성 평가<br>: 예산, 제도 및 법적 기반, 전담기관, 시설 등 자원, 정보 및 자료, 지역어 전문인력, 지자체의 업무담당자 역량, 지자체장의 의지, 지역주민의 인식<br>③ 지역 언어문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br>: 국가(공공)주도 / 민간주도, 중앙정부 중심 / 지방정부 중심, 행정인력 중심 / 전문인력 중심, 주도형 거버넌스 / 협력형 거버넌스, 지역어 보전 / 지역어 활용<br>④ 지역 언어문화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br>: 국어기본법, 국어 관련 조례, 지역어 관련 조례, 국어발전 기본계획, 지역어 관련 직제 시행규칙의 중요성과 영향력<br>⑤ 지역 언어문화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br>: 지역발전, 지역 정체성 보전 및 강화, 지역 전통 및 문화 계승에 이바지, 마케팅/관광 분야 등에 활용<br>⑥ 국어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br>: 의사소통 효율성 / 지역문화 다양성, 통합과 표준 / 개성과 고유성, 표준어 중심 정책 / 국어다양성 보존 정책 |
| 지역어에 관한 인식조사 | ① 지역어 유지 존속 여부<br>② 지역어 유지 존속이 불필요한 이유 / 지역어 유지 존속이 필요한 이유<br>③ 지역어의 표준어 추가 인정에 대한 의견<br>④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어<br>⑤ 지역어 사용자와 대화할 때의 느낌 / 자신이 지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br>⑥ 평소 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에 대한 견해 |
| 응답자 정보 | 성별, 연령대, 직급 및 직책 |

## 1.3. 응답자 구성

■ 전국 지자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응답자의 특성은 아래와 같음.

〈표 4-3〉 응답자 특성

| 구분 | | 사례 수 | 비율(%) |
|---|---|---|---|
| 전체 | | (205) | 100.0 |
| 권역별 | 경기 | (42) | 20.5 |
| | 강원 | (18) | 8.8 |
| | 충청 | (33) | 16.1 |
| | 전라 | (42) | 20.5 |
| | 경상 | (67) | 32.7 |
| | 제주 | (3) | 1.5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9.3 |
| | 기초지자체 | (186) | 90.7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4.4 |
| | 6급 | (31) | 15.1 |
| | 7급 | (64) | 31.2 |
| | 8급 | (54) | 26.3 |
| | 9급 | (35) | 17.1 |
| | 기타 | (8) | 3.9 |
| | 무응답 | (4) | 2.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33.2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66.8 |

# 제2절
# 조사 결과

## 2.1. 지역 언어문화 사업 추진 현황

### (1) 추진 사업 현황

■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 추진 여부

- 응답자 205명 가운데, '추진한 적 있음' 응답은 6.3%로, 최근 5년간 13개 지자체에서 총 19개 사업 추진. (※응답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음.)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 추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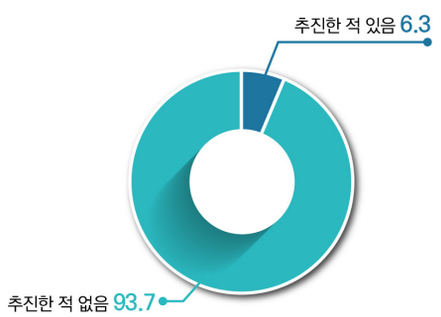


권역별 현황

| 구분 | | 사례 수 | 추진한 적 없음 | 추진한 적 있음 |
|---|---|---|---|---|
| 전체 | | (205) | 93.7 | 6.3 |
| 권역별 | 경기 | (42) | 100.0 | 0.0 |
| | 강원 | (18) | 88.9 | 11.1 |
| | 충청 | (33) | 100.0 | 0.0 |
| | 전라 | (42) | 92.9 | 7.1 |
| | 경상 | (67) | 91.0 | 9.0 |
| | 제주 | (3) | 33.3 | 66.7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73.7 | 26.3 |
| | 기초지자체 | (186) | 95.7 | 4.3 |

[그림 4-1] 지역 언어문화 사업 추진 여부

■ 권역별/지자체 구분별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 추진 여부

- 권역별로, 제주(66.7%)와 강원(11.1%)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지자체 구분별로는 '광역지자체'의 추진 경험이 '기초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 추진 여부

| 구분 | | 사례 수 | 추진한 적 없음 | 추진한 적 있음 |
|---|---|---|---|---|
| 전체 | | (205) | 93.7 | 6.3 |
| 권역별 | 경기 | (42) | 100.0 | 0.0 |
| | 강원 | (18) | 88.9 | 11.1 |
| | 충청 | (33) | 100.0 | 0.0 |
| | 전라 | (42) | 92.9 | 7.1 |
| | 경상 | (67) | 91.0 | 9.0 |
| | 제주 | (3) | 33.3 | 66.7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73.7 | 26.3 |
| | 기초지자체 | (186) | 95.7 | 4.3 |

■ 최근 5년간 관련 사업 개요 (※본조사 완료 응답 기준) : 13개 지자체 / 총 19건

〈표 4-5〉 최근 5년간 관련 사업 개요

| 권역 | 지자체 구분 | 관련 사업 횟수 | 관련 사업명 (사업년도) |
|---|---|---|---|
| 강원 | 강릉시 | (2) | - 강릉사투리 책자발간 (2022년)<br>- 강릉사투리 경연대회 (2022년) |
| | 영월군 | (1) | - 문화어사업 (2022년) |
| 전라 | 전라북도 | (1) | - 전라북도 방언사전 사업 (2020년) |
| | 전남 구례군 | (1) | - 옛말발간사업(사투리(방언)의 발견) (2020년) |
| | 전남 신안군 | (1) | - 섬 말모이 사업 (2021년) |
| 경상 | 부산광역시 | (1) | - 지역어 정보 구축 및 활용 (2022년) |
| | 경상북도 | (1) | - 대구경북 한뿌리 사투리 경연대회 (2021년) |
| | 경북 포항시 | (1) | - 포항 해안지역 방언조사 및 방언지도 작성 용역 (2022년) |
| | 경상남도 | (1) | - 사투리 말하기 대회 (2022년) |
| | 경남 진주시 | (2) | - 진주 사투리사전 발간 (2021년)<br>- 진주 사투리사전 발간 (2022년) |
| | 경남 남해군 | (1) | -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교육 (2018년)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 (4) | - 제주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2022년)<br>- 제주어 홍보사업 (2022년)<br>- 제주어 뉴스 제작 방영 (2022년)<br>- 제주어 드라마 제작 방영 (2022년) |
| | 제주 서귀포시 | (2) | - 제주어 보전 전승행사 (2022년)<br>- 제주어 홍보물 제작 (2022년) |

■ 사업의 재원

- 관련 사업의 재원에 대해 응답자 94.7%가 '지방비', 5.3%가 '민간재원'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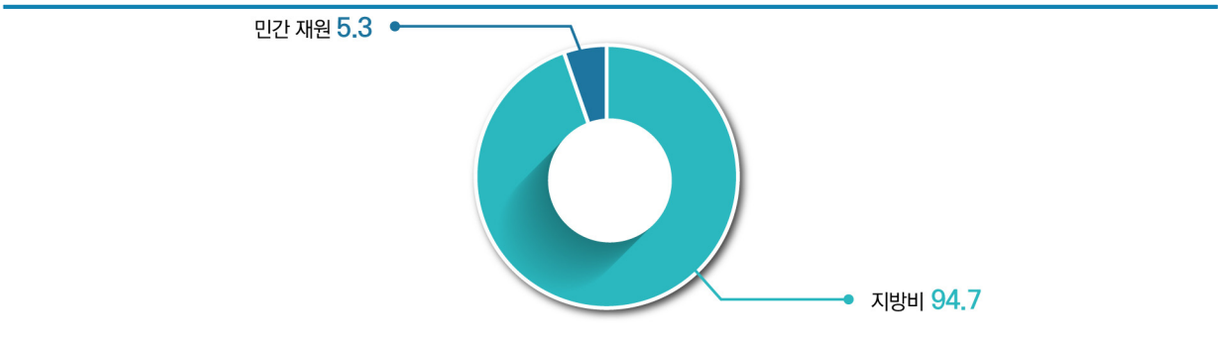


[그림 4-2]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의 재원

■ 사업 방식

- 관련 사업의 사업방식으로 '민간 위탁 추진'이 52.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자체 직접 추진'(31.6%), '지역 공공기관 위탁 추진'(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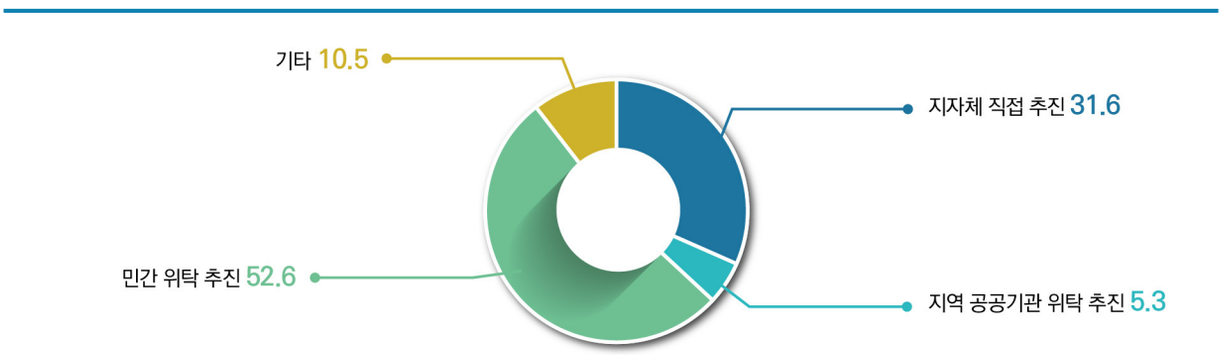


[그림 4-3]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의 사업방식

■ 지속 사업 여부

- 관련 사업의 지속 사업 여부에 대해 응답자 57.9%가 '지속 사업'이라고 응답함.

[그림 4-4]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의 지속 사업 여부

■ 사업 근거

- 사업의 근거로 '지자체 조례'가 6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어기본법'(15.8%), '국어기본계획'과 '지자체장 지시사항'(각 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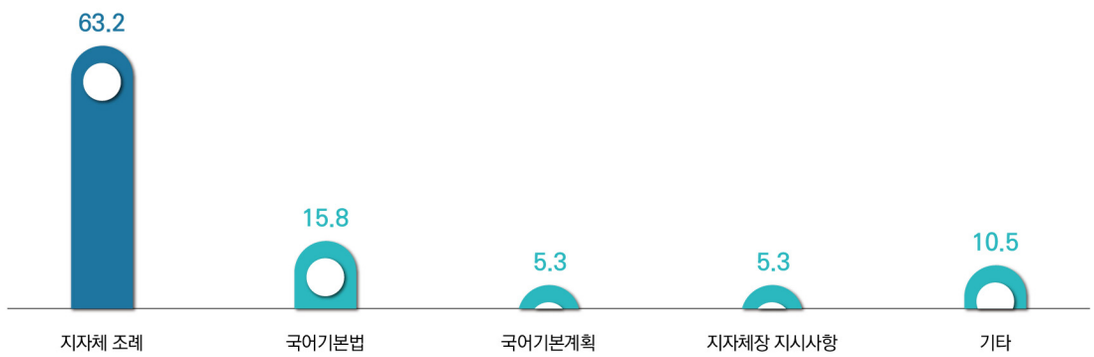


[그림 4-5]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사업 근거

### (2) 추진 조직 현황

■ 소속 지자체의 관련 진흥기관 및 조직 (복수 응답)

- '운영하고 있지 않음' 응답이 84.9%인 가운데, 각 지자체의 '국어문화원'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민간단체'(4.4%), '연구원, 진흥원 등 지역어 관련 공공기관'(2.0%) 등의 순으로 조사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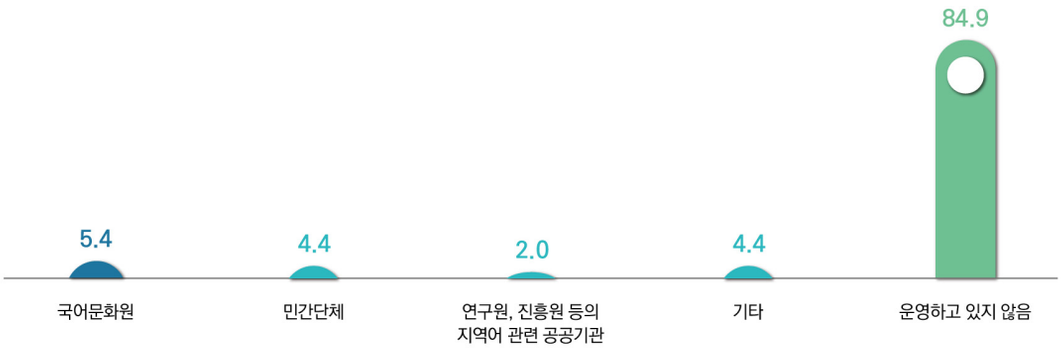


[그림 4-6] 소속 지자체의 관련 진흥기관 및 조직 (복수 응답)

■ 해당 기관의 활용도

- 소속 지자체의 해당 기관 활용도는 '국어문화원'이 7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관련 공공기관(68.8점), 관련 민간기관(47.2점), 기타(58.3점) 등으로 각각 조사됨.

(단위 : 100점 환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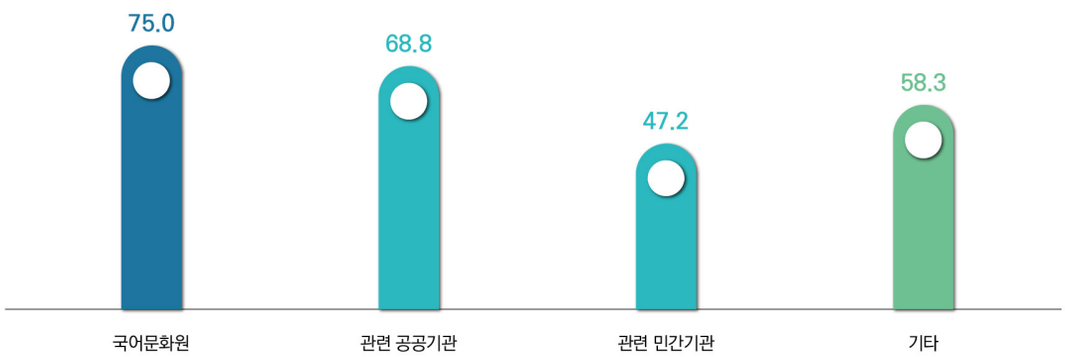


[그림 4-7] 해당 기관의 활용도

■ 해당 기관의 전문성

- 소속 지자체의 해당 기관 전문성 또한 '국어문화원'이 79.5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관련 공공기관(68.8점), 관련 민간기관(58.3점), 기타(58.3점) 등으로 각각 조사됨.

(단위 : 100점 환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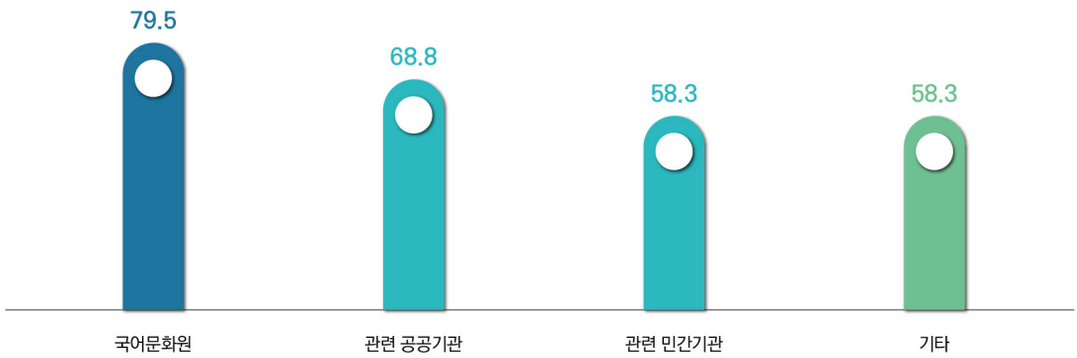


[그림 4-8] 해당 기관의 전문성

■ [포트폴리오 분석] 해당 기관의 활용도 / 해당 기관의 전문성

- 지자체 관련 기관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활용도 높음/전문성 높음]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각 지자체의 '국어문화원', '관련 공공기관'으로 분류됐지만, [활용도 낮음/전문성 낮음]은 '관련 민간기관'과 '기타' 기관으로 나타나 해당 기관의 활용도 및 전문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음.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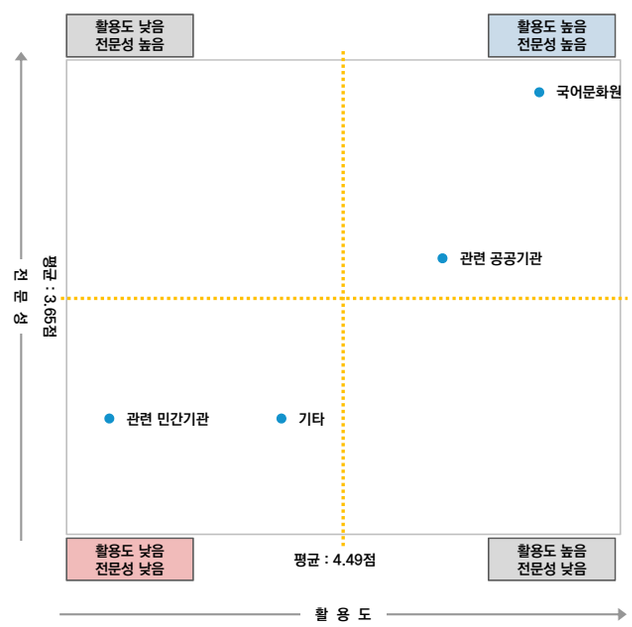


| 항목 | 활용도 | 전문성 | 결과 |
|---|---|---|---|
| 국어문화원 | 4.00 | 4.18 | 활용도 높음<br>전문성 높음 |
| 관련 공공기관 | 3.75 | 3.75 | 활용도 높음<br>전문성 높음 |
| 관련 민간기관 | 2.89 | 3.33 | 활용도 낮음<br>전문성 낮음 |
| 기타 | 3.33 | 3.33 | 활용도 낮음<br>전문성 낮음 |

[그림 4-9] 해당 기관의 활용도와 전문성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 (3) 관련 법·제도 현황

■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이 지역 언어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 '보통이다' 응답이 50.0%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적음'(매우 적다: 11.1%+적다: 16.7%) 응답 비율이 27.8%로 상대적으로 높음(100점 환산 평균: 45.8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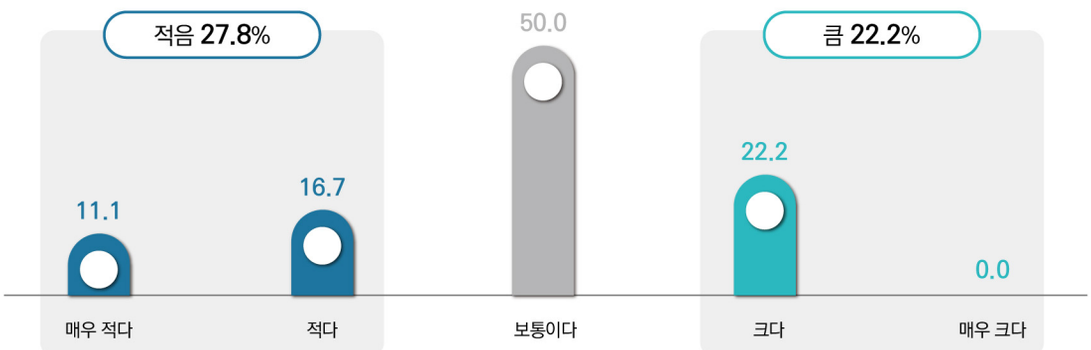


[그림 4-10]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이 지역 언어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 향후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 필요 정도

- '보통이다' 응답이 49.7%로 높은 가운데, '필요 없음'(전혀 필요없다: 8.6%+필요없다: 29.4%)이 38.0%로 비교적 높음(100점 환산 평균: 41.7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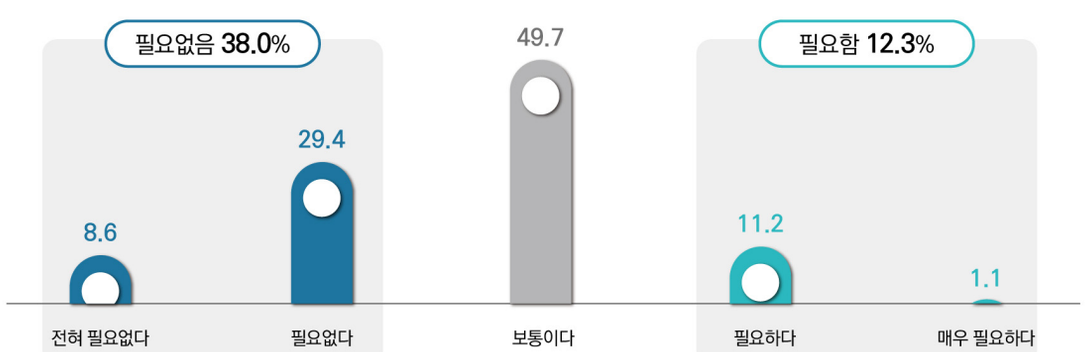


[그림 4-11] 향후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 필요 정도

## 2.2. 지역 언어문화 사업 행정수요

### (1) 정책 이해도

■ 지역어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필요 정도

- '보통이다' 응답이 45.4%로 가장 높은 가운데 '필요함'(필요하다: 34.6%+매우 필요하다: 3.4%) 응답이 38.0%로 상대적으로 높음(100점 환산 평균: 55.4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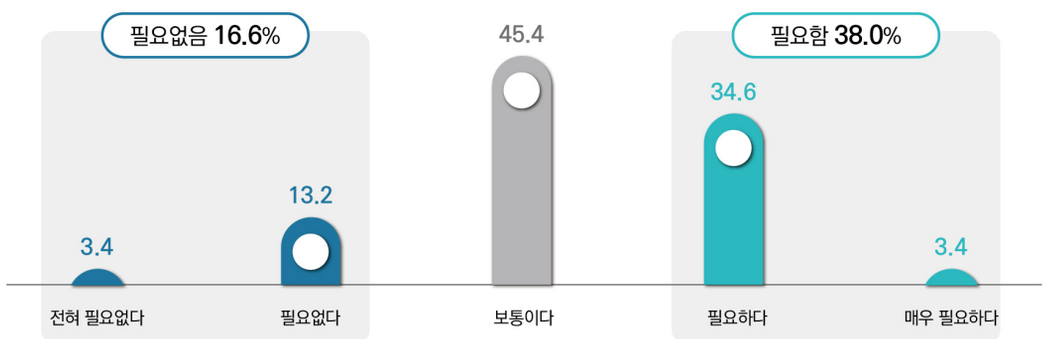


[그림 4-12] 지역어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필요 정도

■ 지역어의 해당 목표 달성에의 필요 정도

- 항목별 긍정 응답(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의 비율은 26.8% ~ 48.3%로 나타났으며, '지역 전통 및 문화 계승에 이바지' 한다는 목표 달성에 필요하거나 의미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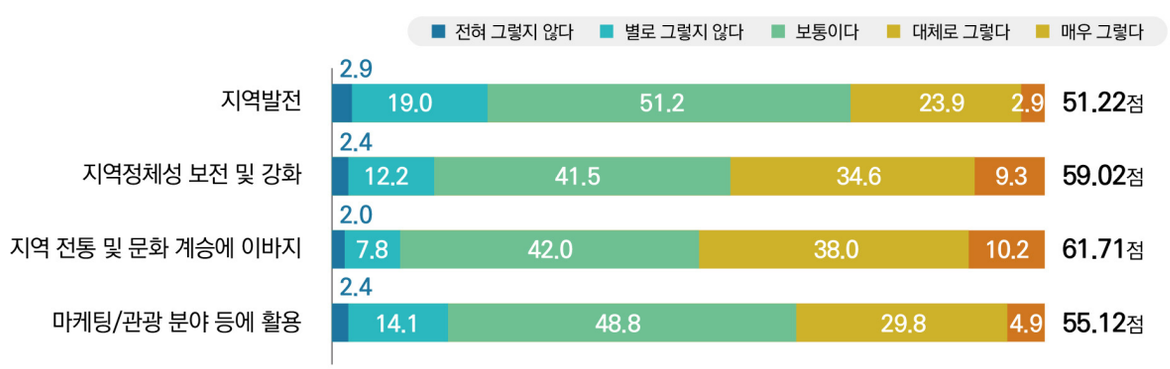


[그림 4-13] 지역어의 해당 목표 달성에의 필요 정도

- (100점 환산 평균기준) [지역 전통 및 문화 계승에 이바지] 61.71점 〉 [지역 정체성 보전 및 강화] 59.02점 〉 [마케팅/관광 분야 등에 활용] 55.12점 〉 [지역 발전] 51.22점 순으로 나타남.

### (2) 정책 자원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소속 지자체의 해당 자원의 중요성은 '정보 및 자료'가 57.9점(100점 환산 평균)으로 가장 높음. '예산'(56.8점), '제도 및 법적 기반'(54.1점), '전담기관(기구)'(50.7점), '시설 등 자원'(48.0점), '지역어 전문 인력'(53.8점), '지자체의 업무담당자 역량'(53.7점), 지자체장의 의지(53.7점), '지역주민의 인식'(52.2점) 등으로 각각 조사됨.

(단위 : 100점 환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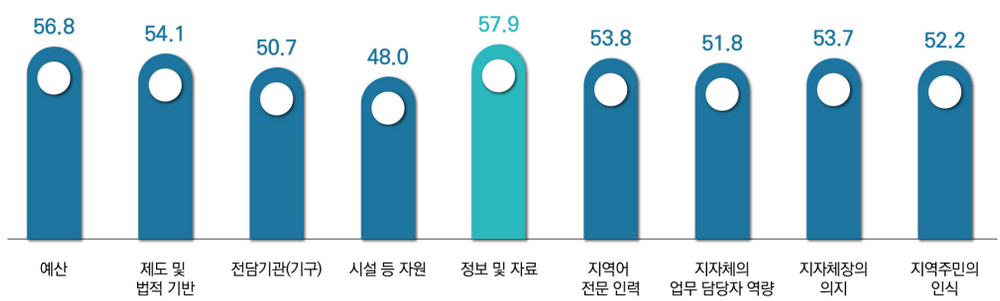


[그림 4-14] 해당 자원의 중요성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해당 자원의 시급성 또한 '정보 및 자료'가 51.3점(100점 환산 평균)으로 가장 높음. '예산'(46.3점), '제도 및 법적 기반'(46.7점), '전담기관(기구)'(46.0점), '시설 등 자원'(44.5점), '지역어 전문 인력'(47.2점), '지자체의 업무담당자 역량'(47.0점), '지자체장의 의지'(47.9점), '지역주민의 인식'(46.5점) 등으로 각각 나타남.

(단위 : 100점 환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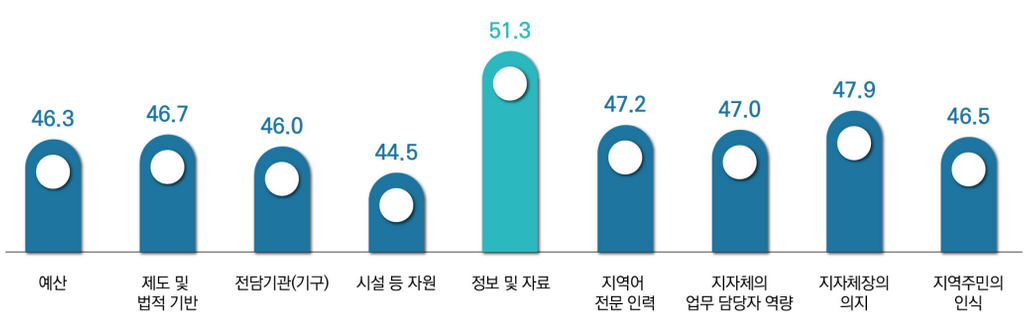


[그림 4-15] 해당 자원의 시급성

■ [포트폴리오 분석] 해당 자원의 중요성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소속 지자체 자원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중요성 높음/시급성 높음]으로 구분된 자원은 '정보 및 자료', '지자체장의 의지', '지역어 전문 인력'으로 나타났지만, [중요성 낮음/시급성 낮음]은 '시설 등 자원', '전담기관(기구)' 등으로 나타남.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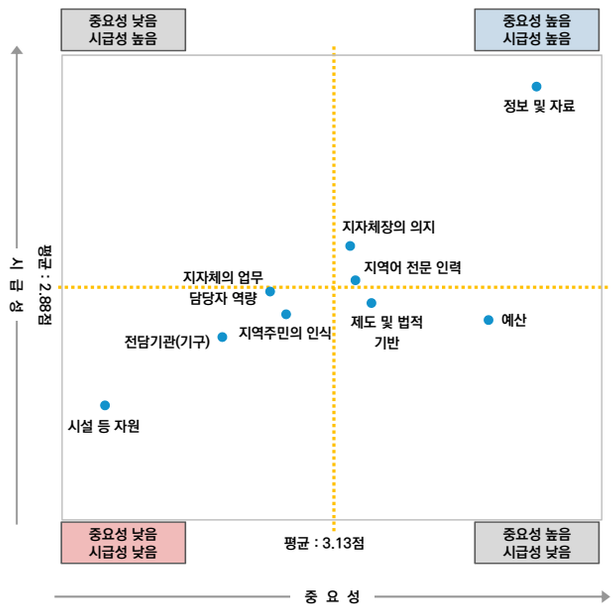


| 항목 | 중요성 | 시급성 | 결과 |
|---|---|---|---|
| 예산 | 3.27 | 2.85 | 중요성 높음<br>시급성 낮음 |
| 제도 및 법적 기반 | 3.17 | 2.87 | 중요성 높음<br>시급성 낮음 |
| 전담기관(기구) | 3.03 | 2.84 | 중요성 낮음<br>시급성 낮음 |
| 시설 등 자원 | 2.92 | 2.78 | 중요성 낮음<br>시급성 낮음 |
| 정보 및 자료 | 3.32 | 3.05 | 중요성 높음<br>시급성 높음 |
| 지역어 전문 인력 | 3.15 | 2.89 | 중요성 높음<br>시급성 높음 |
| 지자체의 업무<br>담당자 역량 | 3.07 | 2.88 | 중요성 낮음<br>시급성 낮음 |
| 지자체장의 의지 | 3.15 | 2.92 | 중요성 높음<br>시급성 높음 |
| 지역주민의 인식 | 3.09 | 2.86 | 중요성 낮음<br>시급성 낮음 |

[그림 4-16] 해당 자원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 (3) 법·제도

■ 지역어 정책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 여부

- 응답자 74.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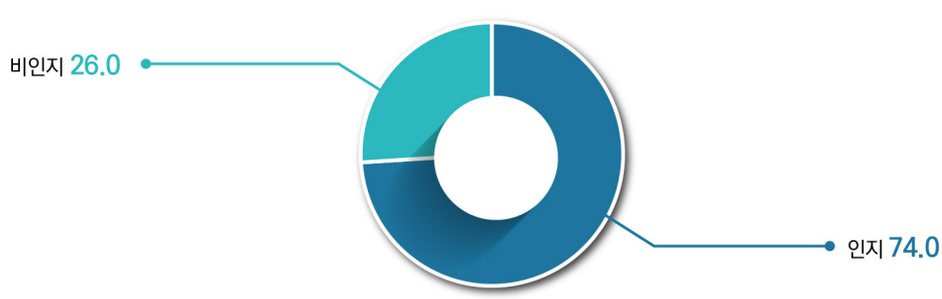


[그림 4-17] 지역어 정책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

■ 지역어 정책 관련 인지하고 있는 법령 (복수 응답)

- 인지하고 있는 법령 가운데 '국어기본법'이 4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어 관련 조례'(17.9%), '국어발전 기본계획'(9.8%), '지역어 관련 조례'(5.6%) 등의 순으로 나타남(※'모두 모르겠음' 26.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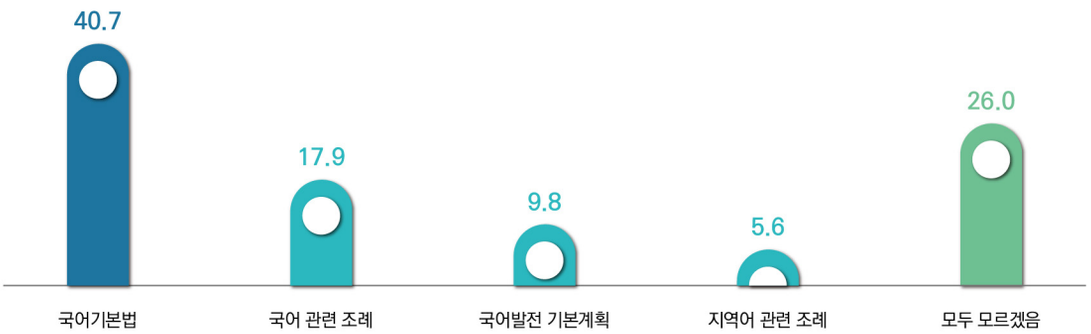


[그림 4-18] 지역어 정책 관련 인지하고 있는 법령 (복수 응답)



■ 해당 법령의 중요성

- '지역어 관련 조례'가 68.8점(100점 환산 평균)으로 가장 높음. '국어기본법'(65.1점), '국어 관련 조례'(58.3점), '국어발전 기본계획'(66.1점) 등으로 각각 조사됨.

(단위 : 100점 환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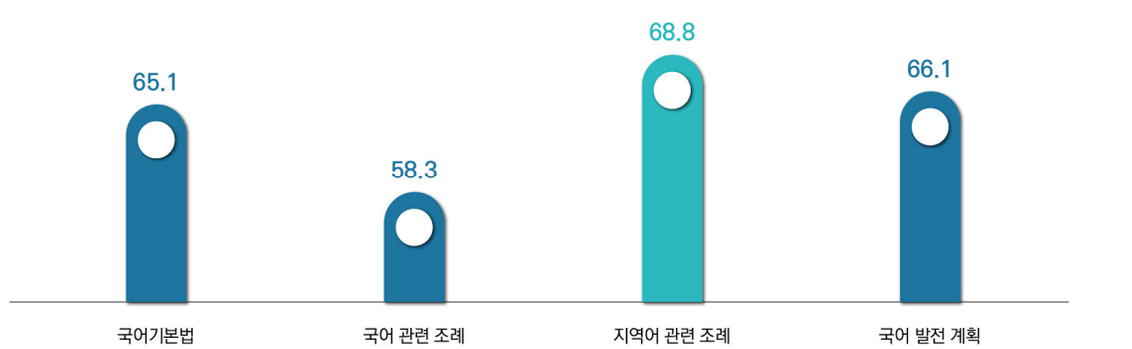


[그림 4-19] 해당 법령의 중요성

■ 해당 법령의 영향력

- 해당 법령의 영향력 또한 '지역어 관련 조례'가 65.6점(100점 환산 평균)으로 가장 높음. '국어기본법'(61.2점), '국어 관련 조례'(55.4점), '국어발전 기본계획'(61.6점) 등으로 각각 조사됨.

(단위 : 100점 환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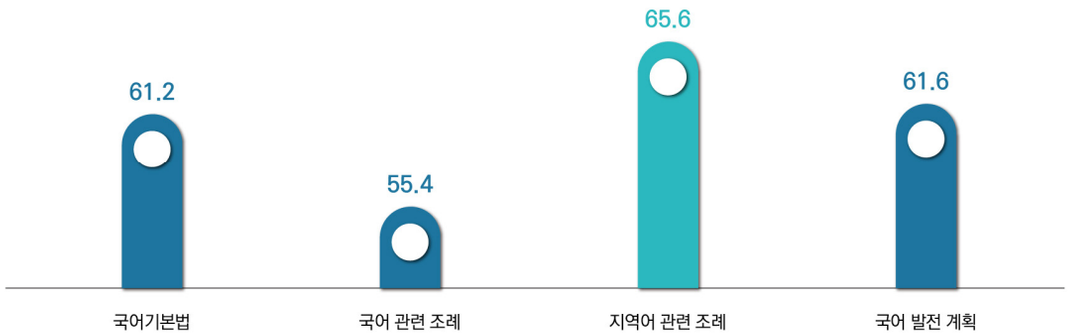


[그림 4-20] 해당 법령의 영향력

■ [포트폴리오 분석] 해당 법령의 중요성 / 해당 법령의 영향력

- 해당 법령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중요성 높음/영향력 높음]으로 구분된 법령은 '지역어 관련 조례', '국어발전 기본계획', '국어기본법'으로 나타남. 한편, [중요성 낮음/영향력 낮음]은 '국어 관련 조례'로 조사됨.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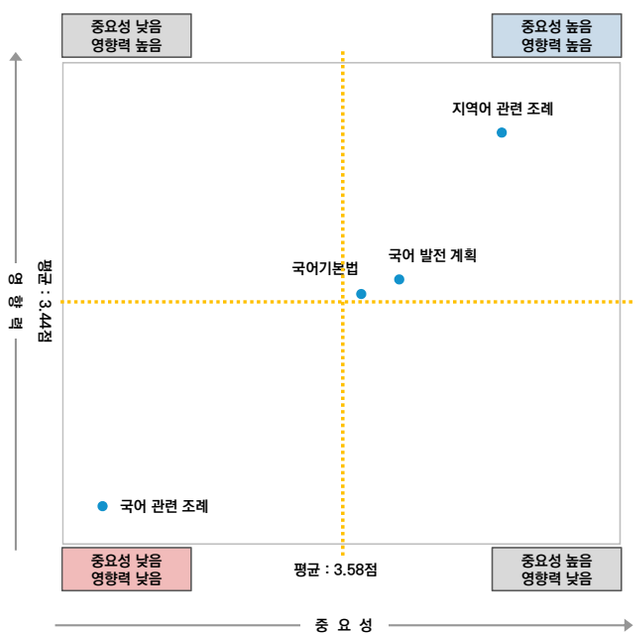


| 항목 | 중요성 | 영향력 | 결과 |
|---|---|---|---|
| 국어기본법 | 3.60 | 3.45 | 중요성 높음<br>영향력 높음 |
| 국어 관련 조례 | 3.33 | 3.22 | 중요성 낮음<br>영향력 낮음 |
| 지역어 관련 조례 | 3.75 | 3.63 | 중요성 높음<br>영향력 높음 |
| 국어 발전 계획 | 3.64 | 3.46 | 중요성 높음<br>영향력 높음 |

[그림 4-21] 해당 법령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 (4) 정책 방향

■ 지역 언어문화 보전과 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역할 구분

- '국가(공공)주도-민간주도'(4.09점), '중앙정부 중심-지자체 중심'(3.74점), '행정인력 중심-전문인력 중심'(5.42점), '주도형 거버넌스-협력형 거버넌스'(4.88점), '지역어 보전-지역어 활용'(3.97점).

〈표 4-6〉 추진 역할구분

| 방향1 | 1 | 2 | 3 | 4 | 5 | 6 | 7 | 방향2 |
|---|---|---|---|---|---|---|---|---|
| 국가(공공) 주도 | | | | * (4.09) | | | | 민간 주도 |
| 중앙정부 중심 | | | | * (3.74) | | | | 지자체 중심 |
| 행정인력 중심 | | | | | * (5.42) | | | 전문인력 중심 |
| 주도형 거버넌스 | | | | | * (4.88) | | | 협력형 거버넌스 |
| 지역어 보전 | | | | * (3.97) | | | | 지역어 활용 |

■ 우리나라의 국어 정책의 방향

- '의사소통 효율성-지역문화 다양성'(4.19점), '통합과 표준-개성과 고유성'(4.36점), '표준어 중심 정책-국어다양성 보존 정책'(4.43점).

〈표 4-7〉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방향

| 방향1 | 1 | 2 | 3 | 4 | 5 | 6 | 7 | 방향2 |
|---|---|---|---|---|---|---|---|---|
| 의사소통 효율성 | | | | * (4.19) | | | | 지역문화 다양성 |
| 통합과 표준 | | | | * (4.36) | | | | 개성과 고유성 |
| 표준어 중심 정책 | | | | | * (4.43) | | | 국어다양성 보존 정책 |

## 2.3. 지역 언어문화에 대한 인식

### (1) 지역 방언 유지·존속에 대한 생각

■ 지역어 유지·존속 여부

- 〈공무원 인식〉(본조사)은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35.1%+매우 그렇다: 15.1%)는 응답이 50.2%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국민 인식〉(2020년)은 '그렇다'가 50.8%로 조사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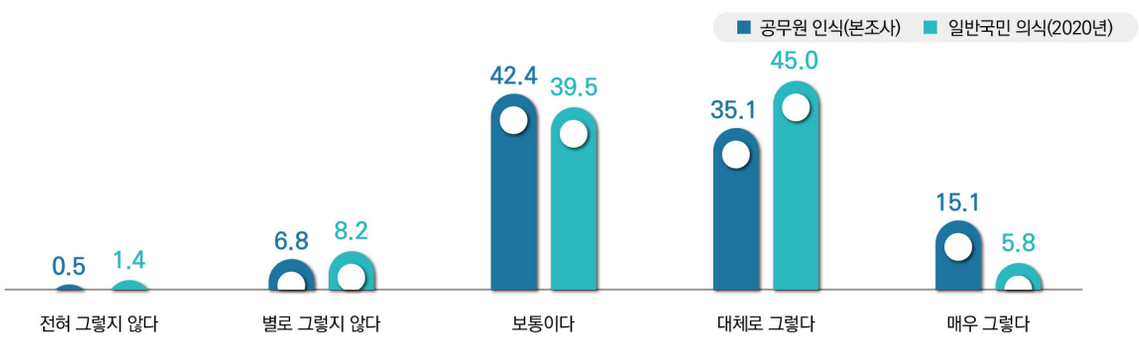


[그림 4-22] 지역어 유지·존속에 대한 생각

■ 지역어 유지·존속이 불필요한 이유

- 유지·존속 여부에 대해 '부정' 응답(별로 그렇지않다 + 전혀 그렇지않다)을 보인 대상자에게 지역어 유지 존속이 불필요한 이유를 물은 결과, 〈공무원 인식〉(본조사)은 '지역 방언의 소멸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라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일반 국민 인식〉(2020년)은 '언어 통합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6.7%로 높게 조사되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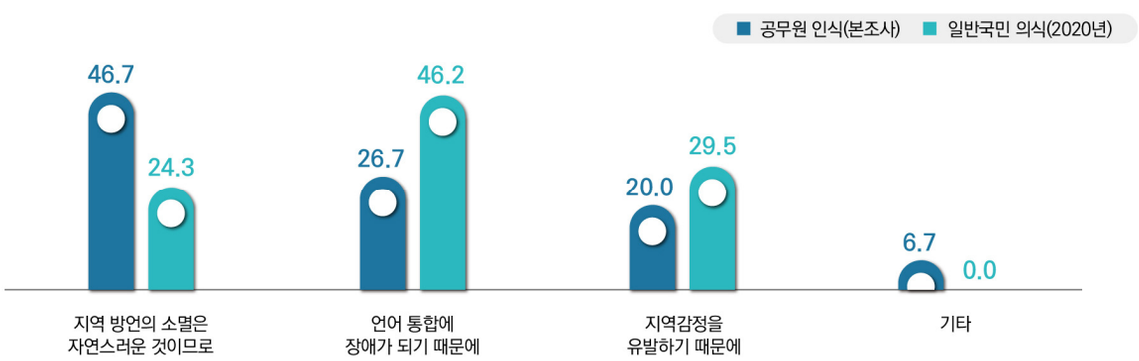


[그림 4-23] 지역어 유지·존속이 불필요한 이유

■ 지역어 유지·존속이 필요한 이유

- 유지·존속 여부에 대해 '보통' 또는 '긍정' 응답(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을 보인 대상자에게 지역어 유지 존속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설문에, 〈공무원 인식〉(본조사)은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하므로'라는 응답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일반국민 인식〉(2020년)은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하므로'라는 응답이 43.0%, '사용자의 정체성과 정서 형성에 중요하므로'라는 응답이 40.2%로 양분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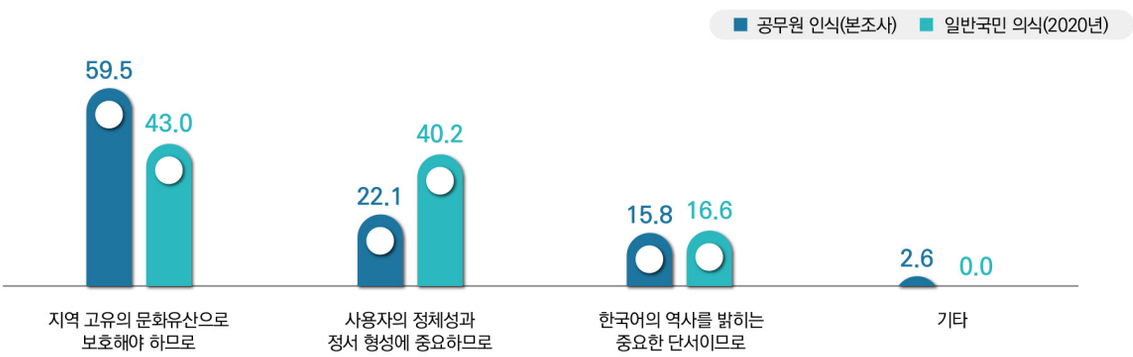


[그림 4-24] 지역어 유지·존속이 필요한 이유



**불필요한 이유 (n=15)**

| 항목 | 비율(%) |
|---|---|
| 지역방언의 소멸은 자연스러운 것 | 46.7 |
| 언어통합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 26.7 |
| 지역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 20.0 |
| 기타 | 6.7 |

**지역어 유지·존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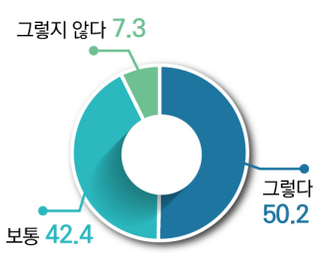


**필요한 이유 (n=190)**

| 항목 | 바율(%) |
|---|---|
|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 59.5 |
| 정체성과 정서 형성에 중요 | 22.1 |
| 국어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 | 15.8 |
| 기타 | 2.6 |

[그림 4-25] 지역어 유지 존속에 대한 의견

## (2) 복수 표준어 인정

■ 지역어 복수 표준어 인정에 대한 생각

- 〈공무원 인식〉(본조사)은 '긍정'(대체로 긍정적이다: 39.0%+매우 긍정적이다: 8.8%)이라는 응답이 47.8%로 절반 가까이 나타나며, 〈일반 국민 인식〉(2020년)은 '긍정'이 41.8%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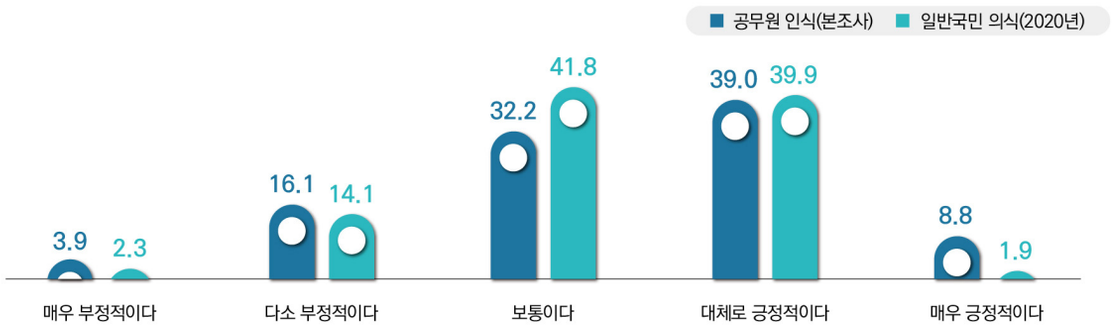


[그림 4-26] 복수 표준어 인정에 대한 생각

### (3) 표준어와 지역방언

■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어

- 〈공무원 인식〉(본조사)은 '표준어'라는 응답이 48.8%로 조사되었으며, 〈일반 국민 인식〉(2020년)도 '표준어'라는 응답이 56.7%로 절반 이상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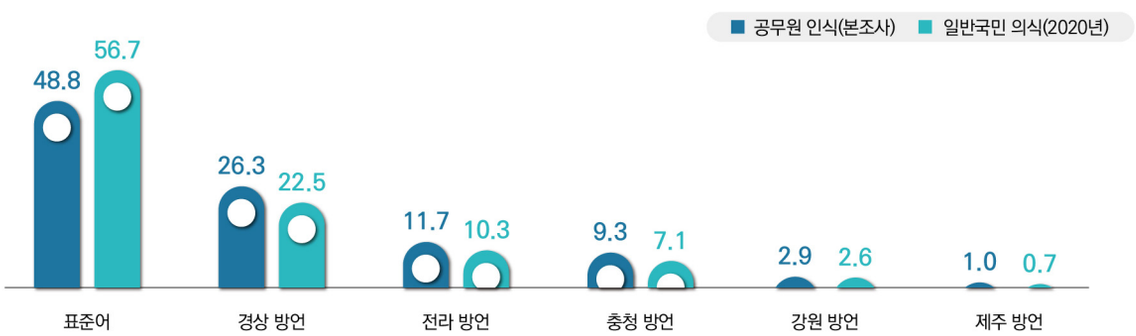


[그림 4-27]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 지역어 사용자와 대화할 때의 느낌

- 평소 '표준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응답자에게 '지역어 사용자와 대화할 때의 느낌'을 묻는 설문에, 〈공무원 인식〉(본조사)은 '편하고 친근하다'라는 응답이 62.0%로 절반 이상 나타났으며, 〈일반 국민 인식〉(2020년) 또한 '편하고 친근하다' 응답이 80.0%로 높은 비율이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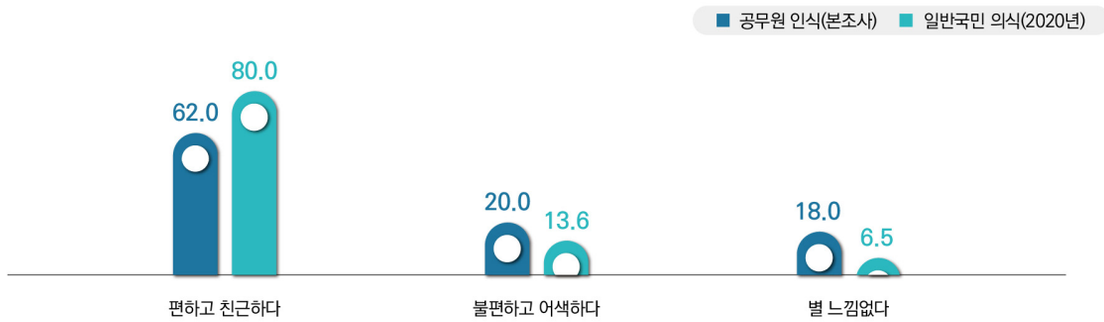


[그림 4-28] 지역 방언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 시 느낌

지역방언 사용자와 대화 시 느낌 (n=100)

| 항목 | 비율(%) |
|---|---|
| 편하고 친근하다 | 62.0 |
| 불편하고 어색하다 | 20.0 |
| 별 느낌없다 | 18.0 |

평소 사용하는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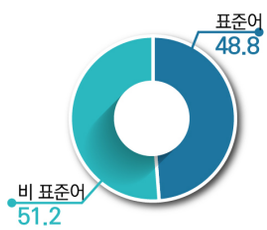


자신의 지역방언 사용에 대한 생각 (n=105)

| 항목 | 바율(%) |
|---|---|
| 긍정적 | 84.8 |
| 부정적 | 4.8 |
| 별 생각없다 | 10.5 |

[그림 4-29] 평소 방언에 대한 인식



■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 평소 '지역어'를 가장 많이 하는 응답자에게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공무원 인식〉(본조사)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4.8%로, 〈일반 국민 인식〉(2020년)의 '긍정적'이라는 응답 86.1%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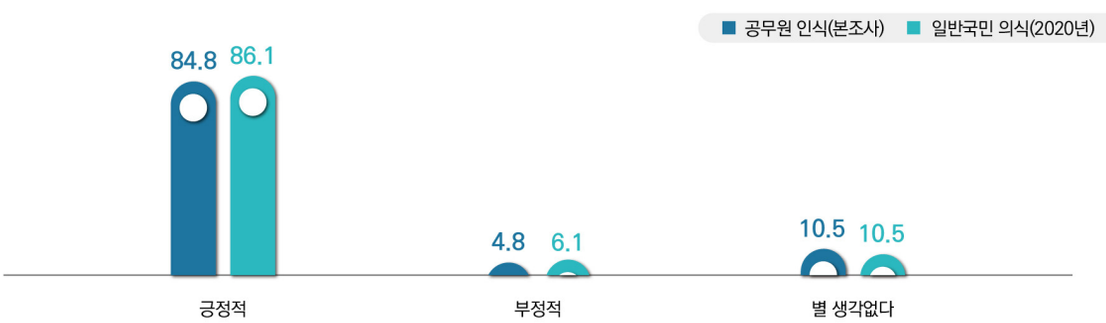


[그림 4-30]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 평소 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에 대한 견해

- 〈공무원 인식〉(본조사)은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국민 인식〉(2020년)도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응답이 40.6%로 높게 조사됨.
- 한편, 〈공무원 인식〉에서는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일반 국민 인식〉은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역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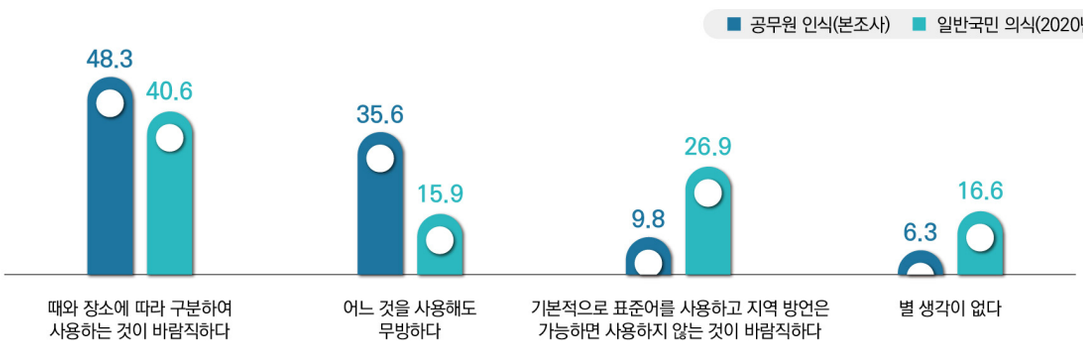


[그림 4-31] 평소 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에 대한 견해

# 제3절
# 요약 및 종합분석

## 3.1. 조사 개요

■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언어문화 보전 및 활용 현황 및 정책 수요조사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03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언어문화 정책 담당자 또는 문화정책 담당자 대상 온라인 조사 수행. (모집단 219명, 표본 205명)





〈표 4-8〉 조사 개요

| 구분 | 내 용 |
|---|---|
| 조사목적 | 지역 언어문화 보전 및 활용 현황 및 정책수요, 지역어 인식 조사 파악을 통한 지역 언어문화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 조사대상 |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03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언어문화 정책 담당자 또는 문화정책 담당자(서울 제외) |
| 조사방법 | 지자체별 관련 부서에 응답대상자 확인 후, 온라인설문 참여 독려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조사, 모바일 조사 병행) |
| 표본크기 | 205표본 |
| 자료 처리 방법 | 응답 자료파일을 통계패키지인 SPSS에 의해 통계처리 |
| 조사기간 | 2022년 11월 2일(수) ~ 11월 16일 |

## 3.2. 지역 언어문화 사업 추진 현황

■ 응답자는 경기(20.5%), 강원(8.8%), 충청(16.1%), 전라(20.5%), 경상(32.7&), 제주(1.5%)의 지역분포를 보였고, 담당자 직급은 7급(31.2%), 8급(26.3) 공무원이 많았으며 지역어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33.2%로 나타남.

### (1) 추진 사업 현황

■ 최근 5년간 추진한 지역 언어문화 사업은 각 13개 지자체(6.3%)에서 총 19개 사업 추진. (※응답을 토대

로 분석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음)

- 권역별로, 제주(66.7%)와 강원(11.1%)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지자체 구분별로는 '광역지자체'의 추진 경험이 '기초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9〉 지자체 추진 사업 현황

| 구분 | 내 용 |
|---|---|
| 사업의 재원 | '지방비(기초의 경우 광역지자체 보조금 포함)' 94.7%, '민간재원(기업 투자, 민간 기부 등)' 5.3%, '국비(국고보조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0% |
| 사업방식 | '지자체 직접 추진' 31.6%, '민간(국어문화원, 대학, 학회 등) 위탁추진' 5.3%, '지역 공공기관(진흥원, 연구원 등) 위탁 추진', 5.3% |
| 지속사업 여부 | '지속 사업' 57.9%, '지속사업이 아님' 42.1% |
| 사업 근거 | '지자체 조례' 63.2%, '국어기본법', 15.8%, '국어기본계획', 5.3%, '지자체장 지시사항' 5.3% |

### (2) 추진 조직 현황

- 운용되고 있는 지역 언어문화 진흥기관 및 조직은 '국어문화원'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민간단체'(4.4%), '연구원, 진흥원 등 지역어 관련 공공기관'(2.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기관의 활용도와 전문성을 분석한 결과 [활용도 높음/전문성 높음]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국어문화원', '관련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반면, [활용도 낮음/전문성 낮음]은 '관련 민간기관'과 '기타' 기관으로 나타남.

### (3) 관련 법·제도 현황

- 문헌조사 결과 전국 지자체(서울 제외 219개)의 25.1%(55개)가 지역어 관련 조례를 제정.
-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이 지역 언어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 응답 22.2%(100점 환산 평균: 45.8점).
- 향후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 12.3%(100점 환산 평균: 41.7점).

## 3.3. 지역 언어문화 사업 행정수요

### (1) 정책 이해도

- 지역어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필요성 긍정 응답 38.0%(100점 환산 평균: 55.4점).
- 지역어 지원 정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지역 전통 및 문화 계승에 이바지] 61.71점 〉 [지역 정체성 보전 및 강화] 59.02점 〉 [마케팅/관광 분야 등에 활용] 55.12점 〉 [지역 발전] 51.22점.
- 지역어 추진 시 필요한 자원은 '정보 및 자료'가 57.9점(100점 환산 평균), '예산'(56.8점), '제도 및 법적

기반'(54.1점), '전담기관(기구)'(50.7점), '시설 등 자원'(48.0점), '지역어 전문 인력'(53.8점), '지자체의 업무담당자 역량'(53.7점), 지자체장의 의지(53.7점), '지역주민의 인식'(52.2점).

- [중요성 높음/시급성 높음]으로 구분된 자원은 '정보 및 자료', '지자체장의 의지', '지역어 전문 인력'으로 나타난 반면, [중요성 낮음/시급성 낮음]은 '시설 등 자원', '전담기관(기구)' 등으로 나타남.

### (2) 법·제도

- 지역어 정책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율 74.0%.
- 인지도가 높은 법령(복수 응답)으로 '국어기본법'이 4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어 관련 조례'(17.9%), '국어발전 기본계획'(9.8%), '지역어 관련 조례'(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령으로는 '지역어 관련 조례'가 68.8점(100점 환산 평균)으로 가장 높음. '국어기본법'(65.1점), '국어 관련 조례'(58.3점), '국어 발전 계획'(66.1점) 등으로 조사됨.
- 해당 법령의 영향력은 '지역어 관련 조례'가 65.6점(100점 환산 평균)으로 가장 높음. '국어기본법'(61.2점), '국어 관련 조례'(55.4점), '국어 발전 계획'(61.6점) 등으로 각각 조사됨.
- [중요성 높음/영향력 높음]으로 구분된 법령은 '지역어 관련 조례', '국어발전 계획', '국어기본법'으로 나타남. 한편, [중요성 낮음/영향력 낮음]은 '국어 관련 조례'로 조사됨.



### (3) 정책 방향

- 지역 언어문화 보전과 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 '국가(공공)주도-민간주도'(4.09점), '중앙정부 중심-지자체 중심'(3.74점), '행정인력 중심-전문인력 중심'(5.42점), '주도형 거버넌스-협력형 거버넌스'(4.88점), '지역어 보전-지역어활용'(3.97점).

〈표 4-10〉 지역 언어문화 보전 정책 방향

| 방향1 | 1 | 2 | 3 | 4 | 5 | 6 | 7 | 방향2 |
|---|---|---|---|---|---|---|---|---|
| 국가(공공) 주도 | | | | * (4.09) | | | | 민간 주도 |
| 중앙정부 중심 | | | * (3.74) | | | | | 지자체 중심 |
| 행정인력 중심 | | | | | * (5.42) | | | 전문인력 중심 |
| 주도형 거버넌스 | | | | | * (4.88) | | | 협력형 거버넌스 |
| 지역어 보전 | | | * (3.97) | | | | | 지역어 활용 |

- 정책의 방향 : '의사소통 효율성-지역문화 다양성'(4.19점), '통합과 표준-개성과 고유성'(4.36점), '표준어 중심 정책-국어다양성 보존 정책'(4.43점).

〈표 4-11〉 국어 정책의 방향

| 방향1 | 1 | 2 | 3 | 4 | 5 | 6 | 7 | 방향2 |
|---|---|---|---|---|---|---|---|---|
| 의사소통 효율성 | * (4.19) | | | | | | | 지역문화 다양성 |
| 통합과 표준 | * (4.36) | | | | | | | 개성과 고유성 |
| 표준어 중심 정책 | * (4.43) | | | | | | | 국어다양성 보존 정책 |

## 3.4. 지역어 의식 조사

### (1) 결과 비교를 위한 국민 언어의식 조사 결과 요약(2005~2020)

〈표 4-12〉 국민 언어의식 조사 설계 및 결과

| | | 2005년 국민 언어의식 조사 | 2010년 국민 언어의식 조사 | 2015년 국민 언어의식 조사 | 2020년 국민 언어의식 조사 |
|---|---|---|---|---|---|
| 조사 설계 | 조사대상 |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전체 | 전국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남녀 | | |
| | 유효표본 | 총 4,055명 | 총 5,000표본 | | |
| | 조사방법 | 가구 방문에 의한 1:1 개별 면접 조사 | | | |
| | 조사기간 | 2005년 8월 18일 ~ 9월 16일 | 2010년 07월 | 2015년 8월 24일 ~ 9월 22일 | 2020년 9월 21일 ~11월 18일 |
| 조사 내용 | 표준어·방언 사용 실태 | 표준어 사용(47.6%) 〉 경상 방언(27.9%) 〉 전라 방언(13.5%) 〉 충청 방언(7.4%) 〉 강원 방언(2.8%) 〉 제주 방언(0.8%) 〉 북한 방언(0.1%) | 표준어 사용(38.6%) 〉 경상 방언(30.9%) 〉 전라 방언(14.7%) 〉 충청 방언(9.2%) 〉 강원 방언(4.5%) 〉 제주 방언(2.0%) 〉 북한 방언(0.2%) | 표준어 사용(54.5%) 〉 경상 방언(26.4%) 〉 전라 방언(9.7%) 〉 충청 방언(5.8%) 〉 강원 방언(2.2%) 〉 제주 방언(1.3%) 〉 북한 방언(0.1%) | 표준어(56.7%) 〉 경상 방언(22.5%) 〉 전라 방언(10.3%) 〉 충청 방언(7.1%) 〉 강원 방언(2.6%) 〉 제주 방언(0.7%) |
| | 방언 사용자들과 대화에 대한 견해 | - | 편하고 친근(59.5%) 〉 불편하고 어색(16.1%) | 편하고 친근(42.5%) 〉 불편하고 어색(19.1%) | 편하고 친근(79.9%) 〉 불편하고 어색(13.6%) |
| | 방언 사용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견해 | 긍정적(26.3%) 〉 부정적(25.2%) | 긍정적(62.0%) 〉 부정적(6.7%) | 긍정적(62.4%) 〉 부정적(5.0%) | 긍정적(86.1%) 〉 부정적(6.1%) |
| | 자신과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관한 견해 | - | 편하고 친근(56.9%) 〉 불편하고 어색(11.8%) | 편하고 친근(53.8%) 〉 불편하고 어색(14.0%) | - |
| | 표준어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관한 견해 | - | 편하고 친근(48.3%) 〉 불편하고 어색(16.9%) | 편하고 친근(48.8%) 〉 불편하고 어색(13.5%) | - |
| | 표준어와 방언의 |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 표준어·방언 어느 것 |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

| | | | | |
|---|---|---|---|---|
| 바람직한 사용 방향 | 사용(47.8%) 〉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24.2%)〉 표준어·방언 어느 것 사용해도 무방(20.8%) | 사용해도 무방(31.5%) 〉 표준어·방언 구분하여 사용이 바람직(27.5%) 〉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25.4%) | 사용(39.0%) 〉 표준어· 방언이든 어느 것 사용해도 무방(31.4%) 〉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19.0%) | 사용(40.6%) 〉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26.9%) |
| 방언의 존속에 대한 의견 | 방언 보존해야 함(86.8%) | 방언 보존해야 함(81.6%) | 유지, 존속되어야 함(88.6%) | 유지, 존속되어야 함(50.9%) 〉 유지, 존속되지 않아도 괜찮음(9.7%) |
| 방언 유지,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 | 지역 고유의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 존속(57.1%) 〉 국어의 역사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므로 보존(29.7%) | 지역 고유의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 존속(33.1%) 〉 국어의 역사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므로 보존(27.6%) 〉 방언은 표준어와 다른 기능과 필요성을 가지므로 존속(20.9%) | 지역 고유의 말이므로 반드시 유지, 존속(40.6%) 〉 국어의 역사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보존(27.7%) 〉 방언은 표준어와 다른 기능과 필요성을 가지므로 존속(20.3%) |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보호(43.0%) 〉 사용자의 정체성과 정서 형성에 중요(40.2%) 〉 한국어의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16.6%) |
| 방언 유지, 존속되지 않아도 되는 이유 | 언어 통일에 장애가 되므로 (7.1%) 〉 지역감정을 유발하므로 (5.6%) | 언어 통합에 장애가 되므로 (11.5%) 〉 지역 감정을 유발하므로(6.7%) | 언어 통일에 장애가 되므로 (6.6%) 〉 지역감정을 유발하므로 (4.1%) | 언어 통합에 장애가 되기 때문(46.2%) 〉 지역감정을 유발하기 때문(29.5%) 〉 방언 소멸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24.3%) |
| 자녀의 표준어 구사 희망 정도 | 표준어 구사 바람(84.7%) 〉 바라지 않음(1.8%) | 표준어·방언 둘 다 구사(47.5%) 〉 표준어만 구사(26.2%) 〉 방언만 구사(2.7%) | 둘 다 사용(39.3%) 〉 표준어만 사용(36.1%) 〉 방언만 사용(1.2%) | - |
| 텔레비전 대담·토론 프로 토론자들의 방언 사용에 대한 인상 | 지역 방언을 통해 자신의 지역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기 좋지 않음(24.4%) 〉 토론에 나온 사람이 왜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할까(31.4%) 〉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솔직해 보임(18.3%) 〉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4.7%) 〉 별 느낌이 없음(20.6%) | 긍정적(45.5%) 〉 부정적(44.1%) |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괜찮음(28.1%) 〉 토론에 나온 사람이 왜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할까(22.2%) 〉 지역 방언을 통해 자신의 지역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기 좋지 않음(20.1%) 〉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솔직해 보임(14.1%) | - |
| 표준어 구사 정도 | - |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67.5%)이 표준어를 어려움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음 | 잘 사용함(55.6%) 〉 잘 사용 못 함(17.4%) | 잘 사용함(45.7%) 〉 잘 사용 못 함(12.3%) |
| 표준어 교육 | - | 부족하게 받음(28.5%) 〉 많이 받음(27.5%) | - | - |
| 표준어 이해 능력 | - | - | 잘 이해함(72.5%) 〉 잘 이해 못 함(3.4%) | - |
| 방언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인식 | - | - | 긍정적(54.5%) 〉 부정적(17.8%) | 긍정적(41.8%) 〉 부정적(16.4%) |

### (2) 지역어 의식 조사

- 지역어 유지·존속 여부 긍정 응답 : 공무원 50.2%, 일반 국민 50.8%.
- 지역어 유지·존속이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 : 공무원 '지역 방언의 소멸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46.7%, 일반 국민 '언어 통합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6.7%.
- 지역어 유지·존속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 : 공무원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하므로' 59.5%, 일반 국민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하므로' 43.0%.
- 지역어 복수 표준어 인정에 대한 긍정 응답 : 공무원 47.8%, 일반 국민 41.8%.

### (3) 지역어 활용에 대한 인식

-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어 : 공무원 48.4%, 일반 국민 56.7%.
- 지역어 사용자와 대화할 때의 느낌 : 공무원 '편하고 친근하다' 62.0%, 일반 국민 '편하고 친근하다' 응답이 80.0%.
- 자신이 지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 공무원 '긍정적' 84.8%, 일반 국민 '긍정적' 86.1%.
- 평소 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에 대한 견해 : 공무원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8.3%, 일반국민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6%.

## 3.5. 시사점

- 지역 언어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지역 언어문화 사업 추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 중 지역어 수행 경험이 없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66.8%), 7급 8급 공무원 비중이 57.4%로 비교적 높아, 지자체 지역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추진 권한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지자체 공무원의 지역 언어문화에 대한 인식 및 긍정적 성향이 국민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공무원 인식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자체 공무원의 지역어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100점 만점에 55.4점으로 나타나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없고, 자신이 지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 인식도 국민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음.

- 지역 언어문화 사업을 위해서는 '정보 및 자료'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하는 정보 구축 및 조사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국립국어원은 표준어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한국어 다양성 증진을 지향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의 지역

어 조사 및 지역 언어문화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역어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 언어문화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하기 위한 관련 사업 확대가 필요함.

■ 지자체 공무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은 '지역어 관련 조례'로 나타나 지역 언어문화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독려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 '지역 언어문화 발전'과 '지역 언어문화 소멸 방지'라는 영속적 목표를 고려할 때 지역의 독특한 언어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전국의 지역 언어문화를 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조사 결과, 지역 언어문화사업 추진 현황은 지역 간 편차가 크고 기초지자체보다는 광역지차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국의 균형적인 지역어 보전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지역 언어문화 사업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에서는 중앙중부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지방정부 정책을 이끌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응답.
- 지역어와 지역문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관심의 차이 등 지역적 불균형을 반영한다면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고, 국내는 물론 북한 지역어까지 포함할 수 있는 조직 업무의 독자성도 확보됨.

5장

# 지역 언어문화 정책 추진체계

# 제1절
# 정책 추진 방향

■ 2장~4장에서 분석한 지역 언어문화 환경변화와 당면과제, 정책사례 및 활용사례, 설문조사 등을 종합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수요를 도출함.

- 2장 환경분석에서 지역 언어문화의 문화자원으로서 중요성과 국민 문화 향유와 삶에 대한 영향력 확대 추세를 도출해내었고, 3장 정책사례에서 언어권리 보호 강화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며 문화향유권 및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지역 언어문화의 선순환 구조를 도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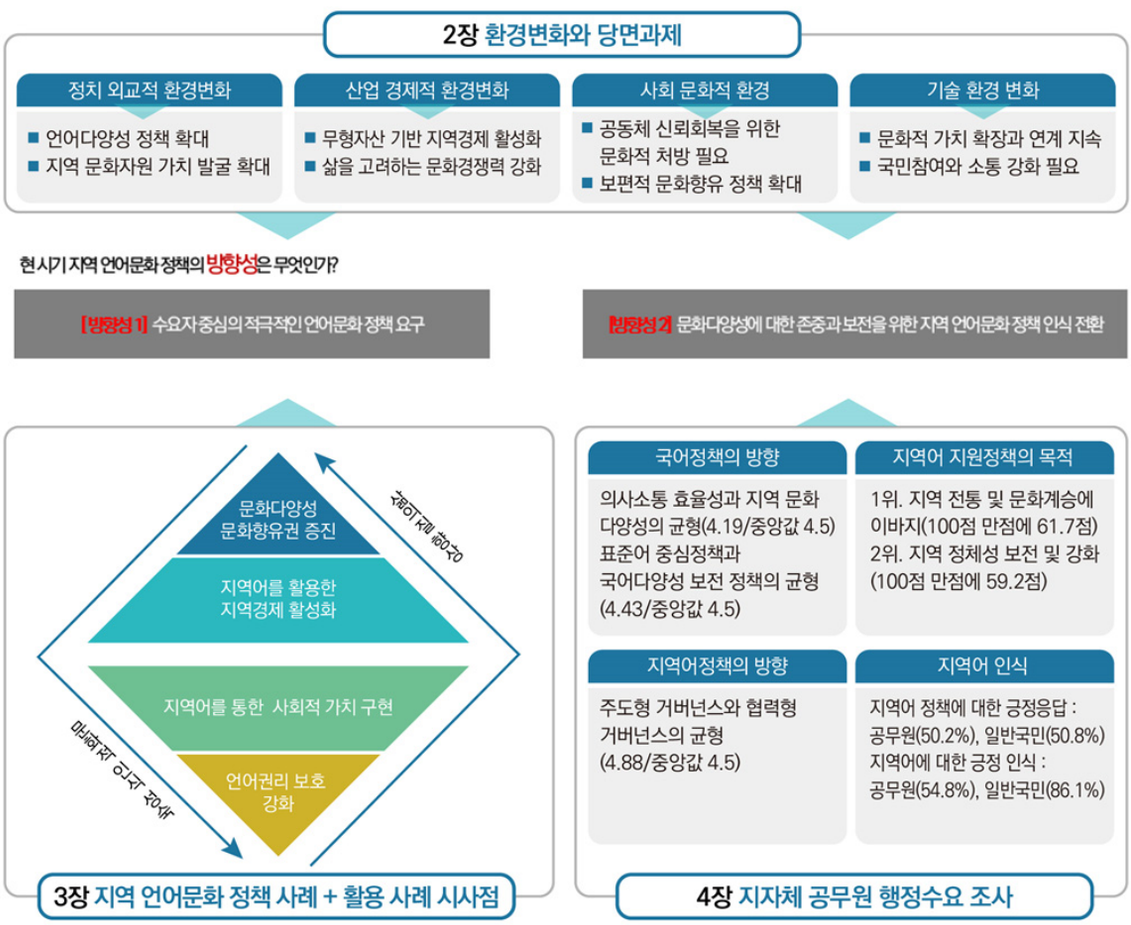


[그림 5-1] 지역 언어문화 정책의 행정수요

■ [방향성1]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언어문화 정책 요구

- 문화의 일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언어는 중요한 일상의 문화로 인식
- 지역 전통과 고유성 등 지역어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과 경제 활성화

■ [방향성2]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보전을 위한 지역 언어문화 정책 인식 전환

- 표준어 정책과 지역어 정책 간 균형 필요
- 국민의 다양하고 풍요로운 언어생활 향유를 위한 협력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이러한 방향성에 따른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 개편

- 지역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보완
- 지역어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중앙-지역,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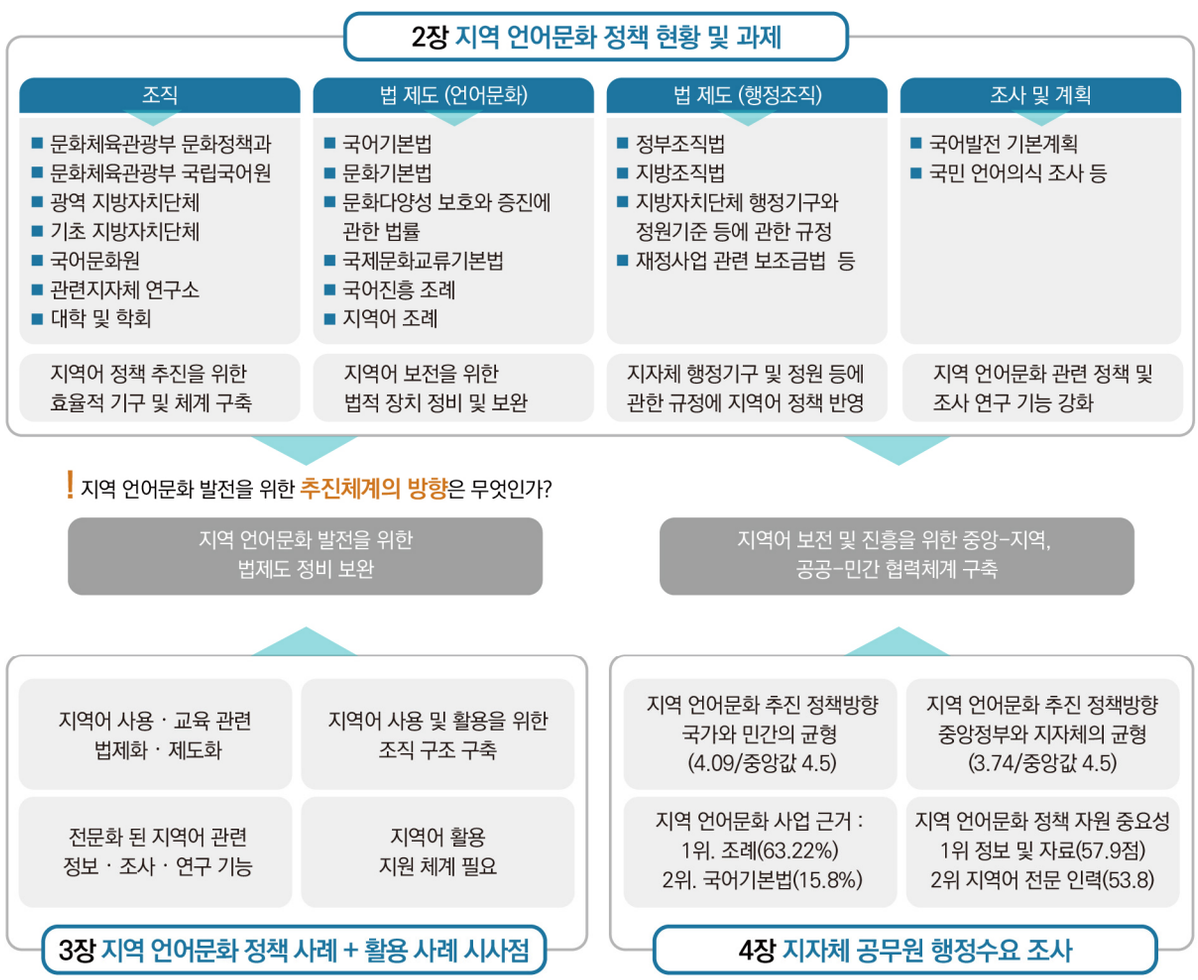


[그림 5-2] 지역 언어문화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제2절
# 중앙과 지역 정책 추진체계 사례 검토

■ 지역어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개편안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문화정책 추진 체계 또는 관련 법령을 통한 사례를 검토함.
-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로 구분
- 중앙정부(중앙행정기관) 법령 및 소속기관 유사 운영 사례 탐색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자체 협업기관 운영 사례 탐색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연구기관 지역 운영 사례 탐색[29)]

■ 중앙과 지역,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국내외 정책 추진체계 경향성을 확인하여 지역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사점 도출함.



## 2.1 국내 사례

### (1) 중앙정부 소속기관 직제 및 법제도

① 문체부 소속기관1: 국립국악원 및 지방국악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방국악원 설치 및 사무 규정**

제2조(소속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국악고등학교·국립국악중학교·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국립전통예술중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어원·국립중앙도서관·해외문화홍보원·**국립국악원**·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제58조(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1조의2(지방국악원) ①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②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29) 연구기관을 분석한 것은 국립국어원이 문교부 산하 국어연구소(1984년), 국립국어연구원(1990년)을 거치며 2004년부터 국민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과 연구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유사 연구기관 사례를 함께 검토하기 위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58조에 의하면, 국립국악원은 민족음악을 보존 · 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 동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민족음악 보전 및 전승발전 관련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민속국악원 · 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 등 3개의 지방국악원을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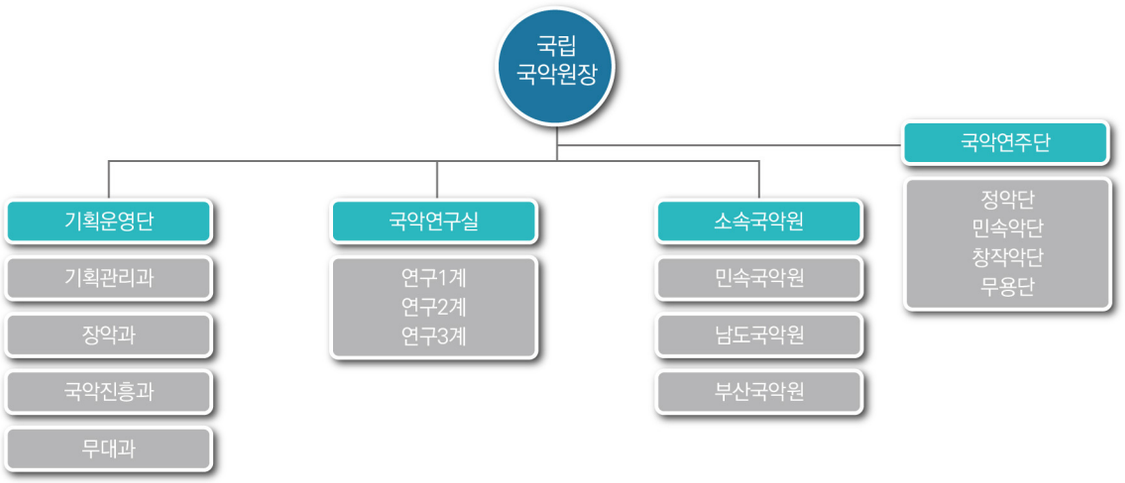


[그림 5-3] 국립국악원 조직도

출처: 국립국악원 홈페이지(www.gugak.go.kr)





■ (민속국악원) 1992년에 개원하여 국립국악원 소속국악원 중 가장 먼저 개원한 민속국악원은 전북 남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판소리와 산조 등 민속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민속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및 교육 · 보급, 민속악의 체계적인 학문적 정립 및 진흥 · 보존을 그 역할로 하고 있음[30].

■ (남도국악원) 2004년에 개원한 남도국악원은 전남 진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진도는 판소리와 산조와 같이 널리 알려진 음악문화 외에도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진도씻김굿, 진도북춤, 진도다시래기 등 많은 전통예술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음[31].

■ (부산국악원) 부산국악원은 2008년 개원하였으나, 한국전쟁기 피란지역이라는 특성상 부산은 1951년 국립국악원 최초의 개원지였음.

- 야류(野遊_수영야류/동래야류), 동래학춤, 부산농악 등 우리 춤과 연희의 역사를 살린 공연, 교육, 연구 사업에 주력하고 있음[32].

30) 국립민속국악원 홈페이지(namwon.gugak.go.kr)
31)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jindo.gugak.go.kr)
32) 국립부산국악원 홈페이지(busan.gugak.go.kr)

[그림 5-4] 국립국악원 설치현황



② 문체부 소속기관2: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박물관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 의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은 고고학 · 미술사학 · 역사학 · 인류학 분야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 · 보존 및 전시, 연구 · 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 · 홍보 · 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 또한 동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중앙박물관장 소속 하에 13개의 지방박물관(경주 · 광주 · 전주 · 대구 · 부여 · 공주 · 진주 · 청주 · 김해 · 제주 · 춘천 · 나주 · 익산박물관)을 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홍보·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5조 ① 각 지방에서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장 소속하에 지방박물관을 둔다. ② 지방박물관은 경주박물관·광주박물관·전주박물관·대구박물관·부여박물관·공주박물관·진주박물관·청주박물관·김해박물관·제주박물관·춘천박물관·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으로 한다. ④ 지방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을 기치로 그동안 소외되고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온 13개 지방국립박물관이 지역주민과 어우러지면서 문화를 만드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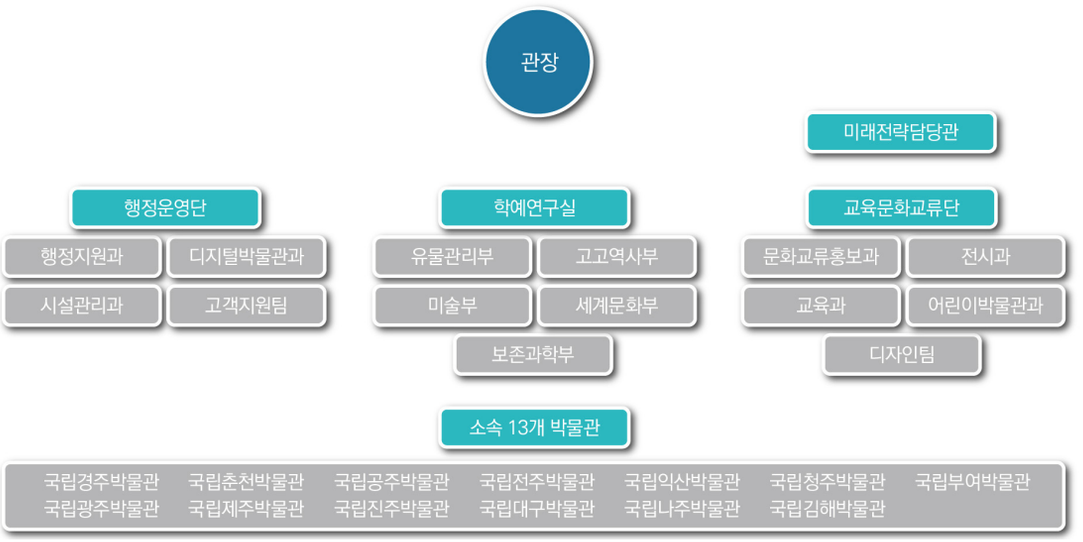


[그림 5-5] 국립중앙박물관 조직도

- 2020년까지 유물 42,000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속 지방박물관으로 이관하는 한편, 박물관마다 특정 콘텐츠를 브랜드화하여 그에 맞게 각 박물관에 산재한 유물 2,109점을 재배치.
- 경주는 '신라 역사', 광주는 '아시아 도자 실크로드 거점', 전주는 '조선 선비 문화', 부여는 '백제금동대향로(사비백제)', 공주는 '웅진백제', 익산은 '미륵사지와 고대 불교사원'에 주력, 진주는 '임진왜란', 청주는 '금속공예', 대구는 '복식', 김해는 '가야', 제주는 '대양과 섬', 춘천은 '금강산과 관동팔경', 나주는 '영산강 유역 돌널문화' 조사 및 연구 강화.
-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그간 박물관이 크게 조명하지 않은 고려, 가야, 근대회화, 민족의 기원을 주제로 전시 개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과 협의해 중복을 피하되 중요한 유물은 복수기관이 소장하는 방안 추진.



### ③ 환경부 소속기관: 유역환경청 등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두고,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를 둠.

■ (유역환경청) 동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1]에 따르면 유역환경청은 경기도 하남의 한강유역환경청, 경남

33) 2018.07.17. 연합뉴스, "13개 지방국립박물관 유물특색에 맞게 브랜드화" (www.yna.co.kr/view/AKR20180717107100005)

창원의 낙동강유역환경청, 대전의 금강유역환경청, 광주의 영산강유역환경청 4곳이 있음.

-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2]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를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 제외)를,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관할구역 제외) · 충청남도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경남 하동군 및 남해군 · 제주도를 관할함.

■ (지방환경청) 동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원주의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의 대구지방환경청, 전북 전주의 전북지방환경청 3곳이 있음.

-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및 [별표3]에 의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및 충북 충주시 · 제천시 · 괴산군 · 음성군 · 단양군을 관할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전북지방환경청은 전라북도를 관할함.
- 또,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두는데,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 분장을 위하여 경북 울진군에 왕피천환경출장소를 두고 있음(동 시행령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 해당 출장소는 경북 울진군 서면과 근남면 및 영양군 수비면 즉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왕피천 유역생태·경관보전지역만 관할함(시행규칙 [별표4]).

■ (수도권대기환경청) 동 시행령 제46조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경기도 안산에 두며,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5]에 의한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영흥면을 제외한 옹진군은 제외), 경기도 김포시 · 고양시 · 의정부시 · 남양주시 · 구리시 · 하남시 · 성남시 · 의왕시 · 군포시 · 과천시 · 안양시 · 광명시 · 시흥시 · 부천시 · 안산시 · 수원시 · 용인시 · 화성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이천시 · 광주시 · 안성시 · 여주시 · 포천시.

■ (홍수통제소) 동 시행령 제48조의3 및 [별표2의2]에 의하면, 홍수통제소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 4곳에 있으며, 시행규칙 제34조의2 및 [별표5의2]에 따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음.

〈표 5-1〉 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

| 명칭 | 위치 | 관할 구역 |
|---|---|---|
| 한강 홍수통제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금강수계지역은 제외) · 강원도(낙동강수계지역은 제외) 일원과 충청북도 중 한강 및 안성천수계지역, 충청남도 중 안성천수계지역, 경상북도 중 한강수계지역 |
| 낙동강 홍수통제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북도(한강 및 금강수계지역은 제외) · 경상남도(섬진강수계지역은 제외) 일원과 강원도 ·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중 낙동강수계지역 |
| 금강 홍수통제소 | 충청남도 공주시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한강수계지역은 제외) · 충청남도(안성천수계지역은 제외) 일원과 경기도 · 전라북도 및 경상북도 중 금강수계지역 |
| 영산강 홍수통제소 | 광주광역시 서구 |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낙동강 및 금강수계지역은 제외) · 전라남도(낙동강수계지역은 제외) 일원과 경상남도 중 섬진강수계지역 |

출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의2 및 [별표5의2]

④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둠.

■ 동 시행령 제24조와 제29조 및 [별표1]에 의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은 서울 · 원주 · 대전 · 익산 · 부산 등 5개 지역에 두고, 지방항공청은 서울 · 부산 · 제주에 둠.

-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토의 유지 · 건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둠(제27조).
-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김포항공관리사무소 · 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를 둠(제32조 제1항).

■ 한편, 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지방철도경찰대를 두고(「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 서울, 부산, 광주, 제천 등 4개 지역에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설치함(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5]).

- 또한, 동 직제 제42조 제5항~제6항 및 시행규칙 제47조항에 따라,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철도경찰대센터를 둠.
- 철도경찰대장 소속 철도경찰대센터: 대전, 천안, 오송, 서대전 센터(이상 4개).
-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 철도경찰대센터: 서울, 수서, 청량리, 영등포, 용산, 수원, 광명, 부평, 남춘천센터(이상 서울지역), 부산, 동대구, 신경주, 구포, 구미센터(이상 영남지역), 익산센터, 광주송정센터, 순천센터(이상 호남지역), 제천센터, 영주센터, 서원주센터, 강릉센터(이상 중부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지방우정청, 지역전파관리소

■ (우정사업조직)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우정사업조직'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우정사업을 나누어 맡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의미함.

-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3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정공무원교육원 · 우정사업정보센터 및 우정사업조달센터를 두고, 본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우정청을 둠.
- 지방우정청은 우편물의 접수 · 운송 및 배달, 우체국예금 · 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을 수행하는데,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제주도 제주시에 지방우정청을 두고 있음(시행령 제24조 및 [별표1]).
- 다시 지방우정청장 소속으로 우체국 ·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둠(시행령 제27조).

■ (전파관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전파관리소를 둠.

- 제31조에 따라 무선국의 감시 및 혼신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10개 지역(서울 · 부산 · 광주 · 대전 · 대구 · 강릉 · 전주 · 제주 · 청주 · 울산)에 전파관리소를 설치함.

### ⑥ 소방청 소속기관: 119특수구조대 등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중앙119구조본부를 두며, 다시 중앙119구조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소속으로 119특수구조대를 둠(시행령 제20조 및 [별표1],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

〈표 5-2〉 119특수구조대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

|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 수도권119특수구조대 | 경기도 남양주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영남119특수구조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
| 호남119특수구조대 | 전라남도 화순군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충청 · 강원119특수구조대 | 충청북도 충주시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 그리고 다시 119특수구조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장 소속으로 119화학구조센터를 두어 위험물 등 특수사고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활동 및 지원을 하도록 함(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별표2]).

〈표 5-3〉 119화학구조센터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

| 명칭 | | 위치 | 관할구역 |
|---|---|---|---|
| 수도권119특수구조대 | 시흥119화학구조센터 | 경기도 시흥시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 영남119특수구조대 | 구미119화학구조센터 | 경상북도 구미시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 울산119화학구조센터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호남119특수구조대 | 익산119화학구조센터 | 전라북도 익산시 | 전라북도 |
| | 여수119화학구조센터 | 전라남도 여수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충청 · 강원 119특수구조대 | 서산119화학구조센터 | 충청남도 서산시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 | 충주119화학구조센터 | 충청북도 충주시 | 강원도, 충청북도 |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르면, 소방서 · 119출장소 ·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 및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에는 해당 제한이 완화됨.

〈표 5-4〉 소방서 · 119출장소 ·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 및 제8조 제3항 관련)

| 구분 | 기준 | 예외 |
|---|---|---|
| 소방서 | 가. 시(「제주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 · 군 · 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 · 군 · 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 가능<br>나. 가목에 따라 설치된 소방서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119안전센터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방서 추가 설치 가능 | 다. 석유화학단지 · 공업단지 · 주택단지 · 문화관광단지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소방서 설치 가능 |
| 119 출장소 | 가.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 · 군 · 구 지역에 119출장소 설치 가능 | 나.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거나 이미 119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임에도, 석유화학단지 · 공업단지 · 주택단지 · 문화관광단지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에는 119출장소 추가 설치 가능 |
| 119 안전 센터 | 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119안전센터 설치 가능<br>1) 특별시: 인구 5만명 이상 또는 면적 2㎢ 이상<br>2)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인구 3만명 이상 또는 면적 5㎢ 이상<br>3)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 · 군: 인구 2만명 이상또는 면적 10㎢ 이상<br>4)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시 · 군: 인구 1만 5천명 이상 또는 면적 15㎢ 이상<br>5)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 인구 1만명 이상 또는 면적 20㎢ 이상 | 나. 석유화학단지 · 공업단지 · 주택단지 · 문화관광단지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119안전센터 설치 가능 |
| 소방 정대 | 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소방정대 설치 가능 | 나. 항만의 이동인구 및 물류 급증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소방정대 설치 가능 |
| 119 지역대 | 가.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읍 · 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이거나 인구 3천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 가능<br>나. 농공단지 · 주택단지 · 문화관광단지 등 개발 지역으로써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 가능 | 다. 도서 · 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기 곤란한 지역에 설치 가능 |

출처: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 2] 재구성



### (2) 지방자치단체

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시·도, 시·군·구의 직속기관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되며, 지방농촌진흥기구, 지방공립대학,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보건환경연구원이 해당됨(제4장 제15조).

- (지방농촌진흥기구)는 농업 · 농업인 · 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 · 농촌지도사업 ·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 · 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 · 농촌지도사업 ·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과 시장 · 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음.
- (지방공립대학)은 시 ·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대학과 전문대학 등(이하 “지방공립대학”이라 한다)의 조

직과 분장사무는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 규칙으로 정함.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은 시 ·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이하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 ·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 감독함.
- (보건환경연구원)은 시 ·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부와 과(科)를 둘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 중에 문화, 언어 관련 조직에 대한 내용은 없음.

②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언어 보전에 가장 적극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가지고 있지만, 제주어 진흥을 위한 업무는 문화정책과의 여러 가지 업무 중 하나임.

- 제주어 조례의 내용 중 조직 관련 내용인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의 활동도 미비함.
- 제주연구원의 제주학연구센터의 경우 연구 영역은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언어 영역에 제주어가 포함됨.

③ 광역자치단체 주도 협업조직: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협업조직으로는 2018년 11월 설치된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있음.

- 동 센터는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및 훈령(「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되 산림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강원도내 6개 기초자치단체(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를 참여시킴.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제8조(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및 양양군(이하“동해안 6개 시·군”이라 한다)의 산불방지 및 산불진화·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이하“동해안산불방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37조[34]에 따라 동해안 6개 시·군의 산불방지 등을 위해 시·군 및 국가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인력·장비 등 산불진화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산불 진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34) 「산림보호법」 제37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 · 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이하 “통합지휘”라 한다)한다. 다만, 산불이 국유림 ·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산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증가와 강수량 부족,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산림, 동해안의 강한 계절풍(양간지풍) 등으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 증가 및 대형화 우려(최근 20년 지역별 대형산불 39건 중 강원 동해안 20건 발생, 51%)[35].
-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조직에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례적.

■ 동 센터는 강원 동해안 지역의 산불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강원도 내 6개 자치구 외에 산림청, 소방청, 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연중 24시간 산불 상황을 관제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산불 대응 협업기관임[36].
-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시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
- 재난업무의 대응 성패는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좌우.

■ 강원도 내 6개 기초자치단체 외에도 소방청(인명 및 시설보호), 국방부(진화 지원), 경찰청(교통통제, 가해자 검거), 문화재청(사찰 등 문화재 인근 산불 발생 시 지상진화 지원),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 인근 산불 발생 시 지상진화 지원)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도 참여한다는 점에서[37] 특별지방자치단체와는 성격이 다름.





④ 기초자치단체 주도 협업조직: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

■ 영남알프스가 울산시 울주군, 밀양시, 양산시, 경주시, 경북 청도군에 걸쳐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동 관광콘텐츠 개발과 인접지역과의 협력 필요성 증대[38].

■ 울산시 울주군 주도로 경주시, 밀양시, 양산시, 경북 청도군은 함께 2019년 8월부터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 시작, 매년 수만 명이 영남알프스 방문
- 영남알프스 9개 봉우리 정상에서 인증 사진 촬영 후 울주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완등자 인증, 5개 지자체 기관명이 기재된 인증서 및 메달 배송, 완등자 사진 울주관광 홈페이지에 게시 등[39].

---

역 중 두 군데 이상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군데 이상의 통합지휘권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불이 둘 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 · 도지사가 통합지휘하고,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발생하면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휘권을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5) 산림청(2021.01.08.). 「2021년 K-산불방지대책: 정확한 판단·신속한 대응·안전한 진화」. p.3

36) '강원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2018년 11월 1일 조직은 신설되었으나 청사는 2022년 2월 4일에 준공됨(강릉시 연곡면 소재). [2022.02.04. 산림청 보도자료 "「강원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준공, 초동 진화체계 구축-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최첨단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참고

37) 산림청(2019.01.) 「2019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pp.13-14.

38)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0). 「지방자치단체 협업행정 유형분석 및 협업모델 신규 발굴」. p.61.

39) 상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0) 자료, p.61.

- 사업 참여자 수는 2019년 3,831명, 2020년 2만 1,867명, 2021년 6만 6,509명, 2022년 11월 1일 현재 7만 9,499명으로 해마다 증가[4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재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는 국제클라이밍장, 번개맨체험장, 알프스시네마 극장, VR등 영상체험관, 산악문화관, 야외공연장과 중앙광장.

■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내에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119산악구조센터를 두어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울주소방서(언양 119안전센터)와도 협업 중.
- 언양119안전센터는 울주군 언양읍, 삼남읍, 상북면, 삼동면을 관할하는데, 해당 지역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수성, KTX울산역을 기반으로 한 교통의 요충지, 관내 영남알프스를 비롯한 관광지 등으로 인해 연중 관광객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41].

⑤ 지자체-중앙정부-공공기관-민간 거버넌스 사례: 경상북도 안동시 생태계 교란종 지역 상품화 사업[42]

■ (문제 인식) 배스나 블루길 등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종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퇴치·수매사업에도 불구하고 전국 댐과 하천에 확산하여 토종생태계를 위협하고 주민 피해 증가, 포획·수매한 생태계 교란종이 대부분(90%) 투기·매립되어 2차 환경오염 유발.

■ (사업화 방향) 생태계 교란종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 생태교란종 유용자원화 사업 일환으로 '친환경 어분비료 개발 사업' 추진.

■ (협업) 지역주민이 핵심 수혜자이자 참여자가 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안동시, 농협, 지역대학, 주민 간 협업체계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과의 협업으로 국내 최초 이동형 제조설비를 개발, 현장에서 즉석 제조, 200㎡ 규모의 공장형 자동화 제조설비도 준공.
- 지자체(안동시)와 농협, 주민 간 협업으로 친환경 어분비료 시험생산·판매.
- 농가 소유의 유휴 축사를 임차하여 공간 마련.
- 주민·어민회 대상 공개시연 및 주민공동체의 자문.
- 사업 전반에 걸쳐 예산 및 인력(전문가 등) 공유.
- 생산공정, 원료수급, 정부인증, 사후관리 등 업무 체계화, 유지관리·안전성 교육 및 메뉴얼 제공.

40) 2022.11.03. 파이낸셜뉴스, "영남알프스 활성화시키자"…관할 지자체 협업 (www.fnnews.com/news/202211031802490060 검색일: 2022.11.03.) 참고

41) 언양119안전센터 홈페이지(fire.ulsan.go.kr/page/ulju/119Center_1.do) 참고

42) 경상북도 안동시 생태계 교란종 지역 상품화 사업 전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0) 자료, pp.54-56.

■ (성과) 수생태계 보호,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생태계 교란종의 제거 및 재활용으로 수생태계 회복.
- 해당 어종의 투기·매립으로 발생하던 2차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
- 신규공장 설립 및 주민공동체 운영 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포획한 어류 수매사업과 친환경 비료 제작·판매로 지역주민의 신규 소득 창출(어류수매로 어민소득 연간 5~6천만 원, 비료판매로 농가소득 연간 4~5천만 원 창출 기대).
- 배추 등 5종의 재배작물을 대상으로 어분비료의 효과 및 안정성 검증.
- 친환경 비료 제조공장 설립 후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이전, 주민들이 자율적·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함.

### (3) 연구기관 및 기타

#### ① 연구원 지방조직 사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원 연구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NST)는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 제18조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원하는 연구기관은 21개 출연연구원 (「과기출연기관법」 제8조 제1항 및 [별표 1]) 및 4개의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총 25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부설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분원 설치의 경우, 정부의 2015년 '연구기관의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지침' 개정 이전에는 연구계획서 평가만 받으면 비교적 쉽게 지방분원을 세울 수 있었으나, 해당 개정으로 사실상 분원 설치가 어려워짐[43].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체 62개 지방분원 가운데 83.9%인 52개가 10년(2005~2014년) 사이 만들어졌으며,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

43) 2015.10.05. 조선일보, "정부, 연구기관 지방분원 신설 사실상 불허…난립 지방분원 '정리'" (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05/2015100500900.html, 검색일: 2022.10.27.)

하는 데다 기능을 분할하여 연구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계속됨.

- 이에, 지방분원을 만들 경우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시범사업을 최소 30개월 이상[44] 실시한 후에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음.
- 기존 출연연구기관들이 지방분원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맡기는 관행으로 인해 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바, 타당성 조사 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일원화.
- 연구개발비와 운영비도 지자체가 50% 이상 부담하고, 설립한 지 5년 이상 된 지방분원들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해 부실 분원은 기능 조정이나 통폐합 추진.

**〈표 5-5〉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규정」주요 내용**

(개정 2020.07.31.)

| 구분 | | 내용 |
|---|---|---|
| 지역 조직 시범 사업 | 운영 계획 제출 | ①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 시범사업 운영계획과 외부전문가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br>②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시범사업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br>1. 시범사업의 수행기간은 최소 24개월 이상으로 한다.<br>2. 부지 및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존 시설을 활용한다.<br>3. 시범사업의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분담한다. |
| | 사전 검토 및 보고 | 제6조 ①연구회는 연구기관이 제5조에 따라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제출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②연구기관은 검토위원회 검토 결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운영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차년도 이후에 검토위원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검토위원회 재검토에서도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3년간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
| 지역 조직 설치/ 운영 계획 | 계획 제출 | 제8조 ①연구기관은 제7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완료한 후 지역조직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br>②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br>1. 자체 적정성 검증자료(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br>2. 지방자치단체장과 체결한 양해각서 등<br>3. 지역조직 시범사업 최종평가 결과 및 평가 의견<br>4. 해당 지역조직의 정규직 인력 운영방안(60% 이상을 기존 본원의 인력으로 운영) |
| | 사전검토 및 보고 | 제10조 ①연구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을 접수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②연구기관은 검토위원회 운영 결과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설치·운영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차년도 이후에 검토위원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검토위원회 재검토에서도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



44) 2020년 7월 31일 '연구기관의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지침' 개정으로 최소 24개월로 변경

### ② 특정지역 대상 활동 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에 재정지원 사례: 독도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고(제2조), 독도와 관련된 연구 · 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9조 제3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독도의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 ·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 · 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 · 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9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연구기관 · 민간단체의 선정) 및 제11조(연구기관 ·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 해당 재정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에 해당(「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7-23호)」 제11조).





〈표 5-6〉 독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근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구분 | 내용 | 근거 |
|---|---|---|
| 독도 연구기관 설립 주체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설립, 지정 · 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그 기관의 설립, 지정 · 운영 요청 가능 | 법률 제9조 제1항 |
| 지정가능한 연구기관 | 1. 국립수산과학원<br>2. 국립환경과학원<br>3. 국립산림과학원<br>4.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br>5.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br>6. 그 밖에 독도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와 연구비 등 지원 가능 | 제3항 |
| 재정지원 대상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설립목적의 공공성, 사업실적의 타당성,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대상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 선정 | 시행령 제10조 제2항 |

## 2.2 국외 사례

### (1) 일본 중앙-지역 협업사례: 일본유산(Japan Heritage) 사업[45)]

① 배경 및 사업 의의

- 기존의 문화유산 정책은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보호를 중시했던 반면 최근에는 활용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며,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꾀하려는 노력 진행 중.

- 일본 정부는 2016년 3월 '관광비전구상회의'에서 2020년을 목표로 '내일의 일본을 지탱할 관광비전(明日の日本を支える観光ビジョン)' 정책 발표.
  - 내각총리대신, 관방장관, 국토대신, 지방창생대신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모여 방일 관광객 수 증대를 위한 목표의 수립과 대응방안 논의.
  - 이 중 '관광자원의 매력을 높여 지방창생의 원동력으로'라는 목표의 세부계획에 문화재를 보존 우선에서 관광객 시선에서 이해하고 활용한다는 내용 포함.

- 2016년 4월 '문화재활용· 이해촉진 전략 프로그램2020(文化財活用·理解促進戦略プログラム 2020)'을 통해 2020년까지 100건의 '일본유산' 지정을 목표로 제시.

-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특정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통합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일본유산매력발신추진(日本遺産魅力発信推進)' 제도, 즉 '일본유산(Japan Heritage)' 사업 도입[46)].
  - 각 지역의 유·무형문화재에 고유한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매력을 어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문화유산과 지역연계 사업.
  - 일본 각 지역의 역사와 풍습, 문화와 전통에 관한 '이야기(story)'를 일본의 유산으로 인정하고, 그 이야기와 연결되어 지역의 매력을 어필하는 명승지나 건축물, 축제 등 유·무형 문화재군(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

② 사업 프로세스

- 사업의 주체인 시정촌(市町村) 단위에서 지역형과 시리얼형의 2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신청.
  - 지역형: 포함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스토리가 지역 내에서 완결되는 유형

45) 별도 출처 표기가 없는 경우는 [정수희(2022). 문화유산과 지역의 새로운 관계맺음-'일본유산(Japan Heritage)'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제25호, pp.73-104] 참고 재구성

46) 이정선(2019). 일본 문화유산의 연속적 활용에 관한 연구-'군마 실크유산'과 세계유산, 일본유산 사업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52(1): 190-211.

- 시리얼형: 여러 개의 시정촌에 걸쳐 스토리가 전개되는 유형

■ 신청 지역은 ▲구성한 스토리, ▲포함된 문화유산에 관한 자료, ▲사업과 연계된 지역활성화계획 등을 문화청에 접수.

■ 교수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본유산심사위원회는 각 지역이 제출한 스토리의 역사·문화적 적정성, 사업과 관련된 비전과 실행계획 여부, 실행을 위한 실제적인 체제 정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증 여부 결정.

■ '스토리'는 '일본유산'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스토리를 구성하는 문화유산은 지정·비지정문화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문화유산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1개 이상의 국가지정문화재가 포함되어야 함.
- 일본 문화청에서 제시한 '일본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스토리의 조건'은
- 첫째, 역사적 경위나 지역의 풍토에 근거하고 세대를 초월하여 전할 수 있는 풍습 등을 내용으로 할 것.
- 둘째, 지역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테마를 설정하고, 유적, 명승지, 지역축제 등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보존되고 있는 문화재와 관련된 스토리를 포함할 것.
- 셋째, 지역의 역사나 문화재의 가치를 해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아야 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이야기를 설정해야 함.
- 단, 이 기준은 단일 문화유산 가치 간 우열을 매기지 않으며, 역사성이나 예술성, 유일성 등의 가치 이외에 해당 지역을 구성하는 문화유산-사람-지역 간의 관계성 속에서 문화유산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중점을 둠.

■ 일본유산 사업에서 최근 더욱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관계 기관 간의 연계로, 관련 정부 부처, 민-관, 선정 지역 지자체 관련 부서, 기업 등의 협력과 자유로운 정보 교환 중시.

③ 혜택

■ 일본유산 지정 후 3년간 인재육성, 보급개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선정된 지역들은 일본유산 로고마크를 지역의 관광팜플렛, 문화유산 안내판 등 관광자원에 활용 가능.

■ 지정된 지역들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일본유산 어드바이저 파견사업: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들이 겪는 난관에 조언할 전문가를 파견해 실무 지원.
- 일본유산 팔로업(Follow-up)위원회 : 지정 지역이 참고할 수 있는 3년간의 대응 모델과 개선사항 등을 전달하여 사업의 실효성 강화.

④ 성과 및 기대효과

■ 2016년부터 2022년 현재, 일본유산은 전체 104개가 지정되어 당초 100개 지정 목표를 초과 달성(역사·문화, 자연, 종교, 문화적 경험의 4개 카테고리, 일본 전역 46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1건 이상의 지정 성과 냈음).

- (사례1) 군마현 「부인천하-군마 실크이야기(かかあ天下-ぐんまの絹物語)」. 지역자원인 누에와, 에도시대부터 양잠업 기술로 누에를 기르고 명주실을 짜서 가정을 지탱해온 죠슈지역(현재 군마현) 여성들의 활약 및 이러한 활동을 입증하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으로 구현.
- (사례2)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토 섬유 회사는 일본 최고의 기모노 띠 제조업체. 설립자 고토 사다키치(Goto Sadakichi)는 메이지 초기에 서양의 염색 기술을 일본에 소개하여 직물을 크게 개선시킴.

■ '일본유산' 사업은 문화유산과 지역을 연계하는 인증사업으로, 지역 관광사업인 동시에 브랜드사업을 지향, 지역이 문화재를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진흥·관광진흥·인재육성·환경정비 등 종합적인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를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함.

■ '일본 유산'으로 인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관련 문화유산에 대한 인지도 향상, 주민의 정체성 재확인, 지역의 브랜드화, 지방경제 활성화, 학교 교육과 생애교육을 통한 향토애 육성 등의 효과는 물론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지역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

[그림 5-6] 군마현 실크이야기

[그림 5-7] 고토 섬유 회사

사진 출처: 일본유산사업(Japan Heritage) 홈페이지(www.japan.travel/japan-heritage)

### (2) 영국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 Midlands Engine Strategy 사례

■ 영국의 '레벨링업' 정책은 지역상향평준화 정책으로서, 생산성 최하위 지역을 끌어올려 균형을 맞추는 정책[47].

- 영국은 지역격차로 인한 사회 분열·갈등의 심각성을 인지, 생산성 최하위지역 25%를 국가 평균만큼만 끌어올려도 지역격차 완화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쓰지 않고도 국가경제 전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음.

- 각 요소별 가장 낙후한 지역을 선정한 후 목표를 설정해 집중적으로 지원.
- 민간부문 육성 통한 생산성 제고, 교육·교통·의료 등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 리더십 향상을 통한 지역 공동체 권한 강화 등.

■ '영국 레벨업, 주택 및 공동체부(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는 인적 자본, 금융자본, 사회적 자본, 물리적 자본, 무형자본, 제도적 자본의 6개 자본 측면이 부족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분석[48].

- 낙후지역 노동자의 생산성 및 삶의 질 저하, 지역 고유의 문화와 공동체의식 및 애착심 상실,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 부족으로 인한 리더십 부족 등.

■ 미들랜즈 엔진전략(Midlands Engine Strategy, 2017.03.)[49]

- (지리적 위치) 미들랜즈(Midlands)는 잉글랜드 중부의 지역으로, 동부 미들랜즈와 서부 미들랜즈로 구분됨. 특히 웨스트미들랜즈는 버밍엄, 코번트리, 울버햄튼 등 영국의 전통적인 공업도시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기계공업 등 중공업이 발달한 지역[50].
- (경제상황) 최근 미들랜즈 경제는 더욱 악화되어, 1997년에 미들랜즈와 영국 평균 간의 생산성 격차는 약 10%였던 반면, 2015년에는 약 15%로 증가하였음.
- (경제상황 악화의 원인) 이는 숙련된 인력 부족(숙련자 비율은 영국 평균보다 약 15% 낮음), 교통문제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지역들, 기업가 정신과 경제활력 부족(2015년 런던에서 인구 10만 명 당 창업기업의 수는 미들랜즈의 두 배 이상) 등의 문제에 기인함.
- (투자계획) 이에 2017년, 영국 정부는 지역성장기금을 통해 미들랜드 전역에 3억 9,200만 파운드 투자 계획 발표.
- (목표) 지역 전체 교통 개선에 투자하여 연결성 개선 및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 직업훈련 강화,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 지원 및 혁신, 무역과 투자증진 위한 미들랜즈 대내외 홍보, 숙련노동자 유치 및 지역관광경제 육성을 위한 삶의 질 개선 등.
- (프로그램) Midlands Skills Challenge로 미들랜즈 지역과 영국의 나머지 지역 간의 기술격차 완화, Midlands 엔진투자기금 출범으로 미들랜즈 지역의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Midlands 무역 및 투자 프로그램으로 기업 지원.
- (주의) 미들랜즈 엔진 전략을 뒷받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지자체 통합당국(Combined authorities)[51], 대학, 기업 및 지역 기업 파트너십과 같은 지역 파트너와의 긴밀한 참여가 중요.

47) 전봉경(2022). 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제64호

48) 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2022.02). 「Levelling Up the United Kingdom」

49) HM Government(2017). 「Midlands Engine Strategy」.

50) 브리태니커 백과사전(www.britannica.com/place/Midlands), 나무위키 (namu.wiki/w/%EC%9B%A8%EC%8A%A4%ED%8A%B8%20%EB%AF%B8%EB%93%A4%EB%9E%9C%EC%A6%88) 참고

■ 웨스트미들랜즈의 코번트리 지역은 '2021 영국 문화도시(City of Culture 2021)'로 선정됨[52].

- 코번트리는 18~19세기 영국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 중심지였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집중폭격으로 폐허가 됐었음.
- 2021년 영국 문화도시로 선정되며 문화 부흥을 꾀하고 있음.



51) 통합당국(Combined authorities): 영국의 행정구역 단위이자 지방정부 주체. 광역런던을 제외한 지역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2009년 지역민주주의 경제개발건설법(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e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제정으로 출범. 통합당국은 각 지역정부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구성하며, 중앙 정부로부터 특정 권한을 위임받아, 교통과 경제 정책을 더 넓은 지역에 걸쳐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함. 통합당국은 교통 개선, 경제개발, 지역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됨. 2011년 4월 1일 그레이터맨체스터 통합당국 출범을 시작으로, 2014년 4개, 2016년 2개, 2017년 1개, 2018년 1개, 현재 총 10개가 설치되어 있음(위키백과 ko.wikipedia.org/wiki/%EC%98%81%EA%B5%AD%EC%9D%98_%ED%86%B5%ED%95%A9_%EB%8B%B9%EA%B5%AD)

52) 2021.10.08. 뉴스코리아, "주영한국문화원, 2021년 영국 문화도시 코번트리에서 한국문화 첫 선, 전석매진 기록" (www.newskorea.ne.kr/news/articleView.html?idxno=3325)

# 제3절
# 행정조직 관련 법령 검토

## 3.1. 행정기관 설치 관련 법적 근거

### (1) 정부조직법 검토

■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직무범위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제3조) 및 부속기관(제4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며, 이는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침.
-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이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 관할 구역 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함.
- 부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자원하는 행정기관임.

**※ 행정기관의 유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1. 중앙행정기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 단,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
2. 특별지방행정기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3. 부속기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4. 자문기관: 부속기관 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 · 조정 · 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
5.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6. 보조기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7. 보좌기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8.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하여[53]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설치가 가능하며, 업무 관련성이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 가능함(제3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둘 수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지역적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야 함(제2항).
- 즉,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 업무 중 지역적 업무를 당해 관할구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관이며, 국가사무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됨[54].
- (예)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청, 지방교정청과 교도소(소년원 포함), 고등 및 지방검찰청, 지방우정청과 우체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 지방통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해양수산청, 검역소, 지방병무청, 지방환경청, 지방조달청, 지방국세청, 지역세관, 지방노동청 등이 해당됨[55].

② 부속기관 설치

■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 교육훈련기관 · 문화기관 · 의료기관 ·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 설치 가능함(제4조)[56].
- 시험연구기관 : 국립보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 교육훈련기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 문화기관 :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악원 등
- 의료기관 : 경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등
- 제조기관 : 과거 철도청 산하 공장 등(현재 해당기관 없음)
- 자문기관 : (자문·심의)위원회, 심의회 등[57]

■ (부속기관의 분원 등 지방조직 설치)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분원이나 지방조직 설치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로 규정함.
- (예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2,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설치"
- (예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 "지방박물관 설치", 제61조의2 "지방국악원 설치"

53)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 '분장'의 개념임. 예를 들어, 국토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등 각 기관 직제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항공청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둔다(제2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제2조 제1항)", "관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소속하에 세관을 둔다(제2조 제2항)" 등과 같이 규정

54) 정부조직관리시스템(www.org.go.kr/intrcn/orgnzt/viewSystm.do)

55) 하혜영(202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현황과 개선과제. NARS 이슈와 논점 제1792호. p.1

56) 부속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관장사무에 대한 '지원' 개념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 · 국립국악고등학교 · 국립국악중학교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 국립전통예술중학교 ·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국어원 · 국립중앙도서관 · 해외문화홍보원 · 국립국악원 · 국립민속박물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57) 이상 사례는 정부조직관리시스템(www.org.go.kr/intrcn/orgnzt/viewSystm.do) 참고

### (2) 지방자치법 검토

①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 설치

■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자치단체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는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지방자치법」 제13조)**

지자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함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현행 대통령령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등) ① 시 · 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 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이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산시의 경우 부산광역시소방학교, 소방서,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상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설치하고 있음.

② 사업소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사업소 설치 가능함(「지방자치법」 제127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소 설치 가능.
-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설치해야 함.

## 3.2.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 관련 법적 근거

### (1) 정부조직법 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정부조직법」제6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일부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혹은 위임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 가능(제1항 단서조항).
- 보조기관은 위임받은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함(제2항).
-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가능함(제3항).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행정위임위탁규정 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위임위탁규정)」제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장은 허가 · 인가 ·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행정권한)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장, 다른 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및 위탁함.

■ 사무의 위탁은 행정기관 간 위탁과 민간위탁이 있는데,「행정위임위탁규정」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소관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3.3. 법 검토 종합 및 '지역 언어문화' 전담 조직 기본 방향

### (1) 전담 행정조직 유형: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검토

■ 지역 언어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능과 업무를 설정하고, 추진과정과 내용의 전문성, 체계성,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설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
- 전담기관은 전국적·거시적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역어를 전반적으로 조사·연구, 보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어까지 고르게 관리하고 진흥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어가 가진 언어로서의 가치와 지역문화의 매개체로서 가진 가치까지도 진흥 활동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함.
- 지역 언어문화 발전은 조사와 연구를 넘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까지도 기획·진행할 수 있는 집행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지역어 진흥을 위해 조사·연구, 보전, 활용 기능을 수행하는 접근 방식에 따라 중앙집권화, 분권화, 또는 민관협력의 다른 방향성을 띨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괄조직 역시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음.
- 중앙정부가 총괄조직 역할을 수행한다면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의 형태를 가질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분권화된 다수의 컨트롤타워를 갖는다면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소 또는 출연출자기관의 형태를 가질 수 있음.

■ 중앙집권적 방식은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또는 부속기관의 형태를 띨 수 있으며, 지역어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연구, 보전, 활용·진흥의 기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수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전국적인 통일성 혹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하므로 지역마다 독특한 언어문화 보존과 발전에 관한 업무와는 성격이 다름.

- 부속기관은 부처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국어 및 지역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부속기관을 신설하거나, 유관 기관인 국립국어원과 지역문화원 등에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분권화된 체제 속에서 조사·연구, 보전, 활용·진흥의 기능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거나,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신설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32656호) 제6조의 행정기관 설치 요건(①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을 것, ③업무의 성질과 양)을 충족시켜야 함.
- 지방자치단체 사업소를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유형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하거나,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어에 대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역어 소멸로 이어질 수 있음.

■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조사·연구, 보전, 활용·진흥의 기능을 민간에 위탁해 수행하는 방식도 존재함.
- 조사·연구, 보전, 활용·진흥 역할을 지역 국어문화원 등 민간단체에 보조금 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 그 외에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의 중앙과 지방,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며 지역 언어문화 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가능함.
- 협업체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사·연구, 보전, 활용·진흥 역할을 중앙과 지방이 명확히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역언어를 통해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지역 언어문화 진흥을 위한 조직 적합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표 5-7〉 지역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조직의 목적 적합성 비교

| 구분 | 조직 형태 | 조직 성격 | 지역 언어문화 진흥 목적 적합성 | 사례 |
|---|---|---|---|---|
| 중앙정부 | 특별지방행정기관 | 전체 통일성, 전문성 | 부적합 |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통계청 등 |
| | 부속기관 | 분야별 특성화, 전문성 | 적합 | 지방국악원, 지방박물관, 유역환경청 등 |
| 지자체 | 직속기관 | 지역 정체성, 공공성 | 적합 |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도립대학교 등 |
| | 사업소 | 효율성, 책임성 | 부적합 | 도로관리사업소, 동물위생시험소 등 |
| 민간위탁 | | 능률성 | 부적합 |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

### (2) 전담 조직 신설 요건 검토

■ 중앙정부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32656호) 제6조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을 것, ③ 업무의 성질과 양으로 보아 기존행정기관의 기구개편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행정기관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하려는 기관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 기존 행정기관 업무와의 차별성 및 대체 불가성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지역 언어문화 발전’과 ‘지역 언어문화 소멸 방지’라는 영속적 목표를 고려할 때 지역의 독특한 언어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전국의 지역어를 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확보됨.

- 지역어와 지역문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관심의 차이 등 지역적 불균형을 반영한다면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고, 국내는 물론 북한 지역어까지 포함할 수 있는 조직 업무의 독자성도 확보됨.

■ 지역어와 지역문화 관련 업무는 중앙정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58], 지역문화원[59]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기관과 출연연구원 등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행정기관 업무와의 차별성 및 대체 불가성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함.

- 국립국어원은 표준어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한국어 다양성 증진을 지향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의 지역어 조사 및 지역 언어문화 아카이브 구축 사업 추진 등 지역어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과 등 행정부서가 민간 위탁을 통해 지역어 관련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소를 통해서 지역문화 및 지역어 관련 연구와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어 관련 업무의 성격과 양이 상당하여 행정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건에 대해서는 업무의 범위와 정책적 강조에 따라 업무의 양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업무의 양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어 정책 범위, 국가적-지역적 관심,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해야 함.



58) 국어기본법(제24조)에 따르면 국어문화원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 · 단체 또는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말함. 이를 근거로 국어문화원은 공공언어개선, 지역 주민 국어능력향상, 지역어 조사 연구 및 지역어 진흥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함.

59)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 ①지역문화의 계발 · 보존 및 활용, 발굴 · 수집 · 조사 · 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등 추진

〈표 5-8〉 지역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조직 신설의 요건 검토

| 신설 요건 | 요건 충족 여부 |
|---|---|
|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 | 충족 |
| 기존 행정기관과 업무 차별성 및 대체 불가성 | 미충족 |
| 업무 성격과 업무량 | 정책 수요, 예산 등 고려 필요 |

### (3) 지역어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설정

■ 지역 언어문화 진흥 기능이 중앙정부는 국립국어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 문화예술과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6조의 요건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함

■ 이에 지역 언어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조직 확대·개편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기존 지역어 관련 업무 수행 기관을 중심으로 필요 기능을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이후 지역 언어문화 전담조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 중심의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분권화된 추진체계,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민간 주도 공공지원 추진체계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정리하면, 지역 언어문화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는 크게 중앙정부 중심, 지방정부 중심, 민간 중심의 3개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음.
- 중앙정부 중심 추진체계: 국립국어원 조직 강화 및 지역 분소 설립
- 지자체 중심 추진체계: 지자체 관련 조직 강화 및 직속기관 설립
- 민관 협력 중심 추진체계 : 국어문화원, 대학 등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협력 체계 구축(민간 주도 공공 지원)

〈표 5-9〉 지역 언어문화 진흥을 위한 조직 구성(안) 도출

| 구분 | 조직 형태 | | 조직 형태 | 관련 법령 |
|---|---|---|---|---|
| 중앙정부 | 부속기관 | → ① | 국립국어원 분원 | 국어기본법,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법 등 |
| 지방자치단체 | 직속기관 | → ② | 광역 지자체 직속기관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
| 민관 협력 | | → ③ | 민·관 협력체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3.4. 지역어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조직 설치 방안

### (1) 중앙정부 중심 추진체계(국립국어원 조직 강화 및 지역 분소 설립)

■ 이 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추진체계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어 조사·연구, 보전, 확산 및 활용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조직을 확대하거나 신규 조직의 설치를 포함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현재 지역어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국어원에 '지역어 정책 전담부서'와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별로 적합한 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방향 검토.
- 지역어 정책 전담부서는 기존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담당 업무를 확대하여 (가칭) 지역어진흥과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60]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 지역어 정책 전담부서는 조사·연구, 보전, 확산 및 활용 확대 활동을 전국적 차원에서 기획하고, 지역사무소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민간단체와의 협력하며 지역 언어문화 진흥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및 관련 부서(지역문화정책과 등)가 "지역어와 지역문화" 관련 계획수립, 정책 및 사업 개발 등 사무 발굴 및 추가.
- 국립국어원: 지역어 정책 전담부서와  지역사무소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관들과 협력하여 전국 지역어 조사·연구, 보전, 확산을 위한 사업과 업무를 주도함. 지역 사무소는 대방언권별 지역 거점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시급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제주어 담당 기관의 우선 설치 추진함.
- 국립국어원 지역사무소: 대방언권별 지역어와 언어문화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역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하지만, 확산과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언어문화 수요를 이해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 및 사업을 개발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자율적 노력을 수행함.



60) 중앙정부 중심 추진체계를 적용할 경우,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특수언어진흥과 신설(2016년, 한국수화어법)과 같이 지역어진흥과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조직적 적실성이 크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추진체계를 적용할 경우 어문연구과의 담당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전략적이라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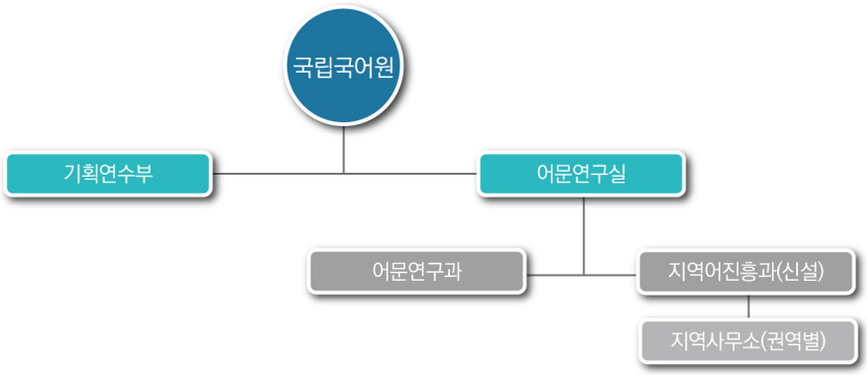


[그림 5-8] 중앙정부 중심 추진체계

■ 지역어 진흥 및 보전을 위한 중앙정부 중심 추진체계의 경우 지역어진흥과(신설)를 중심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함

- 이 안의 장점은 전국 지역어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사업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언어문화 측면에서의 균등 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격차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음.
-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어와 지역문화 권역을 파악하여, 언어적·문화적으로 적실성 있는 권역을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국립국어원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지역 언어문화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음.
- 단점으로는 지역사무소 관할 지역과 행정구역(지방자치단체)의 불일치로 인해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분권의 국가적 정책기조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역어 연구가 활성화된 지방(제주)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으로 지역사무소 설치에 따른 정원과 행·재정적 자원 확보의 부담이 발생함.

### (2) 지방자치단체 중심 추진체계(지자체 관련 조직 강화 및 기관 설립 등)

■ 이 안은 지방정부 중심의 추진체계로서 지역어 조사·연구·확산 및 활용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다수의 전담기관을 두는 모형임.

- 지역 언어문화 정책수립과 집행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법이 정한 역할 및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만을 제공하는 비교적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언어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 보전. 확산 및 활용을 추진할 수 있는 직

제를 마련하고 지역어 관련 사무 발굴과 확대, 중앙정부와의 관계 정립, 지방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지역문화예술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지역 언어와 언어문화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언어 조사·연구, 보전. 확산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적극적 조사·연구,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활용한 자료관 설치 및 관리, 지방교육청 포함 공공 및 민간기관과 협력을 통해 활용 및 확산 활동을 주도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등 중앙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언어문화를 진흥하고 지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자산으로 발전시켜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방-민간-중앙의 지역 언어 및 언어문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전반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언어문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조사·연구, 보전. 확산 및 활용을 주도할 수 있는 직제 개편 및 기구 신설 등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교육청, 지방문화원,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주도하여, 최종적으로는 지역문화, 경제,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수행함.
- 문화체육관광부: 현재 직제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시각과 노력을 통합하고, 지역 언어와 언어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국가적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기반을 조성함.
- 국립국어원: 현재 역할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여러 이유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 언어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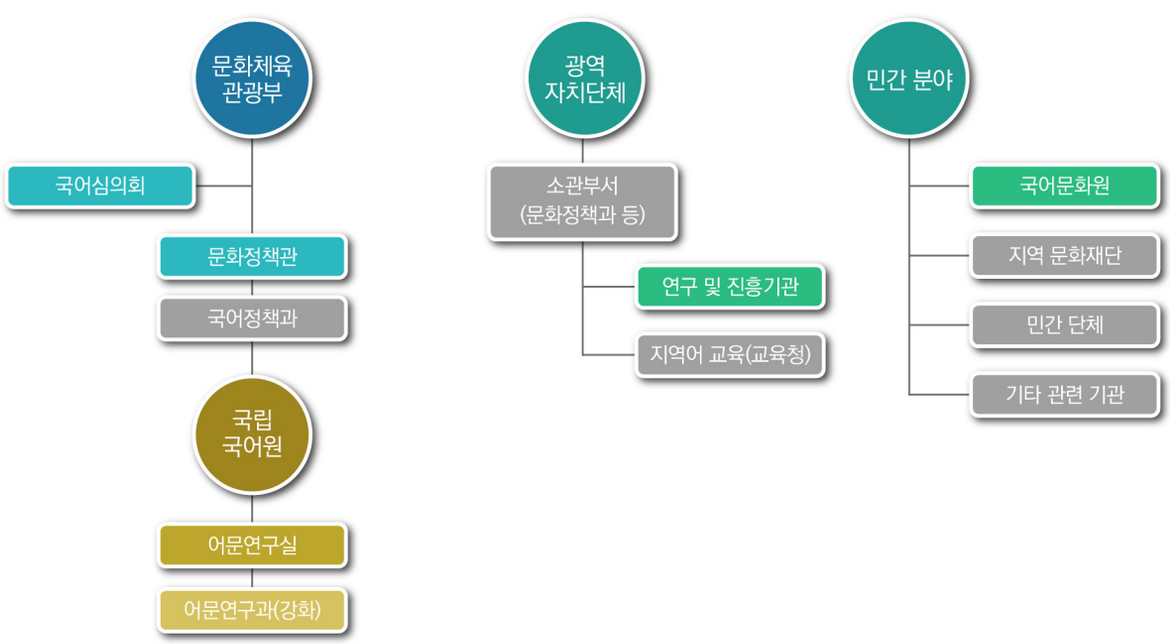


[그림 5-9] 지방자치단체 중심 추진체계

■ 지역어 진흥 및 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중심 추진체계의 경우 어문연구과(강화) 및 지방행정체계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함

- 이 안의 장점은 지방 중심의 지역에 맞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어 진흥 활동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관심 있는 민간 기관 등 지역자산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정책 기조에 부합하며, 지방교육청, 부속기관 및 지역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지역 언어문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지역 전담기관 간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지역 언어문화 진흥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지역 언어문화 생태계의 점진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음.
- 지역어를 통해 지역 문화, 산업과 경제,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하여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적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단점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지역 언어 보전에 대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중앙과 지방의 갈등처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효율성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유형(광역과 기초), 규모(인구 50만) 등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부속기관의 설치에 제한이 있고, 조사·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설치에도 제한이 있어 충분한 기반을 갖추는데 제한적 요소가 있음.
- 고령화 또는 낙후된 지역에서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역어 및 지역문화 진흥에 대한 관심이 후순위가 될 수 있음.

### (3) 민관협력 추진체계(국어문화원, 대학 등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이 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연구, 보전, 확산 및 활용 등 지역어 관련 기능을 분담하고, 중앙과 지방이 전문성과 현지성을 가진 지역 민간자산을 활용하는 모형임.

-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조사·연구와 보전(아카이빙) 기능, 지방정부는 활용 및 확산 기능의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기능 집행은 중앙과 지방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안임.

■ 지역어와 지역문화가 가진 현지성을 고려하여 지역 소재 민간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는 지역어 조사·연구와 보전(아카이빙)의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활용 및 확산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조사·연구와 보전(아카이빙) 기능은 중앙정부 부속기관이 전국의 지역어를 총괄하며 소멸 위험도, 지역적 중요성과 관심도, 활용성 등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현장조사 등의 직접적인 집행은 보조금 사업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역 소재 국어문화원 또는 지역 문화재단 등을 통해 집행함.
- 활용과 확산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속기관은 지역어를 확산하기 위한 경진대회 등 행사, 문화강좌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의 민간기관

들을 활용해 수행함.

■ 민간 중심의 추진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기능 및 역할 배분과 함께 지역 내 지역어와 지역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민간자산의 규모와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추진체계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정책과를 통해 현재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어 및 지역어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를 관리하고 운영함.
- 국립국어원은 현재 지역어 조사와 지역어 아카이브(보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의 민간기관과 협력하며 조사·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전담하는 직제를 신설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어 활용 및 확산 사업을 기획·관리·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상황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직제 또는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 민간기관들은 지역 내 국어문화원, 문화재단, 연구소, 지역어 및 지역문화 관련 협·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로 구성되며, 지역 내 조사·연구, 보전, 확산 및 활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직접 수행함. 현실적으로 국어문화원의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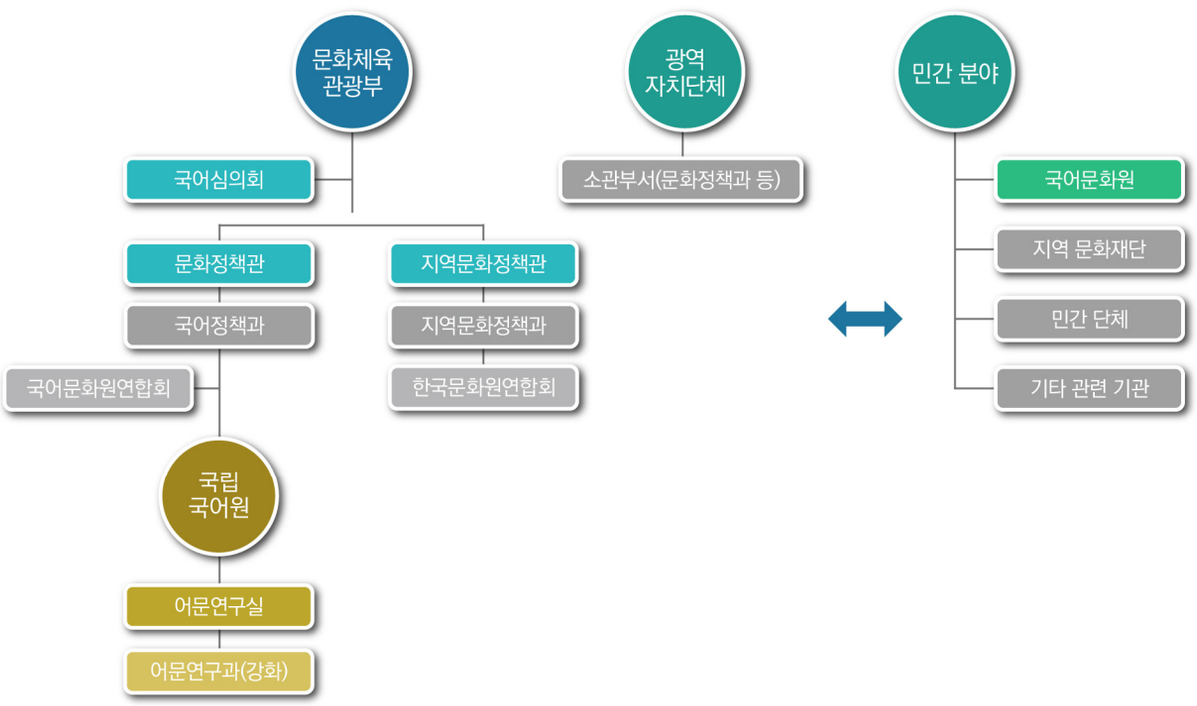


[그림 5-10] 민관협력 중심 추진체계

■ 지역어 진흥 및 보전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함

- 이 안의 장점은 민간 부분이 가진 유연성을 바탕으로 필요 기능의 수행과정에서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지역 내 자산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지역어와 지역문화 진흥 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 현 정권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조직 신설이나 확대,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적음.
- 단점으로 지역적 특색, 규모와 역사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민간기관의 역량과 관심의 차이가 존재하여, 지역언어문화 균형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관리, 지역 내 민간기관 갈등, 지역정치 개입, 지역 간 역학 관계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특히 중앙의 관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제4절
# 요약 및 종합 분석

## 4.1 요약

### (1) 지역 언어문화 추진체계 현황

■ 지역 언어문화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와 산하기관인 국립국어원,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부서(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과 등)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등에서 수행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지역어를 지역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지역어 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의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담조직 지정이 필요한 실정.

- 전담조직이 효과적으로 지역어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어문화 정책은 문화다양성, 지역문화 발전 및 산업화 등 명확한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조사와 연구, 지역어 보전, 지역어 활용과 지역 언어문화 진흥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2) 행정조직에 관한 법 검토

■ 정부조직법 검토

-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설치가 가능하며, 업무 관련성이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 가능함(동법 제3조).
-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 교육훈련기관 · 문화기관 · 의료기관 ·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 설치 가능함(동법 제4조)

■ 지방자치법 검토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자치단체 조례로 직속기관으로 설치 가능(동법 126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중,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이 있음(동법 13조 5항)
-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사업소 설치가 가능하지만, 별도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에 한정함(동법 제127조).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 관련 법적 근거

-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일부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혹은 위임 가능(정부조직법 6조).
- 위임 및 위탁의 경우 일상적으로 반복되면서 해당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권한을 그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민간위탁의 경우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해야 함.

## 4.2 종합분석

### (1) 지역 언어문화 진흥을 위한 제언

■ 지역 언어문화 발전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전국적으로 산재한 지역어의 조사·연구, 보전·활용 기능을 수행할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 합의는 충분한 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전담조직을 신설할 지 관련 공공기관에 기능과 업무를 배분하는 조직과 추진체계를 마련할 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성, 지역어와 지역문화에 대한 지역의 관심 및 몰입도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지역어 정책의 경우 국어정책 및 표준어 정책과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고유성, 특수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하므로, 정책의 일관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속기관)의 지역 분원 필요성도 인정됨.

### (2) 법 검토 종합 및 지역어 정책 전담조직 기본 방향

■ 전담 행정조직 형태: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검토

- 정부조직법 검토 결과 지역어 진흥을 위한 조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부속기관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지방자치법 검토 결과 지역어 진흥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직속기관의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함.
- 다만, 권역별 설치를 위해서는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제13조) 지방자

치단체 사무 범위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3조) 내용에 지역어 진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표 5-10〉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검토를 통한 지역어 진흥 조직 형태

| 법률 | 구분 | 조직 형태 | 조직 성격 | 사례 |
|---|---|---|---|---|
| 정부조직법 | 중앙정부 | 부속기관 | 분야별 특성화, 전문성 | 지방국악원, 지방박물관, 유역환경청 등 |
| 지방자치법 | 지자체 | 직속기관 | 지역 정체성, 공공성 |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도립대학교 등 |

■ 지역어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설정

- 지역어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는 국립, 공립, 민관협력체계로 구성할 수 있음
- 국립국어원 내 직제를 우선 확대하고, 추후 분원 설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의 형태도 가능함
- 민관협력체계를 통해서도 추진 가능함

〈표 5-11〉 지역 언어문화 진흥을 위한 조직 구성(안) 도출

| 구분 | 조직 형태 | | 조직 형태 | 관련 법령 |
|---|---|---|---|---|
| 중앙정부 | 부속기관 | → ① | 국립국어원 분원 | 국어기본법,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법 등 |
| 지방자치단체 | 직속기관 | → ② | 광역 지자체 직속기관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
| 민관 협력 | | → ③ | 민·관 협력체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3) 지역어 진흥을 위한 조직별 장단점 비교

■ 중앙정부 중심, 지방자치단체 중심,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장단점을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5-12〉 지역어 진흥을 위한 조직별 장단점 비교

| 구분 | 담당 부서 | 주요협력기관 | 장점 | 단점 |
|---|---|---|---|---|
| 중앙정부 중심 | 국립국어원<br>지역어진흥과(신설) | 국립국어원<br>지역사무소(신설) | -국립국어원의 전문성 활용<br>-표준어 정책과 지역어 정책의 균등 발전<br>-행정권과 언어권 조정이 원활 | -예산 및 직제 확보 어려움<br>-지자체와의 갈등 가능성 |
| 지방자치단체 중심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br>또는<br>지역어진흥과(신설) | 지자체 소관부서 | -지방분권에 부합<br>-지역 행정청, 교육청, 지역학 연구소 등의 생태계 발전 모색<br>-지역어 보전 및 활용의 인센티브로 작용 | -지자체 역량(예산, 조직 등)에 따른 지역어 정책 역량 차이 발생 우려<br>-중앙부처와의 갈등 가능성 |
| 민간협력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br>또는<br>지역어진흥과(신설) | 국립국어원, 지자체,<br>국어문화원 | -민간의 자율성 존중 및 활용<br>-지역 자원 활용 및 지역 발전 기반 제공<br>-예산 및 조직 확보 상대적 용이 | -개인 및 조직 역량에 크게 좌우<br>-성과관리, 역량관리의 어려움 |

# 참고문헌

# 참고문헌


강송희·송지성(2015), 사투리를 활용한 소주 라벨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3), 21-33.

강정희(2010), 지역어 자원의 문화 콘텐츠화를 위한 방안, 어문론총, 53, 3-18.

강준영(2010), '중국통합'에 흔들리는 광둥어, 한겨레21,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27869.html

강휘원(2016), 중국 소수언어정책: 정책의도와 현실의 괴리, 국가정책연구, 30 (4), 387-411.

경향신문(2020.10.08.), 맛깔난 사투리~지자체 브랜드로 뜬당께

고용정보원(2002), 지방소멸위험지수 요약자료, 지역산업과 고용 2002년 봄호.

김덕호(2013), 방언의 문화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연구 방법론 제언, 방언학, 18, 31-61.

김만수(2013), 방언 콘텐츠의 의미와 활용 가능성, 방언학, 18, 7-30.

김영구(2015), 중국 소수민족 언어의 위상 하락과 주변화의 추이: 법제적 분석을 통해 본 시진핑 시기의 억압적 소수 민족 언어정책의 주요 이슈」, 현대중국연구, 16 (2), 2-41.

김정우(2011), 지역어와 콘텐츠, 우리어문연구, 41, 7-34.

김주아(2022), 중국의 언어통합, 언어 다양성 존중하고 있는가?, 교수신문,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7924

김진수(2007),「프랑스의 언어정책」, 부산: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김진수(2007), 프랑스 언어정책의 특징과 한계, 불어문화권연구, 17, 231-258.

문시연·홍태숙(2017),「프랑스어권 지역의 이해」, 서울:신아사.

민경만·김주아(2022), 신중국의 언어정책에 대한 고찰, 중국학연구, 100, 59-101.

박성호(2022),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방언콘텐츠 계발 방안, 국어문학, 80(), 265-287.

서울특별시(2022.01.17.), '서울시민 공유활동 활발 … 만족도는 `따릉이`가 가장 높아'

송기형(2010), 지역어 조사·보존의 외국 사례 -프랑스의 경우-, 새국어생활, 20(3), 43-56.

송기형(2013), 프랑스어의 지역어 정책 고찰, 한국프랑스학논집, 81, 111-138.

안병삼(2022), 중국 동북3성 조선족학교 언어교육 현황, 중국학, 80, 353-373.

안영은(2012), 중국의 언어문자정책의 두 가지 중요 논제, 중국학논총, 36, 287-308.

양민호(2017), 일본의 방언 연구 동향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방언학, 26, 5-23.

양민호(2017), 일본 방언사전의 경위와 의의, 새국어생활, 27, 137-150.

우무상(2003), 프랑스의 지방문화 정책 - 지방문화 촉진을 위한 중앙 정부의 지방분산 및 지방분권 정책, 한국프랑스학논집, 43, 349-376.

이노우에 후미오 저, 김덕호 외(2015),『경제언어학 언어, 방언, 경어』, 역락.

이노우에 후미오 and 양민호(2017), 말의 사회적 전파와 방언 구획 형성, 방언학, 25, 247-291.

이상규(2011), 일본의 방언 연구 동향과 전망, 방언학, 13, 85-120.

이형석(2018), 프랑스 헌법상 공용어주의와 지역어 보장에 관한 연구 -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8, 263-289.

전인영(1994),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분석-어문·풍습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3(4), 73-98.

정보람(2020), 지역문화재정 실태와 문화분권 및 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25(3), 63-89

정승철 외 (2014),『방언의 조사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정준호(2020), 중국 통용언어문자정책 변천과정의 특징에 관한 연구, 현대중국연구, 220(3), 265-299.

정희경(2000), 프랑스의 지방어(langues régionales) 육성 정책, 원윤수 (편),「진정한 세계화의 모색. 불어권의 경우」(pp.67-196).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조선일보(2022.01.27.), 함 이기보까, 대전이쥬, 타랑께...지자체 슬로건에 사투리
최경봉·태평무(2011), 중국의 소수민족어정책과 소수민족어의 현황 연구, 중국학논총, 32, 75-113.
최은순(2003), 프랑스의 이언어사용 상황과 지역언어 정책에 관한 고찰, 프랑스학연구, 25, 533-582.
KBS NEWS(2020), 中, 소수민족 언어교육 탄압…조선족 한글 교육 어쩌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08393
NewDaily(2020), "이달부터 조선족 국어는 중국어"… 中 공산당, 장갑차 동원해 민족말살정책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10/2020091000097.html
WANGFEI(2020), 한국과 중국의 지역 방언 정책 및 방언의식에 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百度百科, 多彩中國話,
https://baike.baidu.com/item/%E5%A4%9A%E5%BD%A9%E4%B8%AD%E5%9B%BD%E8%AF%9D?fromModule=lemma_search-box
百度百科, 十三億分貝,
https://baike.baidu.com/item/%E5%8D%81%E4%B8%89%E4%BA%BF%E5%88%86%E8%B4%9D/18757230?fr=aladdin
草根大學生活網(2021), 全世界有多少孔子學院,
https://nitnews.nyist.net/1/202110/100336475.html
打字小能手(2022), 方言类综艺节目的生存优势, https://www.sbvv.cn/chachong/42331.html
國家民族事務委員會, https://www.neac.gov.cn/
國家民委中國民族語言文字應用研究院, https://mzy.muc.edu.cn/index.htm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http://www.moe.gov.cn/jyb_sy/China_Language/
中國教育報(2022), 全国普通话普及率达80.72%丨教育这十年.
https://baijiahao.baidu.com/s?id=1736862130563740659&wfr=spider&for=pc
南通方言網, 中國的方言保護政策和具體舉措, https://nantonghua.net/archives/8603
蘇金智(2018), 從語言立法宗旨和功能看中國語言立法, 語言文字應用, 3, 31-40.
延邊朝鮮族自治州人民政府,
http://zfxxgk.yanbian.gov.cn/cyqzf/xxgkml/202207/t20220725_386239.html
周庆生.（2021）. 中国语言政策研究七十年. 新疆师大学报(哲社版).汉办智库网.
http://www.jsthinktank.com/peiyuzhiku/yynlgdyjy/yynlgdyjyyjdt/202107/t20210708_7150833.shtml
中文明网. http://www.wenming.cn/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20). 中華人民共和國國家通用語言文字法.
http://www.moe.gov.cn/jyb_sjzl/sjzl_zcfg/zcfg_jyfl/202204/t20220421_620290.html
井上史雄(2017), ことばの社会的伝播と方言区画形成, 방언학, 25, 201-245.
木部暢子(2015), 方言研究の過去 現在 未来, 日本方言研究会第100回研究発表会, 創立50周年記念企画 記念シンポジウム予稿集.
小林隆(2004), アクセサリーとしての現代方言, 社会言語科学, 7(1), 105-107.
佐藤 亮一 監修(2002), 小?館?典編集部 (編)『お?ことばを知る方言の地?帳』新版 , 小?館.
田中ゆかり(2011),『「方言コスプレ」の時代』, 岩波書店.
徳川 宗賢 編(1979),『日本の方言地図』中公新書 , 中央公論社.

Académie de Montpellier(연도미상), 몽펠리에 교육청: 지역어 시 쓰기 경연대회 관련 자료,
https://pedagogie.ac-montpellier.fr/
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2017), Rapport au parlement sur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2017).

https://www.culture.gouv.fr/Thematiques/Langue-francaise-et-langues-de-France/Nos-missions/Garantir-l-emploi-du-francais-dans-la-societe/Rapports-au-Parlement-sur-l-emploi-de-la-langue-francaise/Rapport-au-Parlement-sur-l-emploi-de-la-langue-francaise-2017
France télévision(연도미상), 프랑스 텔레비전: 지역어 방송 관련 자료, https://www.francetelevisions.fr/
La préfecture et les services de l'État en région Bretagne(연도미상), 브르타뉴 레지옹 내 도청:「브르타뉴 지역어들의 전승 및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증진에 대한 특별 협약 (2022-2027)」관련 자료.
https://www.prefectures-regions.gouv.fr/bretagne/
Légifrance(연도미상), 프랑스 법제처: 프랑스 법률 자료, https://www.legifrance.gouv.fr/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2013), Rapport du Comité consultatif pour la promotion des langues régionales et de la pluralité linguistique interne.
https://www.culture.gouv.fr/Thematiques/Langue-francaise-et-langues-de-France/Nos-missions/Promouvoir-les-langues-de-France/Langues-regionales/Rapport-du-Comite-consultatif-pour-la-promotion-des-langues-regionales-et-de-la-pluralite-linguistique-interne-2013
Ministère de la Culture(연도미상), 프랑스 문화부: 지역어, 언어의 디지털화에 대한 설명 자료,
https://www.culture.gouv.fr/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de la jeunesse(연도미상), 프랑스 교육부: 지역어 교육에 대한 설명 자료,
https://www.education.gouv.fr/
Office public de la langue basque(연도미상), 바스크어청: 바스크어 관련 활동 및 예산에 대한 설명 자료,
https://www.mintzaira.fr/
Office public de la langue bretonne(연도미상), 브르타뉴어청: 브르타뉴어 관련 활동 및 지원에 대한 설명 자료,
https://www.fr.brezhoneg.bzh/
Office public de la langue catalane(연도미상), 카탈로니아청: 카탈로니아어 관련 활동에 대한 설명 자,
https://oplcat.eu/
Office public de la langue occitane(연도미상), 오크어청: 오크어 관련 활동에 대한 설명 자료,
https://www.ofici-occitan.eu/fr/accueil/
Région Bretagne(연도미상), 브르타뉴 레지옹: 번역, 출판 지원 프로그램 관련 자료, https://www.bretagne.bzh/
Région Grand Est(연도미상), 그랑테스트 레지옹: 지역어 병기 표지판 설치 지원 관련 자료, https://www.grandest.fr/
Région Occitanie(연도미상), 옥시타니 레지옹: 지역어 사업 관련 자료, https://www.laregion.fr/
Vie publique(연도미상), 프랑스 법률 및 행정 정보국: 지역어 교육에 대한 수치, https://www.vie-publique.fr/

https://www.bunka.go.jp/seisaku/kokugo_nihongo/kokugo_shisaku/kikigengo/index.html
https://www.bunka.go.jp/pr/publish/bunkachou_geppou/2011_08/special/special_04.html
http://hougen-i.com/?action_user_news_view=true&news_id=14
https://netwadai.com/blog/post-12618
http://www.pref.kagoshima.jp/aq01/chiiki/oshima/kyoiku/oosimatikuhougennnohi.html
http://emosuzu.fc2web.com/
https://www2.sal.tohoku.ac.jp/hougen/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061013015195516
https://tanakayukari.jp/kisoen/tanaka_kisoen2_2020-hogen/chapter16.html

부록

# 설문지

# 지역 언어문화 행정 수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국립국어원의 의뢰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지역 언어문화 발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 언어문화에 대한 행정 현황 및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국어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보호되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 분석으로만 활용되고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행기관: ㈜엠브레인퍼블릭

| | | |
|---|---|---|
| 조사원 체크리스트 | 응답자 소속 | ① 광역자치단체 ② 기초자치단체 |
| | 지자체명 | |
| | 부서명 | (  )국 (  )과 |
| | 홈페이지 공개 업무 | |



## SQ. 기본정보

| | |
|---|---|
| 연령 |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이상 |
| 총 근속기간 중 현 부서 근속기간 | 총 _년 중 _년 혹은 _개월 |
| 직책 (직급) | _____(_____) |
| 지역어 업무 수행 경험 유무 | ① 있다 ② 없다 |
| 직제상 지역어 관련 업무분장 유무 | ① 있다 ② 없다 |
| 지역어 관련 업무 담당자 수 |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

| 지역어에 대한 설명 |
|---|
| **'지역어'**는 어떤 한 지역의 말로, 특정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서만 사용하는 음성, 음운, 문법, 어휘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유사어로 **'방언'**이나 **'사투리'**가 있습니다. |

## A. 지역 언어문화 사업 추진 현황

A1. 귀하께서 소속된 지자체는 **최근 5년간(2018년 이후)지역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추진한 적 있다 → A1-1로 이동　　② 추진한 적 없다→ A2로 이동

A1-1 귀 지자체에서 **최근 약 5년간(2018년 이후)추진했던 모든 지역어 관련 사업**을 기재해 주십시오.
(사업이 4개가 넘어간다면, 주요 사업 4개를 선정해서 기재해 주십시오 : 온라인 조사는 별도 양식)

| | 사업 1 | 사업2 |
|---|---|---|
| 사업명 | _____ | _____ |
| 사업연도<br>(복수응답가능) | ① 2022년 ② 2021년 ③ 2020년<br>④ 2019년 ⑤ 2018년 | ① 2022년 ② 2021년 ③ 2020년<br>④ 2019년 ⑤ 2018년 |
| 사업예산<br>(최근사업1개) | _____ 백만원 | _____ 백만원 |
| 재원 | ① 국비(국고보조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br>② 지방비(기초의 경우 광역지자체 보조금 포함)<br>③ 민간재원 (기업 투자, 민간 기부 등)<br>④ 기타 : _____ | ① 국비(국고보조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br>② 지방비(기초의 경우 광역지자체 보조금 포함)<br>③ 민간재원 (기업 투자, 민간 기부 등)<br>④ 기타 : _____ |
| 사업방식 | ① 중앙정부 주도 기획 사업<br>② 지자체 직접 추진 사업<br>③ 지역 공공기관(진흥원, 연구원 등) 위탁 추진<br>④ 민간(국어문화원, 대학, 학회 등) 위탁 추진<br>⑤ 기타 : _____ | ① 중앙정부 주도 기획 사업<br>② 지자체 직접 추진 사업<br>③ 지역 공공기관(진흥원, 연구원 등) 위탁 추진<br>④ 민간(국어문화원, 대학, 학회 등) 위탁 추진<br>⑤ 기타 : _____ |
| 지속여부 | ① 지속사업이다 ② 지속사업이 아니다 | ① 지속사업이다 ② 지속사업이 아니다 |
| 사업근거 | ① 국어기본법 ② 국어기본계획<br>③ 지자체 조례 ④ 지자체장 지시사항<br>⑤ 기타 : _____ | ① 국어기본법 ② 국어기본계획<br>③ 지자체 조례 ④ 지자체장 지시사항<br>⑤ 기타 : _____ |

| | 사업 3 | 사업4 |
|---|---|---|
| 사업명 | _____ | _____ |
| 사업연도<br>(복수응답가능) | ① 2022년 ② 2021년 ③ 2020년<br>④ 2019년 ⑤ 2018년 | ① 2022년 ② 2021년 ③ 2020년<br>④ 2019년 ⑤ 2018년 |
| 사업예산<br>(최근사업1개) | _____ 백만원 | _____ 백만원 |
| 재원 | ① 국비(국고보조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br>② 지방비(기초의 경우 광역지자체 보조금 포함)<br>③ 민간재원 (기업 투자, 민간 기부 등)<br>④ 기타 : _____ | ① 국비(국고보조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br>② 지방비(기초의 경우 광역지자체 보조금 포함)<br>③ 민간재원 (기업 투자, 민간 기부 등)<br>④ 기타 : _____ |
| 사업방식 | ① 중앙정부 주도 기획 사업<br>② 지자체 직접 추진 사업<br>③ 지역 공공기관(진흥원, 연구원 등) 위탁 추진<br>④ 민간(국어문화원, 대학, 학회 등) 위탁 추진<br>⑤ 기타 : _____ | ① 중앙정부 주도 기획 사업<br>② 지자체 직접 추진 사업<br>③ 지역 공공기관(진흥원, 연구원 등) 위탁 추진<br>④ 민간(국어문화원, 대학, 학회 등) 위탁 추진<br>⑤ 기타 : _____ |
| 지속여부 | ① 지속사업이다 ② 지속사업이 아니다 | ① 지속사업이다 ② 지속사업이 아니다 |
| 사업근거 | ① 국어기본법 ② 국어기본계획<br>③ 지자체 조례 ④ 지자체장 지시사항<br>⑤ 기타 : _____ | ① 국어기본법 ② 국어기본계획<br>③ 지자체 조례 ④ 지자체장 지시사항<br>⑤ 기타 : _____ |

A2 귀 지자체에는 **지역어 관련 진흥기관이나 조직**이 있습니까?

| 종류 | 존재유무 | | 활용도 | | | | | 전문성 | | | | |
|---|---|---|---|---|---|---|---|---|---|---|---|---|
| | 유 | 무 | 매우 낮다 | 낮다 | 보통 이다 | 높다 | 매우 높다 | 매우 낮다 | 낮다 | 보통 이다 | 높다 | 매우 높다 |
| 국어문화원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연구원, 진흥원 등 지역어 관련 공공기관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민간단체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기타( )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A3. 귀하께서 소속된 지자체는 **지역어 관련 조례 또는 규칙(국어 조례 제외)을 제정**하신 바 있습니까?

① 제정한 바 있다 → A3-1로 이동 ② 제정하지 않았다→ A3-2로 이동

A3-1. 귀 지자체의 **지역어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이 지역 언어문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적다 | 적다 | 보통이다 | 크다 | 매우 크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A3-2. 지역어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이 아직 없다면, **향후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필요 없다 | 필요 없다 | 보통이다 |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B. 지역어 정책 관련 의견

B1. 지역어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필요 없다 | 필요 없다 | 보통이다 | 필요하다 | 매우 필요하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B2. 지역어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래에 제시한 다양한 자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종류 | 중요성 | | | | | 시급성 | | | | |
|---|---|---|---|---|---|---|---|---|---|---|
| | 낮음 <----------> 높음 | | | | | 낮음 <----------> 높음 | | | | |
| 예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제도 및 법적 기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전담기관(기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시설 등 자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정보 및 자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지역어 전문 인력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지자체의 업무 담당자 역량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지자체장의 의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지역주민의 인식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B3. 지역 언어문화를 잘 보전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역 등의 역할 구분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A방향 | ←방향A | | 중간 | | | 방향B→ | | B방향 |
|---|---|---|---|---|---|---|---|---|
| 국가(공공) 주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민간 주도 |
| 중앙정부 중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지자체 중심 |
| 행정인력 중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전문인력 중심 |
| 주도형 거버넌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협력형 거버넌스 |
| 지역어 보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지역어 활용 |

B4. 지역어 정책과 관련 있는 아래 법령을 알고 계십니가? 또한 **각 법령이 얼마나 중요하며, 귀 지자체 지역어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 법령 | 인지 여부 | | 중요성 | | | | | 영향력 | | | | |
|---|---|---|---|---|---|---|---|---|---|---|---|---|
| | 안다 | 모른다 | 낮음 <----------> 높음 | | | | | 낮음 <----------> 높음 | | | | |
| 국어기본법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국어 관련 조례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지역어 관련 조례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국어발전 기본계획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지역어 관련 직제 시행규칙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



B5. 지역어가 아래에 제시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지역 발전 | ① | ② | ③ | ④ | ⑤ |
| 지역 정체성 보전 및 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지역 전통 및 문화 계승에 이바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미케팅/관광 분야 등에 활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B6.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국어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A방향 | ←방향A | | 중간 | | | 방향B→ | | B방향 |
|---|---|---|---|---|---|---|---|---|
| 의사소통 효율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지역문화 다양성 |
| 통합과 표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개성과 고유성 |
| 표준어 중심 정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국어다양성 보전 정책 |

## C. 지역어에 관한 인식 조사

C1. 귀하는 **지역어가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C1-1로 이동 | | → C1-2로 이동 | | |

C1-1. 지역어가 **유지, 존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언어 통합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② 지역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③ 지역 방언의 소멸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④ 기타(  )

C1-2. 지역어가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하므로
② 사용자의 정체성과 정서 형성에 중요하므로
③ 한국어의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이므로
④기타(  )

C3. 귀하는 **지역어에 속하는 어떤 말이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쓰이면**,
그 말도 같은 의미를 가진 표준어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부정적이다 | 다소 부정적이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긍정적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C4. 다음 중 귀하가 **평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① 표준어 → C4-1로 이동
② 강원 방언 → C4-2로 이동
③ 충청 방언 → C4-2로 이동
④ 전라 방언 → C4-2로 이동
⑤ 경상 방언 → C4-2로 이동
⑥ 제주 방언 → C4-2로 이동
⑦ 북한 방언 → C4-2로 이동

C4-1. 귀하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 매우 불편하고 어색하다 | 어느 정도 불편하고 어색하다 | 어느 정도 편하고 친근하다 | 매우 편하고 친근하다 | 별 느낌이 없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C4-2. 귀하는 **자신이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별 생각이 없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C5. 귀하는 평소 **표준어와 지역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역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④ 별 생각이 없다

♣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 통계표

## 〈표 1〉 응답자 특성

| 구분 | | 사례 수 | 권역별 | | | | | | 지자체 구분 | |
|---|---|---|---|---|---|---|---|---|---|---|
| | | | 경기 | 강원 | 충청 | 전라 | 경상 | 제주 | 광역 지자체 | 기초 지자체 |
| 전체 | | (205) | 100.0 | 20.5 | 16.1 | 20.5 | 14.6 | 18.0 | 10.2 | 9.3 |
| 권역별 | 경기 | (42) | 100.0 | 0.0 | 0.0 | 0.0 | 0.0 | 0.0 | 7.1 | 92.9 |
| | 강원 | (18) | 0.0 | 100.0 | 0.0 | 0.0 | 0.0 | 0.0 | 11.1 | 88.9 |
| | 충청 | (33) | 0.0 | 0.0 | 100.0 | 0.0 | 0.0 | 0.0 | 12.1 | 87.9 |
| | 전라 | (42) | 0.0 | 0.0 | 0.0 | 100.0 | 0.0 | 0.0 | 7.1 | 92.9 |
| | 경상 | (67) | 0.0 | 0.0 | 0.0 | 0.0 | 100.0 | 0.0 | 9.0 | 91.0 |
| | 제주 | (3) | 0.0 | 0.0 | 0.0 | 0.0 | 0.0 | 100.0 | 33.3 | 66.7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100.0 | 15.8 | 21.1 | 15.8 | 10.5 | 21.1 | 15.8 | 100.0 |
| | 기초지자체 | (186) | 100.0 | 21.0 | 15.6 | 21.0 | 15.1 | 17.7 | 9.7 | 0.0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100.0 | 33.3 | 33.3 | 11.1 | 0.0 | 11.1 | 11.1 | 0.0 |
| | 6급 | (31) | 100.0 | 35.5 | 3.2 | 19.4 | 9.7 | 19.4 | 12.9 | 19.4 |
| | 7급 | (64) | 100.0 | 20.3 | 14.1 | 21.9 | 20.3 | 15.6 | 7.8 | 14.1 |
| | 8급 | (54) | 100.0 | 13.0 | 25.9 | 27.8 | 1.9 | 18.5 | 13.0 | 5.6 |
| | 9급 | (35) | 100.0 | 14.3 | 17.1 | 8.6 | 31.4 | 22.9 | 5.7 | 2.9 |
| | 기타 | (8) | 100.0 | 12.5 | 0.0 | 37.5 | 12.5 | 12.5 | 25.0 | 0.0 |
| | 무응답 | (4) | 100.0 | 50.0 | 0.0 | 0.0 | 25.0 | 25.0 | 0.0 | 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100.0 | 13.2 | 19.1 | 29.4 | 17.6 | 13.2 | 7.4 | 16.2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100.0 | 24.1 | 14.6 | 16.1 | 13.1 | 20.4 | 11.7 | 5.8 |

## 〈표 1〉 응답자 특성 (계속)

| 구분 | | 사례 수 | 담당자 직급 | | | | |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
|---|---|---|---|---|---|---|---|---|---|---|---|
| | |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기타 | 무응답 | 수행 경험 있음 | 수행 경험 없음 |
| 전체 | | (205) | 4.4 | 15.1 | 31.2 | 26.3 | 17.1 | 3.9 | 2.0 | 33.2 | 66.8 |
| 권역별 | 경기 | (42) | 7.1 | 26.2 | 31.0 | 16.7 | 11.9 | 2.4 | 4.8 | 21.4 | 78.6 |
| | 강원 | (18) | 5.6 | 16.7 | 22.2 | 33.3 | 11.1 | 11.1 | 0.0 | 16.7 | 83.3 |
| | 충청 | (33) | 9.1 | 3.0 | 27.3 | 42.4 | 18.2 | 0.0 | 0.0 | 39.4 | 60.6 |
| | 전라 | (42) | 2.4 | 14.3 | 33.3 | 35.7 | 7.1 | 7.1 | 0.0 | 47.6 | 52.4 |
| | 경상 | (67) | 1.5 | 13.4 | 34.3 | 16.4 | 28.4 | 3.0 | 3.0 | 31.3 | 68.7 |
| | 제주 | (3) | 0.0 | 33.3 | 33.3 | 33.3 | 0.0 | 0.0 | 0.0 | 66.7 | 33.3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0.0 | 31.6 | 47.4 | 15.8 | 5.3 | 0.0 | 0.0 | 57.9 | 42.1 |
| | 기초지자체 | (186) | 4.8 | 13.4 | 29.6 | 27.4 | 18.3 | 4.3 | 2.2 | 30.6 | 69.4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11.1 | 88.9 |
| | 6급 | (31)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38.7 | 61.3 |
| | 7급 | (64)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39.1 | 60.9 |
| | 8급 | (54)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37.0 | 63.0 |
| | 9급 | (35)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20.0 | 80.0 |
| | 기타 | (8) | 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2.5 | 87.5 |
| | 무응답 | (4)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50.0 | 5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1.5 | 17.6 | 36.8 | 29.4 | 10.3 | 1.5 | 2.9 | 100.0 | 0.0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5.8 | 13.9 | 28.5 | 24.8 | 20.4 | 5.1 | 1.5 | 0.0 | 100.0 |

## 〈표 2〉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 추진 여부

| 구분 | | 사례 수 | 추진한 적 없음 | 추진한 적 있음 |
|---|---|---|---|---|
| 전체 | | (205) | 93.7 | 6.3 |
| 권역별 | 경기 | (42) | 100.0 | 0.0 |
| | 강원 | (18) | 88.9 | 11.1 |
| | 충청 | (33) | 100.0 | 0.0 |
| | 전라 | (42) | 92.9 | 7.1 |
| | 경상 | (67) | 91.0 | 9.0 |
| | 제주 | (3) | 33.3 | 66.7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73.7 | 26.3 |
| | 기초지자체 | (186) | 95.7 | 4.3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88.9 | 11.1 |
| | 6급 | (31) | 90.3 | 9.7 |
| | 7급 | (64) | 89.1 | 10.9 |
| | 8급 | (54) | 98.1 | 1.9 |
| | 9급 | (35) | 100.0 | 0.0 |
| | 기타 | (8) | 87.5 | 12.5 |
| | 무응답 | (4) | 100.0 | 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82.4 | 17.6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99.3 | 0.7 |

〈표 3〉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 추진 횟수

| 구분 | | 사례 수 | 1회 | 2회 | 3회 | 5회 |
|---|---|---|---|---|---|---|
| 전체 | | (13) | 53.8 | 7.7 | 7.7 | 30.8 |
| 권역별 | 강원 | (2) | 50.0 | 0.0 | 0.0 | 50.0 |
| | 전라 | (3) | 100.0 | 0.0 | 0.0 | 0.0 |
| | 경상 | (6) | 50.0 | 16.7 | 0.0 | 33.3 |
| | 제주 | (2) | 0.0 | 0.0 | 50.0 | 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5) | 40.0 | 0.0 | 0.0 | 60.0 |
| | 기초지자체 | (8) | 62.5 | 12.5 | 12.5 | 12.5 |
| 담당자 직급 | 5급 | (1) | 0.0 | 0.0 | 0.0 | 100.0 |
| | 6급 | (3) | 33.3 | 33.3 | 0.0 | 33.3 |
| | 7급 | (7) | 57.1 | 0.0 | 14.3 | 28.6 |
| | 8급 | (1) | 100.0 | 0.0 | 0.0 | 0.0 |
| | 기타 | (1) | 100.0 | 0.0 | 0.0 | 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12) | 58.3 | 8.3 | 8.3 | 25.0 |
| | 수행 경험 없음 | (1) | 0.0 | 0.0 | 0.0 | 100.0 |

## 〈표 4〉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연도별 추진 건수

| 구분 | | 사례 수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8년 |
|---|---|---|---|---|---|---|
| 전체 | | (19) | 68.4 | 15.8 | 10.5 | 5.3 |
| 권역별 | 강원 | (3) | 100.0 | 0.0 | 0.0 | 0.0 |
| | 전라 | (3) | 0.0 | 33.3 | 66.7 | 0.0 |
| | 경상 | (7) | 57.1 | 28.6 | 0.0 | 14.3 |
| | 제주 | (6) | 100.0 | 0.0 | 0.0 | 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8) | 75.0 | 12.5 | 12.5 | 0.0 |
| | 기초지자체 | (11) | 63.6 | 18.2 | 9.1 | 9.1 |
| 담당자 직급 | 5급 | (2) | 100.0 | 0.0 | 0.0 | 0.0 |
| | 6급 | (7) | 71.4 | 14.3 | 0.0 | 14.3 |
| | 7급 | (8) | 50.0 | 25.0 | 25.0 | 0.0 |
| | 8급 | (1) | 100.0 | 0.0 | 0.0 | 0.0 |
| | 기타 | (1) | 100.0 | 0.0 | 0.0 | 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17) | 64.7 | 17.6 | 11.8 | 5.9 |
| | 수행 경험 없음 | (2) | 100.0 | 0.0 | 0.0 | 0.0 |

〈표 5〉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의 재원

| 구분 | | 사례 수 | 지방비 | 민간재원 |
|---|---|---|---|---|
| 전체 | | (19) | 94.7 | 5.3 |
| 권역별 | 강원 | (3) | 100.0 | 0.0 |
| | 전라 | (3) | 100.0 | 0.0 |
| | 경상 | (7) | 100.0 | 0.0 |
| | 제주 | (6) | 83.3 | 16.7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8) | 87.5 | 12.5 |
| | 기초지자체 | (11) | 100.0 | 0.0 |
| 담당자 직급 | 5급 | (2) | 100.0 | 0.0 |
| | 6급 | (7) | 85.7 | 14.3 |
| | 7급 | (8) | 100.0 | 0.0 |
| | 8급 | (1) | 100.0 | 0.0 |
| | 기타 | (1) | 100.0 | 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17) | 94.1 | 5.9 |
| | 수행 경험 없음 | (2) | 100.0 | 0.0 |

## 〈표 6〉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 방식

| 구분 | | 사례 수 | 지자체 직접 추진 사업 | 지역 공공기관 위탁 추진 | 민간 위탁 추진 | 기타 |
|---|---|---|---|---|---|---|
| 전체 | | (19) | 31.6 | 5.3 | 52.6 | 10.5 |
| 권역별 | 강원 | (3) | 33.3 | 0.0 | 66.7 | 0.0 |
| | 전라 | (3) | 33.3 | 0.0 | 66.7 | 0.0 |
| | 경상 | (7) | 42.9 | 14.3 | 14.3 | 28.6 |
| | 제주 | (6) | 16.7 | 0.0 | 83.3 | 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8) | 12.5 | 12.5 | 75.0 | 0.0 |
| | 기초지자체 | (11) | 45.5 | 0.0 | 36.4 | 18.2 |
| 담당자 직급 | 5급 | (2) | 50.0 | 0.0 | 50.0 | 0.0 |
| | 6급 | (7) | 14.3 | 0.0 | 57.1 | 28.6 |
| | 7급 | (8) | 37.5 | 12.5 | 50.0 | 0.0 |
| | 8급 | (1) | 0.0 | 0.0 | 100.0 | 0.0 |
| | 기타 | (1) | 100.0 | 0.0 | 0.0 | 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17) | 29.4 | 5.9 | 52.9 | 11.8 |
| | 수행 경험 없음 | (2) | 50.0 | 0.0 | 50.0 | 0.0 |

〈표 7〉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의 지속 사업 여부

| 구분 | | 사례 수 | 지속사업임 | 지속사업이 아님 |
|---|---|---|---|---|
| 전체 | | (19) | 57.9 | 42.1 |
| 권역별 | 강원 | (3) | 33.3 | 66.7 |
| | 전라 | (3) | 0.0 | 100.0 |
| | 경상 | (7) | 57.1 | 42.9 |
| | 제주 | (6) | 100.0 | 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8) | 75.0 | 25.0 |
| | 기초지자체 | (11) | 45.5 | 54.5 |
| 담당자 직급 | 5급 | (2) | 50.0 | 50.0 |
| | 6급 | (7) | 71.4 | 28.6 |
| | 7급 | (8) | 50.0 | 50.0 |
| | 8급 | (1) | 0.0 | 100.0 |
| | 기타 | (1) | 100.0 | 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17) | 58.8 | 41.2 |
| | 수행 경험 없음 | (2) | 50.0 | 50.0 |

## 〈표 8〉 최근 5년간 소속 지자체의 관련 사업의 사업 근거

| 구분 | | 사례 수 | 국어기본법 | 국어기본계획 | 지자체 조례 | 지자체장 지시사항 | 기타 |
|---|---|---|---|---|---|---|---|
| 전체 | | (19) | 15.8 | 5.3 | 63.2 | 5.3 | 10.5 |
| 권역별 | 강원 | (3) | 33.3 | 33.3 | 0.0 | 0.0 | 33.3 |
| | 전라 | (3) | 0.0 | 0.0 | 66.7 | 33.3 | 0.0 |
| | 경상 | (7) | 28.6 | 0.0 | 57.1 | 0.0 | 14.3 |
| | 제주 | (6) | 0.0 | 0.0 | 100.0 | 0.0 | 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8) | 25.0 | 0.0 | 75.0 | 0.0 | 0.0 |
| | 기초지자체 | (11) | 9.1 | 9.1 | 54.5 | 9.1 | 18.2 |
| 담당자 직급 | 5급 | (2) | 50.0 | 0.0 | 0.0 | 0.0 | 50.0 |
| | 6급 | (7) | 0.0 | 0.0 | 100.0 | 0.0 | 0.0 |
| | 7급 | (8) | 25.0 | 0.0 | 62.5 | 12.5 | 0.0 |
| | 8급 | (1) | 0.0 | 100.0 | 0.0 | 0.0 | 0.0 |
| | 기타 | (1) | 0.0 | 0.0 | 0.0 | 0.0 | 1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17) | 11.8 | 5.9 | 70.6 | 5.9 | 5.9 |
| | 수행 경험 없음 | (2) | 50.0 | 0.0 | 0.0 | 0.0 | 50.0 |

〈표 9〉 소속 지자체의 관련 진흥기관 및 조직 (복수 응답) (중복 응답)

| 구분 | | 사례 수 | 운영하고 있지 않음 | 국어문화원 | 민간단체 | 기타 | 연구원, 진흥원 등 지역어 관련 공공기관 |
|---|---|---|---|---|---|---|---|
| 전체 | | (205) | 84.9 | 5.4 | 4.4 | 4.4 | 2.0 |
| 권역별 | 경기 | (42) | 90.5 | 2.4 | 4.8 | 4.8 | 0.0 |
| | 강원 | (18) | 77.8 | 5.6 | 0.0 | 11.1 | 5.6 |
| | 충청 | (33) | 90.9 | 6.1 | 0.0 | 3.0 | 0.0 |
| | 전라 | (42) | 88.1 | 7.1 | 2.4 | 2.4 | 0.0 |
| | 경상 | (67) | 82.1 | 6.0 | 9.0 | 4.5 | 0.0 |
| | 제주 | (3) | 0.0 | 0.0 | 0.0 | 0.0 | 10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2.6 | 31.6 | 5.3 | 5.3 | 10.5 |
| | 기초지자체 | (186) | 88.2 | 2.7 | 4.3 | 4.3 | 1.1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88.9 | 0.0 | 11.1 | 0.0 | 0.0 |
| | 6급 | (31) | 74.2 | 9.7 | 9.7 | 3.2 | 6.5 |
| | 7급 | (64) | 84.4 | 7.8 | 4.7 | 3.1 | 1.6 |
| | 8급 | (54) | 85.2 | 3.7 | 1.9 | 7.4 | 1.9 |
| | 9급 | (35) | 94.3 | 0.0 | 2.9 | 2.9 | 0.0 |
| | 기타 | (8) | 87.5 | 0.0 | 0.0 | 12.5 | 0.0 |
| | 무응답 | (4) | 75.0 | 25.0 | 0.0 | 0.0 | 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80.9 | 13.2 | 4.4 | 0.0 | 2.9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86.9 | 1.5 | 4.4 | 6.6 | 1.5 |

## 〈표 10〉 [국어문화원] - 해당 기관의 활용도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11) | 0.0 | 0.0 | 36.4 | 27.3 | 36.4 | 0.0 | 36.4 | 63.6 | 4.00 | 75.00 |
| 권역별 | 경기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강원 | (1)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0 | 5.00 | 100.00 |
| | 충청 | (2) | 0.0 | 0.0 | 0.0 | 50.0 | 50.0 | 0.0 | 0.0 | 100.0 | 4.50 | 87.50 |
| | 전라 | (3) | 0.0 | 0.0 | 0.0 | 33.3 | 66.7 | 0.0 | 0.0 | 100.0 | 4.67 | 91.67 |
| | 경상 | (4) | 0.0 | 0.0 | 75.0 | 25.0 | 0.0 | 0.0 | 75.0 | 25.0 | 3.25 | 56.25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6) | 0.0 | 0.0 | 16.7 | 33.3 | 50.0 | 0.0 | 16.7 | 83.3 | 4.33 | 83.33 |
| | 기초지자체 | (5) | 0.0 | 0.0 | 60.0 | 20.0 | 20.0 | 0.0 | 60.0 | 40.0 | 3.60 | 65.00 |
| 담당자 직급 | 6급 | (3) | 0.0 | 0.0 | 66.7 | 33.3 | 0.0 | 0.0 | 66.7 | 33.3 | 3.33 | 58.33 |
| | 7급 | (5) | 0.0 | 0.0 | 20.0 | 20.0 | 60.0 | 0.0 | 20.0 | 80.0 | 4.40 | 85.00 |
| | 8급 | (2) | 0.0 | 0.0 | 0.0 | 50.0 | 50.0 | 0.0 | 0.0 | 100.0 | 4.50 | 87.50 |
| | 무응답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9) | 0.0 | 0.0 | 44.4 | 11.1 | 44.4 | 0.0 | 44.4 | 55.6 | 4.00 | 75.00 |
| | 수행 경험 없음 | (2)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0 | 75.00 |

## 〈표 11〉 [국어문화원] – 해당 기관의 전문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11) | 0.0 | 0.0 | 18.2 | 45.5 | 36.4 | 0.0 | 18.2 | 81.8 | 4.18 | 79.55 |
| 권역별 | 경기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0 | 75.00 |
| | 강원 | (1)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0 | 5.00 | 100.00 |
| | 충청 | (2) | 0.0 | 0.0 | 0.0 | 50.0 | 50.0 | 0.0 | 0.0 | 100.0 | 4.50 | 87.50 |
| | 전라 | (3) | 0.0 | 0.0 | 0.0 | 33.3 | 66.7 | 0.0 | 0.0 | 100.0 | 4.67 | 91.67 |
| | 경상 | (4) | 0.0 | 0.0 | 50.0 | 50.0 | 0.0 | 0.0 | 50.0 | 50.0 | 3.50 | 62.5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6) | 0.0 | 0.0 | 0.0 | 50.0 | 50.0 | 0.0 | 0.0 | 100.0 | 4.50 | 87.50 |
| | 기초지자체 | (5) | 0.0 | 0.0 | 40.0 | 40.0 | 20.0 | 0.0 | 40.0 | 60.0 | 3.80 | 70.00 |
| 담당자 직급 | 6급 | (3) | 0.0 | 0.0 | 66.7 | 33.3 | 0.0 | 0.0 | 66.7 | 33.3 | 3.33 | 58.33 |
| | 7급 | (5) | 0.0 | 0.0 | 0.0 | 40.0 | 60.0 | 0.0 | 0.0 | 100.0 | 4.60 | 90.00 |
| | 8급 | (2) | 0.0 | 0.0 | 0.0 | 50.0 | 50.0 | 0.0 | 0.0 | 100.0 | 4.50 | 87.50 |
| | 무응답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0 | 75.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9) | 0.0 | 0.0 | 22.2 | 33.3 | 44.4 | 0.0 | 22.2 | 77.8 | 4.22 | 80.56 |
| | 수행 경험 없음 | (2)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0 | 75.00 |

## 〈표 12〉 [관련 공공기관] - 해당 기관의 활용도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4) | 0.0 | 0.0 | 50.0 | 25.0 | 25.0 | 0.0 | 50.0 | 50.0 | 3.75 | 68.75 |
| 권역별 | 강원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2) | 0.0 | 0.0 | 50.0 | 50.0 | 0.0 | 0.0 | 50.0 | 50.0 | 3.50 | 62.50 |
| | 기초지자체 | (2) | 0.0 | 0.0 | 50.0 | 0.0 | 50.0 | 0.0 | 50.0 | 50.0 | 4.00 | 75.00 |
| 담당자 직급 | 6급 | (2) | 0.0 | 0.0 | 50.0 | 50.0 | 0.0 | 0.0 | 50.0 | 50.0 | 3.50 | 62.50 |
| | 7급 | (1)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0 | 5.00 | 100.00 |
| | 8급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2) | 0.0 | 0.0 | 0.0 | 50.0 | 50.0 | 0.0 | 0.0 | 100.0 | 4.50 | 87.50 |
| | 수행 경험 없음 | (2)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표 13〉 [관련 공공기관] - 해당 기관의 전문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4) | 0.0 | 0.0 | 50.0 | 25.0 | 25.0 | 0.0 | 50.0 | 50.0 | 3.75 | 68.75 |
| 권역별 | 강원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2) | 0.0 | 0.0 | 50.0 | 50.0 | 0.0 | 0.0 | 50.0 | 50.0 | 3.50 | 62.50 |
| | 기초지자체 | (2) | 0.0 | 0.0 | 50.0 | 0.0 | 50.0 | 0.0 | 50.0 | 50.0 | 4.00 | 75.00 |
| 담당자 직급 | 6급 | (2) | 0.0 | 0.0 | 50.0 | 50.0 | 0.0 | 0.0 | 50.0 | 50.0 | 3.50 | 62.50 |
| | 7급 | (1)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0 | 5.00 | 100.00 |
| | 8급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2) | 0.0 | 0.0 | 0.0 | 50.0 | 50.0 | 0.0 | 0.0 | 100.0 | 4.50 | 87.50 |
| | 수행 경험 없음 | (2)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표 14〉 [관련 민간단체] - 해당 기관의 활용도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9) | 11.1 | 11.1 | 66.7 | 0.0 | 11.1 | 22.2 | 66.7 | 11.1 | 2.89 | 47.22 |
| 권역별 | 경기 | (2) | 50.0 | 0.0 | 0.0 | 0.0 | 50.0 | 50.0 | 0.0 | 50.0 | 3.00 | 50.00 |
| | 전라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경상 | (6) | 0.0 | 16.7 | 83.3 | 0.0 | 0.0 | 16.7 | 83.3 | 0.0 | 2.83 | 45.83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기초지자체 | (8) | 12.5 | 12.5 | 62.5 | 0.0 | 12.5 | 25.0 | 62.5 | 12.5 | 2.88 | 46.88 |
| 담당자 직급 | 5급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 | 0.00 |
| | 6급 | (3) | 0.0 | 33.3 | 33.3 | 0.0 | 33.3 | 33.3 | 33.3 | 33.3 | 3.33 | 58.33 |
| | 7급 | (3)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8급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9급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3)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수행 경험 없음 | (6) | 16.7 | 16.7 | 50.0 | 0.0 | 16.7 | 33.3 | 50.0 | 16.7 | 2.83 | 45.83 |

## 〈표 15〉 [관련 민간단체] - 해당 기관의 전문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9) | 0.0 | 11.1 | 55.6 | 22.2 | 11.1 | 11.1 | 55.6 | 33.3 | 3.33 | 58.33 |
| 권역별 | 경기 | (2) | 0.0 | 0.0 | 50.0 | 0.0 | 50.0 | 0.0 | 50.0 | 50.0 | 4.00 | 75.00 |
| | 전라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경상 | (6) | 0.0 | 16.7 | 50.0 | 33.3 | 0.0 | 16.7 | 50.0 | 33.3 | 3.17 | 54.17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기초지자체 | (8) | 0.0 | 12.5 | 50.0 | 25.0 | 12.5 | 12.5 | 50.0 | 37.5 | 3.38 | 59.38 |
| 담당자 직급 | 5급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6급 | (3) | 0.0 | 33.3 | 33.3 | 0.0 | 33.3 | 33.3 | 33.3 | 33.3 | 3.33 | 58.33 |
| | 7급 | (3) | 0.0 | 0.0 | 33.3 | 66.7 | 0.0 | 0.0 | 33.3 | 66.7 | 3.67 | 66.67 |
| | 8급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9급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3)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수행 경험 없음 | (6) | 0.0 | 16.7 | 33.3 | 33.3 | 16.7 | 16.7 | 33.3 | 50.0 | 3.50 | 62.50 |

## 〈표 16〉 [기타] - 해당 기관의 활용도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9) | 11.1 | 11.1 | 44.4 | 0.0 | 33.3 | 22.2 | 44.4 | 33.3 | 3.33 | 58.33 |
| 권역별 | 경기 | (2)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0 | 5.00 | 100.00 |
| | 강원 | (2) | 0.0 | 0.0 | 50.0 | 0.0 | 50.0 | 0.0 | 50.0 | 50.0 | 4.00 | 75.00 |
| | 충청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전라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 | 0.00 |
| | 경상 | (3) | 0.0 | 33.3 | 66.7 | 0.0 | 0.0 | 33.3 | 66.7 | 0.0 | 2.67 | 41.67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2.00 | 25.00 |
| | 기초지자체 | (8) | 12.5 | 0.0 | 50.0 | 0.0 | 37.5 | 12.5 | 50.0 | 37.5 | 3.50 | 62.50 |
| 담당자 직급 | 6급 | (1)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0 | 5.00 | 100.00 |
| | 7급 | (2) | 50.0 | 0.0 | 50.0 | 0.0 | 0.0 | 50.0 | 50.0 | 0.0 | 2.00 | 25.00 |
| | 8급 | (4) | 0.0 | 25.0 | 25.0 | 0.0 | 50.0 | 25.0 | 25.0 | 50.0 | 3.75 | 68.75 |
| | 9급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기타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없음 | (9) | 11.1 | 11.1 | 44.4 | 0.0 | 33.3 | 22.2 | 44.4 | 33.3 | 3.33 | 58.33 |

## 〈표 17〉 [기타] - 해당 기관의 전문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9) | 11.1 | 11.1 | 44.4 | 0.0 | 33.3 | 22.2 | 44.4 | 33.3 | 3.33 | 58.33 |
| 권역별 | 경기 | (2)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0 | 5.00 | 100.00 |
| | 강원 | (2) | 0.0 | 0.0 | 50.0 | 0.0 | 50.0 | 0.0 | 50.0 | 50.0 | 4.00 | 75.00 |
| | 충청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전라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 | 0.00 |
| | 경상 | (3) | 0.0 | 33.3 | 66.7 | 0.0 | 0.0 | 33.3 | 66.7 | 0.0 | 2.67 | 41.67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2.00 | 25.00 |
| | 기초지자체 | (8) | 12.5 | 0.0 | 50.0 | 0.0 | 37.5 | 12.5 | 50.0 | 37.5 | 3.50 | 62.50 |
| 담당자 직급 | 6급 | (1)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0 | 5.00 | 100.00 |
| | 7급 | (2) | 50.0 | 0.0 | 50.0 | 0.0 | 0.0 | 50.0 | 50.0 | 0.0 | 2.00 | 25.00 |
| | 8급 | (4) | 0.0 | 25.0 | 25.0 | 0.0 | 50.0 | 25.0 | 25.0 | 50.0 | 3.75 | 68.75 |
| | 9급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기타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없음 | (9) | 11.1 | 11.1 | 44.4 | 0.0 | 33.3 | 22.2 | 44.4 | 33.3 | 3.33 | 58.33 |

## 〈표 18〉 관련 조례 또는 규칙 제정 여부

| 구분 | | 사례 수 | 제정하지 않았다 | 제정한 바 있다 |
|---|---|---|---|---|
| 전체 | | (205) | 91.2 | 8.8 |
| 권역별 | 경기 | (42) | 95.2 | 4.8 |
| | 강원 | (18) | 88.9 | 11.1 |
| | 충청 | (33) | 84.8 | 15.2 |
| | 전라 | (42) | 92.9 | 7.1 |
| | 경상 | (67) | 92.5 | 7.5 |
| | 제주 | (3) | 66.7 | 33.3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68.4 | 31.6 |
| | 기초지자체 | (186) | 93.5 | 6.5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77.8 | 22.2 |
| | 6급 | (31) | 87.1 | 12.9 |
| | 7급 | (64) | 92.2 | 7.8 |
| | 8급 | (54) | 88.9 | 11.1 |
| | 9급 | (35) | 100.0 | 0.0 |
| | 기타 | (8) | 100.0 | 0.0 |
| | 무응답 | (4) | 75.0 | 25.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83.8 | 16.2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94.9 | 5.1 |

## 〈표 19〉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이 지역 언어문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적다 | 적다 | 보통이다 | 크다 | 매우 크다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적다 | 보통 | 크다 | | |
| 전체 | | (18) | 11.1 | 16.7 | 50.0 | 22.2 | 0.0 | 27.8 | 50.0 | 22.2 | 2.83 | 45.83 |
| 권역별 | 경기 | (2)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강원 | (2) | 50.0 | 0.0 | 50.0 | 0.0 | 0.0 | 50.0 | 50.0 | 0.0 | 2.00 | 25.00 |
| | 충청 | (5) | 0.0 | 20.0 | 60.0 | 20.0 | 0.0 | 20.0 | 60.0 | 20.0 | 3.00 | 50.00 |
| | 전라 | (3) | 33.3 | 0.0 | 33.3 | 33.3 | 0.0 | 33.3 | 33.3 | 33.3 | 2.67 | 41.67 |
| | 경상 | (5) | 0.0 | 40.0 | 40.0 | 20.0 | 0.0 | 40.0 | 40.0 | 20.0 | 2.80 | 45.00 |
| | 제주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6) | 0.0 | 16.7 | 50.0 | 33.3 | 0.0 | 16.7 | 50.0 | 33.3 | 3.17 | 54.17 |
| | 기초지자체 | (12) | 16.7 | 16.7 | 50.0 | 16.7 | 0.0 | 33.3 | 50.0 | 16.7 | 2.67 | 41.67 |
| 담당자 직급 | 5급 | (2) | 50.0 | 0.0 | 50.0 | 0.0 | 0.0 | 50.0 | 50.0 | 0.0 | 2.00 | 25.00 |
| | 6급 | (4) | 0.0 | 0.0 | 50.0 | 50.0 | 0.0 | 0.0 | 50.0 | 50.0 | 3.50 | 62.50 |
| | 7급 | (5) | 0.0 | 0.0 | 60.0 | 40.0 | 0.0 | 0.0 | 60.0 | 40.0 | 3.40 | 60.00 |
| | 8급 | (6) | 16.7 | 50.0 | 33.3 | 0.0 | 0.0 | 66.7 | 33.3 | 0.0 | 2.17 | 29.17 |
| | 무응답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11) | 9.1 | 0.0 | 54.5 | 36.4 | 0.0 | 9.1 | 54.5 | 36.4 | 3.18 | 54.55 |
| | 수행 경험 없음 | (7) | 14.3 | 42.9 | 42.9 | 0.0 | 0.0 | 57.1 | 42.9 | 0.0 | 2.29 | 32.14 |

## 〈표 20〉 향후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 필요 정도

| 구분 | | 사례 수 | 전혀 필요 없다 | 필요 없다 | 보통 이다 | 필요 하다 | 매우 필요 하다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필요 없다 | 보통 | 필요 하다 | | |
| 전체 | | (187) | 8.6 | 29.4 | 49.7 | 11.2 | 1.1 | 38.0 | 49.7 | 12.3 | 2.67 | 41.71 |
| 권역별 | 경기 | (40) | 17.5 | 47.5 | 25.0 | 10.0 | 0.0 | 65.0 | 25.0 | 10.0 | 2.28 | 31.88 |
| | 강원 | (16) | 12.5 | 31.3 | 50.0 | 0.0 | 6.3 | 43.8 | 50.0 | 6.3 | 2.56 | 39.06 |
| | 충청 | (28) | 3.6 | 17.9 | 71.4 | 7.1 | 0.0 | 21.4 | 71.4 | 7.1 | 2.82 | 45.54 |
| | 전라 | (39) | 7.7 | 20.5 | 56.4 | 15.4 | 0.0 | 28.2 | 56.4 | 15.4 | 2.79 | 44.87 |
| | 경상 | (62) | 4.8 | 29.0 | 51.6 | 14.5 | 0.0 | 33.9 | 51.6 | 14.5 | 2.76 | 43.95 |
| | 제주 | (2) | 0.0 | 0.0 | 50.0 | 0.0 | 50.0 | 0.0 | 50.0 | 50.0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3) | 7.7 | 30.8 | 46.2 | 15.4 | 0.0 | 38.5 | 46.2 | 15.4 | 2.69 | 42.31 |
| | 기초지자체 | (174) | 8.6 | 29.3 | 50.0 | 10.9 | 1.1 | 37.9 | 50.0 | 12.1 | 2.67 | 41.67 |
| 담당자 직급 | 5급 | (7) | 14.3 | 28.6 | 42.9 | 14.3 | 0.0 | 42.9 | 42.9 | 14.3 | 2.57 | 39.29 |
| | 6급 | (27) | 14.8 | 33.3 | 33.3 | 18.5 | 0.0 | 48.1 | 33.3 | 18.5 | 2.56 | 38.89 |
| | 7급 | (59) | 11.9 | 42.4 | 40.7 | 3.4 | 1.7 | 54.2 | 40.7 | 5.1 | 2.41 | 35.17 |
| | 8급 | (48) | 4.2 | 27.1 | 60.4 | 6.3 | 2.1 | 31.3 | 60.4 | 8.3 | 2.75 | 43.75 |
| | 9급 | (35) | 2.9 | 14.3 | 62.9 | 20.0 | 0.0 | 17.1 | 62.9 | 20.0 | 3.00 | 50.00 |
| | 기타 | (8) | 12.5 | 0.0 | 62.5 | 25.0 | 0.0 | 12.5 | 62.5 | 25.0 | 3.00 | 50.00 |
| | 무응답 | (3)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33.3 | 33.3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57) | 8.8 | 26.3 | 50.9 | 10.5 | 3.5 | 35.1 | 50.9 | 14.0 | 2.74 | 43.42 |
| | 수행 경험 없음 | (130) | 8.5 | 30.8 | 49.2 | 11.5 | 0.0 | 39.2 | 49.2 | 11.5 | 2.64 | 40.96 |

## 〈표 21〉 지역어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필요 정도

| 구분 | | 사례 수 | 전혀 필요 없다 | 필요 없다 | 보통 이다 | 필요 하다 | 매우 필요 하다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필요 없다 | 보통 | 필요 하다 | | |
| 전체 | | (205) | 3.4 | 13.2 | 45.4 | 34.6 | 3.4 | 16.6 | 45.4 | 38.0 | 3.21 | 55.37 |
| 권역별 | 경기 | (42) | 7.1 | 16.7 | 40.5 | 33.3 | 2.4 | 23.8 | 40.5 | 35.7 | 3.07 | 51.79 |
| | 강원 | (18) | 0.0 | 11.1 | 61.1 | 22.2 | 5.6 | 11.1 | 61.1 | 27.8 | 3.22 | 55.56 |
| | 충청 | (33) | 3.0 | 9.1 | 45.5 | 42.4 | 0.0 | 12.1 | 45.5 | 42.4 | 3.27 | 56.82 |
| | 전라 | (42) | 4.8 | 9.5 | 40.5 | 42.9 | 2.4 | 14.3 | 40.5 | 45.2 | 3.29 | 57.14 |
| | 경상 | (67) | 1.5 | 16.4 | 47.8 | 29.9 | 4.5 | 17.9 | 47.8 | 34.3 | 3.19 | 54.85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5.3 | 47.4 | 36.8 | 5.3 | 10.5 | 47.4 | 42.1 | 3.32 | 57.89 |
| | 기초지자체 | (186) | 3.2 | 14.0 | 45.2 | 34.4 | 3.2 | 17.2 | 45.2 | 37.6 | 3.20 | 55.11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11.1 | 22.2 | 66.7 | 0.0 | 11.1 | 22.2 | 66.7 | 3.56 | 63.89 |
| | 6급 | (31) | 6.5 | 16.1 | 38.7 | 32.3 | 6.5 | 22.6 | 38.7 | 38.7 | 3.16 | 54.03 |
| | 7급 | (64) | 4.7 | 12.5 | 51.6 | 26.6 | 4.7 | 17.2 | 51.6 | 31.3 | 3.14 | 53.52 |
| | 8급 | (54) | 1.9 | 13.0 | 48.1 | 33.3 | 3.7 | 14.8 | 48.1 | 37.0 | 3.24 | 56.02 |
| | 9급 | (35) | 2.9 | 8.6 | 51.4 | 37.1 | 0.0 | 11.4 | 51.4 | 37.1 | 3.23 | 55.71 |
| | 기타 | (8) | 0.0 | 12.5 | 12.5 | 75.0 | 0.0 | 12.5 | 12.5 | 75.0 | 3.63 | 65.63 |
| | 무응답 | (4) | 0.0 | 50.0 | 25.0 | 25.0 | 0.0 | 50.0 | 25.0 | 25.0 | 2.75 | 43.75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4.4 | 13.2 | 41.2 | 33.8 | 7.4 | 17.6 | 41.2 | 41.2 | 3.26 | 56.62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2.9 | 13.1 | 47.4 | 35.0 | 1.5 | 16.1 | 47.4 | 36.5 | 3.19 | 54.74 |

## 〈표 22〉 [예산]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05) | 4.9 | 13.2 | 40.5 | 32.7 | 8.8 | 18.0 | 40.5 | 41.5 | 3.27 | 56.83 |
| 권역별 | 경기 | (42) | 9.5 | 19.0 | 33.3 | 23.8 | 14.3 | 28.6 | 33.3 | 38.1 | 3.14 | 53.57 |
| | 강원 | (18) | 5.6 | 16.7 | 44.4 | 27.8 | 5.6 | 22.2 | 44.4 | 33.3 | 3.11 | 52.78 |
| | 충청 | (33) | 3.0 | 0.0 | 48.5 | 39.4 | 9.1 | 3.0 | 48.5 | 48.5 | 3.52 | 62.88 |
| | 전라 | (42) | 4.8 | 11.9 | 47.6 | 33.3 | 2.4 | 16.7 | 47.6 | 35.7 | 3.17 | 54.17 |
| | 경상 | (67) | 3.0 | 16.4 | 35.8 | 35.8 | 9.0 | 19.4 | 35.8 | 44.8 | 3.31 | 57.84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5.3 | 47.4 | 21.1 | 21.1 | 10.5 | 47.4 | 42.1 | 3.47 | 61.84 |
| | 기초지자체 | (186) | 4.8 | 14.0 | 39.8 | 33.9 | 7.5 | 18.8 | 39.8 | 41.4 | 3.25 | 56.32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11.1 | 11.1 | 22.2 | 55.6 | 0.0 | 22.2 | 22.2 | 55.6 | 3.22 | 55.56 |
| | 6급 | (31) | 6.5 | 29.0 | 22.6 | 22.6 | 19.4 | 35.5 | 22.6 | 41.9 | 3.19 | 54.84 |
| | 7급 | (64) | 3.1 | 9.4 | 43.8 | 32.8 | 10.9 | 12.5 | 43.8 | 43.8 | 3.39 | 59.77 |
| | 8급 | (54) | 5.6 | 11.1 | 48.1 | 29.6 | 5.6 | 16.7 | 48.1 | 35.2 | 3.19 | 54.63 |
| | 9급 | (35) | 5.7 | 8.6 | 45.7 | 34.3 | 5.7 | 14.3 | 45.7 | 40.0 | 3.26 | 56.43 |
| | 기타 | (8) | 0.0 | 12.5 | 25.0 | 62.5 | 0.0 | 12.5 | 25.0 | 62.5 | 3.50 | 62.50 |
| | 무응답 | (4) | 0.0 | 25.0 | 50.0 | 25.0 | 0.0 | 25.0 | 50.0 | 25.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4.4 | 14.7 | 38.2 | 29.4 | 13.2 | 19.1 | 38.2 | 42.6 | 3.32 | 58.09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5.1 | 12.4 | 41.6 | 34.3 | 6.6 | 17.5 | 41.6 | 40.9 | 3.25 | 56.20 |

## 〈표 23〉 [예산]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05) | 7.3 | 21.0 | 54.1 | 14.1 | 3.4 | 28.3 | 54.1 | 17.6 | 2.85 | 46.34 |
| 권역별 | 경기 | (42) | 11.9 | 28.6 | 42.9 | 11.9 | 4.8 | 40.5 | 42.9 | 16.7 | 2.69 | 42.26 |
| | 강원 | (18) | 5.6 | 22.2 | 61.1 | 5.6 | 5.6 | 27.8 | 61.1 | 11.1 | 2.83 | 45.83 |
| | 충청 | (33) | 6.1 | 15.2 | 54.5 | 21.2 | 3.0 | 21.2 | 54.5 | 24.2 | 3.00 | 50.00 |
| | 전라 | (42) | 4.8 | 16.7 | 64.3 | 11.9 | 2.4 | 21.4 | 64.3 | 14.3 | 2.90 | 47.62 |
| | 경상 | (67) | 7.5 | 22.4 | 53.7 | 14.9 | 1.5 | 29.9 | 53.7 | 16.4 | 2.81 | 45.15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10.5 | 68.4 | 10.5 | 5.3 | 15.8 | 68.4 | 15.8 | 3.00 | 50.00 |
| | 기초지자체 | (186) | 7.5 | 22.0 | 52.7 | 14.5 | 3.2 | 29.6 | 52.7 | 17.7 | 2.84 | 45.97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11.1 | 22.2 | 44.4 | 22.2 | 0.0 | 33.3 | 44.4 | 22.2 | 2.78 | 44.44 |
| | 6급 | (31) | 12.9 | 19.4 | 45.2 | 19.4 | 3.2 | 32.3 | 45.2 | 22.6 | 2.81 | 45.16 |
| | 7급 | (64) | 4.7 | 21.9 | 57.8 | 9.4 | 6.3 | 26.6 | 57.8 | 15.6 | 2.91 | 47.66 |
| | 8급 | (54) | 7.4 | 27.8 | 50.0 | 11.1 | 3.7 | 35.2 | 50.0 | 14.8 | 2.76 | 43.98 |
| | 9급 | (35) | 8.6 | 11.4 | 68.6 | 11.4 | 0.0 | 20.0 | 68.6 | 11.4 | 2.83 | 45.71 |
| | 기타 | (8) | 0.0 | 12.5 | 37.5 | 50.0 | 0.0 | 12.5 | 37.5 | 50.0 | 3.38 | 59.38 |
| | 무응답 | (4) | 0.0 | 25.0 | 50.0 | 25.0 | 0.0 | 25.0 | 50.0 | 25.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8.8 | 16.2 | 51.5 | 17.6 | 5.9 | 25.0 | 51.5 | 23.5 | 2.96 | 48.90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6.6 | 23.4 | 55.5 | 12.4 | 2.2 | 29.9 | 55.5 | 14.6 | 2.80 | 45.07 |

## 〈표 24〉 [제도 및 법적 기반]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05) | 4.9 | 16.1 | 42.0 | 31.7 | 5.4 | 21.0 | 42.0 | 37.1 | 3.17 | 54.15 |
| 권역별 | 경기 | (42) | 14.3 | 14.3 | 35.7 | 26.2 | 9.5 | 28.6 | 35.7 | 35.7 | 3.02 | 50.60 |
| | 강원 | (18) | 0.0 | 27.8 | 38.9 | 27.8 | 5.6 | 27.8 | 38.9 | 33.3 | 3.11 | 52.78 |
| | 충청 | (33) | 3.0 | 9.1 | 42.4 | 36.4 | 9.1 | 12.1 | 42.4 | 45.5 | 3.39 | 59.85 |
| | 전라 | (42) | 2.4 | 14.3 | 52.4 | 28.6 | 2.4 | 16.7 | 52.4 | 31.0 | 3.14 | 53.57 |
| | 경상 | (67) | 3.0 | 19.4 | 40.3 | 35.8 | 1.5 | 22.4 | 40.3 | 37.3 | 3.13 | 53.36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10.5 | 47.4 | 21.1 | 15.8 | 15.8 | 47.4 | 36.8 | 3.32 | 57.89 |
| | 기초지자체 | (186) | 4.8 | 16.7 | 41.4 | 32.8 | 4.3 | 21.5 | 41.4 | 37.1 | 3.15 | 53.76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11.1 | 22.2 | 22.2 | 44.4 | 0.0 | 33.3 | 22.2 | 44.4 | 3.00 | 50.00 |
| | 6급 | (31) | 9.7 | 19.4 | 35.5 | 22.6 | 12.9 | 29.0 | 35.5 | 35.5 | 3.10 | 52.42 |
| | 7급 | (64) | 3.1 | 12.5 | 48.4 | 28.1 | 7.8 | 15.6 | 48.4 | 35.9 | 3.25 | 56.25 |
| | 8급 | (54) | 3.7 | 20.4 | 40.7 | 31.5 | 3.7 | 24.1 | 40.7 | 35.2 | 3.11 | 52.78 |
| | 9급 | (35) | 2.9 | 11.4 | 48.6 | 37.1 | 0.0 | 14.3 | 48.6 | 37.1 | 3.20 | 55.00 |
| | 기타 | (8) | 12.5 | 12.5 | 25.0 | 50.0 | 0.0 | 25.0 | 25.0 | 50.0 | 3.13 | 53.13 |
| | 무응답 | (4) | 0.0 | 25.0 | 25.0 | 50.0 | 0.0 | 25.0 | 25.0 | 50.0 | 3.25 | 56.25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4.4 | 14.7 | 41.2 | 29.4 | 10.3 | 19.1 | 41.2 | 39.7 | 3.26 | 56.62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5.1 | 16.8 | 42.3 | 32.8 | 2.9 | 21.9 | 42.3 | 35.8 | 3.12 | 52.92 |

## 〈표 25〉 [제도 및 법적 기반]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05) | 6.3 | 20.0 | 57.1 | 13.7 | 2.9 | 26.3 | 57.1 | 16.6 | 2.87 | 46.71 |
| 권역별 | 경기 | (42) | 16.7 | 19.0 | 45.2 | 14.3 | 4.8 | 35.7 | 45.2 | 19.0 | 2.71 | 42.86 |
| | 강원 | (18) | 0.0 | 27.8 | 61.1 | 5.6 | 5.6 | 27.8 | 61.1 | 11.1 | 2.89 | 47.22 |
| | 충청 | (33) | 3.0 | 9.1 | 66.7 | 18.2 | 3.0 | 12.1 | 66.7 | 21.2 | 3.09 | 52.27 |
| | 전라 | (42) | 2.4 | 19.0 | 64.3 | 11.9 | 2.4 | 21.4 | 64.3 | 14.3 | 2.93 | 48.21 |
| | 경상 | (67) | 6.0 | 25.4 | 55.2 | 13.4 | 0.0 | 31.3 | 55.2 | 13.4 | 2.76 | 44.03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10.5 | 63.2 | 10.5 | 10.5 | 15.8 | 63.2 | 21.1 | 3.11 | 52.63 |
| | 기초지자체 | (186) | 6.5 | 21.0 | 56.5 | 14.0 | 2.2 | 27.4 | 56.5 | 16.1 | 2.84 | 46.10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11.1 | 22.2 | 44.4 | 22.2 | 0.0 | 33.3 | 44.4 | 22.2 | 2.78 | 44.44 |
| | 6급 | (31) | 16.1 | 12.9 | 48.4 | 19.4 | 3.2 | 29.0 | 48.4 | 22.6 | 2.81 | 45.16 |
| | 7급 | (64) | 3.1 | 21.9 | 57.8 | 12.5 | 4.7 | 25.0 | 57.8 | 17.2 | 2.94 | 48.44 |
| | 8급 | (54) | 5.6 | 24.1 | 57.4 | 9.3 | 3.7 | 29.6 | 57.4 | 13.0 | 2.81 | 45.37 |
| | 9급 | (35) | 2.9 | 20.0 | 68.6 | 8.6 | 0.0 | 22.9 | 68.6 | 8.6 | 2.83 | 45.71 |
| | 기타 | (8) | 12.5 | 0.0 | 50.0 | 37.5 | 0.0 | 12.5 | 50.0 | 37.5 | 3.13 | 53.13 |
| | 무응답 | (4) | 0.0 | 25.0 | 50.0 | 25.0 | 0.0 | 25.0 | 50.0 | 25.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5.9 | 11.8 | 60.3 | 14.7 | 7.4 | 17.6 | 60.3 | 22.1 | 3.06 | 51.47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6.6 | 24.1 | 55.5 | 13.1 | 0.7 | 30.7 | 55.5 | 13.9 | 2.77 | 44.34 |

## 〈표 26〉 [전담기관(기구)]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05) | 5.9 | 19.0 | 45.4 | 25.9 | 3.9 | 24.9 | 45.4 | 29.8 | 3.03 | 50.73 |
| 권역별 | 경기 | (42) | 14.3 | 26.2 | 38.1 | 19.0 | 2.4 | 40.5 | 38.1 | 21.4 | 2.69 | 42.26 |
| | 강원 | (18) | 0.0 | 27.8 | 44.4 | 22.2 | 5.6 | 27.8 | 44.4 | 27.8 | 3.06 | 51.39 |
| | 충청 | (33) | 3.0 | 3.0 | 60.6 | 30.3 | 3.0 | 6.1 | 60.6 | 33.3 | 3.27 | 56.82 |
| | 전라 | (42) | 4.8 | 21.4 | 42.9 | 28.6 | 2.4 | 26.2 | 42.9 | 31.0 | 3.02 | 50.60 |
| | 경상 | (67) | 4.5 | 19.4 | 44.8 | 26.9 | 4.5 | 23.9 | 44.8 | 31.3 | 3.07 | 51.87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10.5 | 57.9 | 21.1 | 5.3 | 15.8 | 57.9 | 26.3 | 3.11 | 52.63 |
| | 기초지자체 | (186) | 5.9 | 19.9 | 44.1 | 26.3 | 3.8 | 25.8 | 44.1 | 30.1 | 3.02 | 50.54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11.1 | 33.3 | 22.2 | 33.3 | 0.0 | 44.4 | 22.2 | 33.3 | 2.78 | 44.44 |
| | 6급 | (31) | 12.9 | 22.6 | 45.2 | 19.4 | 0.0 | 35.5 | 45.2 | 19.4 | 2.71 | 42.74 |
| | 7급 | (64) | 4.7 | 18.8 | 42.2 | 29.7 | 4.7 | 23.4 | 42.2 | 34.4 | 3.11 | 52.73 |
| | 8급 | (54) | 7.4 | 20.4 | 42.6 | 24.1 | 5.6 | 27.8 | 42.6 | 29.6 | 3.00 | 50.00 |
| | 9급 | (35) | 0.0 | 8.6 | 60.0 | 25.7 | 5.7 | 8.6 | 60.0 | 31.4 | 3.29 | 57.14 |
| | 기타 | (8) | 0.0 | 25.0 | 37.5 | 37.5 | 0.0 | 25.0 | 37.5 | 37.5 | 3.13 | 53.13 |
| | 무응답 | (4) | 0.0 | 25.0 | 75.0 | 0.0 | 0.0 | 25.0 | 75.0 | 0.0 | 2.75 | 43.75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7.4 | 11.8 | 47.1 | 27.9 | 5.9 | 19.1 | 47.1 | 33.8 | 3.13 | 53.31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5.1 | 22.6 | 44.5 | 24.8 | 2.9 | 27.7 | 44.5 | 27.7 | 2.98 | 49.45 |

## 〈표 27〉 [전담기관(기구)]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05) | 6.3 | 22.4 | 55.1 | 13.2 | 2.9 | 28.8 | 55.1 | 16.1 | 2.84 | 45.98 |
| 권역별 | 경기 | (42) | 11.9 | 33.3 | 38.1 | 14.3 | 2.4 | 45.2 | 38.1 | 16.7 | 2.62 | 40.48 |
| | 강원 | (18) | 0.0 | 33.3 | 61.1 | 0.0 | 5.6 | 33.3 | 61.1 | 5.6 | 2.78 | 44.44 |
| | 충청 | (33) | 3.0 | 6.1 | 69.7 | 18.2 | 3.0 | 9.1 | 69.7 | 21.2 | 3.12 | 53.03 |
| | 전라 | (42) | 4.8 | 21.4 | 59.5 | 11.9 | 2.4 | 26.2 | 59.5 | 14.3 | 2.86 | 46.43 |
| | 경상 | (67) | 7.5 | 22.4 | 55.2 | 13.4 | 1.5 | 29.9 | 55.2 | 14.9 | 2.79 | 44.78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15.8 | 63.2 | 10.5 | 5.3 | 21.1 | 63.2 | 15.8 | 2.95 | 48.68 |
| | 기초지자체 | (186) | 6.5 | 23.1 | 54.3 | 13.4 | 2.7 | 29.6 | 54.3 | 16.1 | 2.83 | 45.70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44.4 | 33.3 | 22.2 | 0.0 | 44.4 | 33.3 | 22.2 | 2.78 | 44.44 |
| | 6급 | (31) | 16.1 | 19.4 | 48.4 | 16.1 | 0.0 | 35.5 | 48.4 | 16.1 | 2.65 | 41.13 |
| | 7급 | (64) | 4.7 | 21.9 | 56.3 | 12.5 | 4.7 | 26.6 | 56.3 | 17.2 | 2.91 | 47.66 |
| | 8급 | (54) | 7.4 | 25.9 | 48.1 | 13.0 | 5.6 | 33.3 | 48.1 | 18.5 | 2.83 | 45.83 |
| | 9급 | (35) | 2.9 | 14.3 | 71.4 | 11.4 | 0.0 | 17.1 | 71.4 | 11.4 | 2.91 | 47.86 |
| | 기타 | (8) | 0.0 | 25.0 | 62.5 | 12.5 | 0.0 | 25.0 | 62.5 | 12.5 | 2.88 | 46.88 |
| | 무응답 | (4) | 0.0 | 25.0 | 75.0 | 0.0 | 0.0 | 25.0 | 75.0 | 0.0 | 2.75 | 43.75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7.4 | 11.8 | 54.4 | 20.6 | 5.9 | 19.1 | 54.4 | 26.5 | 3.06 | 51.47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5.8 | 27.7 | 55.5 | 9.5 | 1.5 | 33.6 | 55.5 | 10.9 | 2.73 | 43.25 |

## 〈표 28〉 [시설 등 자원]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05) | 6.3 | 21.5 | 49.8 | 18.5 | 3.9 | 27.8 | 49.8 | 22.4 | 2.92 | 48.05 |
| 권역별 | 경기 | (42) | 14.3 | 33.3 | 40.5 | 9.5 | 2.4 | 47.6 | 40.5 | 11.9 | 2.52 | 38.10 |
| | 강원 | (18) | 5.6 | 22.2 | 55.6 | 11.1 | 5.6 | 27.8 | 55.6 | 16.7 | 2.89 | 47.22 |
| | 충청 | (33) | 3.0 | 12.1 | 54.5 | 27.3 | 3.0 | 15.2 | 54.5 | 30.3 | 3.15 | 53.79 |
| | 전라 | (42) | 4.8 | 21.4 | 45.2 | 26.2 | 2.4 | 26.2 | 45.2 | 28.6 | 3.00 | 50.00 |
| | 경상 | (67) | 4.5 | 19.4 | 55.2 | 16.4 | 4.5 | 23.9 | 55.2 | 20.9 | 2.97 | 49.25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21.1 | 57.9 | 10.5 | 5.3 | 26.3 | 57.9 | 15.8 | 2.89 | 47.37 |
| | 기초지자체 | (186) | 6.5 | 21.5 | 48.9 | 19.4 | 3.8 | 28.0 | 48.9 | 23.1 | 2.92 | 48.12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11.1 | 33.3 | 33.3 | 22.2 | 0.0 | 44.4 | 33.3 | 22.2 | 2.67 | 41.67 |
| | 6급 | (31) | 12.9 | 22.6 | 45.2 | 16.1 | 3.2 | 35.5 | 45.2 | 19.4 | 2.74 | 43.55 |
| | 7급 | (64) | 6.3 | 17.2 | 54.7 | 17.2 | 4.7 | 23.4 | 54.7 | 21.9 | 2.97 | 49.22 |
| | 8급 | (54) | 7.4 | 25.9 | 44.4 | 16.7 | 5.6 | 33.3 | 44.4 | 22.2 | 2.87 | 46.76 |
| | 9급 | (35) | 0.0 | 17.1 | 54.3 | 25.7 | 2.9 | 17.1 | 54.3 | 28.6 | 3.14 | 53.57 |
| | 기타 | (8) | 0.0 | 25.0 | 50.0 | 25.0 | 0.0 | 25.0 | 50.0 | 25.0 | 3.00 | 50.00 |
| | 무응답 | (4) | 0.0 | 25.0 | 75.0 | 0.0 | 0.0 | 25.0 | 75.0 | 0.0 | 2.75 | 43.75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7.4 | 10.3 | 51.5 | 23.5 | 7.4 | 17.6 | 51.5 | 30.9 | 3.13 | 53.31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5.8 | 27.0 | 48.9 | 16.1 | 2.2 | 32.8 | 48.9 | 18.2 | 2.82 | 45.44 |

## 〈표 29〉 [시설 등 자원]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05) | 7.3 | 23.9 | 54.6 | 11.7 | 2.4 | 31.2 | 54.6 | 14.1 | 2.78 | 44.51 |
| 권역별 | 경기 | (42) | 14.3 | 33.3 | 40.5 | 9.5 | 2.4 | 47.6 | 40.5 | 11.9 | 2.52 | 38.10 |
| | 강원 | (18) | 5.6 | 33.3 | 55.6 | 0.0 | 5.6 | 38.9 | 55.6 | 5.6 | 2.67 | 41.67 |
| | 충청 | (33) | 3.0 | 12.1 | 66.7 | 15.2 | 3.0 | 15.2 | 66.7 | 18.2 | 3.03 | 50.76 |
| | 전라 | (42) | 4.8 | 23.8 | 57.1 | 11.9 | 2.4 | 28.6 | 57.1 | 14.3 | 2.83 | 45.83 |
| | 경상 | (67) | 7.5 | 22.4 | 56.7 | 13.4 | 0.0 | 29.9 | 56.7 | 13.4 | 2.76 | 44.03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21.1 | 63.2 | 5.3 | 5.3 | 26.3 | 63.2 | 10.5 | 2.84 | 46.05 |
| | 기초지자체 | (186) | 7.5 | 24.2 | 53.8 | 12.4 | 2.2 | 31.7 | 53.8 | 14.5 | 2.77 | 44.35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11.1 | 33.3 | 44.4 | 11.1 | 0.0 | 44.4 | 44.4 | 11.1 | 2.56 | 38.89 |
| | 6급 | (31) | 16.1 | 19.4 | 48.4 | 16.1 | 0.0 | 35.5 | 48.4 | 16.1 | 2.65 | 41.13 |
| | 7급 | (64) | 6.3 | 21.9 | 56.3 | 10.9 | 4.7 | 28.1 | 56.3 | 15.6 | 2.86 | 46.48 |
| | 8급 | (54) | 7.4 | 29.6 | 44.4 | 14.8 | 3.7 | 37.0 | 44.4 | 18.5 | 2.78 | 44.44 |
| | 9급 | (35) | 2.9 | 17.1 | 74.3 | 5.7 | 0.0 | 20.0 | 74.3 | 5.7 | 2.83 | 45.71 |
| | 기타 | (8) | 0.0 | 37.5 | 50.0 | 12.5 | 0.0 | 37.5 | 50.0 | 12.5 | 2.75 | 43.75 |
| | 무응답 | (4) | 0.0 | 25.0 | 75.0 | 0.0 | 0.0 | 25.0 | 75.0 | 0.0 | 2.75 | 43.75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7.4 | 13.2 | 54.4 | 19.1 | 5.9 | 20.6 | 54.4 | 25.0 | 3.03 | 50.74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7.3 | 29.2 | 54.7 | 8.0 | 0.7 | 36.5 | 54.7 | 8.8 | 2.66 | 41.42 |

## 〈표 30〉 [정보 및 자료]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05) | 5.4 | 10.7 | 42.0 | 30.7 | 11.2 | 16.1 | 42.0 | 42.0 | 3.32 | 57.93 |
| 권역별 | 경기 | (42) | 11.9 | 19.0 | 42.9 | 16.7 | 9.5 | 31.0 | 42.9 | 26.2 | 2.93 | 48.21 |
| | 강원 | (18) | 5.6 | 11.1 | 38.9 | 33.3 | 11.1 | 16.7 | 38.9 | 44.4 | 3.33 | 58.33 |
| | 충청 | (33) | 3.0 | 3.0 | 39.4 | 42.4 | 12.1 | 6.1 | 39.4 | 54.5 | 3.58 | 64.39 |
| | 전라 | (42) | 4.8 | 11.9 | 38.1 | 35.7 | 9.5 | 16.7 | 38.1 | 45.2 | 3.33 | 58.33 |
| | 경상 | (67) | 3.0 | 9.0 | 46.3 | 29.9 | 11.9 | 11.9 | 46.3 | 41.8 | 3.39 | 59.70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5.3 | 52.6 | 31.6 | 5.3 | 10.5 | 52.6 | 36.8 | 3.26 | 56.58 |
| | 기초지자체 | (186) | 5.4 | 11.3 | 40.9 | 30.6 | 11.8 | 16.7 | 40.9 | 42.5 | 3.32 | 58.06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33.3 | 22.2 | 44.4 | 0.0 | 33.3 | 22.2 | 44.4 | 3.11 | 52.78 |
| | 6급 | (31) | 12.9 | 16.1 | 45.2 | 19.4 | 6.5 | 29.0 | 45.2 | 25.8 | 2.90 | 47.58 |
| | 7급 | (64) | 4.7 | 4.7 | 45.3 | 34.4 | 10.9 | 9.4 | 45.3 | 45.3 | 3.42 | 60.55 |
| | 8급 | (54) | 7.4 | 14.8 | 35.2 | 25.9 | 16.7 | 22.2 | 35.2 | 42.6 | 3.30 | 57.41 |
| | 9급 | (35) | 0.0 | 2.9 | 48.6 | 34.3 | 14.3 | 2.9 | 48.6 | 48.6 | 3.60 | 65.00 |
| | 기타 | (8) | 0.0 | 12.5 | 25.0 | 62.5 | 0.0 | 12.5 | 25.0 | 62.5 | 3.50 | 62.50 |
| | 무응답 | (4) | 0.0 | 25.0 | 75.0 | 0.0 | 0.0 | 25.0 | 75.0 | 0.0 | 2.75 | 43.75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7.4 | 4.4 | 41.2 | 32.4 | 14.7 | 11.8 | 41.2 | 47.1 | 3.43 | 60.66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4.4 | 13.9 | 42.3 | 29.9 | 9.5 | 18.2 | 42.3 | 39.4 | 3.26 | 56.57 |

## 〈표 31〉 [정보 및 자료]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05) | 5.9 | 15.6 | 51.7 | 21.0 | 5.9 | 21.5 | 51.7 | 26.8 | 3.05 | 51.34 |
| 권역별 | 경기 | (42) | 11.9 | 23.8 | 42.9 | 11.9 | 9.5 | 35.7 | 42.9 | 21.4 | 2.83 | 45.83 |
| | 강원 | (18) | 5.6 | 22.2 | 44.4 | 22.2 | 5.6 | 27.8 | 44.4 | 27.8 | 3.00 | 50.00 |
| | 충청 | (33) | 3.0 | 6.1 | 57.6 | 27.3 | 6.1 | 9.1 | 57.6 | 33.3 | 3.27 | 56.82 |
| | 전라 | (42) | 4.8 | 11.9 | 52.4 | 28.6 | 2.4 | 16.7 | 52.4 | 31.0 | 3.12 | 52.98 |
| | 경상 | (67) | 4.5 | 16.4 | 56.7 | 17.9 | 4.5 | 20.9 | 56.7 | 22.4 | 3.01 | 50.37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15.8 | 63.2 | 10.5 | 5.3 | 21.1 | 63.2 | 15.8 | 2.95 | 48.68 |
| | 기초지자체 | (186) | 5.9 | 15.6 | 50.5 | 22.0 | 5.9 | 21.5 | 50.5 | 28.0 | 3.06 | 51.61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33.3 | 33.3 | 3.00 | 50.00 |
| | 6급 | (31) | 16.1 | 19.4 | 45.2 | 19.4 | 0.0 | 35.5 | 45.2 | 19.4 | 2.68 | 41.94 |
| | 7급 | (64) | 4.7 | 9.4 | 53.1 | 23.4 | 9.4 | 14.1 | 53.1 | 32.8 | 3.23 | 55.86 |
| | 8급 | (54) | 7.4 | 20.4 | 42.6 | 20.4 | 9.3 | 27.8 | 42.6 | 29.6 | 3.04 | 50.93 |
| | 9급 | (35) | 0.0 | 11.4 | 71.4 | 14.3 | 2.9 | 11.4 | 71.4 | 17.1 | 3.09 | 52.14 |
| | 기타 | (8) | 0.0 | 12.5 | 50.0 | 37.5 | 0.0 | 12.5 | 50.0 | 37.5 | 3.25 | 56.25 |
| | 무응답 | (4) | 0.0 | 25.0 | 75.0 | 0.0 | 0.0 | 25.0 | 75.0 | 0.0 | 2.75 | 43.75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7.4 | 10.3 | 45.6 | 27.9 | 8.8 | 17.6 | 45.6 | 36.8 | 3.21 | 55.15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5.1 | 18.2 | 54.7 | 17.5 | 4.4 | 23.4 | 54.7 | 21.9 | 2.98 | 49.45 |

## 〈표 32〉 [지역어 전문 인력]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05) | 6.3 | 15.1 | 42.4 | 29.3 | 6.8 | 21.5 | 42.4 | 36.1 | 3.15 | 53.78 |
| 권역별 | 경기 | (42) | 11.9 | 21.4 | 40.5 | 21.4 | 4.8 | 33.3 | 40.5 | 26.2 | 2.86 | 46.43 |
| | 강원 | (18) | 5.6 | 11.1 | 44.4 | 27.8 | 11.1 | 16.7 | 44.4 | 38.9 | 3.28 | 56.94 |
| | 충청 | (33) | 3.0 | 6.1 | 45.5 | 36.4 | 9.1 | 9.1 | 45.5 | 45.5 | 3.42 | 60.61 |
| | 전라 | (42) | 7.1 | 14.3 | 38.1 | 33.3 | 7.1 | 21.4 | 38.1 | 40.5 | 3.19 | 54.76 |
| | 경상 | (67) | 4.5 | 17.9 | 44.8 | 28.4 | 4.5 | 22.4 | 44.8 | 32.8 | 3.10 | 52.61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5.3 | 63.2 | 21.1 | 5.3 | 10.5 | 63.2 | 26.3 | 3.16 | 53.95 |
| | 기초지자체 | (186) | 6.5 | 16.1 | 40.3 | 30.1 | 7.0 | 22.6 | 40.3 | 37.1 | 3.15 | 53.76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11.1 | 33.3 | 11.1 | 44.4 | 0.0 | 44.4 | 11.1 | 44.4 | 2.89 | 47.22 |
| | 6급 | (31) | 12.9 | 16.1 | 41.9 | 25.8 | 3.2 | 29.0 | 41.9 | 29.0 | 2.90 | 47.58 |
| | 7급 | (64) | 6.3 | 9.4 | 45.3 | 32.8 | 6.3 | 15.6 | 45.3 | 39.1 | 3.23 | 55.86 |
| | 8급 | (54) | 7.4 | 16.7 | 38.9 | 29.6 | 7.4 | 24.1 | 38.9 | 37.0 | 3.13 | 53.24 |
| | 9급 | (35) | 0.0 | 8.6 | 57.1 | 22.9 | 11.4 | 8.6 | 57.1 | 34.3 | 3.37 | 59.29 |
| | 기타 | (8) | 0.0 | 37.5 | 25.0 | 25.0 | 12.5 | 37.5 | 25.0 | 37.5 | 3.13 | 53.13 |
| | 무응답 | (4) | 0.0 | 50.0 | 25.0 | 25.0 | 0.0 | 50.0 | 25.0 | 25.0 | 2.75 | 43.75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8.8 | 10.3 | 41.2 | 32.4 | 7.4 | 19.1 | 41.2 | 39.7 | 3.19 | 54.78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5.1 | 17.5 | 43.1 | 27.7 | 6.6 | 22.6 | 43.1 | 34.3 | 3.13 | 53.28 |

## 〈표 33〉 [지역어 전문 인력]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05) | 7.8 | 19.0 | 53.2 | 16.6 | 3.4 | 26.8 | 53.2 | 20.0 | 2.89 | 47.20 |
| 권역별 | 경기 | (42) | 11.9 | 26.2 | 47.6 | 11.9 | 2.4 | 38.1 | 47.6 | 14.3 | 2.67 | 41.67 |
| | 강원 | (18) | 11.1 | 16.7 | 44.4 | 22.2 | 5.6 | 27.8 | 44.4 | 27.8 | 2.94 | 48.61 |
| | 충청 | (33) | 3.0 | 9.1 | 60.6 | 21.2 | 6.1 | 12.1 | 60.6 | 27.3 | 3.18 | 54.55 |
| | 전라 | (42) | 7.1 | 16.7 | 54.8 | 19.0 | 2.4 | 23.8 | 54.8 | 21.4 | 2.93 | 48.21 |
| | 경상 | (67) | 7.5 | 22.4 | 55.2 | 13.4 | 1.5 | 29.9 | 55.2 | 14.9 | 2.79 | 44.78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21.1 | 57.9 | 10.5 | 5.3 | 26.3 | 57.9 | 15.8 | 2.89 | 47.37 |
| | 기초지자체 | (186) | 8.1 | 18.8 | 52.7 | 17.2 | 3.2 | 26.9 | 52.7 | 20.4 | 2.89 | 47.18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44.4 | 22.2 | 33.3 | 0.0 | 44.4 | 22.2 | 33.3 | 2.89 | 47.22 |
| | 6급 | (31) | 22.6 | 16.1 | 45.2 | 16.1 | 0.0 | 38.7 | 45.2 | 16.1 | 2.55 | 38.71 |
| | 7급 | (64) | 6.3 | 15.6 | 54.7 | 17.2 | 6.3 | 21.9 | 54.7 | 23.4 | 3.02 | 50.39 |
| | 8급 | (54) | 7.4 | 24.1 | 50.0 | 13.0 | 5.6 | 31.5 | 50.0 | 18.5 | 2.85 | 46.30 |
| | 9급 | (35) | 2.9 | 8.6 | 71.4 | 17.1 | 0.0 | 11.4 | 71.4 | 17.1 | 3.03 | 50.71 |
| | 기타 | (8) | 0.0 | 25.0 | 50.0 | 25.0 | 0.0 | 25.0 | 50.0 | 25.0 | 3.00 | 50.00 |
| | 무응답 | (4) | 0.0 | 50.0 | 50.0 | 0.0 | 0.0 | 50.0 | 50.0 | 0.0 | 2.50 | 37.5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10.3 | 11.8 | 52.9 | 19.1 | 5.9 | 22.1 | 52.9 | 25.0 | 2.99 | 49.63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6.6 | 22.6 | 53.3 | 15.3 | 2.2 | 29.2 | 53.3 | 17.5 | 2.84 | 45.99 |

## 〈표 34〉 [지자체의 업무 담당자 역량]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05) | 5.4 | 15.1 | 50.2 | 25.4 | 3.9 | 20.5 | 50.2 | 29.3 | 3.07 | 51.83 |
| 권역별 | 경기 | (42) | 9.5 | 16.7 | 54.8 | 16.7 | 2.4 | 26.2 | 54.8 | 19.0 | 2.86 | 46.43 |
| | 강원 | (18) | 5.6 | 22.2 | 38.9 | 22.2 | 11.1 | 27.8 | 38.9 | 33.3 | 3.11 | 52.78 |
| | 충청 | (33) | 0.0 | 9.1 | 51.5 | 36.4 | 3.0 | 9.1 | 51.5 | 39.4 | 3.33 | 58.33 |
| | 전라 | (42) | 4.8 | 16.7 | 54.8 | 19.0 | 4.8 | 21.4 | 54.8 | 23.8 | 3.02 | 50.60 |
| | 경상 | (67) | 6.0 | 14.9 | 49.3 | 28.4 | 1.5 | 20.9 | 49.3 | 29.9 | 3.04 | 51.12 |
| | 제주 | (3) | 0.0 | 0.0 | 0.0 | 66.7 | 33.3 | 0.0 | 0.0 | 100.0 | 4.33 | 83.33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0.0 | 15.8 | 68.4 | 10.5 | 5.3 | 15.8 | 68.4 | 15.8 | 3.05 | 51.32 |
| | 기초지자체 | (186) | 5.9 | 15.1 | 48.4 | 26.9 | 3.8 | 21.0 | 48.4 | 30.6 | 3.08 | 51.88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44.4 | 11.1 | 44.4 | 0.0 | 44.4 | 11.1 | 44.4 | 3.00 | 50.00 |
| | 6급 | (31) | 9.7 | 22.6 | 45.2 | 19.4 | 3.2 | 32.3 | 45.2 | 22.6 | 2.84 | 45.97 |
| | 7급 | (64) | 3.1 | 14.1 | 54.7 | 23.4 | 4.7 | 17.2 | 54.7 | 28.1 | 3.13 | 53.13 |
| | 8급 | (54) | 9.3 | 13.0 | 48.1 | 24.1 | 5.6 | 22.2 | 48.1 | 29.6 | 3.04 | 50.93 |
| | 9급 | (35) | 2.9 | 5.7 | 57.1 | 34.3 | 0.0 | 8.6 | 57.1 | 34.3 | 3.23 | 55.71 |
| | 기타 | (8) | 0.0 | 25.0 | 37.5 | 25.0 | 12.5 | 25.0 | 37.5 | 37.5 | 3.25 | 56.25 |
| | 무응답 | (4)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5.9 | 10.3 | 47.1 | 29.4 | 7.4 | 16.2 | 47.1 | 36.8 | 3.22 | 55.51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5.1 | 17.5 | 51.8 | 23.4 | 2.2 | 22.6 | 51.8 | 25.5 | 3.00 | 50.00 |

## 〈표 35〉 [지자체의 업무 담당자 역량]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05) | 6.8 | 19.0 | 56.6 | 14.6 | 2.9 | 25.9 | 56.6 | 17.6 | 2.88 | 46.95 |
| 권역별 | 경기 | (42) | 9.5 | 26.2 | 50.0 | 11.9 | 2.4 | 35.7 | 50.0 | 14.3 | 2.71 | 42.86 |
| | 강원 | (18) | 5.6 | 22.2 | 55.6 | 11.1 | 5.6 | 27.8 | 55.6 | 16.7 | 2.89 | 47.22 |
| | 충청 | (33) | 0.0 | 12.1 | 66.7 | 18.2 | 3.0 | 12.1 | 66.7 | 21.2 | 3.12 | 53.03 |
| | 전라 | (42) | 4.8 | 19.0 | 66.7 | 4.8 | 4.8 | 23.8 | 66.7 | 9.5 | 2.86 | 46.43 |
| | 경상 | (67) | 10.4 | 17.9 | 52.2 | 19.4 | 0.0 | 28.4 | 52.2 | 19.4 | 2.81 | 45.15 |
| | 제주 | (3) | 0.0 | 0.0 | 0.0 | 66.7 | 33.3 | 0.0 | 0.0 | 100.0 | 4.33 | 83.33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15.8 | 68.4 | 5.3 | 5.3 | 21.1 | 68.4 | 10.5 | 2.89 | 47.37 |
| | 기초지자체 | (186) | 7.0 | 19.4 | 55.4 | 15.6 | 2.7 | 26.3 | 55.4 | 18.3 | 2.88 | 46.91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44.4 | 22.2 | 33.3 | 0.0 | 44.4 | 22.2 | 33.3 | 2.89 | 47.22 |
| | 6급 | (31) | 16.1 | 19.4 | 48.4 | 12.9 | 3.2 | 35.5 | 48.4 | 16.1 | 2.68 | 41.94 |
| | 7급 | (64) | 3.1 | 21.9 | 53.1 | 17.2 | 4.7 | 25.0 | 53.1 | 21.9 | 2.98 | 49.61 |
| | 8급 | (54) | 9.3 | 16.7 | 59.3 | 11.1 | 3.7 | 25.9 | 59.3 | 14.8 | 2.83 | 45.83 |
| | 9급 | (35) | 5.7 | 11.4 | 74.3 | 8.6 | 0.0 | 17.1 | 74.3 | 8.6 | 2.86 | 46.43 |
| | 기타 | (8) | 0.0 | 25.0 | 50.0 | 25.0 | 0.0 | 25.0 | 50.0 | 25.0 | 3.00 | 50.00 |
| | 무응답 | (4) | 0.0 | 0.0 | 75.0 | 25.0 | 0.0 | 0.0 | 75.0 | 25.0 | 3.25 | 56.25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7.4 | 11.8 | 57.4 | 16.2 | 7.4 | 19.1 | 57.4 | 23.5 | 3.04 | 51.10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6.6 | 22.6 | 56.2 | 13.9 | 0.7 | 29.2 | 56.2 | 14.6 | 2.80 | 44.89 |

## 〈표 36〉 [지자체장의 의지]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05) | 8.3 | 11.7 | 44.9 | 27.3 | 7.8 | 20.0 | 44.9 | 35.1 | 3.15 | 53.66 |
| 권역별 | 경기 | (42) | 11.9 | 11.9 | 47.6 | 26.2 | 2.4 | 23.8 | 47.6 | 28.6 | 2.95 | 48.81 |
| | 강원 | (18) | 0.0 | 16.7 | 50.0 | 22.2 | 11.1 | 16.7 | 50.0 | 33.3 | 3.28 | 56.94 |
| | 충청 | (33) | 3.0 | 6.1 | 48.5 | 39.4 | 3.0 | 9.1 | 48.5 | 42.4 | 3.33 | 58.33 |
| | 전라 | (42) | 7.1 | 11.9 | 45.2 | 26.2 | 9.5 | 19.0 | 45.2 | 35.7 | 3.19 | 54.76 |
| | 경상 | (67) | 11.9 | 13.4 | 41.8 | 22.4 | 10.4 | 25.4 | 41.8 | 32.8 | 3.06 | 51.49 |
| | 제주 | (3) | 0.0 | 0.0 | 0.0 | 66.7 | 33.3 | 0.0 | 0.0 | 100.0 | 4.33 | 83.33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10.5 | 47.4 | 31.6 | 5.3 | 15.8 | 47.4 | 36.8 | 3.21 | 55.26 |
| | 기초지자체 | (186) | 8.6 | 11.8 | 44.6 | 26.9 | 8.1 | 20.4 | 44.6 | 34.9 | 3.14 | 53.49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33.3 | 22.2 | 44.4 | 0.0 | 33.3 | 22.2 | 44.4 | 3.11 | 52.78 |
| | 6급 | (31) | 19.4 | 16.1 | 38.7 | 22.6 | 3.2 | 35.5 | 38.7 | 25.8 | 2.74 | 43.55 |
| | 7급 | (64) | 7.8 | 7.8 | 46.9 | 28.1 | 9.4 | 15.6 | 46.9 | 37.5 | 3.23 | 55.86 |
| | 8급 | (54) | 7.4 | 14.8 | 44.4 | 27.8 | 5.6 | 22.2 | 44.4 | 33.3 | 3.09 | 52.31 |
| | 9급 | (35) | 5.7 | 5.7 | 45.7 | 28.6 | 14.3 | 11.4 | 45.7 | 42.9 | 3.40 | 60.00 |
| | 기타 | (8) | 0.0 | 12.5 | 50.0 | 25.0 | 12.5 | 12.5 | 50.0 | 37.5 | 3.38 | 59.38 |
| | 무응답 | (4)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8.8 | 4.4 | 45.6 | 26.5 | 14.7 | 13.2 | 45.6 | 41.2 | 3.34 | 58.46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8.0 | 15.3 | 44.5 | 27.7 | 4.4 | 23.4 | 44.5 | 32.1 | 3.05 | 51.28 |

## 〈표 37〉 [지자체장의 의지]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05) | 8.8 | 16.1 | 54.1 | 16.6 | 4.4 | 24.9 | 54.1 | 21.0 | 2.92 | 47.93 |
| 권역별 | 경기 | (42) | 11.9 | 19.0 | 54.8 | 14.3 | 0.0 | 31.0 | 54.8 | 14.3 | 2.71 | 42.86 |
| | 강원 | (18) | 0.0 | 16.7 | 66.7 | 11.1 | 5.6 | 16.7 | 66.7 | 16.7 | 3.06 | 51.39 |
| | 충청 | (33) | 3.0 | 12.1 | 57.6 | 24.2 | 3.0 | 15.2 | 57.6 | 27.3 | 3.12 | 53.03 |
| | 전라 | (42) | 7.1 | 14.3 | 59.5 | 16.7 | 2.4 | 21.4 | 59.5 | 19.0 | 2.93 | 48.21 |
| | 경상 | (67) | 13.4 | 17.9 | 47.8 | 13.4 | 7.5 | 31.3 | 47.8 | 20.9 | 2.84 | 45.90 |
| | 제주 | (3) | 0.0 | 0.0 | 0.0 | 66.7 | 33.3 | 0.0 | 0.0 | 100.0 | 4.33 | 83.33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21.1 | 52.6 | 15.8 | 5.3 | 26.3 | 52.6 | 21.1 | 2.95 | 48.68 |
| | 기초지자체 | (186) | 9.1 | 15.6 | 54.3 | 16.7 | 4.3 | 24.7 | 54.3 | 21.0 | 2.91 | 47.85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33.3 | 33.3 | 3.00 | 50.00 |
| | 6급 | (31) | 22.6 | 12.9 | 41.9 | 22.6 | 0.0 | 35.5 | 41.9 | 22.6 | 2.65 | 41.13 |
| | 7급 | (64) | 7.8 | 14.1 | 54.7 | 15.6 | 7.8 | 21.9 | 54.7 | 23.4 | 3.02 | 50.39 |
| | 8급 | (54) | 7.4 | 22.2 | 53.7 | 13.0 | 3.7 | 29.6 | 53.7 | 16.7 | 2.83 | 45.83 |
| | 9급 | (35) | 5.7 | 11.4 | 65.7 | 11.4 | 5.7 | 17.1 | 65.7 | 17.1 | 3.00 | 50.00 |
| | 기타 | (8) | 0.0 | 12.5 | 62.5 | 25.0 | 0.0 | 12.5 | 62.5 | 25.0 | 3.13 | 53.13 |
| | 무응답 | (4) | 0.0 | 0.0 | 75.0 | 25.0 | 0.0 | 0.0 | 75.0 | 25.0 | 3.25 | 56.25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8.8 | 7.4 | 55.9 | 19.1 | 8.8 | 16.2 | 55.9 | 27.9 | 3.12 | 52.94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8.8 | 20.4 | 53.3 | 15.3 | 2.2 | 29.2 | 53.3 | 17.5 | 2.82 | 45.44 |

## 〈표 38〉 [지역주민의 인식] - 해당 자원의 중요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05) | 7.3 | 14.6 | 44.9 | 28.3 | 4.9 | 22.0 | 44.9 | 33.2 | 3.09 | 52.20 |
| 권역별 | 경기 | (42) | 14.3 | 19.0 | 40.5 | 21.4 | 4.8 | 33.3 | 40.5 | 26.2 | 2.83 | 45.83 |
| | 강원 | (18) | 0.0 | 27.8 | 44.4 | 22.2 | 5.6 | 27.8 | 44.4 | 27.8 | 3.06 | 51.39 |
| | 충청 | (33) | 3.0 | 9.1 | 45.5 | 39.4 | 3.0 | 12.1 | 45.5 | 42.4 | 3.30 | 57.58 |
| | 전라 | (42) | 7.1 | 16.7 | 45.2 | 26.2 | 4.8 | 23.8 | 45.2 | 31.0 | 3.05 | 51.19 |
| | 경상 | (67) | 7.5 | 10.4 | 47.8 | 29.9 | 4.5 | 17.9 | 47.8 | 34.3 | 3.13 | 53.36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10.5 | 52.6 | 26.3 | 5.3 | 15.8 | 52.6 | 31.6 | 3.16 | 53.95 |
| | 기초지자체 | (186) | 7.5 | 15.1 | 44.1 | 28.5 | 4.8 | 22.6 | 44.1 | 33.3 | 3.08 | 52.02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44.4 | 11.1 | 44.4 | 0.0 | 44.4 | 11.1 | 44.4 | 3.00 | 50.00 |
| | 6급 | (31) | 22.6 | 12.9 | 41.9 | 22.6 | 0.0 | 35.5 | 41.9 | 22.6 | 2.65 | 41.13 |
| | 7급 | (64) | 4.7 | 9.4 | 54.7 | 25.0 | 6.3 | 14.1 | 54.7 | 31.3 | 3.19 | 54.69 |
| | 8급 | (54) | 7.4 | 22.2 | 35.2 | 27.8 | 7.4 | 29.6 | 35.2 | 35.2 | 3.06 | 51.39 |
| | 9급 | (35) | 2.9 | 2.9 | 48.6 | 40.0 | 5.7 | 5.7 | 48.6 | 45.7 | 3.43 | 60.71 |
| | 기타 | (8) | 0.0 | 37.5 | 50.0 | 12.5 | 0.0 | 37.5 | 50.0 | 12.5 | 2.75 | 43.75 |
| | 무응답 | (4) | 0.0 | 0.0 | 75.0 | 25.0 | 0.0 | 0.0 | 75.0 | 25.0 | 3.25 | 56.25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10.3 | 7.4 | 44.1 | 29.4 | 8.8 | 17.6 | 44.1 | 38.2 | 3.19 | 54.78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5.8 | 18.2 | 45.3 | 27.7 | 2.9 | 24.1 | 45.3 | 30.7 | 3.04 | 50.91 |

## 〈표 39〉 [지역주민의 인식] – 해당 자원의 시급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05) | 7.8 | 22.0 | 50.7 | 15.6 | 3.9 | 29.8 | 50.7 | 19.5 | 2.86 | 46.46 |
| 권역별 | 경기 | (42) | 11.9 | 31.0 | 47.6 | 4.8 | 4.8 | 42.9 | 47.6 | 9.5 | 2.60 | 39.88 |
| | 강원 | (18) | 5.6 | 22.2 | 50.0 | 16.7 | 5.6 | 27.8 | 50.0 | 22.2 | 2.94 | 48.61 |
| | 충청 | (33) | 3.0 | 15.2 | 54.5 | 24.2 | 3.0 | 18.2 | 54.5 | 27.3 | 3.09 | 52.27 |
| | 전라 | (42) | 7.1 | 21.4 | 54.8 | 14.3 | 2.4 | 28.6 | 54.8 | 16.7 | 2.83 | 45.83 |
| | 경상 | (67) | 9.0 | 20.9 | 50.7 | 16.4 | 3.0 | 29.9 | 50.7 | 19.4 | 2.84 | 45.90 |
| | 제주 | (3) | 0.0 | 0.0 | 0.0 | 66.7 | 33.3 | 0.0 | 0.0 | 100.0 | 4.33 | 83.33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21.1 | 52.6 | 15.8 | 5.3 | 26.3 | 52.6 | 21.1 | 2.95 | 48.68 |
| | 기초지자체 | (186) | 8.1 | 22.0 | 50.5 | 15.6 | 3.8 | 30.1 | 50.5 | 19.4 | 2.85 | 46.24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44.4 | 22.2 | 33.3 | 0.0 | 44.4 | 22.2 | 33.3 | 2.89 | 47.22 |
| | 6급 | (31) | 19.4 | 22.6 | 41.9 | 16.1 | 0.0 | 41.9 | 41.9 | 16.1 | 2.55 | 38.71 |
| | 7급 | (64) | 4.7 | 18.8 | 56.3 | 14.1 | 6.3 | 23.4 | 56.3 | 20.3 | 2.98 | 49.61 |
| | 8급 | (54) | 7.4 | 31.5 | 40.7 | 16.7 | 3.7 | 38.9 | 40.7 | 20.4 | 2.78 | 44.44 |
| | 9급 | (35) | 5.7 | 8.6 | 65.7 | 14.3 | 5.7 | 14.3 | 65.7 | 20.0 | 3.06 | 51.43 |
| | 기타 | (8) | 12.5 | 25.0 | 50.0 | 12.5 | 0.0 | 37.5 | 50.0 | 12.5 | 2.63 | 40.63 |
| | 무응답 | (4)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10.3 | 11.8 | 51.5 | 19.1 | 7.4 | 22.1 | 51.5 | 26.5 | 3.01 | 50.37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6.6 | 27.0 | 50.4 | 13.9 | 2.2 | 33.6 | 50.4 | 16.1 | 2.78 | 44.53 |

## 〈표 40〉 [추진 역할구분] - 국가(공공)주도 / 민간주도

| 구분 | | 사례 수 | 국가(공공)주도 | ← | ← | (중간) | → | → | 민간주도 | 종합 | | | 7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 | 공공주도 | 중간 | 민간주도 | | |
| 전체 | | (205) | 7.3 | 8.3 | 13.2 | 41.5 | 10.7 | 6.8 | 12.2 | 28.8 | 41.5 | 29.8 | 4.09 | 51.54 |
| 권역별 | 경기 | (42) | 9.5 | 14.3 | 14.3 | 31.0 | 7.1 | 9.5 | 14.3 | 38.1 | 31.0 | 31.0 | 3.98 | 49.60 |
| | 강원 | (18) | 0.0 | 11.1 | 11.1 | 44.4 | 11.1 | 5.6 | 16.7 | 22.2 | 44.4 | 33.3 | 4.39 | 56.48 |
| | 충청 | (33) | 12.1 | 6.1 | 9.1 | 51.5 | 12.1 | 3.0 | 6.1 | 27.3 | 51.5 | 21.2 | 3.79 | 46.46 |
| | 전라 | (42) | 2.4 | 7.1 | 11.9 | 40.5 | 21.4 | 9.5 | 7.1 | 21.4 | 40.5 | 38.1 | 4.29 | 54.76 |
| | 경상 | (67) | 9.0 | 6.0 | 14.9 | 41.8 | 6.0 | 6.0 | 16.4 | 29.9 | 41.8 | 28.4 | 4.13 | 52.24 |
| | 제주 | (3) | 0.0 | 0.0 | 33.3 | 66.7 | 0.0 | 0.0 | 0.0 | 33.3 | 66.7 | 0.0 | 3.67 | 44.44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10.5 | 5.3 | 15.8 | 42.1 | 10.5 | 5.3 | 10.5 | 31.6 | 42.1 | 26.3 | 3.95 | 49.12 |
| | 기초지자체 | (186) | 7.0 | 8.6 | 12.9 | 41.4 | 10.8 | 7.0 | 12.4 | 28.5 | 41.4 | 30.1 | 4.11 | 51.79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0.0 | 22.2 | 33.3 | 11.1 | 11.1 | 22.2 | 22.2 | 33.3 | 44.4 | 4.78 | 62.96 |
| | 6급 | (31) | 3.2 | 3.2 | 19.4 | 38.7 | 3.2 | 6.5 | 25.8 | 25.8 | 38.7 | 35.5 | 4.58 | 59.68 |
| | 7급 | (64) | 15.6 | 9.4 | 7.8 | 42.2 | 7.8 | 7.8 | 9.4 | 32.8 | 42.2 | 25.0 | 3.78 | 46.35 |
| | 8급 | (54) | 5.6 | 11.1 | 13.0 | 38.9 | 16.7 | 5.6 | 9.3 | 29.6 | 38.9 | 31.5 | 4.04 | 50.62 |
| | 9급 | (35) | 2.9 | 5.7 | 14.3 | 42.9 | 17.1 | 5.7 | 11.4 | 22.9 | 42.9 | 34.3 | 4.29 | 54.76 |
| | 기타 | (8) | 0.0 | 25.0 | 12.5 | 50.0 | 0.0 | 12.5 | 0.0 | 37.5 | 50.0 | 12.5 | 3.63 | 43.75 |
| | 무응답 | (4) | 0.0 | 0.0 | 25.0 | 75.0 | 0.0 | 0.0 | 0.0 | 25.0 | 75.0 | 0.0 | 3.75 | 45.83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8.8 | 8.8 | 11.8 | 42.6 | 10.3 | 4.4 | 13.2 | 29.4 | 42.6 | 27.9 | 4.03 | 50.49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6.6 | 8.0 | 13.9 | 40.9 | 10.9 | 8.0 | 11.7 | 28.5 | 40.9 | 30.7 | 4.12 | 52.07 |

## 〈표 41〉 [추진 역할구분] - 중앙정부 중심 / 지방정부 중심

| 구분 | | 사례 수 | 중앙 정부 중심 | ← | ← | (중간) | → | → | 지자체 중심 | 종합 | | | 7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 | 중앙 정부 | 중간 | 지방 정부 | | |
| 전체 | | (205) | 14.1 | 9.3 | 13.7 | 36.6 | 10.7 | 8.8 | 6.8 | 37.1 | 36.6 | 26.3 | 3.74 | 45.69 |
| 권역별 | 경기 | (42) | 16.7 | 11.9 | 19.0 | 31.0 | 4.8 | 9.5 | 7.1 | 47.6 | 31.0 | 21.4 | 3.52 | 42.06 |
| | 강원 | (18) | 11.1 | 5.6 | 16.7 | 44.4 | 0.0 | 11.1 | 11.1 | 33.3 | 44.4 | 22.2 | 3.94 | 49.07 |
| | 충청 | (33) | 15.2 | 15.2 | 12.1 | 36.4 | 15.2 | 3.0 | 3.0 | 42.4 | 36.4 | 21.2 | 3.42 | 40.40 |
| | 전라 | (42) | 9.5 | 9.5 | 9.5 | 38.1 | 16.7 | 11.9 | 4.8 | 28.6 | 38.1 | 33.3 | 3.98 | 49.60 |
| | 경상 | (67) | 16.4 | 6.0 | 13.4 | 35.8 | 11.9 | 9.0 | 7.5 | 35.8 | 35.8 | 28.4 | 3.78 | 46.27 |
| | 제주 | (3) | 0.0 | 0.0 | 0.0 | 66.7 | 0.0 | 0.0 | 33.3 | 0.0 | 66.7 | 33.3 | 5.00 | 66.67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15.8 | 5.3 | 15.8 | 42.1 | 5.3 | 15.8 | 0.0 | 36.8 | 42.1 | 21.1 | 3.63 | 43.86 |
| | 기초지자체 | (186) | 14.0 | 9.7 | 13.4 | 36.0 | 11.3 | 8.1 | 7.5 | 37.1 | 36.0 | 26.9 | 3.75 | 45.88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11.1 | 11.1 | 22.2 | 22.2 | 11.1 | 0.0 | 22.2 | 44.4 | 22.2 | 33.3 | 4.00 | 50.00 |
| | 6급 | (31) | 9.7 | 6.5 | 12.9 | 45.2 | 9.7 | 9.7 | 6.5 | 29.0 | 45.2 | 25.8 | 3.94 | 48.92 |
| | 7급 | (64) | 18.8 | 7.8 | 12.5 | 32.8 | 6.3 | 10.9 | 10.9 | 39.1 | 32.8 | 28.1 | 3.77 | 46.09 |
| | 8급 | (54) | 14.8 | 14.8 | 14.8 | 35.2 | 11.1 | 5.6 | 3.7 | 44.4 | 35.2 | 20.4 | 3.44 | 40.74 |
| | 9급 | (35) | 14.3 | 8.6 | 8.6 | 34.3 | 20.0 | 11.4 | 2.9 | 31.4 | 34.3 | 34.3 | 3.83 | 47.14 |
| | 기타 | (8) | 0.0 | 0.0 | 25.0 | 50.0 | 12.5 | 12.5 | 0.0 | 25.0 | 50.0 | 25.0 | 4.13 | 52.08 |
| | 무응답 | (4) | 0.0 | 0.0 | 25.0 | 75.0 | 0.0 | 0.0 | 0.0 | 25.0 | 75.0 | 0.0 | 3.75 | 45.83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11.8 | 10.3 | 10.3 | 39.7 | 7.4 | 10.3 | 10.3 | 32.4 | 39.7 | 27.9 | 3.93 | 48.77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15.3 | 8.8 | 15.3 | 35.0 | 12.4 | 8.0 | 5.1 | 39.4 | 35.0 | 25.5 | 3.65 | 44.16 |

## 〈표 42〉 [추진 역할구분] - 행정인력 중심 / 전문인력 중심

| 구분 | | 사례 수 | 행정 인력 중심 | ← | ← | (중간) | → | → | 전문 인력 중심 | 종합 | | | 7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 | 행정 인력 | 중간 | 전문 인력 | | |
| 전체 | | (205) | 1.0 | 1.0 | 2.0 | 29.8 | 12.7 | 24.9 | 28.8 | 3.9 | 29.8 | 66.3 | 5.42 | 73.66 |
| 권역별 | 경기 | (42) | 2.4 | 2.4 | 2.4 | 21.4 | 14.3 | 23.8 | 33.3 | 7.1 | 21.4 | 71.4 | 5.48 | 74.60 |
| | 강원 | (18) | 0.0 | 0.0 | 0.0 | 33.3 | 5.6 | 27.8 | 33.3 | 0.0 | 33.3 | 66.7 | 5.61 | 76.85 |
| | 충청 | (33) | 3.0 | 0.0 | 0.0 | 36.4 | 9.1 | 24.2 | 27.3 | 3.0 | 36.4 | 60.6 | 5.30 | 71.72 |
| | 전라 | (42) | 0.0 | 0.0 | 2.4 | 23.8 | 21.4 | 31.0 | 21.4 | 2.4 | 23.8 | 73.8 | 5.45 | 74.21 |
| | 경상 | (67) | 0.0 | 1.5 | 3.0 | 34.3 | 9.0 | 22.4 | 29.9 | 4.5 | 34.3 | 61.2 | 5.37 | 72.89 |
| | 제주 | (3) | 0.0 | 0.0 | 0.0 | 33.3 | 33.3 | 0.0 | 33.3 | 0.0 | 33.3 | 66.7 | 5.33 | 72.22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0.0 | 0.0 | 0.0 | 26.3 | 0.0 | 26.3 | 47.4 | 0.0 | 26.3 | 73.7 | 5.95 | 82.46 |
| | 기초지자체 | (186) | 1.1 | 1.1 | 2.2 | 30.1 | 14.0 | 24.7 | 26.9 | 4.3 | 30.1 | 65.6 | 5.37 | 72.76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11.1 | 0.0 | 0.0 | 22.2 | 33.3 | 22.2 | 11.1 | 11.1 | 22.2 | 66.7 | 4.78 | 62.96 |
| | 6급 | (31) | 0.0 | 3.2 | 0.0 | 38.7 | 3.2 | 22.6 | 32.3 | 3.2 | 38.7 | 58.1 | 5.39 | 73.12 |
| | 7급 | (64) | 1.6 | 1.6 | 0.0 | 26.6 | 12.5 | 20.3 | 37.5 | 3.1 | 26.6 | 70.3 | 5.58 | 76.30 |
| | 8급 | (54) | 0.0 | 0.0 | 3.7 | 27.8 | 14.8 | 27.8 | 25.9 | 3.7 | 27.8 | 68.5 | 5.44 | 74.07 |
| | 9급 | (35) | 0.0 | 0.0 | 2.9 | 28.6 | 8.6 | 34.3 | 25.7 | 2.9 | 28.6 | 68.6 | 5.51 | 75.24 |
| | 기타 | (8) | 0.0 | 0.0 | 0.0 | 25.0 | 37.5 | 25.0 | 12.5 | 0.0 | 25.0 | 75.0 | 5.25 | 70.83 |
| | 무응답 | (4) | 0.0 | 0.0 | 25.0 | 75.0 | 0.0 | 0.0 | 0.0 | 25.0 | 75.0 | 0.0 | 3.75 | 45.83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0.0 | 0.0 | 2.9 | 32.4 | 13.2 | 20.6 | 30.9 | 2.9 | 32.4 | 64.7 | 5.44 | 74.02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1.5 | 1.5 | 1.5 | 28.5 | 12.4 | 27.0 | 27.7 | 4.4 | 28.5 | 67.2 | 5.41 | 73.48 |

## 〈표 43〉 [추진 역할구분] - 주도형 거버넌스 / 협력형 거버넌스

| 구분 | | 사례 수 | 주도형 거버넌스 | ← | ← | (중간) | → | → | 협력형 거버넌스 | 종합 | | | 7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 | 주도형 | 중간 | 협력형 | | |
| 전체 | | (205) | 2.4 | 3.4 | 4.4 | 39.5 | 15.1 | 14.1 | 21.0 | 10.2 | 39.5 | 50.2 | 4.88 | 64.63 |
| 권역별 | 경기 | (42) | 2.4 | 4.8 | 9.5 | 28.6 | 16.7 | 11.9 | 26.2 | 16.7 | 28.6 | 54.8 | 4.93 | 65.48 |
| | 강원 | (18) | 5.6 | 5.6 | 0.0 | 44.4 | 11.1 | 11.1 | 22.2 | 11.1 | 44.4 | 44.4 | 4.72 | 62.04 |
| | 충청 | (33) | 3.0 | 3.0 | 0.0 | 42.4 | 15.2 | 18.2 | 18.2 | 6.1 | 42.4 | 51.5 | 4.91 | 65.15 |
| | 전라 | (42) | 2.4 | 0.0 | 4.8 | 40.5 | 16.7 | 16.7 | 19.0 | 7.1 | 40.5 | 52.4 | 4.95 | 65.87 |
| | 경상 | (67) | 1.5 | 4.5 | 4.5 | 43.3 | 14.9 | 11.9 | 19.4 | 10.4 | 43.3 | 46.3 | 4.79 | 63.18 |
| | 제주 | (3) | 0.0 | 0.0 | 0.0 | 33.3 | 0.0 | 33.3 | 33.3 | 0.0 | 33.3 | 66.7 | 5.67 | 77.78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0.0 | 0.0 | 0.0 | 47.4 | 0.0 | 26.3 | 26.3 | 0.0 | 47.4 | 52.6 | 5.32 | 71.93 |
| | 기초지자체 | (186) | 2.7 | 3.8 | 4.8 | 38.7 | 16.7 | 12.9 | 20.4 | 11.3 | 38.7 | 50.0 | 4.83 | 63.89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0.0 | 11.1 | 33.3 | 33.3 | 0.0 | 22.2 | 11.1 | 33.3 | 55.6 | 4.89 | 64.81 |
| | 6급 | (31) | 0.0 | 0.0 | 3.2 | 45.2 | 12.9 | 9.7 | 29.0 | 3.2 | 45.2 | 51.6 | 5.16 | 69.35 |
| | 7급 | (64) | 4.7 | 4.7 | 1.6 | 40.6 | 12.5 | 14.1 | 21.9 | 10.9 | 40.6 | 48.4 | 4.81 | 63.54 |
| | 8급 | (54) | 3.7 | 3.7 | 7.4 | 35.2 | 13.0 | 20.4 | 16.7 | 14.8 | 35.2 | 50.0 | 4.78 | 62.96 |
| | 9급 | (35) | 0.0 | 2.9 | 5.7 | 34.3 | 17.1 | 17.1 | 22.9 | 8.6 | 34.3 | 57.1 | 5.09 | 68.10 |
| | 기타 | (8) | 0.0 | 12.5 | 0.0 | 37.5 | 37.5 | 0.0 | 12.5 | 12.5 | 37.5 | 50.0 | 4.50 | 58.33 |
| | 무응답 | (4)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4.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0.0 | 1.5 | 4.4 | 39.7 | 17.6 | 11.8 | 25.0 | 5.9 | 39.7 | 54.4 | 5.09 | 68.14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3.6 | 4.4 | 4.4 | 39.4 | 13.9 | 15.3 | 19.0 | 12.4 | 39.4 | 48.2 | 4.77 | 62.90 |

## 〈표 44〉 [추진 역할구분] - 지역어 보전 / 지역어 활용

| 구분 | | 사례 수 | 지역어 보전 | ← | ← | (중간) | → | → | 지역어 활용 | 종합 | | | 7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 | 보전 | 중간 | 활용 | | |
| 전체 | | (205) | 9.8 | 10.2 | 9.8 | 41.0 | 12.2 | 7.3 | 9.8 | 29.8 | 41.0 | 29.3 | 3.97 | 49.43 |
| 권역별 | 경기 | (42) | 9.5 | 9.5 | 11.9 | 38.1 | 14.3 | 7.1 | 9.5 | 31.0 | 38.1 | 31.0 | 3.98 | 49.60 |
| | 강원 | (18) | 5.6 | 27.8 | 5.6 | 50.0 | 5.6 | 0.0 | 5.6 | 38.9 | 50.0 | 11.1 | 3.44 | 40.74 |
| | 충청 | (33) | 18.2 | 0.0 | 6.1 | 42.4 | 12.1 | 9.1 | 12.1 | 24.2 | 42.4 | 33.3 | 4.06 | 51.01 |
| | 전라 | (42) | 11.9 | 9.5 | 19.0 | 33.3 | 9.5 | 7.1 | 9.5 | 40.5 | 33.3 | 26.2 | 3.79 | 46.43 |
| | 경상 | (67) | 6.0 | 11.9 | 4.5 | 46.3 | 11.9 | 9.0 | 10.4 | 22.4 | 46.3 | 31.3 | 4.15 | 52.49 |
| | 제주 | (3) | 0.0 | 0.0 | 33.3 | 0.0 | 66.7 | 0.0 | 0.0 | 33.3 | 0.0 | 66.7 | 4.33 | 55.56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10.5 | 26.3 | 0.0 | 42.1 | 5.3 | 10.5 | 5.3 | 36.8 | 42.1 | 21.1 | 3.58 | 42.98 |
| | 기초지자체 | (186) | 9.7 | 8.6 | 10.8 | 40.9 | 12.9 | 7.0 | 10.2 | 29.0 | 40.9 | 30.1 | 4.01 | 50.09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22.2 | 11.1 | 33.3 | 11.1 | 22.2 | 0.0 | 0.0 | 66.7 | 11.1 | 22.2 | 3.00 | 33.33 |
| | 6급 | (31) | 6.5 | 9.7 | 6.5 | 48.4 | 16.1 | 3.2 | 9.7 | 22.6 | 48.4 | 29.0 | 4.06 | 51.08 |
| | 7급 | (64) | 18.8 | 15.6 | 6.3 | 43.8 | 1.6 | 6.3 | 7.8 | 40.6 | 43.8 | 15.6 | 3.44 | 40.63 |
| | 8급 | (54) | 5.6 | 7.4 | 11.1 | 35.2 | 20.4 | 9.3 | 11.1 | 24.1 | 35.2 | 40.7 | 4.30 | 54.94 |
| | 9급 | (35) | 2.9 | 5.7 | 8.6 | 40.0 | 17.1 | 11.4 | 14.3 | 17.1 | 40.0 | 42.9 | 4.54 | 59.05 |
| | 기타 | (8) | 0.0 | 12.5 | 25.0 | 37.5 | 0.0 | 12.5 | 12.5 | 37.5 | 37.5 | 25.0 | 4.13 | 52.08 |
| | 무응답 | (4)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4.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8.8 | 7.4 | 11.8 | 38.2 | 10.3 | 8.8 | 14.7 | 27.9 | 38.2 | 33.8 | 4.19 | 53.19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10.2 | 11.7 | 8.8 | 42.3 | 13.1 | 6.6 | 7.3 | 30.7 | 42.3 | 27.0 | 3.85 | 47.57 |

## 〈표 45〉 지역어 정책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 (복수 응답) (중복 응답)

| 구분 | | 사례 수 | 국어기본법 | 모두 모르겠음 | 국어 관련 조례 | 국어발전 기본계획 | 지역어 관련 조례 |
|---|---|---|---|---|---|---|---|
| 전체 | | (205) | 56.6 | 36.1 | 24.9 | 13.7 | 7.8 |
| 권역별 | 경기 | (42) | 54.8 | 42.9 | 16.7 | 0.0 | 4.8 |
| | 강원 | (18) | 50.0 | 38.9 | 16.7 | 16.7 | 5.6 |
| | 충청 | (33) | 63.6 | 36.4 | 36.4 | 18.2 | 6.1 |
| | 전라 | (42) | 64.3 | 26.2 | 26.2 | 14.3 | 14.3 |
| | 경상 | (67) | 52.2 | 37.3 | 26.9 | 19.4 | 4.5 |
| | 제주 | (3) | 33.3 | 33.3 | 0.0 | 0.0 | 66.7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84.2 | 10.5 | 63.2 | 21.1 | 15.8 |
| | 기초지자체 | (186) | 53.8 | 38.7 | 21.0 | 12.9 | 7.0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77.8 | 11.1 | 33.3 | 11.1 | 22.2 |
| | 6급 | (31) | 61.3 | 32.3 | 25.8 | 9.7 | 6.5 |
| | 7급 | (64) | 57.8 | 31.3 | 21.9 | 17.2 | 9.4 |
| | 8급 | (54) | 46.3 | 46.3 | 24.1 | 11.1 | 5.6 |
| | 9급 | (35) | 57.1 | 40.0 | 28.6 | 8.6 | 2.9 |
| | 기타 | (8) | 75.0 | 25.0 | 25.0 | 37.5 | 12.5 |
| | 무응답 | (4) | 50.0 | 50.0 | 25.0 | 25.0 | 25.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66.2 | 23.5 | 35.3 | 16.2 | 13.2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51.8 | 42.3 | 19.7 | 12.4 | 5.1 |

## 〈표 46〉 [국어기본법] - 해당 법령의 중요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116) | 1.7 | 1.7 | 42.2 | 43.1 | 11.2 | 3.4 | 42.2 | 54.3 | 3.60 | 65.09 |
| 권역별 | 경기 | (23) | 8.7 | 4.3 | 43.5 | 39.1 | 4.3 | 13.0 | 43.5 | 43.5 | 3.26 | 56.52 |
| | 강원 | (9) | 0.0 | 0.0 | 55.6 | 22.2 | 22.2 | 0.0 | 55.6 | 44.4 | 3.67 | 66.67 |
| | 충청 | (21) | 0.0 | 0.0 | 28.6 | 61.9 | 9.5 | 0.0 | 28.6 | 71.4 | 3.81 | 70.24 |
| | 전라 | (27) | 0.0 | 0.0 | 37.0 | 51.9 | 11.1 | 0.0 | 37.0 | 63.0 | 3.74 | 68.52 |
| | 경상 | (35) | 0.0 | 2.9 | 48.6 | 34.3 | 14.3 | 2.9 | 48.6 | 48.6 | 3.60 | 65.00 |
| | 제주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6) | 0.0 | 0.0 | 56.3 | 31.3 | 12.5 | 0.0 | 56.3 | 43.8 | 3.56 | 64.06 |
| | 기초지자체 | (100) | 2.0 | 2.0 | 40.0 | 45.0 | 11.0 | 4.0 | 40.0 | 56.0 | 3.61 | 65.25 |
| 담당자 직급 | 5급 | (7) | 0.0 | 0.0 | 28.6 | 71.4 | 0.0 | 0.0 | 28.6 | 71.4 | 3.71 | 67.86 |
| | 6급 | (19) | 5.3 | 5.3 | 63.2 | 26.3 | 0.0 | 10.5 | 63.2 | 26.3 | 3.11 | 52.63 |
| | 7급 | (37) | 2.7 | 0.0 | 35.1 | 45.9 | 16.2 | 2.7 | 35.1 | 62.2 | 3.73 | 68.24 |
| | 8급 | (25) | 0.0 | 4.0 | 48.0 | 40.0 | 8.0 | 4.0 | 48.0 | 48.0 | 3.52 | 63.00 |
| | 9급 | (20) | 0.0 | 0.0 | 35.0 | 50.0 | 15.0 | 0.0 | 35.0 | 65.0 | 3.80 | 70.00 |
| | 기타 | (6) | 0.0 | 0.0 | 16.7 | 50.0 | 33.3 | 0.0 | 16.7 | 83.3 | 4.17 | 79.17 |
| | 무응답 | (2)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45) | 2.2 | 0.0 | 44.4 | 44.4 | 8.9 | 2.2 | 44.4 | 53.3 | 3.58 | 64.44 |
| | 수행 경험 없음 | (71) | 1.4 | 2.8 | 40.8 | 42.3 | 12.7 | 4.2 | 40.8 | 54.9 | 3.62 | 65.49 |

## 〈표 47〉 [국어기본법] – 해당 법령의 영향력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116) | 1.7 | 6.9 | 44.0 | 39.7 | 7.8 | 8.6 | 44.0 | 47.4 | 3.45 | 61.21 |
| 권역별 | 경기 | (23) | 8.7 | 13.0 | 39.1 | 34.8 | 4.3 | 21.7 | 39.1 | 39.1 | 3.13 | 53.26 |
| | 강원 | (9) | 0.0 | 0.0 | 66.7 | 22.2 | 11.1 | 0.0 | 66.7 | 33.3 | 3.44 | 61.11 |
| | 충청 | (21) | 0.0 | 0.0 | 33.3 | 57.1 | 9.5 | 0.0 | 33.3 | 66.7 | 3.76 | 69.05 |
| | 전라 | (27) | 0.0 | 0.0 | 44.4 | 51.9 | 3.7 | 0.0 | 44.4 | 55.6 | 3.59 | 64.81 |
| | 경상 | (35) | 0.0 | 14.3 | 45.7 | 28.6 | 11.4 | 14.3 | 45.7 | 40.0 | 3.37 | 59.29 |
| | 제주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6) | 0.0 | 0.0 | 56.3 | 31.3 | 12.5 | 0.0 | 56.3 | 43.8 | 3.56 | 64.06 |
| | 기초지자체 | (100) | 2.0 | 8.0 | 42.0 | 41.0 | 7.0 | 10.0 | 42.0 | 48.0 | 3.43 | 60.75 |
| 담당자 직급 | 5급 | (7) | 0.0 | 0.0 | 42.9 | 57.1 | 0.0 | 0.0 | 42.9 | 57.1 | 3.57 | 64.29 |
| | 6급 | (19) | 5.3 | 10.5 | 47.4 | 36.8 | 0.0 | 15.8 | 47.4 | 36.8 | 3.16 | 53.95 |
| | 7급 | (37) | 2.7 | 8.1 | 35.1 | 43.2 | 10.8 | 10.8 | 35.1 | 54.1 | 3.51 | 62.84 |
| | 8급 | (25) | 0.0 | 8.0 | 48.0 | 32.0 | 12.0 | 8.0 | 48.0 | 44.0 | 3.48 | 62.00 |
| | 9급 | (20) | 0.0 | 5.0 | 45.0 | 40.0 | 10.0 | 5.0 | 45.0 | 50.0 | 3.55 | 63.75 |
| | 기타 | (6) | 0.0 | 0.0 | 50.0 | 50.0 | 0.0 | 0.0 | 50.0 | 50.0 | 3.50 | 62.50 |
| | 무응답 | (2)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45) | 2.2 | 2.2 | 44.4 | 40.0 | 11.1 | 4.4 | 44.4 | 51.1 | 3.56 | 63.89 |
| | 수행 경험 없음 | (71) | 1.4 | 9.9 | 43.7 | 39.4 | 5.6 | 11.3 | 43.7 | 45.1 | 3.38 | 59.51 |

## 〈표 48〉 [국어 관련 조례] - 해당 법령의 중요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51) | 2.0 | 11.8 | 45.1 | 33.3 | 7.8 | 13.7 | 45.1 | 41.2 | 3.33 | 58.33 |
| 권역별 | 경기 | (7) | 0.0 | 14.3 | 42.9 | 28.6 | 14.3 | 14.3 | 42.9 | 42.9 | 3.43 | 60.71 |
| | 강원 | (3) | 0.0 | 33.3 | 0.0 | 33.3 | 33.3 | 33.3 | 0.0 | 66.7 | 3.67 | 66.67 |
| | 충청 | (12) | 0.0 | 8.3 | 58.3 | 33.3 | 0.0 | 8.3 | 58.3 | 33.3 | 3.25 | 56.25 |
| | 전라 | (11) | 9.1 | 0.0 | 54.5 | 36.4 | 0.0 | 9.1 | 54.5 | 36.4 | 3.18 | 54.55 |
| | 경상 | (18) | 0.0 | 16.7 | 38.9 | 33.3 | 11.1 | 16.7 | 38.9 | 44.4 | 3.39 | 59.72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2) | 0.0 | 8.3 | 66.7 | 16.7 | 8.3 | 8.3 | 66.7 | 25.0 | 3.25 | 56.25 |
| | 기초지자체 | (39) | 2.6 | 12.8 | 38.5 | 38.5 | 7.7 | 15.4 | 38.5 | 46.2 | 3.36 | 58.97 |
| 담당자 직급 | 5급 | (3)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33.3 | 33.3 | 3.00 | 50.00 |
| | 6급 | (8) | 0.0 | 12.5 | 62.5 | 25.0 | 0.0 | 12.5 | 62.5 | 25.0 | 3.13 | 53.13 |
| | 7급 | (14) | 0.0 | 14.3 | 50.0 | 28.6 | 7.1 | 14.3 | 50.0 | 35.7 | 3.29 | 57.14 |
| | 8급 | (13) | 7.7 | 15.4 | 23.1 | 38.5 | 15.4 | 23.1 | 23.1 | 53.8 | 3.38 | 59.62 |
| | 9급 | (10) | 0.0 | 0.0 | 50.0 | 40.0 | 10.0 | 0.0 | 50.0 | 50.0 | 3.60 | 65.00 |
| | 기타 | (2) | 0.0 | 0.0 | 50.0 | 50.0 | 0.0 | 0.0 | 50.0 | 50.0 | 3.50 | 62.50 |
| | 무응답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24) | 4.2 | 8.3 | 41.7 | 37.5 | 8.3 | 12.5 | 41.7 | 45.8 | 3.38 | 59.38 |
| | 수행 경험 없음 | (27) | 0.0 | 14.8 | 48.1 | 29.6 | 7.4 | 14.8 | 48.1 | 37.0 | 3.30 | 57.41 |

## 〈표 49〉 [국어 관련 조례] – 해당 법령의 영향력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51) | 3.9 | 11.8 | 49.0 | 29.4 | 5.9 | 15.7 | 49.0 | 35.3 | 3.22 | 55.39 |
| 권역별 | 경기 | (7) | 14.3 | 14.3 | 42.9 | 28.6 | 0.0 | 28.6 | 42.9 | 28.6 | 2.86 | 46.43 |
| | 강원 | (3) | 0.0 | 33.3 | 0.0 | 33.3 | 33.3 | 33.3 | 0.0 | 66.7 | 3.67 | 66.67 |
| | 충청 | (12) | 0.0 | 8.3 | 66.7 | 25.0 | 0.0 | 8.3 | 66.7 | 25.0 | 3.17 | 54.17 |
| | 전라 | (11) | 9.1 | 0.0 | 54.5 | 36.4 | 0.0 | 9.1 | 54.5 | 36.4 | 3.18 | 54.55 |
| | 경상 | (18) | 0.0 | 16.7 | 44.4 | 27.8 | 11.1 | 16.7 | 44.4 | 38.9 | 3.33 | 58.33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2) | 0.0 | 8.3 | 66.7 | 16.7 | 8.3 | 8.3 | 66.7 | 25.0 | 3.25 | 56.25 |
| | 기초지자체 | (39) | 5.1 | 12.8 | 43.6 | 33.3 | 5.1 | 17.9 | 43.6 | 38.5 | 3.21 | 55.13 |
| 담당자 직급 | 5급 | (3)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33.3 | 33.3 | 3.00 | 50.00 |
| | 6급 | (8) | 0.0 | 12.5 | 62.5 | 25.0 | 0.0 | 12.5 | 62.5 | 25.0 | 3.13 | 53.13 |
| | 7급 | (14) | 0.0 | 14.3 | 64.3 | 14.3 | 7.1 | 14.3 | 64.3 | 21.4 | 3.14 | 53.57 |
| | 8급 | (13) | 15.4 | 15.4 | 30.8 | 30.8 | 7.7 | 30.8 | 30.8 | 38.5 | 3.00 | 50.00 |
| | 9급 | (10) | 0.0 | 0.0 | 50.0 | 40.0 | 10.0 | 0.0 | 50.0 | 50.0 | 3.60 | 65.00 |
| | 기타 | (2) | 0.0 | 0.0 | 50.0 | 50.0 | 0.0 | 0.0 | 50.0 | 50.0 | 3.50 | 62.50 |
| | 무응답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0 | 75.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24) | 8.3 | 8.3 | 45.8 | 33.3 | 4.2 | 16.7 | 45.8 | 37.5 | 3.17 | 54.17 |
| | 수행 경험 없음 | (27) | 0.0 | 14.8 | 51.9 | 25.9 | 7.4 | 14.8 | 51.9 | 33.3 | 3.26 | 56.48 |

## 〈표 50〉 [지역어 관련 조례] - 해당 법령의 중요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16) | 0.0 | 0.0 | 37.5 | 50.0 | 12.5 | 0.0 | 37.5 | 62.5 | 3.75 | 68.75 |
| 권역별 | 경기 | (2)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강원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충청 | (2)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0 | 75.00 |
| | 전라 | (6) | 0.0 | 0.0 | 50.0 | 33.3 | 16.7 | 0.0 | 50.0 | 50.0 | 3.67 | 66.67 |
| | 경상 | (3)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0 | 75.00 |
| | 제주 | (2) | 0.0 | 0.0 | 0.0 | 50.0 | 50.0 | 0.0 | 0.0 | 100.0 | 4.50 | 87.5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3) | 0.0 | 0.0 | 66.7 | 33.3 | 0.0 | 0.0 | 66.7 | 33.3 | 3.33 | 58.33 |
| | 기초지자체 | (13) | 0.0 | 0.0 | 30.8 | 53.8 | 15.4 | 0.0 | 30.8 | 69.2 | 3.85 | 71.15 |
| 담당자 직급 | 5급 | (2) | 0.0 | 0.0 | 50.0 | 50.0 | 0.0 | 0.0 | 50.0 | 50.0 | 3.50 | 62.50 |
| | 6급 | (2)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0 | 75.00 |
| | 7급 | (6)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 8급 | (3) | 0.0 | 0.0 | 66.7 | 33.3 | 0.0 | 0.0 | 66.7 | 33.3 | 3.33 | 58.33 |
| | 9급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기타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0 | 75.00 |
| | 무응답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0 | 75.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9) | 0.0 | 0.0 | 33.3 | 44.4 | 22.2 | 0.0 | 33.3 | 66.7 | 3.89 | 72.22 |
| | 수행 경험 없음 | (7) | 0.0 | 0.0 | 42.9 | 57.1 | 0.0 | 0.0 | 42.9 | 57.1 | 3.57 | 64.29 |

## 〈표 51〉 [지역어 관련 조례] – 해당 법령의 영향력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16) | 0.0 | 6.3 | 37.5 | 43.8 | 12.5 | 6.3 | 37.5 | 56.3 | 3.63 | 65.63 |
| 권역별 | 경기 | (2) | 0.0 | 50.0 | 50.0 | 0.0 | 0.0 | 50.0 | 50.0 | 0.0 | 2.50 | 37.50 |
| | 강원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충청 | (2)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0 | 75.00 |
| | 전라 | (6) | 0.0 | 0.0 | 50.0 | 33.3 | 16.7 | 0.0 | 50.0 | 50.0 | 3.67 | 66.67 |
| | 경상 | (3) | 0.0 | 0.0 | 33.3 | 66.7 | 0.0 | 0.0 | 33.3 | 66.7 | 3.67 | 66.67 |
| | 제주 | (2) | 0.0 | 0.0 | 0.0 | 50.0 | 50.0 | 0.0 | 0.0 | 100.0 | 4.50 | 87.5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3) | 0.0 | 0.0 | 66.7 | 33.3 | 0.0 | 0.0 | 66.7 | 33.3 | 3.33 | 58.33 |
| | 기초지자체 | (13) | 0.0 | 7.7 | 30.8 | 46.2 | 15.4 | 7.7 | 30.8 | 61.5 | 3.69 | 67.31 |
| 담당자 직급 | 5급 | (2) | 0.0 | 0.0 | 50.0 | 50.0 | 0.0 | 0.0 | 50.0 | 50.0 | 3.50 | 62.50 |
| | 6급 | (2)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0 | 75.00 |
| | 7급 | (6)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 8급 | (3)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33.3 | 33.3 | 3.00 | 50.00 |
| | 9급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기타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0 | 75.00 |
| | 무응답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9) | 0.0 | 0.0 | 33.3 | 44.4 | 22.2 | 0.0 | 33.3 | 66.7 | 3.89 | 72.22 |
| | 수행 경험 없음 | (7) | 0.0 | 14.3 | 42.9 | 42.9 | 0.0 | 14.3 | 42.9 | 42.9 | 3.29 | 57.14 |

## 〈표 52〉 [국어 발전 계획] - 해당 법령의 중요성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8) | 0.0 | 0.0 | 46.4 | 42.9 | 10.7 | 0.0 | 46.4 | 53.6 | 3.64 | 66.07 |
| 권역별 | 강원 | (3) | 0.0 | 0.0 | 33.3 | 0.0 | 66.7 | 0.0 | 33.3 | 66.7 | 4.33 | 83.33 |
| | 충청 | (6) | 0.0 | 0.0 | 66.7 | 33.3 | 0.0 | 0.0 | 66.7 | 33.3 | 3.33 | 58.33 |
| | 전라 | (6) | 0.0 | 0.0 | 16.7 | 83.3 | 0.0 | 0.0 | 16.7 | 83.3 | 3.83 | 70.83 |
| | 경상 | (13) | 0.0 | 0.0 | 53.8 | 38.5 | 7.7 | 0.0 | 53.8 | 46.2 | 3.54 | 63.46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4) | 0.0 | 0.0 | 25.0 | 75.0 | 0.0 | 0.0 | 25.0 | 75.0 | 3.75 | 68.75 |
| | 기초지자체 | (24) | 0.0 | 0.0 | 50.0 | 37.5 | 12.5 | 0.0 | 50.0 | 50.0 | 3.63 | 65.63 |
| 담당자 직급 | 5급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6급 | (3) | 0.0 | 0.0 | 33.3 | 66.7 | 0.0 | 0.0 | 33.3 | 66.7 | 3.67 | 66.67 |
| | 7급 | (11) | 0.0 | 0.0 | 45.5 | 45.5 | 9.1 | 0.0 | 45.5 | 54.5 | 3.64 | 65.91 |
| | 8급 | (6) | 0.0 | 0.0 | 50.0 | 16.7 | 33.3 | 0.0 | 50.0 | 50.0 | 3.83 | 70.83 |
| | 9급 | (3) | 0.0 | 0.0 | 66.7 | 33.3 | 0.0 | 0.0 | 66.7 | 33.3 | 3.33 | 58.33 |
| | 기타 | (3)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0 | 75.00 |
| | 무응답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11) | 0.0 | 0.0 | 18.2 | 63.6 | 18.2 | 0.0 | 18.2 | 81.8 | 4.00 | 75.00 |
| | 수행 경험 없음 | (17) | 0.0 | 0.0 | 64.7 | 29.4 | 5.9 | 0.0 | 64.7 | 35.3 | 3.41 | 60.29 |

## 〈표 53〉 [국어 발전 계획] – 해당 법령의 영향력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낮다 | 보통 | 높다 | | |
| 전체 | | (28) | 0.0 | 7.1 | 46.4 | 39.3 | 7.1 | 7.1 | 46.4 | 46.4 | 3.46 | 61.61 |
| 권역별 | 강원 | (3) | 0.0 | 0.0 | 33.3 | 0.0 | 66.7 | 0.0 | 33.3 | 66.7 | 4.33 | 83.33 |
| | 충청 | (6) | 0.0 | 16.7 | 33.3 | 50.0 | 0.0 | 16.7 | 33.3 | 50.0 | 3.33 | 58.33 |
| | 전라 | (6) | 0.0 | 0.0 | 16.7 | 83.3 | 0.0 | 0.0 | 16.7 | 83.3 | 3.83 | 70.83 |
| | 경상 | (13) | 0.0 | 7.7 | 69.2 | 23.1 | 0.0 | 7.7 | 69.2 | 23.1 | 3.15 | 53.85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4) | 0.0 | 0.0 | 25.0 | 75.0 | 0.0 | 0.0 | 25.0 | 75.0 | 3.75 | 68.75 |
| | 기초지자체 | (24) | 0.0 | 8.3 | 50.0 | 33.3 | 8.3 | 8.3 | 50.0 | 41.7 | 3.42 | 60.42 |
| 담당자 직급 | 5급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6급 | (3) | 0.0 | 33.3 | 0.0 | 66.7 | 0.0 | 33.3 | 0.0 | 66.7 | 3.33 | 58.33 |
| | 7급 | (11) | 0.0 | 9.1 | 54.5 | 36.4 | 0.0 | 9.1 | 54.5 | 36.4 | 3.27 | 56.82 |
| | 8급 | (6)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 9급 | (3)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 기타 | (3)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0 | 75.00 |
| | 무응답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11) | 0.0 | 9.1 | 27.3 | 54.5 | 9.1 | 9.1 | 27.3 | 63.6 | 3.64 | 65.91 |
| | 수행 경험 없음 | (17) | 0.0 | 5.9 | 58.8 | 29.4 | 5.9 | 5.9 | 58.8 | 35.3 | 3.35 | 58.82 |

## 〈표 54〉 [지역어의 해당 목표달성에 필요 정도] - 지역 발전

| 구분 | | 사례 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 |
| 전체 | | (205) | 2.9 | 19.0 | 51.2 | 23.9 | 2.9 | 22.0 | 51.2 | 26.8 | 3.05 | 51.22 |
| 권역별 | 경기 | (42) | 9.5 | 19.0 | 52.4 | 16.7 | 2.4 | 28.6 | 52.4 | 19.0 | 2.83 | 45.83 |
| | 강원 | (18) | 5.6 | 22.2 | 61.1 | 5.6 | 5.6 | 27.8 | 61.1 | 11.1 | 2.83 | 45.83 |
| | 충청 | (33) | 0.0 | 15.2 | 57.6 | 27.3 | 0.0 | 15.2 | 57.6 | 27.3 | 3.12 | 53.03 |
| | 전라 | (42) | 2.4 | 14.3 | 45.2 | 35.7 | 2.4 | 16.7 | 45.2 | 38.1 | 3.21 | 55.36 |
| | 경상 | (67) | 0.0 | 23.9 | 49.3 | 23.9 | 3.0 | 23.9 | 49.3 | 26.9 | 3.06 | 51.49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0.0 | 26.3 | 36.8 | 36.8 | 0.0 | 26.3 | 36.8 | 36.8 | 3.11 | 52.63 |
| | 기초지자체 | (186) | 3.2 | 18.3 | 52.7 | 22.6 | 3.2 | 21.5 | 52.7 | 25.8 | 3.04 | 51.08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22.2 | 55.6 | 22.2 | 0.0 | 22.2 | 55.6 | 22.2 | 3.00 | 50.00 |
| | 6급 | (31) | 12.9 | 12.9 | 48.4 | 22.6 | 3.2 | 25.8 | 48.4 | 25.8 | 2.90 | 47.58 |
| | 7급 | (64) | 1.6 | 20.3 | 50.0 | 25.0 | 3.1 | 21.9 | 50.0 | 28.1 | 3.08 | 51.95 |
| | 8급 | (54) | 1.9 | 18.5 | 51.9 | 24.1 | 3.7 | 20.4 | 51.9 | 27.8 | 3.09 | 52.31 |
| | 9급 | (35) | 0.0 | 22.9 | 51.4 | 22.9 | 2.9 | 22.9 | 51.4 | 25.7 | 3.06 | 51.43 |
| | 기타 | (8) | 0.0 | 12.5 | 50.0 | 37.5 | 0.0 | 12.5 | 50.0 | 37.5 | 3.25 | 56.25 |
| | 무응답 | (4) | 0.0 | 25.0 | 75.0 | 0.0 | 0.0 | 25.0 | 75.0 | 0.0 | 2.75 | 43.75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1.5 | 16.2 | 48.5 | 27.9 | 5.9 | 17.6 | 48.5 | 33.8 | 3.21 | 55.15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3.6 | 20.4 | 52.6 | 21.9 | 1.5 | 24.1 | 52.6 | 23.4 | 2.97 | 49.27 |

## 〈표 55〉 [지역어의 해당 목표 달성에 필요 정도] – 지역 정체성 보전 및 강화

| 구분 | | 사례 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 |
| 전체 | | (205) | 2.4 | 12.2 | 41.5 | 34.6 | 9.3 | 14.6 | 41.5 | 43.9 | 3.36 | 59.02 |
| 권역별 | 경기 | (42) | 11.9 | 14.3 | 38.1 | 31.0 | 4.8 | 26.2 | 38.1 | 35.7 | 3.02 | 50.60 |
| | 강원 | (18) | 0.0 | 16.7 | 44.4 | 22.2 | 16.7 | 16.7 | 44.4 | 38.9 | 3.39 | 59.72 |
| | 충청 | (33) | 0.0 | 6.1 | 42.4 | 45.5 | 6.1 | 6.1 | 42.4 | 51.5 | 3.52 | 62.88 |
| | 전라 | (42) | 0.0 | 7.1 | 45.2 | 35.7 | 11.9 | 7.1 | 45.2 | 47.6 | 3.52 | 63.10 |
| | 경상 | (67) | 0.0 | 16.4 | 40.3 | 34.3 | 9.0 | 16.4 | 40.3 | 43.3 | 3.36 | 58.96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0.0 | 10.5 | 26.3 | 52.6 | 10.5 | 10.5 | 26.3 | 63.2 | 3.63 | 65.79 |
| | 기초지자체 | (186) | 2.7 | 12.4 | 43.0 | 32.8 | 9.1 | 15.1 | 43.0 | 41.9 | 3.33 | 58.33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11.1 | 44.4 | 44.4 | 0.0 | 11.1 | 44.4 | 44.4 | 3.33 | 58.33 |
| | 6급 | (31) | 9.7 | 12.9 | 38.7 | 35.5 | 3.2 | 22.6 | 38.7 | 38.7 | 3.10 | 52.42 |
| | 7급 | (64) | 0.0 | 10.9 | 46.9 | 35.9 | 6.3 | 10.9 | 46.9 | 42.2 | 3.38 | 59.38 |
| | 8급 | (54) | 1.9 | 14.8 | 40.7 | 31.5 | 11.1 | 16.7 | 40.7 | 42.6 | 3.35 | 58.80 |
| | 9급 | (35) | 0.0 | 11.4 | 37.1 | 37.1 | 14.3 | 11.4 | 37.1 | 51.4 | 3.54 | 63.57 |
| | 기타 | (8) | 12.5 | 0.0 | 12.5 | 37.5 | 37.5 | 12.5 | 12.5 | 75.0 | 3.88 | 71.88 |
| | 무응답 | (4) | 0.0 | 25.0 | 75.0 | 0.0 | 0.0 | 25.0 | 75.0 | 0.0 | 2.75 | 43.75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1.5 | 13.2 | 36.8 | 38.2 | 10.3 | 14.7 | 36.8 | 48.5 | 3.43 | 60.66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2.9 | 11.7 | 43.8 | 32.8 | 8.8 | 14.6 | 43.8 | 41.6 | 3.33 | 58.21 |

## 〈표 56〉 [지역어의 해당 목표 달성에 필요 정도] - 지역 전통 및 문화 계승에 이바지

| 구분 | | 사례 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 |
| 전체 | | (205) | 2.0 | 7.8 | 42.0 | 38.0 | 10.2 | 9.8 | 42.0 | 48.3 | 3.47 | 61.71 |
| 권역별 | 경기 | (42) | 9.5 | 7.1 | 38.1 | 40.5 | 4.8 | 16.7 | 38.1 | 45.2 | 3.24 | 55.95 |
| | 강원 | (18) | 0.0 | 11.1 | 44.4 | 27.8 | 16.7 | 11.1 | 44.4 | 44.4 | 3.50 | 62.50 |
| | 충청 | (33) | 0.0 | 9.1 | 42.4 | 45.5 | 3.0 | 9.1 | 42.4 | 48.5 | 3.42 | 60.61 |
| | 전라 | (42) | 0.0 | 9.5 | 42.9 | 35.7 | 11.9 | 9.5 | 42.9 | 47.6 | 3.50 | 62.50 |
| | 경상 | (67) | 0.0 | 6.0 | 43.3 | 37.3 | 13.4 | 6.0 | 43.3 | 50.7 | 3.58 | 64.55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0.0 | 10.5 | 31.6 | 52.6 | 5.3 | 10.5 | 31.6 | 57.9 | 3.53 | 63.16 |
| | 기초지자체 | (186) | 2.2 | 7.5 | 43.0 | 36.6 | 10.8 | 9.7 | 43.0 | 47.3 | 3.46 | 61.56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11.1 | 44.4 | 44.4 | 0.0 | 11.1 | 44.4 | 44.4 | 3.33 | 58.33 |
| | 6급 | (31) | 9.7 | 6.5 | 41.9 | 35.5 | 6.5 | 16.1 | 41.9 | 41.9 | 3.23 | 55.65 |
| | 7급 | (64) | 0.0 | 3.1 | 50.0 | 40.6 | 6.3 | 3.1 | 50.0 | 46.9 | 3.50 | 62.50 |
| | 8급 | (54) | 0.0 | 11.1 | 42.6 | 37.0 | 9.3 | 11.1 | 42.6 | 46.3 | 3.44 | 61.11 |
| | 9급 | (35) | 0.0 | 8.6 | 34.3 | 40.0 | 17.1 | 8.6 | 34.3 | 57.1 | 3.66 | 66.43 |
| | 기타 | (8) | 12.5 | 0.0 | 12.5 | 25.0 | 50.0 | 12.5 | 12.5 | 75.0 | 4.00 | 75.00 |
| | 무응답 | (4) | 0.0 | 50.0 | 25.0 | 25.0 | 0.0 | 50.0 | 25.0 | 25.0 | 2.75 | 43.75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0.0 | 8.8 | 41.2 | 36.8 | 13.2 | 8.8 | 41.2 | 50.0 | 3.54 | 63.60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2.9 | 7.3 | 42.3 | 38.7 | 8.8 | 10.2 | 42.3 | 47.4 | 3.43 | 60.77 |

## 〈표 57〉 [지역어의 해당 목표 달성에 필요 정도] – 마케팅/관광 분야 등에 활용

| 구분 | | 사례 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 |
| 전체 | | (205) | 2.4 | 14.1 | 48.8 | 29.8 | 4.9 | 16.6 | 48.8 | 34.6 | 3.20 | 55.12 |
| 권역별 | 경기 | (42) | 7.1 | 21.4 | 47.6 | 21.4 | 2.4 | 28.6 | 47.6 | 23.8 | 2.90 | 47.62 |
| | 강원 | (18) | 0.0 | 11.1 | 66.7 | 16.7 | 5.6 | 11.1 | 66.7 | 22.2 | 3.17 | 54.17 |
| | 충청 | (33) | 0.0 | 18.2 | 51.5 | 30.3 | 0.0 | 18.2 | 51.5 | 30.3 | 3.12 | 53.03 |
| | 전라 | (42) | 2.4 | 11.9 | 52.4 | 28.6 | 4.8 | 14.3 | 52.4 | 33.3 | 3.21 | 55.36 |
| | 경상 | (67) | 1.5 | 10.4 | 43.3 | 37.3 | 7.5 | 11.9 | 43.3 | 44.8 | 3.39 | 59.70 |
| | 제주 | (3) | 0.0 | 0.0 | 0.0 | 66.7 | 33.3 | 0.0 | 0.0 | 100.0 | 4.33 | 83.33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0.0 | 10.5 | 63.2 | 26.3 | 0.0 | 10.5 | 63.2 | 26.3 | 3.16 | 53.95 |
| | 기초지자체 | (186) | 2.7 | 14.5 | 47.3 | 30.1 | 5.4 | 17.2 | 47.3 | 35.5 | 3.21 | 55.24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11.1 | 66.7 | 22.2 | 0.0 | 11.1 | 66.7 | 22.2 | 3.11 | 52.78 |
| | 6급 | (31) | 12.9 | 6.5 | 48.4 | 25.8 | 6.5 | 19.4 | 48.4 | 32.3 | 3.06 | 51.61 |
| | 7급 | (64) | 0.0 | 15.6 | 54.7 | 26.6 | 3.1 | 15.6 | 54.7 | 29.7 | 3.17 | 54.30 |
| | 8급 | (54) | 0.0 | 18.5 | 42.6 | 33.3 | 5.6 | 18.5 | 42.6 | 38.9 | 3.26 | 56.48 |
| | 9급 | (35) | 2.9 | 11.4 | 45.7 | 31.4 | 8.6 | 14.3 | 45.7 | 40.0 | 3.31 | 57.86 |
| | 기타 | (8) | 0.0 | 12.5 | 37.5 | 50.0 | 0.0 | 12.5 | 37.5 | 50.0 | 3.38 | 59.38 |
| | 무응답 | (4) | 0.0 | 25.0 | 50.0 | 25.0 | 0.0 | 25.0 | 50.0 | 25.0 | 3.00 | 50.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0.0 | 17.6 | 47.1 | 26.5 | 8.8 | 17.6 | 47.1 | 35.3 | 3.26 | 56.62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3.6 | 12.4 | 49.6 | 31.4 | 2.9 | 16.1 | 49.6 | 34.3 | 3.18 | 54.38 |

## 〈표 58〉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방향] - 의사소통 효율성 / 지역문화 다양성

| 구분 | | 사례 수 | 의사 소통 효율 성 | ← | ← | (중간) | → | → | 지역 문화 다양 성 | 종합 | | | 7점 평균 | 100 점 평균 |
|---|---|---|---|---|---|---|---|---|---|---|---|---|---|---|
| | | | | | | | | | | 의사 소통 효율 성 | 중간 | 지역 문화 다양 성 | | |
| 전체 | | (205) | 9.8 | 6.8 | 14.1 | 28.3 | 17.6 | 11.7 | 11.7 | 30.7 | 28.3 | 41.0 | 4.19 | 53.17 |
| 권역별 | 경기 | (42) | 9.5 | 2.4 | 21.4 | 19.0 | 21.4 | 7.1 | 19.0 | 33.3 | 19.0 | 47.6 | 4.38 | 56.35 |
| | 강원 | (18) | 11.1 | 5.6 | 11.1 | 33.3 | 5.6 | 16.7 | 16.7 | 27.8 | 33.3 | 38.9 | 4.33 | 55.56 |
| | 충청 | (33) | 3.0 | 12.1 | 15.2 | 45.5 | 21.2 | 3.0 | 0.0 | 30.3 | 45.5 | 24.2 | 3.79 | 46.46 |
| | 전라 | (42) | 11.9 | 2.4 | 9.5 | 23.8 | 14.3 | 21.4 | 16.7 | 23.8 | 23.8 | 52.4 | 4.57 | 59.52 |
| | 경상 | (67) | 11.9 | 9.0 | 13.4 | 26.9 | 19.4 | 10.4 | 9.0 | 34.3 | 26.9 | 38.8 | 4.00 | 50.00 |
| | 제주 | (3) | 0.0 | 33.3 | 0.0 | 33.3 | 0.0 | 33.3 | 0.0 | 33.3 | 33.3 | 33.3 | 4.00 | 50.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10.5 | 5.3 | 5.3 | 26.3 | 31.6 | 15.8 | 5.3 | 21.1 | 26.3 | 52.6 | 4.32 | 55.26 |
| | 기초지자체 | (186) | 9.7 | 7.0 | 15.1 | 28.5 | 16.1 | 11.3 | 12.4 | 31.7 | 28.5 | 39.8 | 4.18 | 52.96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0.0 | 33.3 | 11.1 | 33.3 | 0.0 | 22.2 | 33.3 | 11.1 | 55.6 | 4.67 | 61.11 |
| | 6급 | (31) | 19.4 | 3.2 | 12.9 | 29.0 | 12.9 | 12.9 | 9.7 | 35.5 | 29.0 | 35.5 | 3.90 | 48.39 |
| | 7급 | (64) | 10.9 | 10.9 | 9.4 | 28.1 | 12.5 | 14.1 | 14.1 | 31.3 | 28.1 | 40.6 | 4.19 | 53.13 |
| | 8급 | (54) | 7.4 | 9.3 | 18.5 | 31.5 | 13.0 | 14.8 | 5.6 | 35.2 | 31.5 | 33.3 | 4.00 | 50.00 |
| | 9급 | (35) | 8.6 | 2.9 | 14.3 | 20.0 | 37.1 | 2.9 | 14.3 | 25.7 | 20.0 | 54.3 | 4.40 | 56.67 |
| | 기타 | (8) | 0.0 | 0.0 | 0.0 | 37.5 | 12.5 | 25.0 | 25.0 | 0.0 | 37.5 | 62.5 | 5.38 | 72.92 |
| | 무응답 | (4) | 0.0 | 0.0 | 25.0 | 75.0 | 0.0 | 0.0 | 0.0 | 25.0 | 75.0 | 0.0 | 3.75 | 45.83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8.8 | 5.9 | 14.7 | 36.8 | 14.7 | 7.4 | 11.8 | 29.4 | 36.8 | 33.8 | 4.12 | 51.96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10.2 | 7.3 | 13.9 | 24.1 | 19.0 | 13.9 | 11.7 | 31.4 | 24.1 | 44.5 | 4.23 | 53.77 |

## 〈표 59〉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방향] - 통합과 표준 / 개성과 고유성

| 구분 | | 사례 수 | 통합과 표준 | ← | ← | (중간) | → | → | 개성과 고유성 | 종합 | | | 7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 | 통합과 표준 | 중간 | 개성과 고유성 | | |
| 전체 | | (205) | 4.9 | 5.4 | 11.7 | 38.5 | 18.0 | 9.8 | 11.7 | 22.0 | 38.5 | 39.5 | 4.36 | 55.93 |
| 권역별 | 경기 | (42) | 4.8 | 0.0 | 14.3 | 38.1 | 21.4 | 7.1 | 14.3 | 19.0 | 38.1 | 42.9 | 4.50 | 58.33 |
| | 강원 | (18) | 5.6 | 5.6 | 11.1 | 44.4 | 5.6 | 5.6 | 22.2 | 22.2 | 44.4 | 33.3 | 4.44 | 57.41 |
| | 충청 | (33) | 3.0 | 3.0 | 9.1 | 63.6 | 12.1 | 9.1 | 0.0 | 15.2 | 63.6 | 21.2 | 4.06 | 51.01 |
| | 전라 | (42) | 7.1 | 4.8 | 9.5 | 26.2 | 19.0 | 16.7 | 16.7 | 21.4 | 26.2 | 52.4 | 4.62 | 60.32 |
| | 경상 | (67) | 4.5 | 10.4 | 11.9 | 32.8 | 22.4 | 7.5 | 10.4 | 26.9 | 32.8 | 40.3 | 4.22 | 53.73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0.0 | 33.3 | 0.0 | 33.3 | 33.3 | 33.3 | 4.33 | 55.56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5.3 | 5.3 | 42.1 | 21.1 | 5.3 | 15.8 | 15.8 | 42.1 | 42.1 | 4.47 | 57.89 |
| | 기초지자체 | (186) | 4.8 | 5.4 | 12.4 | 38.2 | 17.7 | 10.2 | 11.3 | 22.6 | 38.2 | 39.2 | 4.34 | 55.73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0.0 | 33.3 | 11.1 | 22.2 | 11.1 | 22.2 | 33.3 | 11.1 | 55.6 | 4.78 | 62.96 |
| | 6급 | (31) | 9.7 | 0.0 | 12.9 | 45.2 | 12.9 | 9.7 | 9.7 | 22.6 | 45.2 | 32.3 | 4.19 | 53.23 |
| | 7급 | (64) | 4.7 | 10.9 | 10.9 | 35.9 | 17.2 | 7.8 | 12.5 | 26.6 | 35.9 | 37.5 | 4.23 | 53.91 |
| | 8급 | (54) | 5.6 | 5.6 | 7.4 | 46.3 | 16.7 | 14.8 | 3.7 | 18.5 | 46.3 | 35.2 | 4.22 | 53.70 |
| | 9급 | (35) | 2.9 | 2.9 | 11.4 | 34.3 | 25.7 | 2.9 | 20.0 | 17.1 | 34.3 | 48.6 | 4.66 | 60.95 |
| | 기타 | (8) | 0.0 | 0.0 | 12.5 | 12.5 | 25.0 | 25.0 | 25.0 | 12.5 | 12.5 | 75.0 | 5.38 | 72.92 |
| | 무응답 | (4) | 0.0 | 0.0 | 25.0 | 75.0 | 0.0 | 0.0 | 0.0 | 25.0 | 75.0 | 0.0 | 3.75 | 45.83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7.4 | 4.4 | 10.3 | 36.8 | 19.1 | 11.8 | 10.3 | 22.1 | 36.8 | 41.2 | 4.32 | 55.39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3.6 | 5.8 | 12.4 | 39.4 | 17.5 | 8.8 | 12.4 | 21.9 | 39.4 | 38.7 | 4.37 | 56.20 |

## 〈표 60〉 [우리나라 국어 정책의 방향] - 표준어 중심 정책 / 국어다양성 보존 정책

| 구분 | | 사례 수 | 표준어 중심 정책 | ← | ← | (중간) | → | → | 국어 다양성 보존 정책 | 종합 | | | 7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 | 표준어 중심 정책 | 중간 | 국어 다양성 보존 정책 | | |
| 전체 | | (205) | 6.3 | 4.4 | 8.8 | 37.6 | 19.0 | 10.7 | 13.2 | 19.5 | 37.6 | 42.9 | 4.43 | 57.24 |
| 권역별 | 경기 | (42) | 4.8 | 2.4 | 16.7 | 33.3 | 21.4 | 4.8 | 16.7 | 23.8 | 33.3 | 42.9 | 4.45 | 57.54 |
| | 강원 | (18) | 0.0 | 5.6 | 5.6 | 44.4 | 11.1 | 11.1 | 22.2 | 11.1 | 44.4 | 44.4 | 4.83 | 63.89 |
| | 충청 | (33) | 3.0 | 0.0 | 6.1 | 54.5 | 27.3 | 6.1 | 3.0 | 9.1 | 54.5 | 36.4 | 4.33 | 55.56 |
| | 전라 | (42) | 7.1 | 2.4 | 7.1 | 31.0 | 16.7 | 16.7 | 19.0 | 16.7 | 31.0 | 52.4 | 4.74 | 62.30 |
| | 경상 | (67) | 10.4 | 9.0 | 7.5 | 34.3 | 17.9 | 10.4 | 10.4 | 26.9 | 34.3 | 38.8 | 4.13 | 52.24 |
| | 제주 | (3) | 0.0 | 0.0 | 0.0 | 33.3 | 0.0 | 66.7 | 0.0 | 0.0 | 33.3 | 66.7 | 5.33 | 72.22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0.0 | 5.3 | 47.4 | 21.1 | 10.5 | 10.5 | 10.5 | 47.4 | 42.1 | 4.53 | 58.77 |
| | 기초지자체 | (186) | 6.5 | 4.8 | 9.1 | 36.6 | 18.8 | 10.8 | 13.4 | 20.4 | 36.6 | 43.0 | 4.42 | 57.08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0.0 | 33.3 | 0.0 | 33.3 | 0.0 | 33.3 | 33.3 | 0.0 | 66.7 | 5.00 | 66.67 |
| | 6급 | (31) | 6.5 | 3.2 | 3.2 | 48.4 | 9.7 | 16.1 | 12.9 | 12.9 | 48.4 | 38.7 | 4.52 | 58.60 |
| | 7급 | (64) | 6.3 | 10.9 | 12.5 | 37.5 | 9.4 | 10.9 | 12.5 | 29.7 | 37.5 | 32.8 | 4.16 | 52.60 |
| | 8급 | (54) | 11.1 | 0.0 | 5.6 | 40.7 | 25.9 | 13.0 | 3.7 | 16.7 | 40.7 | 42.6 | 4.24 | 54.01 |
| | 9급 | (35) | 2.9 | 2.9 | 8.6 | 34.3 | 28.6 | 2.9 | 20.0 | 14.3 | 34.3 | 51.4 | 4.71 | 61.90 |
| | 기타 | (8) | 0.0 | 0.0 | 0.0 | 12.5 | 25.0 | 25.0 | 37.5 | 0.0 | 12.5 | 87.5 | 5.88 | 81.25 |
| | 무응답 | (4) | 0.0 | 0.0 | 0.0 | 75.0 | 25.0 | 0.0 | 0.0 | 0.0 | 75.0 | 25.0 | 4.25 | 54.17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5.9 | 2.9 | 7.4 | 36.8 | 23.5 | 10.3 | 13.2 | 16.2 | 36.8 | 47.1 | 4.53 | 58.82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6.6 | 5.1 | 9.5 | 38.0 | 16.8 | 10.9 | 13.1 | 21.2 | 38.0 | 40.9 | 4.39 | 56.45 |

## 〈표 61〉 지역어 유지 존속 여부

| 구분 | | 사례 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 |
| 전체 | | (205) | 0.5 | 6.8 | 42.4 | 35.1 | 15.1 | 7.3 | 42.4 | 50.2 | 3.58 | 64.39 |
| 권역별 | 경기 | (42) | 0.0 | 2.4 | 45.2 | 35.7 | 16.7 | 2.4 | 45.2 | 52.4 | 3.67 | 66.67 |
| | 강원 | (18) | 0.0 | 11.1 | 50.0 | 16.7 | 22.2 | 11.1 | 50.0 | 38.9 | 3.50 | 62.50 |
| | 충청 | (33) | 3.0 | 0.0 | 51.5 | 39.4 | 6.1 | 3.0 | 51.5 | 45.5 | 3.45 | 61.36 |
| | 전라 | (42) | 0.0 | 9.5 | 38.1 | 33.3 | 19.0 | 9.5 | 38.1 | 52.4 | 3.62 | 65.48 |
| | 경상 | (67) | 0.0 | 10.4 | 37.3 | 38.8 | 13.4 | 10.4 | 37.3 | 52.2 | 3.55 | 63.81 |
| | 제주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66.7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5.3 | 0.0 | 47.4 | 31.6 | 15.8 | 5.3 | 47.4 | 47.4 | 3.53 | 63.16 |
| | 기초지자체 | (186) | 0.0 | 7.5 | 41.9 | 35.5 | 15.1 | 7.5 | 41.9 | 50.5 | 3.58 | 64.52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0.0 | 44.4 | 44.4 | 11.1 | 0.0 | 44.4 | 55.6 | 3.67 | 66.67 |
| | 6급 | (31) | 0.0 | 6.5 | 38.7 | 38.7 | 16.1 | 6.5 | 38.7 | 54.8 | 3.65 | 66.13 |
| | 7급 | (64) | 1.6 | 9.4 | 46.9 | 26.6 | 15.6 | 10.9 | 46.9 | 42.2 | 3.45 | 61.33 |
| | 8급 | (54) | 0.0 | 5.6 | 48.1 | 35.2 | 11.1 | 5.6 | 48.1 | 46.3 | 3.52 | 62.96 |
| | 9급 | (35) | 0.0 | 5.7 | 31.4 | 45.7 | 17.1 | 5.7 | 31.4 | 62.9 | 3.74 | 68.57 |
| | 기타 | (8) | 0.0 | 0.0 | 12.5 | 50.0 | 37.5 | 0.0 | 12.5 | 87.5 | 4.25 | 81.25 |
| | 무응답 | (4) | 0.0 | 25.0 | 75.0 | 0.0 | 0.0 | 25.0 | 75.0 | 0.0 | 2.75 | 43.75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1.5 | 2.9 | 45.6 | 35.3 | 14.7 | 4.4 | 45.6 | 50.0 | 3.59 | 64.71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0.0 | 8.8 | 40.9 | 35.0 | 15.3 | 8.8 | 40.9 | 50.4 | 3.57 | 64.23 |

## 〈표 62〉 지역어 유지 존속이 불필요한 이유

| 구분 | | 사례 수 | 지역 방언의 소멸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 언어 통합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 지역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 기타 |
|---|---|---|---|---|---|---|
| 전체 | | (15) | 46.7 | 26.7 | 20.0 | 6.7 |
| 권역별 | 경기 | (1) | 100.0 | 0.0 | 0.0 | 0.0 |
| | 강원 | (2) | 50.0 | 50.0 | 0.0 | 0.0 |
| | 충청 | (1) | 0.0 | 100.0 | 0.0 | 0.0 |
| | 전라 | (4) | 50.0 | 0.0 | 25.0 | 25.0 |
| | 경상 | (7) | 42.9 | 28.6 | 28.6 | 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 | 0.0 | 100.0 | 0.0 | 0.0 |
| | 기초지자체 | (14) | 50.0 | 21.4 | 21.4 | 7.1 |
| 담당자 직급 | 6급 | (2) | 0.0 | 0.0 | 100.0 | 0.0 |
| | 7급 | (7) | 57.1 | 42.9 | 0.0 | 0.0 |
| | 8급 | (3) | 33.3 | 0.0 | 33.3 | 33.3 |
| | 9급 | (2) | 50.0 | 50.0 | 0.0 | 0.0 |
| | 무응답 | (1) | 100.0 | 0.0 | 0.0 | 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3) | 33.3 | 33.3 | 0.0 | 33.3 |
| | 수행 경험 없음 | (12) | 50.0 | 25.0 | 25.0 | 0.0 |

## 〈표 63〉 지역어 유지 존속이 필요한 이유

| 구분 | | 사례 수 |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보호해야 하므로 | 사용자의 정체성과 정서 형성에 중요하므로 | 한국어의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이므로 | 기타 |
|---|---|---|---|---|---|---|
| 전체 | | (190) | 59.5 | 22.1 | 15.8 | 2.6 |
| 권역별 | 경기 | (41) | 53.7 | 29.3 | 14.6 | 2.4 |
| | 강원 | (16) | 81.3 | 6.3 | 6.3 | 6.3 |
| | 충청 | (32) | 46.9 | 31.3 | 18.8 | 3.1 |
| | 전라 | (38) | 63.2 | 23.7 | 13.2 | 0.0 |
| | 경상 | (60) | 60.0 | 16.7 | 20.0 | 3.3 |
| | 제주 | (3) | 100.0 | 0.0 | 0.0 | 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8) | 55.6 | 22.2 | 22.2 | 0.0 |
| | 기초지자체 | (172) | 59.9 | 22.1 | 15.1 | 2.9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66.7 | 33.3 | 0.0 | 0.0 |
| | 6급 | (29) | 72.4 | 10.3 | 13.8 | 3.4 |
| | 7급 | (57) | 52.6 | 29.8 | 14.0 | 3.5 |
| | 8급 | (51) | 54.9 | 19.6 | 23.5 | 2.0 |
| | 9급 | (33) | 63.6 | 21.2 | 15.2 | 0.0 |
| | 기타 | (8) | 62.5 | 12.5 | 12.5 | 12.5 |
| | 무응답 | (3) | 66.7 | 33.3 | 0.0 | 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5) | 56.9 | 23.1 | 20.0 | 0.0 |
| | 수행 경험 없음 | (125) | 60.8 | 21.6 | 13.6 | 4.0 |

## 〈표 64〉 지역어 범용에 따른 복수 표준어 인정에 대한 의견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부정적이다 | 다소 부정적이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긍정적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종합 | | | 5점 평균 | 100점 평균 |
|---|---|---|---|---|---|---|---|---|---|---|---|---|
| | | | | | | | | 부정적 | 보통 | 긍정적 | | |
| 전체 | | (205) | 3.9 | 16.1 | 32.2 | 39.0 | 8.8 | 20.0 | 32.2 | 47.8 | 3.33 | 58.17 |
| 권역별 | 경기 | (42) | 7.1 | 11.9 | 33.3 | 35.7 | 11.9 | 19.0 | 33.3 | 47.6 | 3.33 | 58.33 |
| | 강원 | (18) | 0.0 | 33.3 | 27.8 | 33.3 | 5.6 | 33.3 | 27.8 | 38.9 | 3.11 | 52.78 |
| | 충청 | (33) | 3.0 | 18.2 | 30.3 | 45.5 | 3.0 | 21.2 | 30.3 | 48.5 | 3.27 | 56.82 |
| | 전라 | (42) | 0.0 | 14.3 | 28.6 | 45.2 | 11.9 | 14.3 | 28.6 | 57.1 | 3.55 | 63.69 |
| | 경상 | (67) | 6.0 | 14.9 | 37.3 | 32.8 | 9.0 | 20.9 | 37.3 | 41.8 | 3.24 | 55.97 |
| | 제주 | (3)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4.00 | 7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0.0 | 10.5 | 42.1 | 31.6 | 15.8 | 10.5 | 42.1 | 47.4 | 3.53 | 63.16 |
| | 기초지자체 | (186) | 4.3 | 16.7 | 31.2 | 39.8 | 8.1 | 21.0 | 31.2 | 47.8 | 3.31 | 57.66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0.0 | 22.2 | 22.2 | 55.6 | 0.0 | 22.2 | 22.2 | 55.6 | 3.33 | 58.33 |
| | 6급 | (31) | 6.5 | 25.8 | 25.8 | 35.5 | 6.5 | 32.3 | 25.8 | 41.9 | 3.10 | 52.42 |
| | 7급 | (64) | 1.6 | 14.1 | 35.9 | 37.5 | 10.9 | 15.6 | 35.9 | 48.4 | 3.42 | 60.55 |
| | 8급 | (54) | 5.6 | 13.0 | 31.5 | 42.6 | 7.4 | 18.5 | 31.5 | 50.0 | 3.33 | 58.33 |
| | 9급 | (35) | 2.9 | 20.0 | 34.3 | 34.3 | 8.6 | 22.9 | 34.3 | 42.9 | 3.26 | 56.43 |
| | 기타 | (8) | 12.5 | 0.0 | 25.0 | 50.0 | 12.5 | 12.5 | 25.0 | 62.5 | 3.50 | 62.50 |
| | 무응답 | (4) | 0.0 | 0.0 | 50.0 | 25.0 | 25.0 | 0.0 | 50.0 | 50.0 | 3.75 | 68.75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0.0 | 17.6 | 38.2 | 32.4 | 11.8 | 17.6 | 38.2 | 44.1 | 3.38 | 59.56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5.8 | 15.3 | 29.2 | 42.3 | 7.3 | 21.2 | 29.2 | 49.6 | 3.30 | 57.48 |

## 〈표 65〉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어

| 구분 | | 사례 수 | 표준어 | 경상 방언 | 전라 방언 | 충청 방언 | 강원 방언 | 제주 방언 |
|---|---|---|---|---|---|---|---|---|
| 전체 | | (205) | 48.8 | 26.3 | 11.7 | 9.3 | 2.9 | 1.0 |
| 권역별 | 경기 | (42) | 88.1 | 4.8 | 0.0 | 4.8 | 2.4 | 0.0 |
| | 강원 | (18) | 72.2 | 0.0 | 0.0 | 0.0 | 27.8 | 0.0 |
| | 충청 | (33) | 48.5 | 0.0 | 0.0 | 51.5 | 0.0 | 0.0 |
| | 전라 | (42) | 40.5 | 2.4 | 57.1 | 0.0 | 0.0 | 0.0 |
| | 경상 | (67) | 23.9 | 76.1 | 0.0 | 0.0 | 0.0 | 0.0 |
| | 제주 | (3) | 33.3 | 0.0 | 0.0 | 0.0 | 0.0 | 66.7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36.8 | 42.1 | 5.3 | 5.3 | 5.3 | 5.3 |
| | 기초지자체 | (186) | 50.0 | 24.7 | 12.4 | 9.7 | 2.7 | 0.5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33.3 | 11.1 | 0.0 | 44.4 | 11.1 | 0.0 |
| | 6급 | (31) | 54.8 | 29.0 | 6.5 | 3.2 | 3.2 | 3.2 |
| | 7급 | (64) | 56.3 | 26.6 | 12.5 | 4.7 | 0.0 | 0.0 |
| | 8급 | (54) | 46.3 | 13.0 | 18.5 | 14.8 | 5.6 | 1.9 |
| | 9급 | (35) | 37.1 | 48.6 | 5.7 | 8.6 | 0.0 | 0.0 |
| | 기타 | (8) | 50.0 | 12.5 | 25.0 | 0.0 | 12.5 | 0.0 |
| | 무응답 | (4) | 50.0 | 50.0 | 0.0 | 0.0 | 0.0 | 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42.6 | 27.9 | 17.6 | 8.8 | 1.5 | 1.5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51.8 | 25.5 | 8.8 | 9.5 | 3.6 | 0.7 |

## 〈표 66〉 지역어 사용자와 대화할 때의 느낌

| 구분 | | 사례 수 | 불편하고 어색하다 | 편하고 친근하다 | 별느낌없다 |
|---|---|---|---|---|---|
| 전체 | | (100) | 20.0 | 62.0 | 18.0 |
| 권역별 | 경기 | (37) | 18.9 | 67.6 | 13.5 |
| | 강원 | (13) | 23.1 | 38.5 | 38.5 |
| | 충청 | (16) | 18.8 | 62.5 | 18.8 |
| | 전라 | (17) | 29.4 | 52.9 | 17.6 |
| | 경상 | (16) | 12.5 | 75.0 | 12.5 |
| | 제주 | (1) | 0.0 | 100.0 | 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7) | 28.6 | 57.1 | 14.3 |
| | 기초지자체 | (93) | 19.4 | 62.4 | 18.3 |
| 담당자 직급 | 5급 | (3) | 66.7 | 33.3 | 0.0 |
| | 6급 | (17) | 47.1 | 47.1 | 5.9 |
| | 7급 | (36) | 11.1 | 66.7 | 22.2 |
| | 8급 | (25) | 20.0 | 60.0 | 20.0 |
| | 9급 | (13) | 0.0 | 69.2 | 30.8 |
| | 기타 | (4) | 25.0 | 75.0 | 0.0 |
| | 무응답 | (2) | 0.0 | 100.0 | 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29) | 17.2 | 65.5 | 17.2 |
| | 수행 경험 없음 | (71) | 21.1 | 60.6 | 18.3 |

## 〈표 67〉 자신이 지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 구분 | | 사례 수 | 부정적 | 긍정적 | 별생각없다 |
|---|---|---|---|---|---|
| 전체 | | (105) | 4.8 | 84.8 | 10.5 |
| 권역별 | 경기 | (5) | 20.0 | 80.0 | 0.0 |
| | 강원 | (5) | 20.0 | 80.0 | 0.0 |
| | 충청 | (17) | 0.0 | 88.2 | 11.8 |
| | 전라 | (25) | 0.0 | 92.0 | 8.0 |
| | 경상 | (51) | 5.9 | 82.4 | 11.8 |
| | 제주 | (2) | 0.0 | 50.0 | 5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2) | 0.0 | 100.0 | 0.0 |
| | 기초지자체 | (93) | 5.4 | 82.8 | 11.8 |
| 담당자 직급 | 5급 | (6) | 0.0 | 100.0 | 0.0 |
| | 6급 | (14) | 0.0 | 100.0 | 0.0 |
| | 7급 | (28) | 3.6 | 82.1 | 14.3 |
| | 8급 | (29) | 6.9 | 72.4 | 20.7 |
| | 9급 | (22) | 4.5 | 90.9 | 4.5 |
| | 기타 | (4) | 25.0 | 75.0 | 0.0 |
| | 무응답 | (2) | 0.0 | 100.0 | 0.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39) | 5.1 | 87.2 | 7.7 |
| | 수행 경험 없음 | (66) | 4.5 | 83.3 | 12.1 |

## 〈표 68〉 평소 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에 대한 견해

| 구분 | | 사례 수 | 때와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역 방언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별 생각이 없다 |
|---|---|---|---|---|---|---|
| 전체 | | (205) | 48.3 | 35.6 | 9.8 | 6.3 |
| 권역별 | 경기 | (42) | 50.0 | 35.7 | 9.5 | 4.8 |
| | 강원 | (18) | 38.9 | 33.3 | 16.7 | 11.1 |
| | 충청 | (33) | 57.6 | 27.3 | 12.1 | 3.0 |
| | 전라 | (42) | 57.1 | 28.6 | 9.5 | 4.8 |
| | 경상 | (67) | 40.3 | 43.3 | 7.5 | 9.0 |
| | 제주 | (3) | 33.3 | 66.7 | 0.0 | 0.0 |
| 지자체 구분 | 광역지자체 | (19) | 31.6 | 57.9 | 10.5 | 0.0 |
| | 기초지자체 | (186) | 50.0 | 33.3 | 9.7 | 7.0 |
| 담당자 직급 | 5급 | (9) | 66.7 | 11.1 | 22.2 | 0.0 |
| | 6급 | (31) | 48.4 | 41.9 | 9.7 | 0.0 |
| | 7급 | (64) | 42.2 | 43.8 | 7.8 | 6.3 |
| | 8급 | (54) | 48.1 | 35.2 | 11.1 | 5.6 |
| | 9급 | (35) | 54.3 | 28.6 | 2.9 | 14.3 |
| | 기타 | (8) | 75.0 | 0.0 | 25.0 | 0.0 |
| | 무응답 | (4) | 0.0 | 50.0 | 25.0 | 25.0 |
| 지역어 관련 업무 경험 | 수행 경험 있음 | (68) | 45.6 | 39.7 | 10.3 | 4.4 |
| | 수행 경험 없음 | (137) | 49.6 | 33.6 | 9.5 | 7.3 |

〈기획·연구〉

국립국어원 김문오 어문연구과장

국립국어원 이현주 학예연구관

〈연구 참여자〉

연구책임자 이윤경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동연구원 김규찬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종웅 부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성준 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덕호 교수(경북대학교)

명성준 교수(경상국립대학교)

오현주 팀장(대신경제연구소)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22년 12월 22일

발행일: 2022년 12월 22일

인 쇄: 더크리P&B

※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지역 언어문화 발전 방안 연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